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전자신고 세액공제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전자신고 세액공제

2017. 10



#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전자신고 세액공제

2017. 10

#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김재진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기은선 강원대학교 교수

2017년 10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형수



# 요 약

## 1. 서 론

- (연구목적 및 배경) 2004년 전자신고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의 목적달성 여부 및 효과성을 평가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함
  - 2002년 홈택스의 개통으로 전자세정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03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에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제정됨
    - 2003년 법인세의 전자신고율만 92.7%로 높았고, 종합소득세 43.5%, 부가가치세 33.8%로 전자신고가 정착되지 못함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전자신고의 활성화라는 제도의 도입취지가 달성되었는지 파악하고, 정책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OECD의 전자신고율 자료와 우리나라의 전자신고율 추이를 비교하여 제도의 도입취지 달성 여부 및 지속적인 조세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함
    - 세무대리인에 대한 조세지원의 확대가 실제로 전자신고율의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평가함
    -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출 규모와 세무행정비용의 절감 규모를 시기를 나누어 비교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분석함
    - 설문조사를 통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예측을 함께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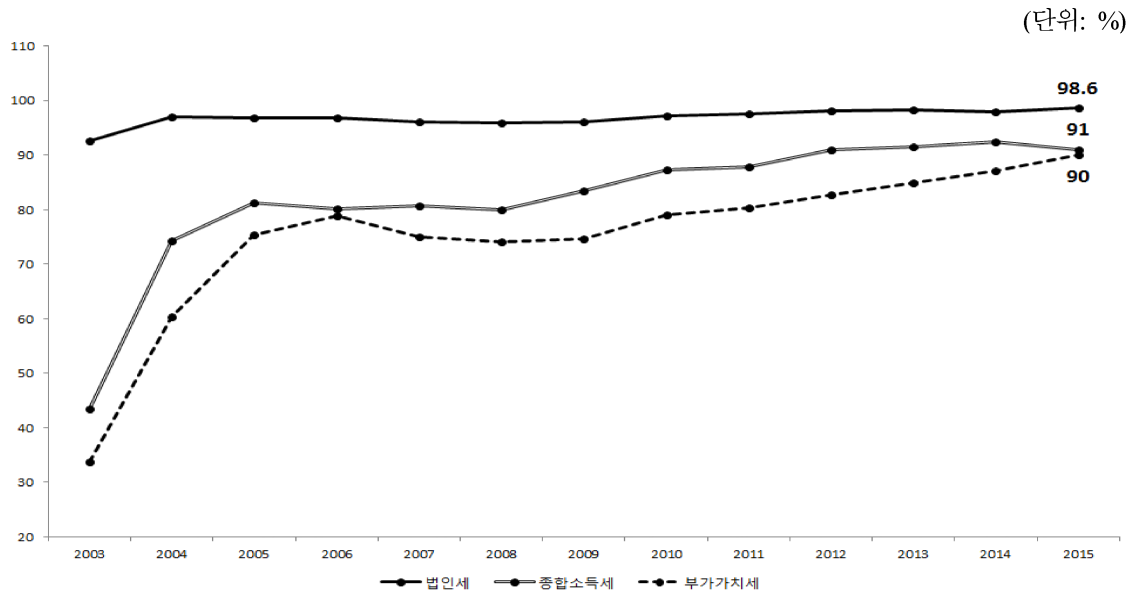
## 2. 타당성 분석

- 2015년 기준으로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율이 90%를 초과하여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조세혜택이 세무대리인에 집중되어 납세

자와의 형평성이 훼손되었으므로 지원대상도 적절하지 못함

- (조세지원의 필요성) 2015년 전자신고율은 법인세 98.6%, 종합소득세 91%, 부가가치세 90%로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으므로 전자신고제도의 정착이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됨

[그림 1] 주요세목의 전자신고율 추이



- (정책수행방법의 적절성) 세제혜택이 세무대리인에 집중되어 있고,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전자신고를 하고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종합소득세 11.4%, 법인세 83.5%로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표 1> 전자신고세액공제 개정연혁 정리

연도	납세자	세무대리인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액: 납세자 1인당 1만원</li> <li>• 한도: 연 100만원</li> </ul>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의 공제한도: 연 100만원 → 연 300만원</li> </ul>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인세: 2만원</li> <li>• 부가가치세: 1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액: 납세자 1인당 2만원</li> <li>• 한도: 100만원(법인 300만원) → 200만원(500만원)</li> </ul>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액: 납세자 1인당 4만원</li> <li>• 한도: 200만원(법인 500만원) → 300만원(800만원)</li> </ul>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도: 300만원(법인 800만원) → 400만원(1,000만원)</li> </ul>

<표 2> 납세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수혜 비율

(단위: %)

연도	법인세	종합소득세
2012	18.2	78.7
2013	17.9	80.3
2014	18.6	91.3
2015	16.5	88.6

### 3. 효과성 분석

- 납세자의 편의 증대 및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통해 전자세정의 안정화에 기여하였지만, 조세지출에 비해 전자신고율의 증가가 미미하고 세무행정비용의 절감 효과가 없음
  - (전자신고 활성화) 도입 초기에는 전자신고 정착에 기여하였지만 이후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은 크게 증가한 반면, 전자신고율의 증가는 미미하여 세제지원효과가 거의 없음

<표 3> 전자신고율 변화와 조세지출

구분	2003~2005년	2005~2015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율	43.5% → 81.2%(37.7%p 상승) 연평균 18.85%p 증가	81.2% → 91.0%(9.8%p 상승) 연평균 0.98p 증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율	33.8% → 75.4%(41.6%p) 연평균 20.8%p 증가	75.4% → 90.0%(14.6%p 상승) 연평균 1.46%p 증가
연평균 조세지출	92.6억	574.8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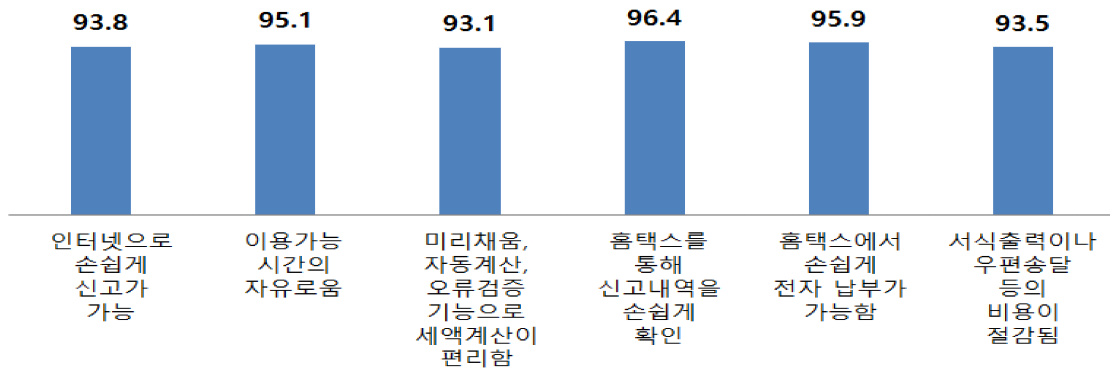
- (세무행정비용 절감) 지난 4년간 조세지출은 약 3,310억원이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세무행정비용 절감액은 약 939억원에 불과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는 없음
- (전자세정 안정화)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소와 신고내용의 정확성 향상, 그리고 상호대사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도 전자세정의 안정화에 기여함

#### 4. 설문조사

□ (편리성) 모든 질문항목에 대해 전자신고가 서면신고에 비하여 편리하다는 답변이 90%를 상회함

[그림 2]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편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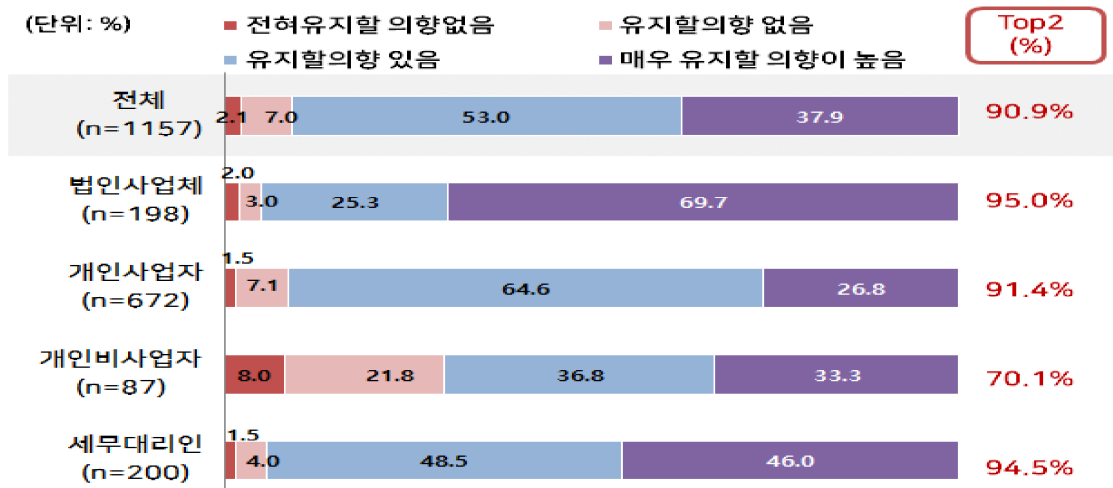
(단위: %)



□ (업무비용 증감) 납세자의 90.9%는 전자신고로 인해 세무관련 업무비용이 감소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하였고, 증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1%에 불과함

□ (전자신고 유지) 전자신고자의 90.9%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에도 전자신고를 유지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함

[그림 3] 세액공제 감소나 폐지 시 전자신고 유지 의향



## 5. 결론 및 개선방안

- (개선방안) 주요세목의 전자신고율이 90% 이상으로 제도가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섰으므로 세무대리인의 공제한도를 축소하고 법인의 전자신고를 의무화하여 세제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는 대신, 전자신고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 ① (점진적 폐지)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전자신고율을 제고하는 효과는 제도 도입 초기에만 관찰되며, 이미 전자신고에 익숙해진 납세자에게 조세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세지출만 유발하고 전자신고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됨
- 설문조사 결과, 제도를 폐지하여도 전자신고율은 적어도 83% 이상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로 발생하게 될 행정비용은 최대 약 353억원이지만, 조세지출 규모는 958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② (법인 전자신고 의무화) 법인은 세액공제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납세협력의무 이행능력이 뛰어나며, 이미 전자신고율이 99%에 달하므로 전자신고 의무화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음
- OECD국가의 50% 가량이 법인의 전자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높은 전자신고율을 보이는 국가들은 대부분 전자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 법인세 전자신고율은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이전에 이미 90%를 넘었고 현재는 99%의 법인이 전자신고를 선택하고 있음
  - 직접 전자신고한 법인 중 83.5%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전자신고를 선택하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 94.9%의 법인이 세액공제가 폐지·축소되더라도 전자신고를 유지하겠다고 응답함
- ③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축소) 네 차례의 세법개정을 통하여 세무대리인에 대한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신고율의 상승은 소폭에 그쳐 그 효과가 미미하였으므로 세무대리인의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설문조사 결과, 전자신고의 편리성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만족도는 89.7%로 매우 높으며, 세액공제를 폐지 또는 축소하더라도 94.5%의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유지하겠다고 응답함
  - 설문조사 결과, 세액공제 때문에 전자신고를 선택한 세무대리인은 4.4%에 불과해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④ (편리성 강화) 전자신고제도가 정착한 이후에는 전자신고의 편리성을 개선하여 전자신고에서 서면신고로 회귀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정책과제임
- 설문조사 결과,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되 전자신고의 편리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응답이 23.8%로 2위를 차지함

# 목 차

I. 서 론 .....	23
II.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원제도 현황 .....	27
1.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세지출 적용 실적 .....	29
2. 법인세 .....	30
가. 법인세 전자신고 현황 .....	30
나.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황 .....	31
3. 종합소득세 .....	35
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현황 .....	35
나.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황 .....	36
4. 부가가치세 .....	41
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현황 .....	41
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황 .....	43
5. 직접신고자·세무대리인별 세액공제 실적 .....	46
가. 총괄 .....	46
나. 법인세 .....	47
다. 종합소득세 .....	47
라. 부가가치세 .....	48
III.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원제도 .....	51
1.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원제도 .....	53
가. 도입 목적 .....	53
나. 정책대상자 .....	53
다. 공제 내용 .....	53
2.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원제도 변천 과정 .....	56

<b>IV. 주요국의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원제도</b> .....	<b>59</b>
1. 영국 .....	61
가. 대상 .....	61
나. 방식 .....	61
다. 지급액 .....	61
라. 성과 .....	61
마. 현황 .....	62
2. 일본 .....	62
가. 대상 .....	62
나. 방식 .....	62
다. 지급액 .....	62
라. 성과 .....	63
마. 현황 .....	63
3. 덴마크 .....	63
가. 대상 .....	63
나. 방식 .....	63
다. 현황 .....	64
<b>V. 타당성 평가</b> .....	<b>65</b>
1. 전자신고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 .....	67
가. 정책목표 달성 측면 .....	68
나. 비용-효익 분석 .....	74
다. 전자신고의 편리성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	78
2. 정책수행방법의 적절성 .....	79
가. 대상 설정의 타당성 .....	79
나. 지원수준의 타당성 .....	91
다. 제도 간 중복 여부 .....	100

<b>VI. 효과성 평가</b> .....	<b>103</b>
1. 전자신고 활성화.....	105
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대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설문조사 결과.....	105
나. 전자신고 세액공제와 전자신고자 수 및 전자신고율에 미친 효과 분석... ..	109
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관련 세법개정이 전자신고율에 미친 효과 분석.....	112
2. 세무행정비용 절감.....	117
3. 전자세정 안정화.....	121
<b>VII. 설문조사 결과</b> .....	<b>123</b>
1. 조사의 개요.....	125
2. 응답자 특성.....	126
가. 법인사업체의 응답자 특성.....	126
나. 개인사업자의 응답자 특성.....	126
다. 개인비사업자의 응답자 특성.....	127
라. 세무대리인의 응답자 특성.....	128
3. 주요 조사 결과.....	129
가. 전자신고 이용 현황.....	129
나. 세무대리인 고용 현황.....	132
다. 전자신고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134
라.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인식.....	138
4. 법인사업체 인식조사.....	142
가. 응답자 특성.....	142
나. 전자신고 미운영 이유와 향후 이용 의향.....	143
다. 전자신고 이용 행태.....	146
라. 전자신고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162
5. 개인사업자 인식조사.....	183
가. 응답자 특성.....	183
나. 전자신고 미운영 이유와 향후 이용 의향.....	185
다. 전자신고 이용 행태.....	189
라. 전자신고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204

6. 개인비사업자 인식조사 .....	225
가. 응답자 특성 .....	225
나. 전자신고 미운영 이유와 향후 이용 의향 .....	227
다. 전자신고 이용 행태 .....	231
라. 전자신고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	237
7. 세무대리인 인식조사 .....	257
가. 응답자 특성 .....	257
나. 전자신고 이용 행태 .....	257
다. 전자신고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	287
8. 요약 .....	295
<b>VIII. 제도개선 방안 .....</b>	<b>297</b>
1.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점진적 폐지 .....	299
가. 점진적 폐지 .....	299
나. 조세지원 대상자 축소방안 .....	302
2. 법인의 전자신고 의무화 .....	306
3. 세무대리인에 대한 공제한도 축소 .....	308
4. 전자신고의 편리성 강화 .....	310
<b>IX. 결 론 .....</b>	<b>313</b>
<b>참고문헌 .....</b>	<b>318</b>

## 표 목 차

<표 II-1>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	29
<표 II-2> 법인세 전자신고 현황 .....	30
<표 II-3>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황 .....	33
<표 II-4>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공제 비율 .....	34
<표 II-5>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현황 .....	35
<표 II-6>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인원 현황 .....	37
<표 II-7>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현황 .....	39
<표 II-8>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고 비율 .....	40
<표 II-9>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공제비율 .....	41
<표 II-10>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현황 .....	42
<표 II-11>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황 .....	44
<표 II-12>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황 .....	45
<표 II-13> 직접신고자·세무대리인별 세액공제 실적 .....	46
<표 II-14> 법인세 직접신고자·세무대리인별 세액공제 실적 .....	47
<표 II-15> 소득세 직접신고자·세무대리인별 세액공제 실적 .....	48
<표 II-16> 부가가치세 직접신고자·세무대리인별 세액공제 실적 .....	49
<표 III-1> 전자신고 세액공제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	55
<표 III-2>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한도 변천과정 .....	55
<표 III-3>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변천 과정 .....	57
<표 IV-1> 영국 현금보조금 지급실적 .....	61
<표 IV-2> 영국 소득세 전자신고율 추이 .....	62
<표 IV-3> 일본 세액공제 실적 .....	62
<표 IV-4> 일본 소득세 전자신고율 추이 .....	63
<표 IV-5> 외국의 전자신고 관련 지원제도 운영 .....	64

<표 V-1> 주요 세목별 전자신고율 .....	68
<표 V-2> OECD 국가의 법인세 전자신고율(2013년 기준) .....	71
<표 V-3>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율(2013년 기준) .....	72
<표 V-4> OECD 국가의 소득세 전자신고율 .....	73
<표 V-5>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축소 시 전자신고 유지의향 설문결과 .....	74
<표 V-6> 법인의 수입금액별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축소 시 전자신고 유지의향 .....	75
<표 V-7>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축소 시 추가발생 세무행정비용 추정자료 .....	77
<표 V-8> 전자신고의 편리성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	78
<표 V-9> 전자신고 세액공제 수혜자 .....	80
<표 V-10> 전자신고 수행주체 .....	81
<표 V-11> 외부조정비율 .....	81
<표 V-12>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수혜자 .....	84
<표 V-13>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건수와 전자신고 세액공제 수혜금액(2015년) .....	86
<표 V-14>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수혜자(법인세) .....	92
<표 V-15>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수혜자(부가가치세) .....	92
<표 V-16>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수혜자(소득세) .....	92
<표 V-17> 전자신고비용 추계(직접신고자-법인) .....	93
<표 V-18> 전자신고비용 추계(직접신고자-개인사업자) .....	94
<표 V-19> 전자신고비용 추계(직접신고자-개인 비사업자) .....	95
<표 V-20> 세무회계법인의 전자신고비용 추계 .....	96
<표 V-21>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증분비용 추계 .....	97
<표 V-22>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통한 비용보전비율 .....	98
<표 V-23> 국제행정전산화사업 비용 산출 세부내역 .....	101
<표 VI-1>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법인사업자) .....	106
<표 VI-2>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개인사업자) .....	107
<표 VI-3>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개인비사업자) .....	108
<표 VI-4>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세무·회계법인) .....	109
<표 VI-5> 전자신고 세액공제 관련 주요 세법개정 .....	113
<표 VI-6> 전자신고율 증감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의 변동률 .....	114

<표 VI-7> 세무대리인과 직접 신고자의 전자신고율 비교 .....	116
<표 VI-8> 서면신고 및 과세자료 등 입력비용예산 .....	117
<표 VI-9> 전자신고 세액공제로 인한 세무행정비용 절감효과 평가 .....	119
<표 VII-1> 본 조사 개요 .....	125
<표 VII-2> 표본 배분 .....	125
<표 VII-3> 전자신고를 선택한 주된 이유_1+2순위(복수응답) .....	132
<표 VII-4>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 .....	141
<표 VII-5>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	142
<표 VII-6>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방식 .....	143
<표 VII-7>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	144
<표 VII-8>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 2배 인상 시 전자신고 선택 의향 .....	145
<표 VII-9>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신고를 한 사람 .....	147
<표 VII-10> 2016년 동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수행한 횟수 .....	149
<표 VII-11>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_총 사용시간 .....	151
<표 VII-12> 법인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	153
<표 VII-13>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	155
<표 VII-14>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직원의 평균 연봉 .....	157
<표 VII-15>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 전자신고 유지할 의향 .....	159
<표 VII-16> 전자신고를 선택한 주된 이유_1+2 순위(복수응답) .....	161
<표 VII-17> 세무업무 처리 또는 조언을 위한 외부의 세무대리인 고용 여부 .....	163
<표 VII-18> 전자신고를 위해 고정비용 외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추가 비용 여부 .....	165
<표 VII-19>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 중 전자신고 업무비용의 포함 여부 .....	167
<표 VII-20> 전자신고시 세무관련 업무비용 증감에 대한 의견 .....	169
<표 VII-21>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감 금액_평균표 .....	171
<표 VII-22>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가 금액 .....	172
<표 VII-23>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감소금액 .....	174
<표 VII-24> 전자신고의 기여도 .....	176
<표 VII-25>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편리성 .....	178

<표 VII-26>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	180
<표 VII-27>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	182
<표 VII-28>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	183
<표 VII-29>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방식 .....	184
<표 VII-30>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	186
<표 VII-31>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 2배 인상 시 전자신고 선택 의향 .....	188
<표 VII-32>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신고를 한 사람 .....	190
<표 VII-33> 2016년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수행한 횟수 .....	192
<표 VII-34>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_총 사용시간 .....	193
<표 VII-35> 소득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	195
<표 VII-36>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	197
<표 VII-37>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인원의 평균 연봉 .....	199
<표 VII-38>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 전자신고 유지할 의향 .....	201
<표 VII-39> 전자신고를 선택한 주된 이유_1+2 순위(복수응답) .....	203
<표 VII-40> 세무업무 처리 또는 조언을 위한 외부의 세무대리인 고용 여부 .....	205
<표 VII-41> 전자신고를 위해 고정비용 외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추가 비용 여부 ...	206
<표 VII-42>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 중 전자신고 업무비용의 포함 여부 ...	208
<표 VII-43> 전자신고시 세무관련 업무비용 증감에 대한 의견 .....	210
<표 VII-44>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감 금액_평균표 .....	211
<표 VII-45>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가 금액 .....	213
<표 VII-46>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감소금액 .....	214
<표 VII-47> 전자신고의 기여도 .....	216
<표 VII-48>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편리성 .....	218
<표 VII-49>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	220
<표 VII-50>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	221
<표 VII-51> 전화신고 방식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 .....	223
<표 VII-52> 전자신고 대비 전화신고 방식의 편리함 정도 .....	225
<표 VII-53>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	226
<표 VII-54> 소득세 신고방식 .....	227

<표 VII-55> 소득세 신고 시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	229
<표 VII-56>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 2배 인상 시 전자신고 선택 의향 .....	231
<표 VII-57>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자신고를 한 사람 .....	232
<표 VII-58>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	234
<표 VII-59> 전자신고를 선택한 주된 이유_1+2 순위(복수응답) .....	235
<표 VII-60>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 전자신고 유지할 의향 .....	237
<표 VII-61> 세무업무 처리 또는 조언을 위한 외부의 세무대리인 고용 여부 .....	238
<표 VII-62> 전자신고를 위해 고정비용 외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추가 비용 여부 .....	240
<표 VII-63>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 중 전자신고 업무비용의 포함 여부 .....	241
<표 VII-64>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관련 업무비용에 대한 의견 .....	243
<표 VII-65>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감 금액_평균표 .....	244
<표 VII-66>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가 금액 .....	245
<표 VII-67>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감소 금액 .....	246
<표 VII-68> 전자신고의 기여도 .....	248
<표 VII-69>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편리성 .....	250
<표 VII-70>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	252
<표 VII-71>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	253
<표 VII-72> 전화신고 방식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 .....	255
<표 VII-73> 전자신고 대비 전화신고 방식의 편리함 정도 .....	256
<표 VII-74>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	257
<표 VII-75>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로 세금을 신고한 횟수_평균표 .....	258
<표 VII-76>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로 법인세를 신고한 횟수 .....	260
<표 VII-77>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로 소득세를 신고한 횟수 .....	261
<표 VII-78>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횟수 .....	263
<표 VII-79>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_총 사용시간 .....	264
<표 VII-80> 법인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	266
<표 VII-81> 소득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	267
<표 VII-82>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	269

<표 VII-83>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총 인원 .....	270
<표 VII-84> 전체 업무에서 전자신고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 .....	272
<표 VII-85>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인원의 평균 연봉 .....	274
<표 VII-86>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 사용된 총 비용 .....	275
<표 VII-87>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하여 공제받은 금액_평균표 .....	277
<표 VII-88>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공제받은 금액 .....	278
<표 VII-89>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여 공제받은 금액 .....	280
<표 VII-90>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공제받은 금액 .....	281
<표 VII-91>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	282
<표 VII-92> 고객 요구 혹은 자율적 선택에 의해 전자신고를 한 비율 .....	284
<표 VII-93> 고객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전자신고를 선택한 이유_1+2순위 (복수응답) .....	285
<표 VII-94>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 전자신고 지속 의향 .....	287
<표 VII-95> 전자신고시 서면신고 고객 대비 납세신고대행 수수료 차이 .....	288
<표 VII-96> 납세대행수수료에 전자신고 업무비용 포함 여부 .....	290
<표 VII-97> 전자신고의 기여도 .....	291
<표 VII-98>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편리성 .....	293
<표 VII-99>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	294
<표 VIII-1> 외국의 전자신고 관련 지원제도 운영 현황 .....	302
<표 VIII-2>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자와 전자신고자 특성 비교(2015년 기준) .....	304
<표 VIII-3> 부가가치세 서면신고자와 전자신고자 특성 비교(2015년 2기 확정) .....	305
<표 VIII-4> OECD 국가의 전자신고 의무화 여부 .....	307

## 그림 목 차

[그림 V-1]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전자신고율 비교(2013년 기준) .....	69
[그림 V-2] 전자신고 의사결정의 주체 .....	82
[그림 V-3] 법인세 직접 전자신고건수 및 직접신고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수혜건수 .....	84
[그림 V-4]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비율(2015년 기준) .....	85
[그림 V-5] 종합소득세 직접 전자신고건수 및 직접신고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수혜건수 .....	86
[그림 V-6]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건수 .....	87
[그림 V-7]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 .....	88
[그림 V-8] 세목별 납세인원 현황(2015년 기준) .....	89
[그림 V-9] 세목별 세수 실적(2015년 기준) .....	90
[그림 V-10]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 중 전자신고 업무비용 포함 여부 .....	99
[그림 V-11]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어 서면신고를 선택한 납세자 비율 .....	100
[그림 VI-1]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	105
[그림 VI-2]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출과 전자신고율 .....	110
[그림 VI-3]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출과 전자신고자 수 .....	111
[그림 VI-4] 총 신고건수 중 세무대리인에 의한 전자신고비율 .....	115
[그림 VI-5]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직·간접 효과 .....	121
[그림 VI-6] 전자신고의 기여도에 대한 설문결과 .....	122
[그림 VII-1] 법인사업체의 일반적 특성 .....	126
[그림 VII-2] 개인사업자의 일반적 특성 .....	127
[그림 VII-3] 개인비사업자의 일반적 특성 .....	128
[그림 VII-4] 세무대리인의 일반적 특성 .....	128
[그림 VII-5]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방식 .....	129
[그림 VII-6]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자신고를 한 사람 .....	130

[그림 VII-7] 전자신고를 선택한 주된 이유(1순위, 1+2순위) .....	131
[그림 VII-8] 세무대리인 고용 여부 .....	132
[그림 VII-9]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 중 전자신고 업무비용의 포함 여부 ...	133
[그림 VII-10] 전자신고시 세무관련 업무비용 증감에 대한 의견 .....	135
[그림 VII-11]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기여도 .....	136
[그림 VII-12]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편리성 .....	137
[그림 VII-13]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 2배 인상 시 전자신고 선택 의향 .....	138
[그림 VII-14]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 전자신고 유지할 의향 .....	139
[그림 VII-15]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	140
[그림 VII-16]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방식 .....	143
[그림 VII-17]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	144
[그림 VII-18]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 2배 인상 시 전자신고 선택 의향 .....	145
[그림 VII-19]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신고를 한 사람 .....	146
[그림 VII-20] 2016년 동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수행한 횟수 .....	148
[그림 VII-21]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_총 사용시간 .....	150
[그림 VII-22] 법인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	152
[그림 VII-23]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	154
[그림 VII-24]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직원의 평균 연봉 .....	156
[그림 VII-25]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 전자신고 유지할 의향 .....	158
[그림 VII-26] 전자신고를 선택한 주된 이유(1순위, 1+2순위) .....	160
[그림 VII-27] 세무업무 처리 또는 조언을 위한 외부의 세무대리인 고용 여부 .....	162
[그림 VII-28] 전자신고를 위해 고정비용 외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추가 비용 여부 ...	164
[그림 VII-29]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 중 전자신고 업무비용의 포함 여부 ...	166
[그림 VII-30] 전자신고시 세무관련 업무비용 증감에 대한 의견 .....	168
[그림 VII-31]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감 금액_평균 .....	170
[그림 VII-32]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가 금액 .....	172
[그림 VII-33]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감소 금액 .....	173
[그림 VII-34] 전자신고의 기여도 .....	175

[그림 VII-35]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편리성 .....	177
[그림 VII-36]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	179
[그림 VII-37]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	181
[그림 VII-38]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방식 .....	184
[그림 VII-39]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	185
[그림 VII-40]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 2배 인상 시 전자신고 선택 의향 .....	187
[그림 VII-41]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신고를 한 사람 .....	189
[그림 VII-42]	2016년 동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수행한 횟수 .....	191
[그림 VII-43]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_총 사용시간 .....	193
[그림 VII-44]	소득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	194
[그림 VII-45]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	196
[그림 VII-46]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인원의 평균 연봉 .....	198
[그림 VII-47]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 전자신고 유지할 의향 .....	200
[그림 VII-48]	전자신고를 선택한 주된 이유(1순위, 1+2순위) .....	202
[그림 VII-49]	세무업무 처리 또는 조언을 위한 외부의 세무대리인 고용 여부 .....	204
[그림 VII-50]	전자신고를 위해 고정비용 외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추가 비용 여부 ...	206
[그림 VII-51]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 중 전자신고 업무비용의 포함여부 ...	207
[그림 VII-52]	전자신고시 세무 관련 업무비용 증감에 대한 의견 .....	209
[그림 VII-53]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감 금액_평균 .....	211
[그림 VII-54]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가 금액 .....	212
[그림 VII-55]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감소 금액 .....	214
[그림 VII-56]	전자신고의 기여도 .....	215
[그림 VII-57]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편리성 .....	217
[그림 VII-58]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	219
[그림 VII-59]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	221
[그림 VII-60]	전화신고 방식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 .....	222
[그림 VII-61]	전자신고 대비 전화신고 방식의 편리함 정도 .....	224
[그림 VII-62]	소득세 신고방식 .....	227
[그림 VII-63]	소득세 신고 시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	228

[그림 VII-64]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 2배 인상 시 전자신고 선택 의향	230
[그림 VII-65]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자신고를 한 사람	232
[그림 VII-66]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233
[그림 VII-67]	전자신고를 선택한 주된 이유(1순위, 1+2순위)	235
[그림 VII-68]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 전자신고 유지할 의향	236
[그림 VII-69]	세무업무 처리 또는 조언을 위한 외부의 세무대리인 고용 여부	238
[그림 VII-70]	전자신고를 위해 고정비용 외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추가 비용 여부	239
[그림 VII-71]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 중 전자신고 업무비용의 포함 여부	241
[그림 VII-72]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 관련 업무비용에 대한 의견	242
[그림 VII-73]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감 금액_평균	244
[그림 VII-74]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가 금액	245
[그림 VII-75]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감소 금액	246
[그림 VII-76]	전자신고의 기여도	247
[그림 VII-77]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편리성	249
[그림 VII-78]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251
[그림 VII-79]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253
[그림 VII-80]	전화신고 방식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	254
[그림 VII-81]	전자신고 대비 전화신고 방식의 편리함 정도	256
[그림 VII-82]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로 세금을 신고한 횟수_평균	258
[그림 VII-83]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로 법인세를 신고한 횟수	259
[그림 VII-84]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로 소득세를 신고한 횟수	261
[그림 VII-85]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횟수	262
[그림 VII-86]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_총 사용시간	264
[그림 VII-87]	법인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265
[그림 VII-88]	소득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267
[그림 VII-89]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268
[그림 VII-90]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총 인원	270
[그림 VII-91]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인원의 전자신고 업무의 비중	271

[그림 VII-92]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인원의 평균 연봉 .....	273
[그림 VII-93]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 사용된 총 비용 .....	275
[그림 VII-94]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하여 공제받은 금액_평균 .....	276
[그림 VII-95]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공제받은 금액 .....	277
[그림 VII-96]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여 공제받은 금액 .....	279
[그림 VII-97]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공제받은 금액 .....	280
[그림 VII-98]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	282
[그림 VII-99] 고객 요구 혹은 자율적 선택에 의해 전자신고를 한 비율 .....	283
[그림 VII-100] 고객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전자신고를 선택한 이유(1순위, 1+2순위) .....	285
[그림 VII-101]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 전자신고 지속 의향 .....	286
[그림 VII-102] 전자신고시 서면신고 고객 대비 납세신고대행 수수료 차이 .....	288
[그림 VII-103] 납세대행수수료에 전자신고 업무비용 포함 여부 .....	289
[그림 VII-104] 전자신고의 기여도 .....	291
[그림 VII-105]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편리성 .....	292
[그림 VII-106]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	294
[그림 VIII-1]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비용-효익 분석 .....	301
[그림 VIII-2]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선택한 주된 이유(1+2순위 복수응답) .....	310
[그림 VIII-3]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결과 .....	311



# I. 서론





## I. 서론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에 따라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임
  - 2002년 홈택스의 개통으로 전자세정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03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에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제정됨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03년에는 법인세의 전자신고율만 92.7%로 높았고, 종합소득세 43.5%, 부가가치세 33.8%로 전자신고가 정착되지 못함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이후 주요 세목의 전자신고율이 크게 상승하는 것과 더불어 조세지출 규모도 가파르게 상승함
  - 2015년 법인세 전자신고율은 98.6%,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율은 91.0%,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율은 90.0%, 원천세 전자신고율은 98.9%로 주요세목의 전자신고율이 모두 90%를 넘음
  - 2004년 제도 도입 시에 40억원이던 조세지출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5년 958억원으로 2004년 대비 24배 가까이 증가함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도입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모두 세무대리인의 공제액과 공제한도에 관련된 개정이었음
  - 2004년 제도 도입 당시 세무대리인은 대리하여 신고한 납세자 1인당 1만원의 공제를 받았지만, 현재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납세자 1인당 4만원의 공제를 받고 있음
  - 2004년 제도 도입 당시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 10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는 400만원,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은 1,000만원으로 크게 상승함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전자 신고의 활성화라는 제도의 도입취지가 달성되었는지 파악하고, 정책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OECD의 전자신고율 자료와 우리나라의 전자신고율 추이를 비교하여 제도의 도입취지 달성 여부 및 지속적인 조세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함
  - 세무대리인에 대한 조세지원의 확대가 실제로 전자신고율의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평가함
  -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출 규모와 세무행정비용의 절감 규모를 시기를 나누어 비교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분석함
  - 설문조사를 통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을 함께 수행함
  
- 동 보고서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정책목표 달성 여부와 지원방법과 지원규모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판단함
  - 특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비용-효익 관점에서 평가하여 차후 제도의 개정 시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Ⅱ.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원제도 현황





## II.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원제도 현황

### 1.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세지출 적용 실적

-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은 제도가 2004년 도입된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였고, 소득세와 부가세가 세액공제액의 대부분을 차지함
  - 2004년에 40.2억원에 불과하던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은 2015년 958억원으로 11년 사이에 23.8배 증가하였음
  - 2015년 전체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세가 63.8%, 부가세가 34.1%로 합이 98%에 달함
    -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은 2015년 20억원으로 전체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에 불과함
  
-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국세감면액 35조 9,017억원 중 0.27%, 「조특법」상 조세지출 19조 3,874억원 중 0.49%를 차지함

<표 II -1>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소득세	40	144	153	189	303	406	445	461	424	508	535	611
법인세	0.2	1	1	3	5	4	9	10	12	16	18	20
부가세	-	-	-	-	-	-	213	236	262	282	295	327
계	40.2	145	154	192	308	410	667	707	698	806	848	958

주: 2010년까지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부가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였음  
출처: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2. 법인세

### 가. 법인세 전자신고 현황

- 법인세 전자신고 비율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도입되기 전인 2003년에도 92.7%로 상당히 높았으므로, 지난 12년간 전자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전자신고 비율은 6%p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고, 전자신고의 대부분은 세무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짐
-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2004년에 도입되면서 도입되기 전인 2003년에 비해서 법인세 전자신고 비율은 4.4%p 증가함

<표 II -2> 법인세 전자신고 현황

(단위: 천, %)

연도	총신고건수	전자신고건수	본인	세무대리인	비율
2003	298,570	276,728			92.7
2004	317,395	308,193			97.1
2005	336,208	325,705			96.9
2006	354,836	343,755			96.9
2007	381,565	366,710			96.1
2008	401,819	385,860	12,472 (3.2)	373,388 (96.8)	96.0
2009	421,145	404,859	11,985 (3.0)	392,874 (97.0)	96.1
2010	440,088	428,268	13,328 (3.1)	414,940 (96.9)	97.3
2011	465,262	453,410	14,113 (3.1)	439,297 (96.9)	97.5
2012	492,632	483,710	13,927 (2.9)	469,783 (97.1)	98.2
2013	522,898	514,132	14,379 (2.8)	499,753 (97.2)	98.3
2014	562,341	550,813	17,479 (3.2)	533,334 (96.8)	98.0
2015	610,244	601,986	18,578 (3.1)	583,408 (96.9)	98.6

주: ( ) 안의 숫자는 전자신고건 중에서 본인과 세무대리인이 수행한 비율을 나타냄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법인세 전자신고는 2003년 276,728건에서 2015년 601,986건으로 12년간 2.18배 증가하였음
- 전체 법인세 신고에서 전자신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도입된 이후, 2004년 97.1%에서 2015년 98.6%로 11년간 1.5%p 증가하는 데 그침
  - 2008년, 2009년, 2012년 개정을 통해 전자신고를 수행하는 대리인에 대한 혜택을 개인은 1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법인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였지만 개정 전에 전자신고 비율이 이미 97%에 달했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함
  - 2015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세 신고 대상 61만개 법인 중에서 전자신고를 하지 않는 법인은 1만개 미만임
- 전자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본인이 3% 내외, 세무대리인이 대략 97%로 일정하게 유지됨

## 나.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황

### 1)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의 수와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07년에는 2,219개의 법인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015년에는 3,370개의 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음
    -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 법인은 2009년 678개에서 2015년 492개로 186개 감소하였고,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세무법인은 2009년 20개에서 2015년 22개로 큰 차이가 없었음
      - 따라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9년 32.5%에서 2015년 15.3%로 크게 하락하였음
    - 이와 대조적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은 일반법인은 2009년 1,352개에서 2015년 2,567개로 1,215개(89.8%) 증가하였고, 세무법인은 2009년 95개에서 2015년 289개로 194개(204%) 증가함
  - 2007년에는 256백만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받았는데, 2015년에는 1,985백만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아 675.4%가 증가하였음

- 2008년부터 전자신고 세액공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며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임
- 전체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중에서 세무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에는 84%에서 2015년 96%로 증가하였음
  - 하지만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세무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7.1%에서 2015년 6.3%로 감소하고 있어,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혜택의 90% 가까이를 일반 세무법인이 차지함
- 세무법인당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2009년 1.5백만원에서 2015년 5.7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일반 세무법인은 2009년 3.4백만원에서 2015년 6.1백만원으로 증가함
  - 세무대리인에게 적용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액인 10백만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함

<표 II -3>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연도	신고 구분	중소기업		일반법인		합계	
		신고법인	금액	신고법인	금액	신고법인	금액
2007	전체	684 (30.8)	40 (15.6)	1,535 (69.2)	216 (84.4)	2,219	256
2008	전체	691 (28.7)	102 (19.6)	1,713 (71.3)	419 (80.4)	2,404	521
2009	법인	678 (31.6)	14 (3.3)	1,352 (63.0)	54 (12.8)	2,145	423
	세무법인	20 (0.9)	30 (7.1)	95 (4.4)	325 (76.8)		
2010	법인	542 (21.9)	12 (1.4)	1,772 (71.5)	56 (6.5)	2,480	866
	세무법인	24 (1.0)	67 (7.7)	142 (5.7)	731 (84.4)		
2011	법인	578 (21.7)	13 (1.3)	1,892 (71.1)	60 (6.0)	2,662	1,008
	세무법인	26 (1.0)	49 (4.9)	166 (6.2)	886 (87.9)		
2012	법인	645 (23.4)	14 (1.1)	1,895 (68.7)	56 (4.5)	2,759	1,247
	세무법인	22 (0.8)	81 (6.5)	197 (7.1)	1,096 (87.9)		
2013	법인	614 (21.8)	25 (1.6)	1,956 (69.5)	94 (5.9)	2,816	1,595
	세무법인	22 (0.8)	95 (6.0)	224 (8.0)	1,381 (86.6)		
2014	법인	576 (16.5)	13 (0.7)	2,672 (76.5)	88 (4.8)	3,493	1,817
	세무법인	24 (0.7)	139 (7.6)	221 (6.3)	1,577 (86.8)		
2015	법인	492 (14.6)	18 (0.9)	2,567 (76.2)	67 (3.4)	3,370	1,985
	세무법인	22 (0.7)	125 (6.3)	289 (8.6)	1,775 (89.4)		

주: ( ) 안의 숫자는 해당연도의 전체 전자신고 법인 수와 세액공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2)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 비율

- 법인세를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했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비율은 80%가 넘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1항 후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1항 3호에 따라 최저한세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됨
  - 본인이 직접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은 비율은 2009년 16.9%였고, 2015년에는 16.5%로 증감을 반복하지만 크게 변동하지는 않음
    - 전자신고를 직접 한 법인 중에서 80% 이상은 전자신고를 했지만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 전자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는 중소기업의 수는 2009년 678개에서 2015년 492개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표 II -4〉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공제 비율

(단위: 건, %)

연도	본인 전자신고건수 (A)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고 법인		비율 [(B+C)/A]
		중소기업 (B)	일반기업 (C)	
2009	11,985	678	1,352	16.9
2010	13,328	542	1,772	17.4
2011	14,113	578	1,892	17.5
2012	13,927	645	1,895	18.2
2013	14,379	614	1,956	17.9
2014	17,479	576	2,672	18.6
2015	18,578	492	2,567	16.5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3. 종합소득세

#### 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현황

- 전자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자신고의 비율도 2003년 이후로 50%p가량 증가하였음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도입되기 전인 2003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비율은 43.5%에 불과했지만,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도입된 2004년에는 74.3%로 1년 만에 30.8%p가 증가함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건수는 2003년 1,143,126건에서 2015년 5,417,598건으로 4.74배 증가하였음

<표 II -5>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현황

(단위: 건, %)

연도	총신고건수	전자신고건수	본인	세무대리인	비율
2003	2,625,943	1,143,126			43.5
2004	2,779,605	2,065,070			74.3
2005	2,775,022	2,252,413			81.2
2006	3,428,729	2,746,022			80.1
2007	4,045,270	3,266,119			80.7
2008	4,888,581	3,909,161	1,672,842 (42.8)	2,236,319 (57.2)	80.0
2009	4,516,871	3,767,046	1,548,149 (41.1)	2,218,897 (58.9)	83.4
2010	4,703,854	4,108,422	1,751,118 (42.6)	2,357,304 (57.4)	87.3
2011	5,005,424	4,396,816	1,896,374 (43.1)	2,500,442 (56.9)	87.8
2012	5,289,054	4,807,370	2,168,097 (45.1)	2,639,273 (54.9)	90.9
2013	5,447,494	4,989,533	2,232,859 (44.8)	2,756,674 (55.2)	91.6
2014	5,516,499	5,100,686	2,321,259 (45.5)	2,779,427 (54.5)	92.5
2015	5,954,281	5,417,598	2,436,161 (45.0)	2,981,437 (55.0)	91.0

주: ( ) 안의 숫자는 해당연도 전자신고 건 중에서 본인과 세무대리인이 수행한 비율을 나타냄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2004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도입된 이후로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비율은 2004년 74.3%에서 2015년 91.0%로 11년간 16.7%p가 증가하였음
  - 전자신고 중 본인에 의한 비율은 2005년 42.8%에서 2015년 45.0%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세무대리인에 의한 비율은 2005년 57.2%에서 2015년 55.0%로 소폭 감소하였음

## 나.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황

### 1)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인원

- 2009년 이후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는 인원이 급증하였고, 특히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구간에서 크게 증가함
  - 2009년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는 인원은 921,877명에서 2015년 2,002,689명으로 2배 넘게 증가하였음
  - 종합소득금액 0~1천만원 구간은 2009년 501,959명에서 2015년 1,134,490명으로 2.26배 증가하였고 1~2천만원 구간은 2009년 202,299명에서 2015년 625,245명으로 3.09배 증가하였음
    - 종합소득금액 1천만원 이하의 비중은 2009년 54.4%에서 2015년 58.4%로 4%p 증가하였고, 2천만원 이하의 비중은 2009년 76.3%에서 2015년 89.6%로 13.3%p 증가하였음
      -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는 인원의 90%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임
  - 종합소득금액 2~4천만원 구간은 2009년 115,331명에서 2015년 29,271명으로 86,060명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고, 비율도 2009년 12.5%에서 2015년 1.5%로 급감함
  - 종합소득금액 2억원 이상의 구간은 2009년 2,992명에서 2015년 6,960명으로 3,968명 증가하였지만, 차지하는 비율은 0.5%로 일정함

<표 II -6>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인원 현황

(단위: 명, %)

종합소득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921,877	1,029,563	1,100,477	1,350,498	1,403,090	1,796,700	2,002,689
0원 이하	-	-	-	-	-	37,062 (2.1)	35,926 (1.8)
0 ~ 1천만원	501,959 (54.4)	566,957 (55.1)	604,475 (54.9)	657,577 (48.7)	711,680 (50.7)	1,052,015 (58.6)	1,134,490 (56.6)
1 ~ 2천만원	202,299 (21.9)	229,288 (22.3)	253,613 (23.0)	430,014 (31.8)	456,073 (32.5)	530,448 (29.5)	625,245 (31.2)
2 ~ 4천만원	115,311 (12.5)	112,738 (11.0)	121,670 (11.1)	38,451 (2.8)	29,287 (2.1)	25,166 (1.4)	29,271 (1.5)
4 ~ 6천만원	52,701 (5.7)	61,277 (6.0)	48,368 (4.4)	114,148 (8.5)	93,169 (6.6)	63,361 (3.5)	69,876 (3.5)
6 ~ 8천만원	24,554 (2.7)	29,166 (2.8)	33,778 (3.1)	54,559 (4.0)	50,349 (3.6)	35,753 (2.0)	41,737 (2.1)
8천 ~ 1억원	10,940 (1.2)	13,388 (1.3)	17,549 (1.6)	27,728 (2.1)	28,663 (2.0)	22,733 (1.3)	27,218 (1.4)
1 ~ 2억원	11,121 (1.2)	13,314 (1.3)	16,832 (1.5)	23,059 (1.7)	27,926 (2.0)	24,475 (1.4)	31,966 (1.6)
2 ~ 3억원	1,444 (0.2)	1,690 (0.2)	2,095 (0.2)	2,584 (0.2)	3,208 (0.2)	2,988 (0.2)	3,835 (0.2)
3 ~ 5억원	815 (0.1)	915 (0.1)	1,096 (0.1)	1,306 (0.1)	1,555 (0.1)	1,480 (0.1)	1,729 (0.1)
5억 초과	733 (0.1)	830 (0.1)	1,001 (0.1)	1,072 (0.1)	1,180 (0.1)	1,219 (0.1)	1,396 (0.1)

주: ( ) 안은 종합소득 구간별 비율임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2)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 2011년 이후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이 급증하였고, 특히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구간에서 크게 증가함
  -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은 2009년에 33,568백만원이었지만 2015년에 58,364백만원으로 6년 사이에 24,796백만원(73.9%)가 증가함
    - 특히 2012년 세무대리인의 세액공제 한도액이 상승하면서 2011년 35,267백만원에서 2012년 43,378백만원으로 8,111백만원이 증가함
  - 종합소득금액 0~1천만원 구간은 2009년 9,999백만원에서 2015년 22,712백만원으로 2.27배 증가하였고 1~2천만원 구간은 2009년 4,194백만원에서 2015년 13,632백만원으로 3.25배 증가하였음
    - 종합소득금액 1천만원 이하의 비중은 2009년 29.8%에서 2015년 38.9%로 9.1%p 증가하였고, 2천만원 이하의 비중은 2009년 12.5%에서 2015년 23.4%로 10.9%p 증가하였음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의 63.6%를 차지함
  - 종합소득금액 2~4천만원 구간은 2009년 4,208백만원에서 2015년 1,090백만원으로 3,118백만원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고, 비율도 2009년 12.5%에서 2015년 1.9%로 급감함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상의 구간은 2009년 5,247백만원에서 2015년 9,109백만원으로 3,862백만원 증가하였지만, 차지하는 비율은 15.6%로 거의 변동이 없음

<표 II -7>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종합소득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33,568	34,029	35,267	43,378	44,960	54,336	58,364
0원 이하	-	-	-	-	-	753 (1.4)	733 (1.3)
0 ~ 1천만원	9,999 (29.8)	11,272 (33.1)	11,599 (32.9)	12,315 (28.4)	13,358 (29.7)	21,060 (38.8)	22,712 (38.9)
1 ~ 2천만원	4,194 (12.5)	4,717 (13.9)	5,207 (14.8)	9,677 (22.3)	10,229 (22.8)	11,848 (21.8)	13,632 (23.4)
2 ~ 4천만원	4,208 (12.5)	3,762 (11.1)	3,886 (11.0)	1,340 (3.1)	1,186 (2.6)	1,168 (2.1)	1,090 (1.9)
4 ~ 6천만원	4,248 (12.7)	3,871 (11.4)	3,503 (9.9)	4,920 (11.3)	4,437 (9.9)	4,201 (7.7)	4,007 (6.9)
6 ~ 8천만원	3,285 (9.8)	3,080 (9.1)	3,140 (8.9)	4,167 (9.6)	4,119 (9.2)	3,847 (7.1)	3,679 (6.3)
8천 ~ 1억원	2,387 (7.1)	2,250 (6.6)	2,404 (6.8)	3,105 (7.2)	3,241 (7.2)	3,309 (6.1)	3,402 (5.8)
1 ~ 2억원	4,455 (13.3)	4,257 (12.5)	4,605 (13.1)	6,478 (14.9)	6,809 (15.1)	6,463 (11.9)	7,164 (12.3)
2 ~ 3억원	597 (1.8)	639 (1.9)	688 (2.0)	1,009 (2.3)	1,119 (2.5)	1,217 (2.2)	1,360 (2.3)
3 ~ 5억원	155 (0.5)	142 (0.4)	184 (0.5)	297 (0.7)	384 (0.9)	370 (0.7)	495 (0.8)
5억 초과	40 (0.1)	39 (0.1)	51 (0.1)	70 (0.2)	78 (0.2)	100 (0.2)	90 (0.2)

주: ( ) 안은 종합소득 구간별 비율임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3)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비율

- 종합소득이 0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높을수록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1항 후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2항 3호에 따라 최저한세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됨
  - 종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는 비율은 소득금액 0~1천만원 이하의 구간에서 2014년 46.7%, 2015년 47.1%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소득이 많을수록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는 비율이 낮다고 예상됨

〈표 II -8〉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고 비율

(단위: 명, %)

종합소득	2014년			2015년		
	종합소득 신고인원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고인원	비율	종합소득 신고인원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고인원	비율
합계	5,052,552	1,796,700	35.6	5,482,678	2,002,689	36.5
0원 이하	206,838	37,062	17.9	188,707	35,926	19.0
0 ~ 1천만원	2,250,662	1,052,015	46.7	2,408,205	1,134,490	47.1
1 ~ 2천만원	1,684,607	530,448	31.5	1,858,910	625,245	33.6
2 ~ 4천만원	113,700	25,166	22.1	127,932	29,271	22.9
4 ~ 6천만원	291,846	63,361	21.7	325,538	69,876	21.5
6 ~ 8천만원	159,911	35,753	22.4	184,011	41,737	22.7
8천 ~ 1억원	99,438	22,733	22.9	113,174	27,218	24.0
1 ~ 2억원	163,264	24,475	15.0	184,961	31,966	17.3
2 ~ 3억원	39,517	2,988	7.6	43,470	3,835	8.8
3 ~ 5억원	24,638	1,480	6.0	27,310	1,729	6.3
5 ~ 10억원	12,247	753	6.1	13,879	918	6.6
10억 초과	5,884	466	7.9	6,581	478	7.3

주: 비율은 소득구간별 종합소득 신고인원 대비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고인원임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4) 전자신고건수 대비 전자신고 세액공제 비율

- 종합소득세를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했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비율은 10%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법인세와 대조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대부분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1항 후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1항 3호에 따라 최저한세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됨
  -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은 비율은 2012년 78.7%였고, 2015년에는 88.6%로 10%가량 증가함
    - 전자신고를 직접 한 개인 중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비율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음

〈표 II -9〉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공제비율

(단위: 건, %)

연도	본인 전자신고건수 (A)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고 개인 (B)	비율 (B/A)
2012	2,168,097	1,706,488	78.7
2013	2,232,859	1,791,901	80.3
2014	2,321,259	2,118,932	91.3
2015	2,436,161	2,157,341	88.6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내부자료

## 4. 부가가치세

### 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현황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총 신고건수에서 전자신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함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도입되기 전인 2003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비율은 33.8%에 불과했지만,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도입된 2004년에는 60.3%로 1년 만에 26.5%p가 증가함

- 총 신고건수는 2003년 9,318,429건에서 2015년 11,246,543건으로 20.7% 증가하였지만, 전자신고건수는 2003년 3,150,491건에서 2015년 10,120,733건으로 221% 증가하였음
  - 2013년 간이과세자의 신고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면서 총 신고건수의 감소가 있었지만 전자신고건수는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침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도입된 이후로도 전자신고비율은 2004년 60.3%에서 2015년 90.0%로 29.7%p 꾸준히 증가해서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비율이 90%에 도달함
  - 2006년 78.9%이던 부가세 전자신고비율은 2009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매년 평균적으로 증가비율이 2.5%p를 넘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II -10>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현황

(단위: 건, %)

연도	1기		2기		합계		
	총 신고	전자신고	총 신고	전자신고	총 신고	전자신고	비율
2003					9,318,429	3,150,491	33.8
2004					9,296,963	5,606,540	60.3
2005	4,727,892	3,510,873	4,820,201	3,687,380	9,548,093	7,198,253	75.4
2006	4,805,733	3,808,860	4,932,146	3,875,870	9,737,879	7,684,730	78.9
2007	5,187,857	3,910,399	5,343,931	3,999,978	10,531,788	7,910,377	75.1
2008	5,626,281	4,169,025	5,746,284	4,260,068	11,372,565	8,429,093	74.1
2009	5,896,248	4,396,963	6,033,655	4,498,765	11,929,903	8,895,728	74.6
2010	6,077,929	4,799,705	6,085,444	4,813,527	12,163,373	9,613,232	79.0
2011	6,288,738	4,923,791	6,258,571	5,148,884	12,547,309	10,072,675	80.3
2012	5,938,724	4,881,604	5,934,064	4,937,126	11,872,788	9,818,730	82.7
2013	4,463,376	3,982,150	6,200,058	5,067,811	10,663,434	9,049,961	84.9
2014	4,686,307	4,129,378	6,090,277	5,267,264	10,773,884	9,396,642	87.2
2015	4,722,267	4,407,338	6,524,276	5,713,395	11,246,543	10,120,733	90.0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황

### 1)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건수와 세액공제액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건수는 2005년 1,090,954건에서 2015년 1,585,177건으로 1.5배 증가하였음
    - 법인사업자는 2006년 141,686건에서 2015년 158,519건으로 1.1배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일반사업자는 2006년 1,056,850건에서 2015년 1,426,658건으로 1.3배 증가하며 전자신고 세액공제건수의 증가에 기여하였음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은 2005년 10,910백만원에서 2015년 28,061백만원으로 2.57배 증가하였음
    - 2010년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기존에 세무사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세무사의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도록 법을 변경하면서 세액공제액이 크게 증가함
    - 법인사업자는 2006년 1,416백만원에서 2015년 5,023백만원으로 3.5배나 증가하였고, 일반사업자는 2006년 10,567백만원에서 2015년 23,038백만원으로 2.2배 증가하였음

<표 II -11>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구분	제1기		제2기		합계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005	합계	528,950	5,289	562,004	5,621	1,090,954	10,910
2006	법인사업자	70,619	706	71,067	710	141,686	1,416
	일반사업자	515,304	5,152	541,546	5,415	1,056,850	10,567
	합계	585,923	5,858	612,613	6,125	1,198,536	11,983
2007	법인사업자	76,208	762	76,867	768	153,075	1,530
	일반사업자	555,666	5,556	576,758	5,767	1,132,424	11,323
	합계	631,874	6,318	653,625	6,535	1,285,499	12,853
2008	법인사업자	78,658	780	81,583	808	160,241	1,588
	일반사업자	610,391	6,096	634,216	6,336	1,244,607	12,432
	합계	689,049	6,876	715,799	7,144	1,404,848	14,020
2009	법인사업자	84,474	845	86,280	863	170,754	1,708
	일반사업자	671,760	6,718	680,303	6,803	1,352,063	13,521
	합계	756,234	7,563	766,583	7,666	1,522,817	15,229
2010	법인사업자	77,466	1,350	81,351	1,288	158,817	2,638
	일반사업자	634,564	8,499	683,945	9,345	1,318,509	17,844
	합계	712,030	9,849	765,296	10,633	1,477,326	20,482
2011	법인사업자	84,096	1,534	86,173	1,462	170,269	2,996
	일반사업자	708,754	10,019	755,168	10,031	1,463,922	20,050
	합계	792,850	11,553	841,341	11,493	1,634,191	23,046
2012	법인사업자	87,977	1,816	88,340	1,623	176,317	3,439
	일반사업자	761,593	11,487	793,719	10,830	1,555,312	22,317
	합계	849,570	13,303	882,059	12,453	1,731,629	25,756
2013	법인사업자	89,677	2,073	90,601	1,814	180,278	3,887
	일반사업자	801,854	12,495	823,413	11,689	1,625,267	24,184
	합계	891,531	14,568	914,014	13,503	1,805,545	28,071
2014	법인사업자	88,129	2,201	89,227	1,844	177,356	4,045
	일반사업자	836,760	13,261	871,098	12,175	1,707,858	25,436
	합계	924,889	15,462	960,325	14,019	1,885,214	29,481
2015	법인사업자	69,201	3,105	89,318	1,918	158,519	5,023
	일반사업자	567,535	10,744	859,123	12,294	1,426,658	23,038
	합계	636,736	13,849	948,441	14,212	1,585,177	28,061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2) 간이사업자

- 간이사업자<sup>1)</sup>의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도 줄어들었으나 최근 적용건수와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이 증가 추세에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2항 후단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는 2009년 이후로 감소추세에 있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건수와 공제세액도 감소함
    - 2013년 간이과세자의 신고횟수가 연 2회에서 1회로 줄어들면서 적용건수는 2012년 137,020건에서 2013년 51,683건으로, 비율은 8.2%에서 2.9%로 공제세액은 1,313백만원에서 501백만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II -12〉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황

(단위: 명, 건, %, 백만원)

연도	총 신고인원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고건수 <sup>2)</sup>	비율	공제세액
2007	1,759,828	163,370	9.3	1,544
2008	1,838,260	168,309	9.2	1,567
2009	1,863,427	156,702	8.4	1,414
2010	1,828,101	160,377	8.8	1,445
2011	1,762,349	168,257	9.5	1,531
2012	1,680,656	137,020	8.2	1,313
2013	1,779,011	51,683	2.9	501
2014	1,672,075	60,330	3.6	586
2015	1,660,162	106,664	6.4	807

주: 비율은 총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대비 전자신고 건수의 비율을 의미함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1)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 2)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고건수는 1기와 2기의 신고건수의 합산임

## 5. 직접신고자·세무대리인별 세액공제 실적

### 가. 총괄

-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액과 비율이 2012년 개정 이후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43억원(2012년 대비 18.4%) 증가함
  - 2012년에 직접신고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은 489억원으로 전체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63%를 차지했지만, 2015년 직접신고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은 526억원으로 7.5% 증가하는 데 머물렀고, 전체 세액공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7%로 6p% 하락하였음
  - 2012년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은 290억원으로 전체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의 37%를 차지했지만, 2015년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은 397억원으로 36.9% 급증하였고, 전체 세액공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3%로 6p% 증가하였음
    - 2012년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 한도액이 기존에 세무대리인 300만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800만원)에서 세무대리인 400만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1,000만원)으로 증가함

<표 II - 13> 직접신고자·세무대리인별 세액공제 실적

(단위: 억원, %)

연도	합계	직접신고자	세무대리인
2012년	779	489(63)	290(37)
2013년	820	487(59)	333(41)
2014년	921	541(59)	380(41)
2015년	922	526(57)	397(43)

주: 1. 국세통계연보와 통계추출 시점이 달라 다소 차이가 발생

2. ( ) 안은 해당 비율을 의미함

출처: 국세청, 내부자료

## 나. 법인세

- 법인세는 97%가 세무대리인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지므로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직접신고자에 비해서 세무대리인에 집중되어 있음
  -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중 직접신고자의 비중은 4~8% 정도로 매우 적은 수준임
  -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중 세무대리인의 비중은 92~9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2015년 기준 311개의 세무법인이 공제받은 법인세는 19억원임
    - 2012년 세무법인당 법인세 공제액은 537만원이었는데, 2015년 세무법인당 법인세 공제액은 610만원으로 14%가량 증가함

〈표 II - 14〉 법인세 직접신고자·세무대리인별 세액공제 실적

(단위: 명, 백만원, %)

귀속	합계		직접신고자		세무법인	
	신고자수	금액	신고자수	금액	신고자수	금액
2012년	2,579	1,247	2,540	70(6)	219	1,177(94)
2013년	2,816	1,595	2,570	119(8)	246	1,476(92)
2014년	3,493	1,817	3,248	101(6)	245	1,716(94)
2015년	3,370	1,985	3,059	85(4)	311	1,899(96)

주: 1. 국세통계연보와 통계추출 시점이 달라 다소 차이가 발생

2. ( ) 안은 해당 비율을 의미함

출처: 국세청, 내부자료

## 다.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는 45%가 본인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지므로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세무대리인에 비해서 직접신고자에 집중되어 있음
  -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중 직접신고자의 비중은 70% 정도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
    -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고자수도 2012년 170만명에서 2015년 216만명으로 26%가량 증가함

- 전자신고 세액공제액도 2012년 350억원에서 2015년 433억원으로 24%가량 증가함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중 세무대리인의 비중은 30% 정도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 비해서 비중이 낮고, 2015년 기준 7,920명의 세무사가 공제받은 종합소득세는 180억원임
- 2015년 세무사당 종합소득세 공제액은 205만원이었는데, 2015년 세무사당 종합소득세 공제액은 229만원으로 11%가량 증가함

<표 II -15> 소득세 직접신고자·세무대리인별 세액공제 실적

(단위: 명, 백만원, %)

귀속	합계		직접신고자		세무사	
	신고자수	금액	신고자수	금액	신고자수	금액
2012년	1,713,608	49,604	1,706,488	34,980(71)	7,120	14,624(29)
2013년	1,799,531	51,879	1,791,901	36,553(70)	7,630	15,326(30)
2014년	2,126,560	60,219	2,118,932	42,505(71)	7,628	17,714(29)
2015년	2,165,261	61,402	2,157,341	43,258(70)	7,920	18,144(30)

주: 1. 국세통계연보와 통계추출 시점이 달라 다소 차이가 발생

2. ( ) 안은 해당 비율을 의미함

출처: 국세청, 내부자료

## 라.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중 직접신고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세무대리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직접신고자의 수는 변동이 거의 없었으나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은 2012년에 139억원으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의 51%를 차지했으나, 2015년에는 92억원으로 34% 감소하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의 32%를 차지하는 데 그침
  - 세무대리인 신고자수는 2012년에 9,607명에서 2015년에 12,510명으로 30%가량 증가하고 같은 기간 전자신고 세액공제액도 132억원에서 197억원으로 50% 가까이 증가하였음
    -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49%에서 2015년 68%로 급격하게 증가함

- 세무대리인 1인당 전자신고 세액공제액도 2012년에 137만원에서 2015년에 157만원으로 14% 정도 증가함

<표 II - 16> 부가가치세 직접신고자·세무대리인별 세액공제 실적

(단위: 명, 백만원, %)

귀속	합계		직접신고자		세무대리인	
	신고자수	금액	신고자수	금액	신고자수	금액
2012년	1,019,079	27,069	1,009,472	13,872(51)	9,607	13,197(49)
2013년	965,697	28,572	954,709	12,008(42)	10,988	16,564(58)
2014년	1,020,655	30,067	1,009,054	11,449(38)	11,601	18,618(62)
2015년	1,055,105	28,868	1,042,595	9,209(32)	12,510	19,659(68)

주: 1. 국세통계연보와 통계추출 시점이 달라 다소 차이가 발생

2. ( ) 안은 해당 비율을 의미함

출처: 국세청, 내부자료



### Ⅲ.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원제도





### Ⅲ.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원제도

#### 1.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원제도

##### 가. 도입 목적

- 2002년 홈택스 서비스 개통으로 전자세정의 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납세자에 대한 세무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빠르고 편리한 전자세정을 조기에 정착 시키기 위하여 전자신고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유인제도를 도입함
  - 2003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당해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를 신설함

##### 나. 정책대상자

-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정책대상자는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의무자[일반과세자(개인·법인), 간이과세자]로 하고 있으며,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정의함
  -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
  -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

##### 다. 공제 내용

#### 1)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 가) 소득세 및 법인세

- 납세자가 직접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는 경우

- 납세자의 소득세나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2만원 공제
- 납부할 세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함<sup>3)</sup>

#### 나) 부가가치세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를 하는 경우
  - 납부세액에서 1만원 공제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
  -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 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sup>4)</sup>

### 2)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

#### 가) 소득세 및 법인세

-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 당해 세무사(공인회계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납세자 1인당 2만원 공제

#### 나) 부가가치세

-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를 하는 경우
  - 당해 세무사(공인회계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납세자 1인당 1만원 공제

#### 다) 공제 한도

- 해당 세무사(공인회계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4백만원을 한도로 하고,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1천만원을 한도로 함<sup>5)</sup>

3) 「조특법시행령」 제104조의5 제1항 및 제2항

4) 「조특법시행령」 제104조의5 제3항 및 제4항

<표 III-1> 전자신고 세액공제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공 제 금 액	공 제 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li> <li>• 부가가치세 (연 2회 신고): 건당 1만원</li> <li>• 납세자가 직접신고 시 공제액이 연 4만원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대리인: 연간 4백만원</li> <li>• 세무법인: 연간 1천만원</li> </ul>

- 2008~2012년에 걸쳐 세무사 및 세무대리인에 대한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정함
- 2008년 전자신고제도 확대 및 국세행정비용 절감 효과를 인정하여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액과 공제한도를 확대함
  - 2009년에도 전자신고제도 확대에 의한 국세행정비용 절감 효과를 인정하여, 납세자 1인당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4만원으로 확대하여 개인이 직접 신고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제액을 조정하고 공제한도도 확대함
  - 2012년에는 2005년 이후 전자신고율이 정체된 점, 동 제도를 통하여 과세관청의 신고서 입력비용·오류 축소 등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함

<표 III-2>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한도 변천과정

적용연도	주요 개정내용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설</li> <li>• 세무대리를 위임받아 납세자의 전자신고 대상세목을 모두 전자신고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액: 납세자 1인당 1만원</li> <li>- 공제한도: 100만원(세무·회계법인 300만원)</li> </ul> </li> </ul>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대한 공제액 및 공제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액 확대: 납세자 1인당 1만원 → 2만원</li> <li>- 공제한도: 100만원(세무·회계법인 300만원) → 200만원(500만원)</li> </ul> </li> </ul>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대한 공제액 및 공제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액 확대: 1인당 2만원 → 4만원,</li> <li>- 공제한도: 200만원(세무·회계법인 500만원) → 300만원(800만원)</li> </ul> </li> </ul>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대한 공제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한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800만원) → 400만원(1,000만원)</li> </ul> </li> </ul>

5)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5항

### 3) 기타 전자신고 세액공제 관련 법률

#### 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항 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제2항 제3호에 따라서 법인세나 소득세의 납부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 나)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의 이월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항에 따라서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함

## 2.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원제도 변천 과정

-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는 2004년 전자신고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납세자에 대한 공제액은 도입 이후로 변하지 않았으나 세무대리인에 대한 공제액과 공제한도는 꾸준히 증가함
  - 납세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은 2004년 이후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됨
  - 세무대리인의 납세자 1인당 공제액과 공제한도는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함
    - 도입 시에 납세자 1인당 1만원이던 공제액은 현재 납세자 1인당 4만원으로 상승함
    - 도입 시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1년에 10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는 1년에 400만원,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은 1년에 1,000만원 까지 확대됨

<표 III-3>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변천 과정

개정일	내용
2003년 12월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년 12월 30일 법 개정시 신설</li> <li>- 납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 및 법인세: 1인당 2만원</li> <li>* 부가가치세(확정신고기간당): 1인당 1만원</li> </ul> </li> <li>- 세무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자 1인당 1만원(한도 연 100만)</li> </ul> </li> </ul>
2005년 2월 1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법인과 세무대리인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세무법인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를 세무법인의 사원수에 비례하도록 조정</li> </ul>
2005년 12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대리인에 회계법인 추가, 공제한도 변경</li> <li>- 세액공제대상인 세무대리인의 범위에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을 포함</li> <li>- 세무법인(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수 기준을 삭제하고 3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하도록 개정</li> </ul>
2008년 2월 2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한도 확대(1인당 1만원 → 1인당 2만원, 한도 증액)</li> <li>- 전자신고를 추가지원하기 위하여 대리인 신고의 경우 종전의 납세자 1인당 1만원(한도액 100만원,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경우 300만원)에서 납세자 1인당 2만원(한도액 300만원,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경우 500만원)으로 확대</li> </ul>
2009년 2월 0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한도 확대(1인당 2만원 → 1인당 4만원, 한도 증액)</li> <li>- 세무대리인의 세액공제액을 개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인 1인당 4만원이 되도록 인상</li> <li>- 연간 한도액도 300만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800만원)으로 확대</li> </ul>
2010년 1월 0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대리인의 공제대상 소득의 변경</li> <li>- 세무대리인이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한 경우에만 납세자 1인당 4만원을 세무사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던 것에서</li> <li>-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자 1인당 2만원을 세무사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세무사의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도록 함</li> </ul>
2012년 2월 0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한도 확대</li> <li>- 세액공제의 한도를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는 4백만원,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은 1천만원으로 확대</li> </ul>



## IV. 주요국의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원제도





## IV. 주요국의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원제도

### 1. 영국

#### 가. 대상

-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전자신고하는 50인 이하의 사업장

#### 나. 방식

- 현금보조금 지급

#### 다. 지급액

- 2004년 도입 시 사업장당 250파운드를 지급하였으나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여 2009년 폐지하기 전에는 사업장당 50파운드를 지급함

<표 IV-1> 영국 현금보조금 지급실적

연도	지급액
2004~2006년	1사업장당 250파운드
2006/2007년	1사업장당 150파운드
2007/2008년	1사업장당 100파운드
2008/2009년	1사업장당 50파운드

#### 라. 성과

- 전자신고에 대한 현금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인 2003년에는 소득세 전자신고율이 13%밖에 되지 않았지만, 2007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0년 전자신고에 대한 현금보조금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는 94%까지 상승함

<표 IV-2> 영국 소득세 전자신고율 추이

연도	소득세 전자신고율
2003년	13%
2007년	33%
2008년	66%
2009년	73%
2010년	94%

마. 현황

- 2010년 소득세 전자신고율이 94%까지 상승하여 전자신고제도 정착 등을 이유로 2010년 현금보조금 제도는 폐지되고 의무신고로 전환됨

2. 일본

가. 대상

- e-tax를 통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

나. 방식

- 세액공제 방식

다. 지급액

- 2007년 도입 시 1년에 1회 5천엔을 공제하였으나 공제액이 점차 감소하여 2012년 폐지하기 전에는 1년에 1회 3천엔을 공제함

<표 IV-3> 일본 세액공제 실적

연도	공제액
2007~2010년	소득세 확정신고 시 1년에 1회 5천엔
2011년	소득세 확정신고 시 1년에 1회 4천엔
2012년	소득세 확정신고 시 1년에 1회 3천엔

## 라. 성과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한 2007년에는 소득세 전자신고율이 18.4%밖에 되지 않았지만, 점차 증가하여 2012년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는 50.4%까지 상승함

<표 IV-4> 일본 소득세 전자신고율 추이

연도	소득세 전자신고율
2007년	18.4%
2008년	31.1%
2012년	50.4%

## 마. 현황

- 2012년 소득세 전자신고율이 50.4% 정도로 상승하여 전자신고제도 정착 등을 이유로 2012년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됨

## 3. 덴마크

### 가. 대상

- 부가가치세

### 나. 방식

- 세액공제 방식

#### 다. 현황

□ 2003년 도입되어 1년간 한시적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한 뒤 폐지됨

〈표 IV-5〉 외국의 전자신고 관련 지원제도 운영

구분	국가	공제대상	도입	폐지	운영기간
현금보조	영국	소득세	2004년	2010년	6년
세액공제	일본	소득세	2007년	2012년	5년
	덴마크	부가가치세	2003년	2004년	1년

## V. 타당성 평가





## V. 타당성 평가

### 1. 전자신고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

- 전자신고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찬반의견이 엇갈림
  -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정책목표가 달성됐으므로 폐지·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폐지 시 전자신고율 하락으로 엄청난 세무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함
  
-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전자신고 관행이 정착되어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됐으므로 더 이상의 조세지원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함
  -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정책목표는 전자신고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 유도에 있음
  - 전자신고율이 매년 90%를 육박하는 등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정책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세지원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함
  
- 반면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할 경우, 전자신고율 하락으로 서면신고 자료 입력에 엄청난 세무행정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재정 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다고 주장함
  - 전자신고 관행의 정착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선택할 유인이 없다고 주장함
    - 특히,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법인 등<sup>6)</sup>은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바, 이종의 신고부담이 존재함

6) 외부감사대상법인,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 본 연구는 정책목표 달성 측면과 비용-효익 측면에서 두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전자신고에 대한 조세지원이 정책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함
-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가 본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했고, 동 제도 폐지로 인한 효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동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가. 정책목표 달성 측면

### 1) 주요 세목별 전자신고율

- 정책목표 달성의 측면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전자신고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유도’라는 목표 달성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됨
- 2015년 기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율이 90%를 넘어섬
  - 법인세 전자신고율이 98.6%로 가장 높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율이 각각 90%와 91%로 그 뒤를 이음

<표 V-1> 주요 세목별 전자신고율

(단위: %)

연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2003	35.2	n.a. <sup>1)</sup>	n.a. <sup>1)</sup>	75.2
2004	59.8	43.5	92.7	84.6
2005	75.4	81.2	96.9	88.4
2006	78.9	80.1	96.9	92.7
2007	75.1	80.7	96.1	93.3
2008	74.1	80.0	96.0	93.3
2009	74.6	83.4	96.1	96.1
2010	79.0	87.3	97.3	98.2
2011	80.3	87.8	97.5	98.4
2012	82.7	90.9	98.2	98.6
2013	84.9	91.6	98.3	98.7
2014	87.2	92.5	98.0	98.9
2015	90.0	91.0	98.6	98.9

주: 1)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2004년부터 전자신고 가능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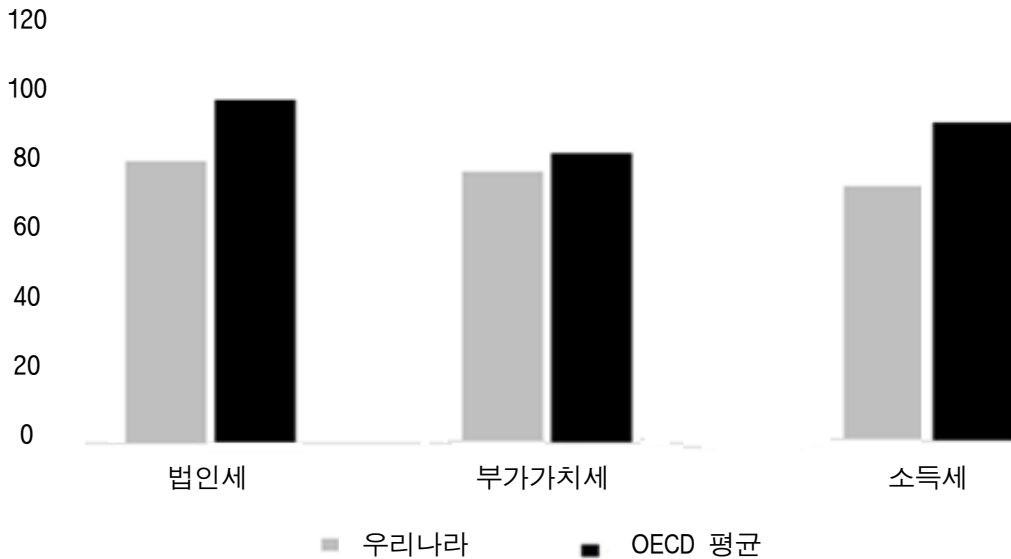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과 달리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전자신고율은 2012년 이후 정체상태에 있음
  - 전자신고율이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더 이상 서면신고자를 전자신고로 유도하는 유인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함

## 2) OECD 국가와의 전자신고율 비교

- 우리나라 주요 세목의 전자신고율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하여 높으며,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전자신고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국가로 평가되고 있음<sup>7)</sup>
  - 2013년 기준 OECD 국가의 전자신고율 평균은 법인세 81%, 부가가치세 77%, 개인소득세 72%로 우리나라보다 낮음
  - 우리나라는 우수한 IT 인프라와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바탕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전자신고를 정착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림 V-1]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전자신고율 비교(2013년 기준)

(단위: %)



자료: Tax Administration, OECD, 2015.

7) Tax Administration 2015, OECD, 2015.

- 우리나라의 전자신고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유사하거나 높은 편이며, 특히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율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높음
  -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전자신고율은 98%로 우리나라와 같은 시기(2004년)에 법인세 전자신고를 도입한 일본(64%), 미국(40%)보다 높고, 영국(98%)과 동일한 수준이며, 1991년에 전자신고를 도입한 프랑스(96%)와 유사한 수준임
  -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율은 83%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도입한 프랑스(82%), 독일(80%)과 유사한 수준이고, 우리나라보다 늦게 전자신고를 도입한 일본(63%)보다 높은 수준이나, 영국(99%)에는 못 미치는 수준임
  -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득세 전자신고율은 91%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기에 소득세 전자신고를 도입한 일본(50%)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우리보다 일찍 전자신고를 도입한 프랑스(34%), 독일(51%), 영국(85%), 미국(83%)보다 높은 수준임

<표 V-2> OECD 국가의 법인세 전자신고율(2013년 기준)

(단위: %)

국가명	전자신고 도입연도	2004	2009	2011	2013	2004년과 2013년의 차이(%p)
Australia	1990	95	92	92	88	-9
Austria	2004	30	96	95	97	67
Belgium	2006	1	32	73	82	81
Canada	2002	2	21	46	70	68
Chile	1999	65	94	95	96	31
Czech Republic	2004	1	3	6	21	20
Denmark	2005	0	18	25	100	100
Estonia	2000	59	95	98	99	40
Finland	2000	1	19	32	58	57
France	1991	26	77	81	96	70
Germany	n.a.	0	0	n.a.	n.a.	0
Greece	n.a.	0	0	0	0	0
Hungary	2003	3	99	99	99	96
Iceland	1997	99	99	66	99	0
Ireland	2001	18	85	96	99	81
Israel	2009	0	62	74	77	77
Italy	1998	100	100	100	100	0
Japan	2004	0	38	58	64	64
Korea	2004	92	96	97	98	6
Luxembourg	n.a.	0	0	0	0	0
Mexico	1998	100	100	100	100	0
Netherlands	2005	0	100	100	100	100
New Zealand	1992	67	75	80	87	20
Norway	2000	47	75	86	87	40
Poland	2006	0	1	11	10	10
Portugal	2000	100	100	100	100	0
Slovak Republic	2005	0	n.a.	2	15	15
Slovenia	2004	0	100	100	99	99
Spain	1999	23	99	99	99	76
Sweden	2009	65 /1	68 /1	68 /1	75 /1	10
Turkey	2005	72	99	99	98	26
United Kingdom	2004	1	16	42	98	97
United States	2004	1	25	44	40	39
OECD 평균		31	64	68	81	50

자료: Tax Administration, OECD, 2015.

<표 V-3>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율(2013년 기준)

(단위: %)

국가명	전자신고 도입연도	2004	2009	2011	2013	2004년과 2013년의 차이(%p)
Australia	2001	36	49	54	59	23
Austria	2003	80	86	87	89	9
Belgium	2001	9	90	97	97	88
Canada	2002	11	22	41	64	53
Chile	1999	37	64	71	94	57
Czech Rep.	2004	1	5	10	17	16
Denmark	1999	60	95	98	99	39
Estonia	2000	74	96	99	99	25
Finland	1997	35	65	80	85	50
France	2001	2	28	39	82	80
Germany	2000	19	25	28	80	61
Greece	2000	51	70	83	n.a.	n.a.
Hungary	2000	6	99	99	99	93
Iceland	2004	16	65	74	99	83
Ireland	2000	13	45	63	98	85
Israel	n.a.	n.a.	n.a.	n.a.	23	n.a.
Italy	1998	100	100	100	100	0
Japan	2004	0	29 /1	40 /1	63 /1	n.a.
Korea	2000	50	74	79	83	33
Luxembourg	2003	0	26	54	50	50
Mexico	2002	55	100	100	100	45
Netherlands	2005	0	100	100	100	100
New Zealand	1992	9	21	28	48	39
Norway	2001	38	88	92	99	61
Poland	2006	0	2	11	33	33
Portugal	2000	83	100	100	100	17
Slovak Rep.	2005	0	n.a.	9	49	49
Slovenia	2004	0	100	100	99	99
Spain	1999	23	75	80	96	73
Sweden	2001	3	35	55	75	72
Switzerland	2010	0	0	< 1	< 1	< 1
Turkey	2004	70	99	99	99	29
United Kingdom	2003	0	20	67	99	99
United States <sup>1)</sup>	-	-	-	-	-	-
OECD 평균		28	62	67	77	52

주: 1) No national VAT

자료: Tax Administration, OECD, 2015.

<표 V-4> OECD 국가의 소득세 전자신고율

(단위: %)

국가명	전자신고 도입연도	2004	2009	2011	2013	2004년과 2013년의 차이(%p)
Australia	1990	80	92	92	93	13
Austria	2003	10	79	79	80	70
Belgium	2002	3	40	54	70	67
Canada	1993	49	58	64	76	27
Chile	1999	81	98	99	99	18
Czech Republic	2004	< 1	1	1	3	3
Denmark	1994	68	96	98	98	30
Estonia	2000	59	92	94	95	36
Finland	2006	0	23	33	45	45
France	2001	4	27	33	34	30
Germany	1999	7	30	32	51	44
Greece	2001	4	13	49	n.a.	n.a.
Hungary	2003	3	30	17	20	17
Iceland	1999	86	92	92	96	10
Ireland	2001	62	67	81	91	29
Israel	2009	0	79	95	95	95
Italy	1998	100	100	100	100	0
Japan	2004	0	31	44	50	50
Korea	2004	43	80	87	91	48
Luxembourg	2009	0	< 1	1	1	1
Mexico	1998	48	96	99	99	51
Netherlands	1996	69	95	95	96	27
New Zealand	1992	56	63	71	83	27
Norway	1999	37	82	86	91	54
Poland	2008	0	1.4	11	25	25
Portugal	2000	24	80	83	87	63
Slovak Republic	2005	0	n.a.	< 1	2	2
Slovenia	2004	0	77	n.a.	100	100
Spain	1999	23	36	74	99	76
Sweden	2002	15	55	63	77	62
Turkey	2005	30	99	99	99	69
United Kingdom	2000	17	73	77	85	68
United States	1986	47	65	76	83	36
OECD 평균		31	59	65	72	41

자료: Tax Administration, OECD, 2015.

- 주요 세목의 전자신고율이 90%를 넘어섰고, OECD 평균 및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에도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전자신고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유도라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정책목표는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평가됨

### 나. 비용-효익 분석

- 정책목표 달성에도 불구하고 전자신고에 대한 정부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유지의 정책적 타당성은 결국 동 제도를 폐지할 경우 증가할 세무행정비용이 조세지출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폐지했을 때 서면신고로 회귀하는 납세자 수가 많으면 신고 자료 입력에 소요되는 세무행정비용이 조세지출 절감분을 초과할 것이므로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음

#### 1)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축소 시 전자신고율 하락 폭 추정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를 현행보다 축소·폐지할 경우 전자신고율을 유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인사업자의 94.9%, 개인사업자의 91.4%, 개인비사업자의 70.1%, 세무대리인의 94.5%가 전자신고율을 유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90% 이상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폐지·축소 여부에 관계없이 전자 신고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폐지·축소가 전자신고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표 V-5>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축소 시 전자신고 유지의향 설문결과

(단위: %)

구분	유지의향 전혀 없음	유지의향 없음	유지의향 있음	유지의향 매우 높음	부정 <sup>1)</sup>	긍정 <sup>2)</sup>
법인사업자	2.0	3.0	25.3	69.7	5.1	94.9
개인사업자	1.5	7.1	64.6	26.8	8.6	91.4
개인비사업자	8.0	21.8	36.8	33.3	29.9	70.1
세무대리인	1.50	4.00	48.50	46.00	5.5	94.5

주: 1) 유지의향 전혀 없음과 유지의향 없음의 합계

2) 유지의향 있음과 유지의향 매우 높음의 합계

자료: 설문조사 응답결과

-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축소 시 전자신고 유지의향이 법인의 수입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법인의 90% 이상이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줄어들더라도 전자신고를 유지하겠다고 응답함
  -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법인은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재무제표 서면제출 의무가 존재하는바,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폐지 시 전자신고를 유지할 인센티브가 가장 적은 납세자 집단으로 분류됨
  - 일반적 예상과 달리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법인 중 90% 이상,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의 100%가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축소 여부와 전자신고를 유지하겠다고 응답함

<표 V-6> 법인의 수입금액별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축소 시 전자신고 유지의향

(단위: 건, %)

수입금액	유지의향 없음		유지의향 있음	
	건수	비중	건수	비중
5억원 미만	1	6.3	15	93.8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	5.6	17	94.4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	4.3	22	95.7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	6.3	15	93.8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	6.3	15	93.8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5	10.0	45	90.0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0	0.0	15	100.0
1,000억원 이상	0	0.0	37	100.0
무응답	0	0.0	7	100.0
전체	10	5.1	188	94.9

자료: 설문조사 응답결과

-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할 경우 전자신고율 하락에 대해 예측한 결과, 전자신고율은 현재의 91%에서 83%로, 8%p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법인세 전자신고율이 현재의 99%에서 6%p 하락하여 93%로, 부가가치세가 90%에서 7%p 하락하여 83%로, 종합소득세가 91%에서 8%p가량 하락하여 84%로 바뀔 것으로 예상됨
-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할 경우 전자신고율 하락으로 서면신고 및 과세자료 등 입력에 추가로 들어갈 비용을 추산한 결과, 연간 1,483만원의 세무행정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국세청은 2016년 서면신고 및 과세자료 등 입력에 총 60억 5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함
  -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할 경우 전자신고율 하락(8%p)으로 서면신고 자료 입력에 49.6억원(법인세 1.3억원, 부가가치세 31.9억원, 종합소득세 16.4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축소 시 추가소요비용 추정

-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 시 서면신고 자료 입력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연간 49.6억원)이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출 절감분(연간 958억원)을 초과하므로 비용-효익 측면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폐지하더라도 80% 이상의 전자신고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법인의 90% 이상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폐지·축소하더라도 전자신고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서면신고로의 이탈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표 V-7>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축소 시 추가발생 세무행정비용 추정자료

(단위: 건, %, 만원)

항목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합계
가. 총신고자수(건) <sup>1)</sup>	610,244	11,246,543	5,954,281	17,811,068
나. 폐지 전 전자신고자수(건) <sup>1)</sup>	601,986	10,120,733	5,417,598	16,140,317
다. 폐지 전 전자신고율(%) [=나/가]	99%	90%	91%	91%
라. 폐지 후 서면신고 전환자수(건) [=나×유지의향 없음 응답비율 <sup>2)</sup> ]	33,034 <sup>3)</sup>	827,569 <sup>4)</sup>	426,964 <sup>5)</sup>	1,287,567
마. 폐지 후 전자신고자수(건) [=나-라]	568,952	9,293,164	4,990,634	14,852,750
바. 폐지 후 전자신고율(%) [=마/가]	93%	83%	84%	83%
사. (건당)서면신고서 전자자료 변환비용(만원) <sup>6)</sup>	0.385	0.385	0.385	
아. 폐지 후 추가발생 세무행정비용(만원) [=라×사]	12,718	318,614	164,381	495,713

주: 1) 2015년 기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현재보다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 전자신고를 유지할 의향이 전혀 없거나 없다고 응답한 납세자 비율의 합계(설문조사 응답결과에서 추출)

3) 법인세 직접신고자 수 18,578×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축소 시 전자신고 유지의향이 없는 법인납세자 비율 5.1%+법인세 대리신고자 수 583,408×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축소 시 전자신고 유지의향이 없는 세무대리인 비율 5.5%=33,034

4)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자 수 10,120,733명×(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축소 시 전자신고 유지의향이 없는 법인사업자 비율 5.1%×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법인사업자 수 705,581+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축소 시 전자신고 유지의향 없는 개인사업자 비율 8.6%×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 수 5,132,194)÷부가가치세 전체 신고건수 5,837,775=827,569

5) 종합소득세 직접신고자 수 2,436,161×(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축소 시 전자신고 유지의향 없는 개인사업자 비율 8.6%×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 수 4,503,506+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축소 시 전자신고 유지의향 없는 개인비사업자 비율 29.9%×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비사업자 수 517,430)÷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전체 신고건수 5,020,936+종합소득세 대리신고자 수 2,981,437×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축소 시 전자신고 유지의향 없는 세무대리인 비율 5.5%=426,964

6) 2015년도 국세청의 서면신고 및 과세자료 등 입력비용 예산(국세청 내부자료에서 추출) 643,100만원÷2015년도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서면신고건수 1,670,751건=0.385만원

#### 다. 전자신고의 편리성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 얼마나 많은 납세자가 서면신고로 회귀할 것 이냐는 전자신고의 편리성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의 편리성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전자신고의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전자신고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전자신고의 이점 또는 편리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모두 전자신고의 편리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냄
  -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의 만족도가 90.3점으로 가장 높았고, 세무대리인의 만족도는 89.7점으로 나타남
  - 납세자는 이용 가능시간이 자유롭다는 점에 가장 큰 만족도를 느낀 반면 세무대리인은 세무서나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전자신고의 가장 큰 이점으로 꼽음

〈표 V-8〉 전자신고의 편리성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단위: 점)

항목	법인사업자	개인납세자 (사업자)	개인납세자 (비사업자)	세무대리인
직접 방문 없이 손쉬운 신고	90.9	85.9	91.0	92.5
자유로운 이용시간	92.5	89.3	91.8	87.4
세액계산의 편리성 (미리채움서비스 등)	88.0	84.4	83.8	86.9
손쉬운 신고내역 확인	90.6	88.7	91.2	91.4
손쉬운 전자납부	91.0	88.0	91.5	91.4
용지 및 우편비용 절감	88.9	84.7	90.8	88.8
평 균 <sup>1)</sup>	90.3	86.8	90.0	89.7

주: 1. 4점 척도 응답결과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1) 6개 질문항목의 평균을 단순 평균

자료: 설문조사 응답결과

- 전자신고의 편리성에 관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모두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폐지·축소하더라도 서면신고로 회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를 현행보다 축소·폐지할 경우 전자신고를 유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90% 이상의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유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2. 정책수행방법의 적절성

### 가. 대상 설정의 타당성

#### 1) 전자신고 세액공제 수혜자의 타당성

##### 가) 직접 신고자에 대한 세액공제 vs.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수혜자는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와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세금신고업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납세자뿐 아니라 세무대리인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2015년도 전자신고 세액공제 922억원 중 57%에 해당하는 525억원은 직접 신고자에게, 43%에 해당하는 397억원은 세무대리인에게 귀속됨
  -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수혜비율은 2012년 37%에서 2015년에는 43%로 상승함
  - 잇따른 세법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의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가 확대되면서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수혜비율이 매년 상승하는 추세임<sup>8)</sup>

8) 세무대리인의 공제한도는 동 제도 신설 당시 세무사 및 회계사 1백만원,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 3백만원이었으나 2012년부터 세무사 및 회계사 4백만원,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 1천만원으로 확대됨

- 세무대리인의 세액공제 수혜비율이 매년 상승하는 추세에 있지만, 동 기간 중 세무대리인에 의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비율은 소폭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sup>9)</sup>
  - 세무대리인에 의한 법인세 전자신고비율은 2012년 97.1%에서 2015년에는 96.9%로 소폭 감소함
  - 세무대리인에 의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비율은 2012년 54.9%에서 2015년에는 55.0%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표 V-9〉 전자신고 세액공제 수혜자

(단위: 백만원, %)

연도	직접 신고자		대리신고		합계
	세액공제액	비중	세액공제액	비중	
2012	48,922	63	28,998	37	77,920
2013	48,680	59	33,366	41	82,046
2014	54,055	59	38,048	41	92,103
2015	52,552	57	39,702	43	92,254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자료 가공

- 세무대리인에게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정책적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자신고 활성화에 세무대리인이 기여하는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전자신고하는 비율이 높고, 신고방식 선택(전자신고 vs. 서면신고)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세무대리인에게 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전자신고의 수행주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법인사업자의 73%, 개인사업자의 94%, 개인비사업자의 41%가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수행하였다고 응답함
  - 세무대리인 위탁비율은 개인비사업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법인세 신고의 95%, 개인복식부기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85%가 세무대리인에 의해 수행됨

9) 세무대리인에 의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비율은 통계자료가 생산되지 않아 분석이 불가능하였음

<표 V-10> 전자신고 수행주체

(단위: %)

구분	본인	세무대리인	기타
법인사업자	26.3	73.2	0.5
개인사업자	5.7	94.0	0.3
개인비사업자	57.5	41.4	1.1

자료: 설문조사 응답결과

<표 V-11> 외부조정비율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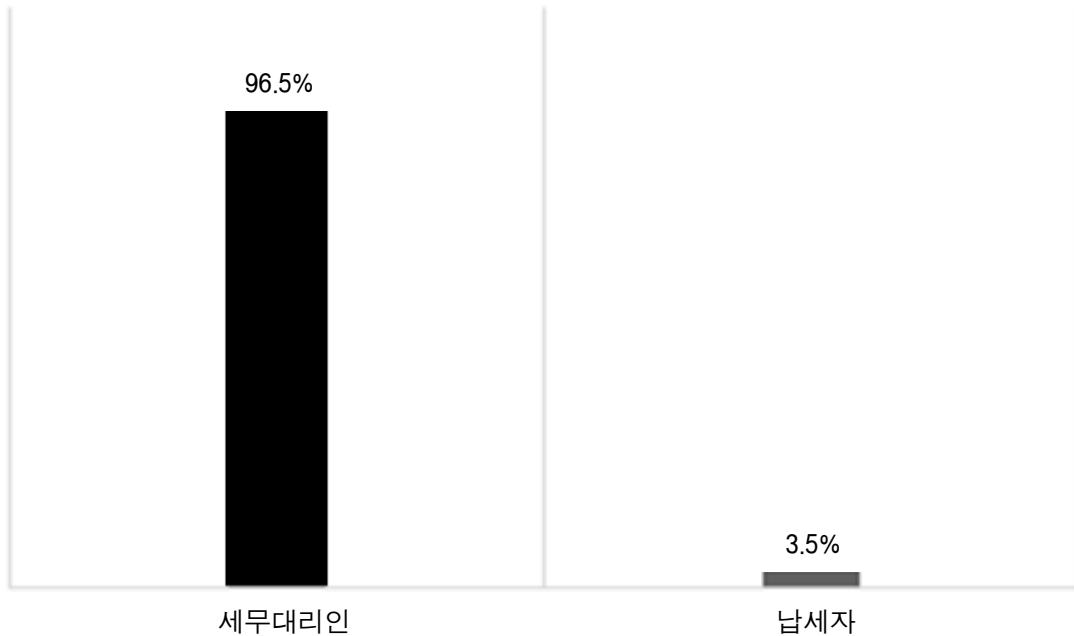
연도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	자기조정	외부조정 비율	외부조정	자기조정	외부조정 비율
2007	340,393	31,748	91.5	709,508	98,637	87.8
2008	365,522	32,809	91.8	786,486	109,541	87.8
2009	383,302	36,118	91.4	818,621	115,376	87.6
2010	402,703	37,320	91.5	874,057	122,382	87.7
2011	426,453	34,161	92.6	890,436	139,365	86.5
2012	452,244	30,330	93.7	974,128	156,739	86.1
2013	487,356	30,449	94.1	1,023,707	168,260	85.9
2014	520,632	29,840	94.6	1,012,371	186,611	84.4
2015	561,684	30,010	94.9	1,088,236	192,946	84.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세무대리인이 세금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는 주로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조사됨
- 세무대리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객의 요구에 의해 전자신고를 선택한 비율은 3.5%에 불과하였으며, 96.5%는 별도의 고객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이 자율적으로 전자신고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V-2] 전자신고 의사결정의 주체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응답결과

-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세금신고비율이 높고, 세무대리인이 신고방식(전자신고 vs. 서면신고)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자신고 도입 초기 세무대리인에게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혜택을 제공한 것은 정책적 타당성을 가진다고 판단됨
  - 세금신고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비율과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수혜비율이 유사한 분포를 보임
  
- 다만, 최근의 세법개정이 세무대리인의 세제혜택 확대에 집중됨으로써 직접 신고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신설 당시 세무대리인의 공제한도는 개인세무사 100만원, 세무법인 3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세 차례의 세법개정을 거치면서 개인세무사 400만원, 세무법인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됨
  - 반면 직접 신고자의 공제금액은 14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세무대리인과 직접 신고자 간 불평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나)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수혜자: 중소기업 vs. 일반법인

-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수혜자는 중소기업과 일반법인, 중소기업세무법인과 일반세무법인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음
  - 직접 신고자 중 중소기업과 일반법인이 있고, 세무대리인 중 중소기업세무법인과 일반세무법인으로 구분됨
  
- 2009년과 비교했을 때 직접 신고자의 수혜비율은 감소한 반면 세무법인의 수혜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함
  - 직접 신고자의 수혜비율은 2009년 16.1%에서 2015년에는 4.3%로 감소한 반면 세무법인의 수혜비율은 2009년 83.9%에서 2015년에는 95.7%로 증가함
  - 세법개정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것이 세무법인의 수혜비율을 높인 주요 원인으로 추정됨
  
-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개수는 감소한 반면 일반기업의 숫자는 늘어남
  -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수는 2009년 678개에서 2015년에는 492개로 감소한 반면 일반기업 수는 2009년 1,352개에서 2015년에는 2,567개로 2배가량 늘어남
  -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자신고를 한 일반기업 수가 늘어난 것이 그 원인으로 추정됨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산총액 5억원 미만 법인은 88%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자신고를 한 반면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비율이 44%에 불과함
  
- 세무대리인에 대한 공제한도 확대로 세무법인 1사당 공제금액은 2009년 309만원에서 2015년에는 611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함
  - 1사당 공제금액은 일반세무법인보다 중소기업세무법인이 더 크게 증가함
    - 중소기업세무법인의 1사당 공제금액은 2009년 150만원에서 2015년에는 568만원으로 3.5배 이상 증가한 반면 일반세무법인의 1사당 공제금액은 2009년 568만원에서 2015년에는 614만원으로 46만원 증가에 그침

- 세무대리인에 대한 공제한도 및 공제금액 확대로 중소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됨

<표 V-12>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수혜자

(단위: 개,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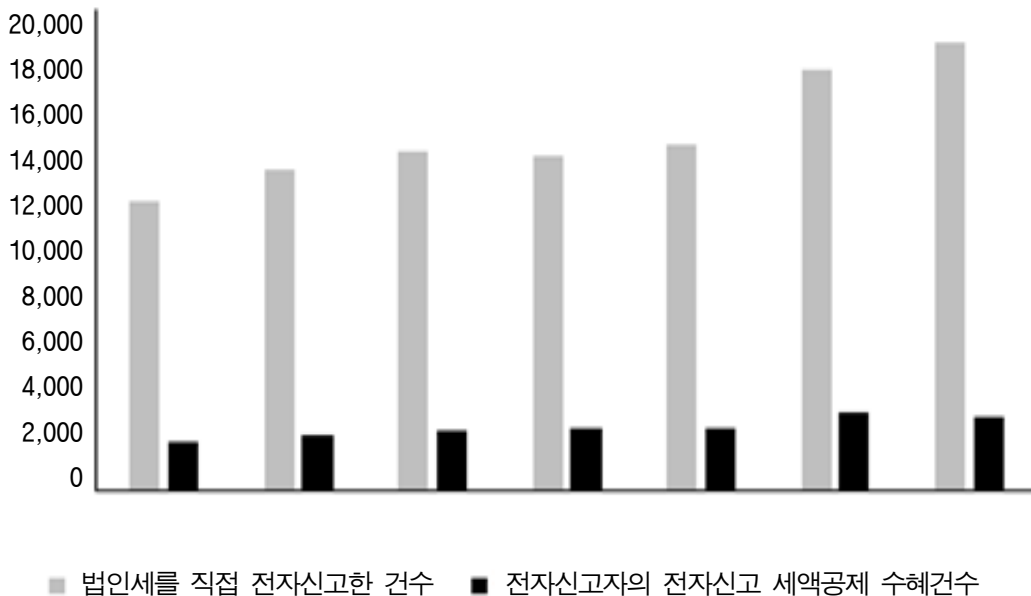
연도	신고 구분	중소기업		일반법인	
		개수 (개, %)	금액 (백만원, %)	개수 (개, %)	금액 (백만원, %)
2009	직접신고자	678 (31.6)	14 (3.3)	1,352 (63.0)	54 (12.8)
	세무법인	20 (0.9)	30 (7.1)	95 (3.3)	325 (76.8)
2015	직접신고자	492 (14.6)	18 (0.9)	2,567 (76.2)	67 (3.4)
	세무법인	22 (0.7)	125 (6.3)	289 (8.6)	1,775 (89.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직접 전자신고를 한 법인 중 83.5%(2015년 기준)가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기준 미달로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함
  - 80% 이상의 법인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신고를 선택하였다는 것은 세제상 혜택이 전자신고 선택의 주된 이유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함

[그림 V-3] 법인세 직접 전자신고건수 및 직접신고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수혜건수

(단위: 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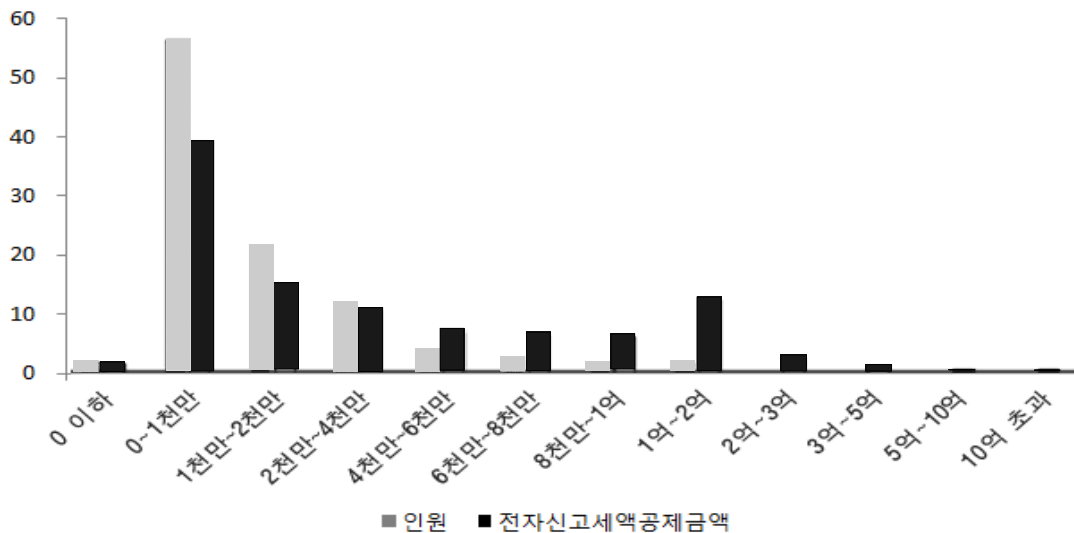
- 납부세액이 충분한 법인은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통해 전자신고비용의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지만, 납부세액이 적거나 결손인 법인은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수혜자: 소득구간별 분석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수혜자를 살펴본 결과, 수혜인원의 약 80%(2015년 기준)가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개인임
  - 납세인원이 많은 소득구간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수혜자가 몰려 있어 소득구간별 과세형평성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 2억원 이하 구간의 수혜인원은 전체의 1.6%에 불과하나, 수혜금액은 12.3%에 달함
  - 인당 공제금액이 1만원으로 고정된 직접신고자와 달리 세무대리인은 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함
  -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 2억원 이하 구간에 전자신고 대행건수가 많은 개인세무사 및 회계사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적은 수혜인원에도 불구하고, 공제금액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그림 V-4]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비율(2015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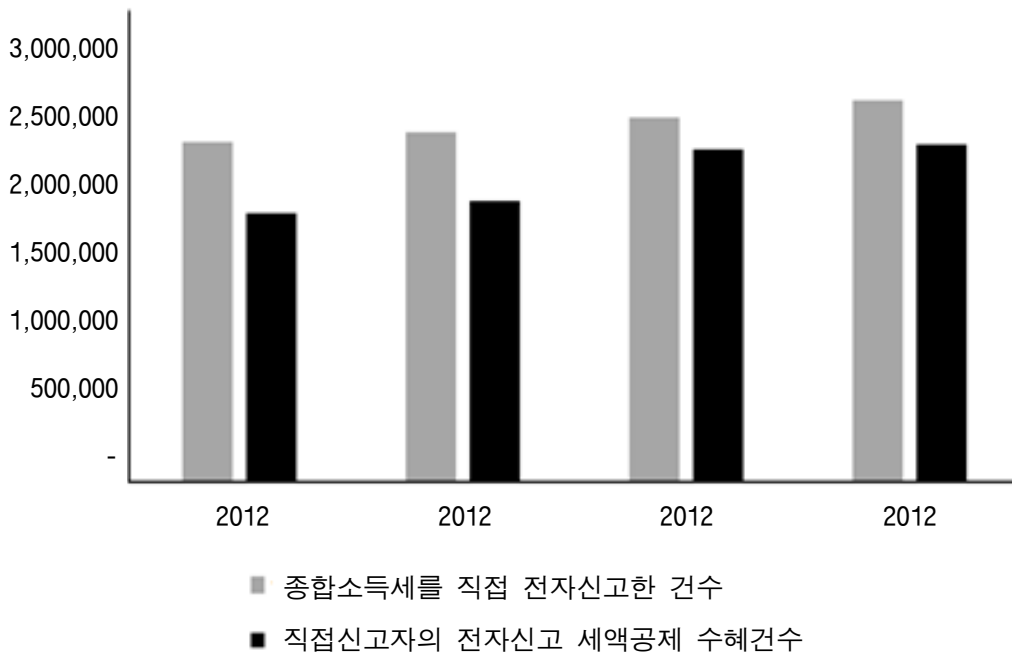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기획재정부 제공자료

- 종합소득세를 직접 전자신고한 개인 중 약 80%(2015년 기준)가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법인세는 직접 신고자의 16.5%만이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직접 신고자 대부분이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향유하고 있어 대조적인 양상을 보임

[그림 V-5] 종합소득세 직접 전자신고건수 및 직접신고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수혜건수

(단위: 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기획재정부 제공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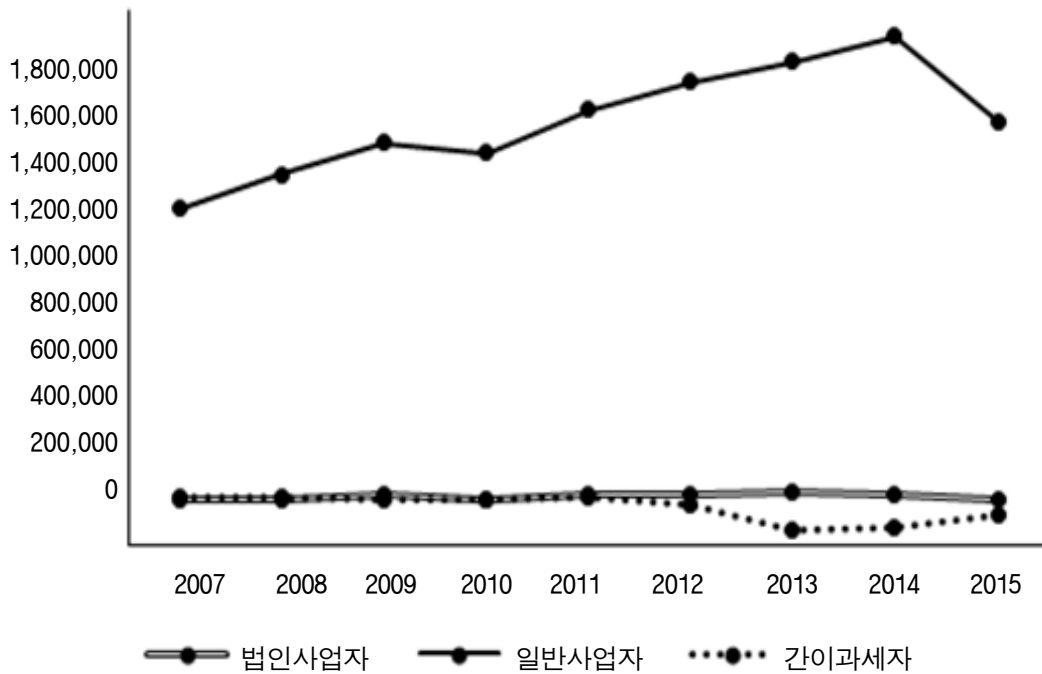
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수혜자: 법인/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수혜자는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음
- 수혜인원 및 수혜금액은 일반사업자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의 순서로 나타남

- 일반사업자의 수혜건수 및 수혜금액은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처음으로 감소함
- 법인사업자의 수혜건수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수혜금액은 2010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10년부터 직접 신고자뿐 아니라 세무대리인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가능해지면서 법인사업자의 수혜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간이사업자의 수혜건수와 수혜금액은 2013년을 기점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 2013년부터 간이과세자의 신고횟수가 연 2회에서 1회로 줄면서 수혜건수 및 수혜금액이 이전의 2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함

[그림 V-6]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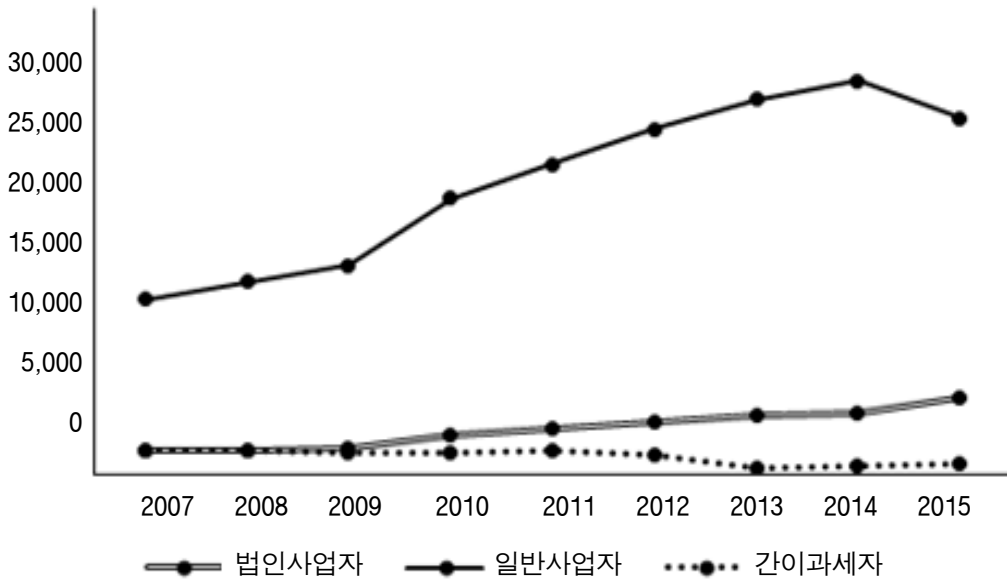
(단위: 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그림 V-7]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

(단위: 백만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간이과세자는 일반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신고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세무사 또는 회계사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는 점과 간이과세자는 공제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이 안돼 전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간이과세자의 수혜비중이 낮은 원인으로 추정됨

<표 V-13>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건수와 전자신고 세액공제 수혜금액(2015년)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부가가치세 신고건수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	
	건수	비중	금액	비중
법인사업자	1,383,398	14	5,023	17
일반사업자	6,809,260	69	23,038	80
간이사업자	1,660,162	17	807	3
합계	9,852,820	100	28,86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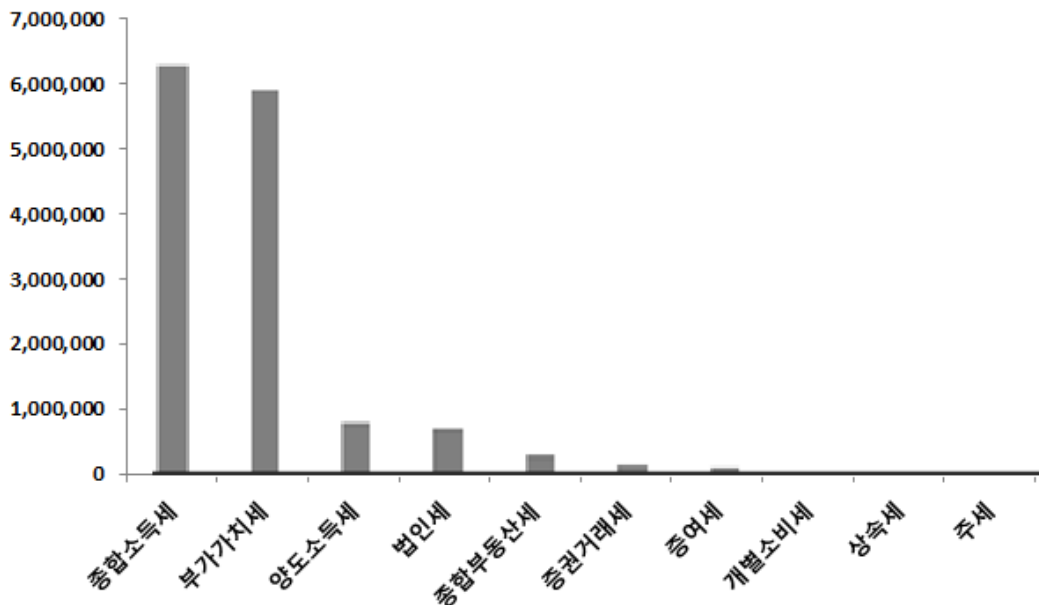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2)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세목 선정의 타당성

-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대상은 세금신고 13가지와 일반신고 9가지이며, 이 중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3가지 주요 세목의 전자신고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세목은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3가지 세목은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납세인원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2015년 기준)은 부가가치세가 54조원으로 가장 많고, 법인세(신고분)가 32조원으로 2위, 종합소득세(신고분)가 13조원으로 4위를 차지함
  - 납세인원(2015년 기준)은 종합소득세가 618만명으로 가장 많고, 부가가치세가 583만명으로 그다음이며, 법인세가 67만명으로 4위를 차지함

[그림 V-8] 세목별 납세인원 현황(2015년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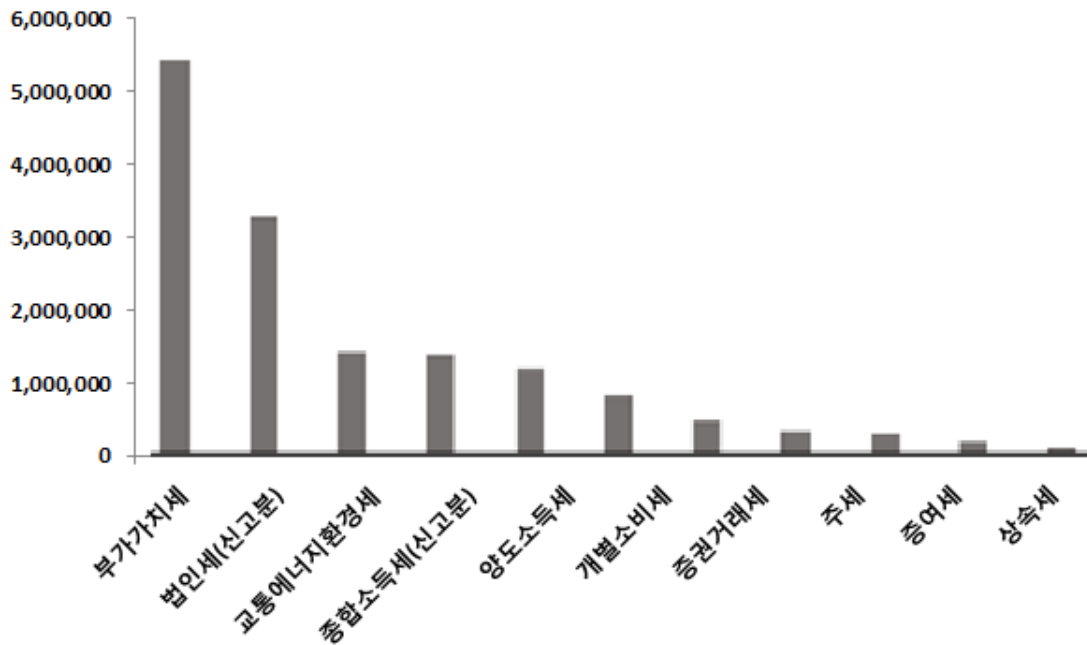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신고건수 및 신고 항목이 많아 서면자료의 전산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신고 자료가 신고성실도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중요하게 이용되는 세목의 전자신고 독려에 세제상 혜택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전자신고대상 세목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재정적인 부담을 수반함
  
-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제도는 세제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세원관리 및 세무행정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세 가지 주요 세목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대상세목 선정의 문제는 크지 않다고 판단됨
  -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신고건수가 많을 뿐 아니라 신고자료 간 상호대사가 신고성실도 확인에 중요한 수단임

[그림 V-9] 세목별 세수 실적(2015년 기준)

(단위: 백만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다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간 전자신고율 및 납세협력의무 이행능력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세목에 동일한 수준의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음

- 법인세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규정 신설 이전에 이미 전자신고율이 90%를 돌파했기 때문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목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일반적으로 개인은 법인에 비해 납세협력의무 이행능력이 낮으므로 법인보다 개인의 전자신고에 더 많은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목표(전자신고율 상승) 달성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나. 지원수준의 타당성

- 현행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에 따르면 직접 신고자는 연 4만원, 개인세무사는 연 400만원, 세무법인은 연 1,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함
  - 연간 최대 공제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공제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국세청 제공 자료(2015년 기준)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제 공제금액을 추산해 본 결과, 전자신고를 직접 수행한 법인사업자는 3만 5천원,<sup>10)</sup> 개인사업자는 2만 8천원,<sup>11)</sup> 전자신고를 대행한 개인세무사는 386만원,<sup>12)</sup> 세무법인은 767만원<sup>13)</sup>을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명목으로 공제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개인세무사와 세무법인의 실제 공제금액은 세법상 한도(개인세무사 400만원, 세무법인 1,000만원)의 약 96.5%와 76.8%에 해당하는 수치임
    - 개인세무사는 세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거의 100%에 가까운 공제를 받고 있는 반면 세무법인은 한도까지 여유가 있음

---

10) (0.027+0.008)백만원

11) (0.008+0.020)백만원

12) (6.106+1.571)백만원

13) (1.571+2.290)백만원

〈표 V-14〉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수혜자(법인세)

연도	직접 신고자				세무대리인에 의한 신고				합계	
	신고자수		세액공제액		신고자수		세액공제액		신고자수	세액공제액
	신고자수	1인당 공제액	세액공제액	1인당 공제액	신고자수	1인당 공제액	세액공제액	1인당 공제액	신고자수	세액공제액
2012	2,540	92	70	0.027	219	8	1,177	94	2,759	1,247
2013	2,570	91	119	0.046	246	9	1,476	93	2,816	1,595
2014	3,248	93	101	0.031	245	7	1,716	94	3,493	1,817
2015	3,059	91	85	0.027	311	9	1,899	96	3,370	1,984

자료: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단위: 백만원, %)

〈표 V-15〉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수혜자(부가가치세)

연도	직접 신고자				세무대리인에 의한 신고				합계	
	신고자수		세액공제액		신고자수		세액공제액		신고자수	세액공제액
	신고자수	1인당 공제액	세액공제액	1인당 공제액	신고자수	1인당 공제액	세액공제액	1인당 공제액	신고자수	세액공제액
2012	1,009,472	99	13,872	0.013	9,607	1	13,197	49	1,019,079	27,069
2013	954,709	99	12,008	0.012	10,988	1	16,564	58	965,697	28,572
2014	1,009,054	99	11,449	0.011	11,601	1	18,618	62	1,020,655	30,067
2015	1,042,595	99	9,209	0.008	12,510	1	19,659	68	1,055,105	28,868

자료: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단위: 백만원, %)

〈표 V-16〉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수혜자(소득세)

연도	직접 신고자				세무대리인에 의한 신고				합계	
	신고자수		세액공제액		신고자수		세액공제액		신고자수	세액공제액
	신고자수	1인당 공제액	세액공제액	1인당 공제액	신고자수	1인당 공제액	세액공제액	1인당 공제액	신고자수	세액공제액
2012	1,706,488	100	34,980	0.020	7,120	0	14,624	29	1,713,608	49,604
2013	1,791,901	100	36,553	0.020	7,630	0	15,326	30	1,799,531	51,879
2014	2,118,932	100	42,505	0.020	7,628	0	17,714	29	2,126,560	60,219
2015	2,157,341	100	43,258	0.020	7,920	0	18,144	30	2,165,261	61,402

자료: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단위: 백만원, %)

- 지원수준의 타당성은 i)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전자신고비용을 보전할 만큼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지, ii)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납세자의 신고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만큼 충분한 유인책이 되고 있는지 평가가 가능할 것임
-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비용을 보전할 만큼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자신고비용을 추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1) 법인사업자의 직접 전자신고 총비용 추계

- 법인사업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 전자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은 연간 4.8시간(228.71분), 총비용은 8.63만원으로 추산됨
- 업무 프로세스별로 살펴보면 서식입력에 사용한 시간이 60%가량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신고 1회당 사용시간은 법인세가 부가가치세의 1.4배 정도 많았음

<표 V-17> 전자신고비용 추계(직접신고자-법인)

(단위: 회, 분, 만원, %)

구분		법인세 전자신고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신고횟수 (회) <sup>1)</sup>		1.00	1.98
전자신고 1회당 사용시간 (분) <sup>1)</sup>	서식입력	74.38(62%)	48.54(57%)
	파일생성	18.84(16%)	14.52(17%)
	오류체크	19.76(16%)	15.83(19%)
	파일전송	7.10(6%)	6.29(7%)
	소 계	120.08(100%)	85.17(100%)
전자신고 담당직원 평균급여 <sup>1)</sup>		3,808.81만원	
연평균 근로시간 <sup>2)</sup>		127,368분	
전자신고 사용시간 <sup>3)</sup>		288.71분	
전자신고 소요비용 <sup>4)</sup>		8.63만원	

주: 1) 설문조사 응답결과

2) 2016년도 상용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12개월×60분=176.9시간×12개월×60분=127,368분

3) 법인세 전자신고 횟수×법인세 전자신고 1회당 사용시간(서식입력시간 포함)+부가가치세(확정신고) 전자신고 횟수×부가가치세 전자신고 1회당 사용시간(서식입력시간 포함)=1×120.08+1.98×85.17=288.71분

4) 전자신고 담당직원 평균급여÷상용근로자 연평균 근로시간×전자신고 사용시간=3,808.81만원÷127,368분×288.71분=8.63만원

## 2) 개인사업자의 직접 전자신고 총비용 추계

- 개인사업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 전자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은 연간 1.6시간(96.11분), 총비용은 1.90만원으로 추산됨
  - 업무 프로세스별로 살펴보면 서식입력에 사용한 시간이 50%가량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신고 1회당 사용시간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와 유사하였음

〈표 V-18〉 전자신고비용 추계(직접신고자-개인사업자)

(단위: 회, 분, 만원, %)

구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신고횟수 (회) <sup>1)</sup>		1.00회	1.84회
전자신고 1회당 사용시간 (분) <sup>1)</sup>	서식입력	17.51(52%)	18.30(54%)
	파일생성	6.54(19%)	5.78(17%)
	오류체크	5.76(17%)	5.59(17%)
	파일전송	3.95(12%)	4.22(12%)
	소 계	33.76(100%)	33.89(100%)
전자신고 담당직원 평균급여 <sup>1)</sup>		2,515.55만원	
연평균 근로시간 <sup>2)</sup>		127,368분	
전자신고 사용시간 <sup>3)</sup>		96.11분	
전자신고 소요비용 <sup>4)</sup>		1.90만원	

주: 1) 설문조사 응답결과

2) 2016년도 상용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12개월×60분=176.9시간×12개월×60분=127,368분

3)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횟수×종합소득세 전자신고 1회당 사용시간+부가가치세(확정신고) 전자신고 횟수×부가가치세 전자신고 1회당 사용시간=1×33.76+1.84×33.89=96.11분

4) 전자신고 담당직원 평균급여÷상용근로자 연평균 근로시간×전자신고 사용시간=2,515.55만원÷127,368분×96.11분=1.90만원

## 3) 개인비사업자의 직접 전자신고 총비용 추계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 전자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은 연간 0.6시간(37.12분), 총비용은 1.87만원으로 추산됨
  - 업무 프로세스별로 살펴보면 서식입력에 사용한 시간이 21.22분으로 가장 많았고, 오류체크에 5.72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 V-19> 전자신고비용 추계(직접신고자-개인 비사업자)

(단위: 회, 분, 만원, %)

구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신고횟수(회)		1.00
전자신고 1회당 소요시간(분) <sup>5)</sup>	서식입력	21.22(57%)
	오류체크	5.72(15%)
	기타	10.18(27%)
	소 계	37.12(100%)
비사업자 1인당 총수입금액 <sup>1)</sup>		6,417.15만원
연평균 근로시간 <sup>2)</sup>		127,368분
전자신고 사용시간 <sup>3)</sup>		37.12분
전자신고 소요비용 <sup>4)</sup>		1.87만원

주: 1)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소득이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의 총수입금액 평균(국세청 『국세 통계연보』)

2) 2016년도 상용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12개월×60분=176.9시간×12개월×60분=127,368분

3)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횟수×종합소득세 전자신고 1회당 소요시간(서식입력시간 포함)=1×37.12=37.12분

4) 비사업자 1인당 총수입금액÷상용근로자 연평균 근로시간×연간 전자신고 소요시간=6,417.15만원÷127,368분×37.12분=1.87만원

5) 설문조사 응답결과

#### 4) 회계·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총비용 추계

□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전자신고에 사용한 시간은 연평균 1,109시간(46일), 총비용은 평균 2억 3천만원으로 추산됨

○ 업무 프로세스별로 구분하면 서식입력에 사용한 시간 비중이 80%가량으로 가장 높았고, 주요 세목 중에서는 법인세 전자신고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됨

○ 전자신고 1회당 사용시간을 직접 신고자와 비교한 결과 법인세는 세무대리인 사용시간이 더 적었으나, 종합소득세는 세무대리인 사용시간이 직접 신고자에 비해 2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본 연구는 회계·세무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전자신고비용을 추산한바, 개인 세무사나 회계사사무실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에 비하여 고객 수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에 사용한 시간 및 비용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됨

<표 V-20> 세무·회계법인의 전자신고비용 추계

(단위: 회, 분, 시간, 만원, 명, %)

구분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연간 전자신고횟수(회) <sup>1)</sup>		56.92	189.42	476.75
전자신고 1회당 사용시간(분) <sup>1)</sup>	서식입력	91.37(85%)	48.80(76%)	69.34(81%)
	파일생성	5.35(5%)	5.74(9%)	6.19(7%)
	오류체크	7.36(7%)	6.40(10%)	7.27(8%)
	파일전송	3.23(3%)	3.03(5%)	3.08(4%)
	소계	107.30(100%)	63.96(100%)	85.87(100%)
연간 총투입시간		66,535 분(1,109 시간, 46일) <sup>2)</sup>		
참여인원	전자신고 투입인원 (명) <sup>1)</sup>	전자신고 업무비중 (%) <sup>1)4)</sup>	평균연봉 (만원) <sup>1)</sup>	전자신고 투입비용 (만원) <sup>3)</sup>
세무사·회계사	3명	33%	5,190만원	5,133만원
기타 직원	8명	75%	2,874만원	17,936만원
합 계				23,069만원

주: 1) 설문조사 응답결과

2) 56.92회×107.30분+189.42회×63.96분+85.87회×56.62분=66,535분

3) 전자신고 투입비용=전자신고 투입인원×전자신고 업무비중×평균연봉

4) 투입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전체 업무에서 전자신고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

### 5) 전자신고의 증분원가 추정

- 전자신고의 증분원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의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에 비하여 세무 관련 업무비용이 감소하였거나 전자신고비용과 서면신고비용 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함
  -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에 비하여 세무 관련 업무비용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법인사업자 1.5%, 개인사업자 6.8%, 개인비사업자 11.5%에 불과하였음
- 설문조사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신고의 증분원가를 추산해 본 결과,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에 비하여 법인사업자는 38만원, 개인사업자는 10만원, 개인비사업자는 1만원 정도 세무 관련 업무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납세자 그룹에서 전자신고비용이 서면신고비용에 비하여 낮게 나타남

<표 V-21>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증분비용 추계

(단위: 만원, %)

구분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 관련 업무 비용에 대한 생각 <sup>1)</sup>			증가 금액 <sup>2)</sup>	감소 금액 <sup>3)</sup>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증분비용 <sup>4)</sup>
	증가함	감소함	동일함			
법인사업자	1.5	26.3	72.2	22만원	147만원	△38.3만원
개인사업자	6.8	22.8	70.4	43만원	56만원	△ 9.8만원
개인비사업자	11.5	39.1	49.4	7만원	5만원	△ 1.2만원

- 주: 1)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에 비하여 귀사(귀하)의 세무 관련 업무비용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감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결과  
 2)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에 비하여 세무 관련 업무비용이 증가한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에 비하여 증가한 세무 관련 업무비용을 질문함  
 3)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에 비하여 세무 관련 업무비용이 감소한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에 비하여 감소한 세무 관련 업무비용을 질문함  
 4) ‘증가함’ 응답자 비율×증가금액 -‘감소함’ 응답자 비율×감소금액 + ‘동일함’ 응답자 비율×0원

### 6)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전자신고비용 보전을 추정

-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비용을 얼마나 보전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직접 신고자의 전자신고비용 보전비율이 세무대리인에 비해 높았음
  - 법인사업자의 보전비율은 41%이고, 개인납세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통해 전자신고에 투입된 비용 이상을 보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비용 보전비율은 3%로 나타남
  
- 증분원가가 음(-)의 값을 가진다는 것은 전자신고비용이 서면신고비용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전자신고 도입으로 납세자의 신고비용이 이전보다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함
  - 전자신고비용이 서면신고비용보다 낮다면 별도의 세제지원이 없더라도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표 V-22>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통한 비용보전비율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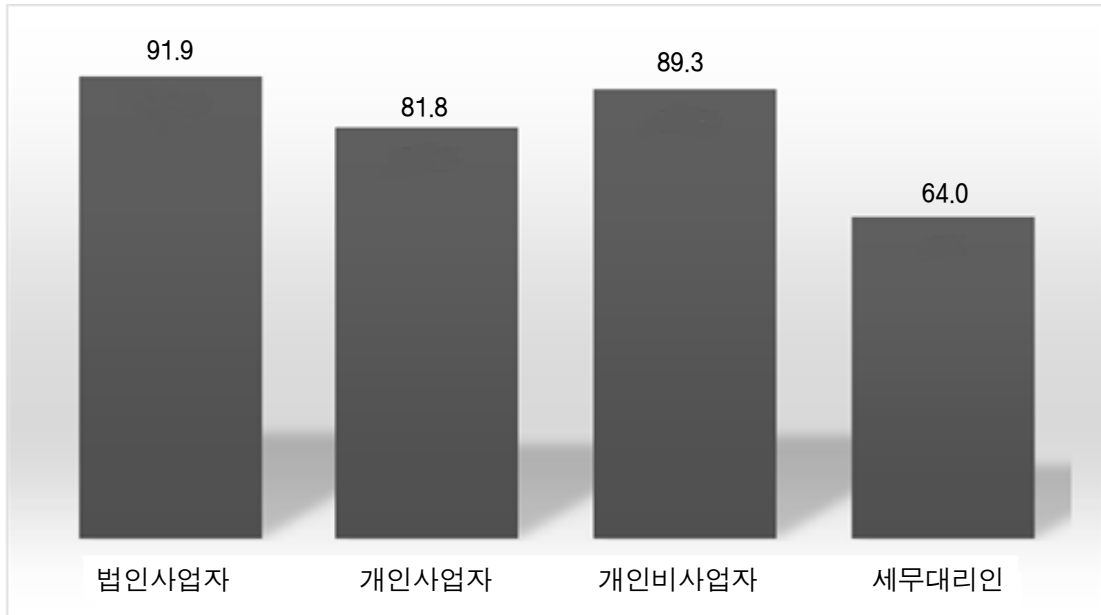
구분	전자신고 총비용 <sup>1)</sup>	전자신고 증분비용 <sup>1)</sup>	전자신고 세액공제 <sup>2)</sup>	전자신고비용 보전비율	
				총비용 대비 <sup>3)</sup>	증분비용 대비 <sup>4)</sup>
법인사업자	8.64	△ 38.5	3.50	41%	- <sup>5)</sup>
개인사업자	1.90	△ 9.9	2.80	147%	- <sup>5)</sup>
개인비사업자	1.87	△ 1.4	2.80	150%	- <sup>5)</sup>

- 주: 1) 설문조사결과  
 2) 기획재정부 제공 자료에서 추정  
 3) 전자신고 세액공제÷전자신고 총비용  
 4) 전자신고 세액공제÷전자신고 증분비용  
 6) 증분비용이 음(-)의 값이라서 보전비율 계산 불가

-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비용 보전율이 직접 신고자에 비해 낮지만, 세무대리인의 신고비용을 국가가 전액 보전하여 줄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임
  - 직접 신고자는 전자신고에 비용만 발생하지만, 세무대리인은 전자신고 대행으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직접 신고자와 차이가 있음
  -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비용은 수익창출을 위한 대응원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가 비용 전액을 보전하여 줄 당위성이 낮음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0% 이상의 납세자가 외부의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에 전자신고 업무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함
  - 법인사업자의 91.9%, 개인사업자의 81.8%, 개인비사업자의 89.3%가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에 전자신고 업무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함
  - 그러나 고객으로부터 받은 세금신고대행수수료에 전자신고업무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한 세무대리인은 64%에 불과해 전자신고비용 포함 여부에 대해 납세자와 인식의 차이를 보임

[그림 V-10]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 중 전자신고 업무비용 포함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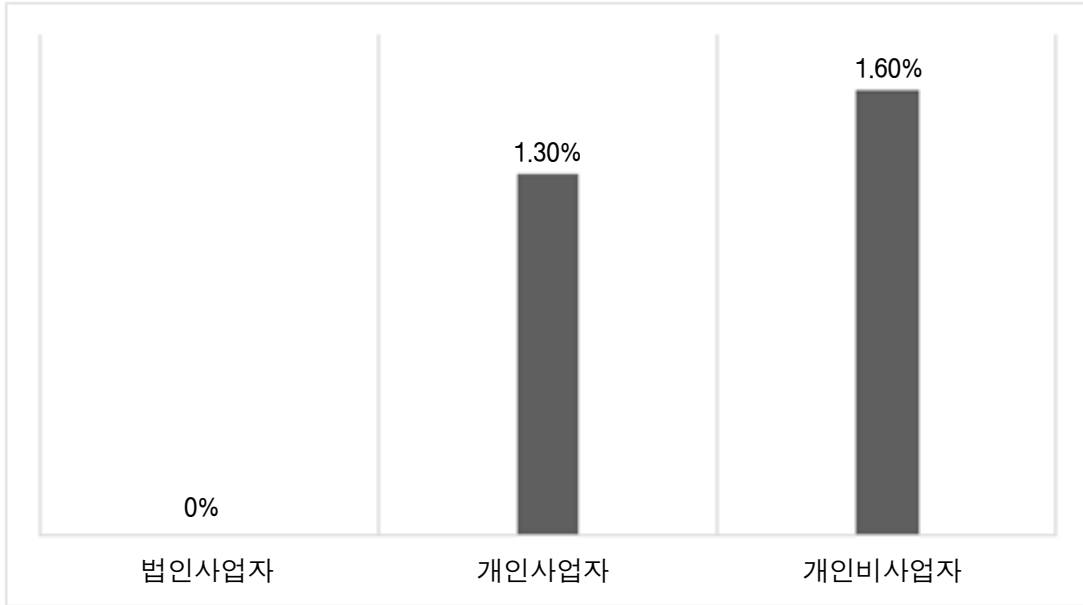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응답결과

-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비용 전부를 보전하여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전자신고비용이 서면신고비용보다 낮으므로 국가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비용을 보전하여 줄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서면신고를 선택하더라도 신고비용 발생을 피할 수 없으므로 정부의 비용보전은 전자신고를 선택할 경우 서면신고에 비하여 증가하는 차액원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함
  -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자신고비용이 서면신고비용에 비하여 낮으므로 세액공제를 통한 비용보전이 없더라도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비용절감 목적에서 전자신고를 선택할 충분한 유인이 존재함
  
- 서면신고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어 서면신고를 선택하였다는 응답자 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따라서 전자신고에 대한 세제지원이 적어 전자신고율이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어 서면신고를 선택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개인사업자 1.3%, 개인비사업자 1.6%였고, 법인사업자 중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 때문에 서면신고를 선택한 경우는 없었음

[그림 V-11]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어 서면신고를 선택한 납세자 비율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응답결과

#### 다. 제도 간 중복 여부

- 전자신고율을 높이는 방법에는 전자신고비용을 보전하여 주는 방법과 전자신고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여 볼 수 있음
  - 이 중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신고자의 전자신고비용을 직접 보전하여 줌으로써 전자신고를 촉진하는 방식임
- 전자신고 환경개선과 관련된 대표적인 재정지출 사업으로 국세청의 ‘국세행정전산화사업’을 꼽을 수 있음
  - 국세청은 전자신고 환경개선을 위하여 1997년부터 국세행정전산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 투입예산은 890억원에 달함<sup>14)</sup>

14) 국세행정전산화 사업의 목표는 33종의 개별 전산시스템을 통합하여 서비스품질과 업무효율성,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 중 전자신고 환경개선과 관련된 직접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내기 어려움. 따라서 890억원의 예산이 모두 전자신고 환경개선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표 V-23> 국세행정전산화사업 비용 산출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항 목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건비	121	131	104	141	141	141
일반수용비	1,351	1,602	1,614	1,201	586	819
공공요금	11,478	11,328	11,289	11,827	11,620	11,603
임차료	27,084	23,321	34,086	33,640	34,084	35,534
관리용역비	27,315	30,038	28,896	22,851	32,055	38,497
여비	70	63	67	70	72	73
일반연구비	23,752	22,916	44,223	11,356	2,550	1,714
공사비	516	2,374	307	862	399	350
자산취득비	9,787	37,252	3,103	300	1,210	327
업무추진비	11	10				
합 계	101,485	129,035	123,689	82,248	82,717	89,058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전자신고 세액공제와 전자신고 환경개선사업을 병행하여 시행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정책목표(전자신고율 상승) 달성이 가능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의 중복지출은 아니라고 판단됨
  - 전자신고 환경개선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면신고를 고수하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직접적이면서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전자신고를 유도하는 순기능이 있음
  
- 전자신고 세액공제와 국세행정전산화사업 간 중복지출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전자신고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재정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두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정책적인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음
  - 전자신고제도 도입 초기에는 단기간 내 전자신고율을 높이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전자신고율이 90%를 넘어서는 등 전자신고 문화가 정착됐기 때문에 재정지출과 조세지원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감소함



## VI. 효과성 평가





## VI. 효과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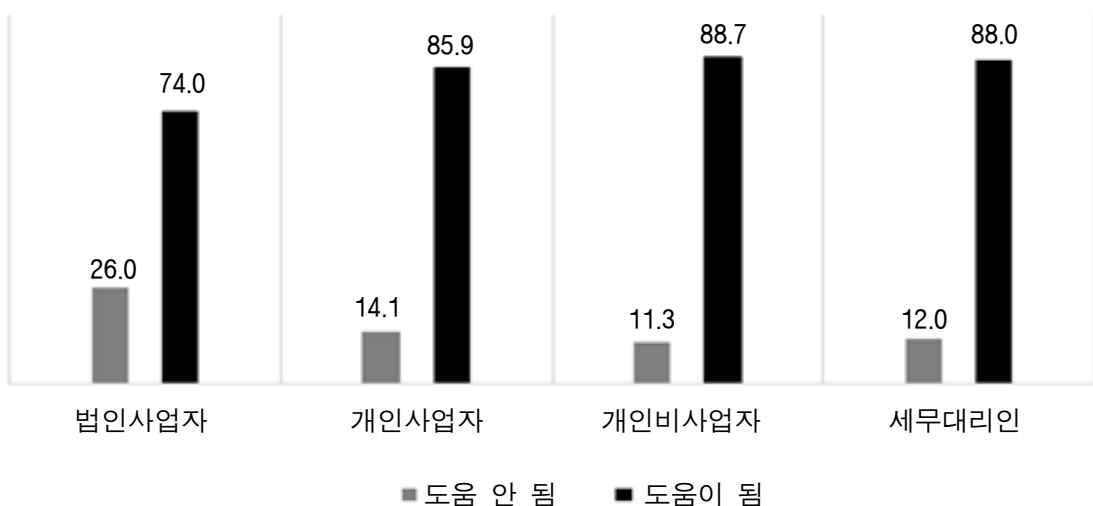
### 1. 전자신고 활성화

#### 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대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설문조사 결과

-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4.7%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 개인비사업자의 긍정적 답변율이 88.7%로 가장 높았고, 법인사업자가 74%로 가장 낮았음
    - 법인세 전자신고율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시행 이전에 이미 90%를 돌파했기 때문에 세제지원의 효과가 다른 세목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세무대리인의 88%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그림 VI-1]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응답결과

## 1) 법인사업자 조사결과

- 법인사업자의 74%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규모가 큰 기업보다 작은 기업의 긍정적 답변율이 높게 나타남
  -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법인은 85% 이상이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법인은 60%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함
  - 공제금액이 연 2~4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유도효과를 가지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됨

<표 VI-1>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법인사업자)

(단위: 개, %)

구분		표본수 (개)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 됨	도움 안됨	도움됨
전체		(200)	5.5	20.5	47.5	26.5	26.0	74.0
자산 총액	5억 미만	(35)	0.0	14.3	54.3	31.4	14.3	85.7
	5-100억 미만	(54)	7.4	7.4	51.9	33.3	14.8	85.2
	100~1,000억 미만	(66)	6.1	25.8	45.5	22.7	31.8	68.2
	1,000억 이상	(45)	6.7	33.3	40.0	20.0	40.0	60.0
중소 기업	해당	(155)	3.9	18.7	49.0	28.4	22.6	77.4
	비해당	(45)	11.1	26.7	42.2	20.0	37.8	62.2
매출액	5억 미만	(17)	0.0	11.8	58.8	29.4	11.8	88.2
	5~10억 미만	(19)	5.3	10.5	63.2	21.1	15.8	84.2
	10~30억 미만	(23)	8.7	21.7	43.5	26.1	30.4	69.6
	30~50억 미만	(16)	6.3	18.8	31.3	43.8	25.0	75.0
	50~100억 미만	(16)	0.0	18.8	56.3	25.0	18.8	81.3
	100~500억 미만	(50)	6.0	22.0	52.0	20.0	28.0	72.0
	500~1,000억 미만	(15)	6.7	26.7	40.0	26.7	33.3	66.7
	1,000억 이상	(37)	8.1	29.7	37.8	24.3	37.8	62.2
무응답		(7)	0.0	0.0	42.9	57.1	0.0	100.0

주: 4점 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자료: 설문조사 응답결과

## 2) 개인사업자 조사결과

- 개인사업자의 85.9%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출액 100억원 이상 사업자의 긍정적 답변율이 92.3%로 가장 높았음
- 매출액 50억 이상 100억원 미만 사업자의 긍정적 답변율이 77.8%로 가장 낮았으며, 그 외 구간의 긍정적 답변율은 85% 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부가가치세 납부 유형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여부에 따른 차별적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VI-2>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개인사업자)

(단위: 명, %)

구분	표본수 (명)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 됨	도움 안됨	도움됨
전체	(750)	2.8	11.3	63.7	22.1	14.1	85.9
매출액	1억 미만	(121)	2.5	12.4	66.1	19.0	85.1
	1~5억 미만	(149)	2.0	13.4	57.7	26.8	84.6
	5~10억 미만	(112)	1.8	12.5	65.2	20.5	85.7
	10~50억 미만	(186)	4.3	10.2	63.4	22.0	85.5
	50~100억 미만	(36)	5.6	16.7	61.1	16.7	77.8
	100억 이상	(13)	0.0	7.7	76.9	15.4	92.3
	무응답	(133)	2.3	7.5	66.9	23.3	90.2
부가가치세 납부 유형	면세사업자	(113)	5.3	7.1	65.5	22.1	87.6
	일반과세자	(605)	2.5	12.1	62.8	22.6	85.5
	간이과세자	(32)	0.0	12.5	75.0	12.5	87.5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658)	2.4	10.9	65.2	21.4	86.6
	비해당	(92)	5.4	14.1	53.3	27.2	80.4

주: 4점 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자료: 설문조사 응답결과

### 3) 개인비사업자 조사결과

- 개인비사업자는 88.7%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긍정적 답변율이 높게 나타남
  - 종합소득금액이 1,200만원 미만인 납세자의 긍정적 답변율이 97.7%로 가장 높았고, 종합소득금액 1억 5천만원 이상 납세자는 전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함
  - 공제금액이 연 2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유도효과를 가지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됨

<표 VI-3>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개인비사업자)  
(단위: 명, %)

구분	표본수 (명)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 됨	도움 안됨	도움됨	
전체	(150)	2.0	9.3	50.0	38.7	11.3	88.7	
종합 소득	1,200만원 미만	(44)	2.3	0.0	50.0	47.7	2.3	97.7
	1,200~4,600만원 미만	(84)	1.2	11.9	47.6	39.3	13.1	86.9
	4,600~8,800만원 미만	(16)	0.0	12.5	68.8	18.8	12.5	87.5
	8,800만원~1억5,000만원 미만	(5)	0.0	40.0	40.0	20.0	40.0	60.0
	1억 5,000만원 이상	(1)	100.0	0.0	0.0	0.0	100.0	0.0

주: 4점 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자료: 설문조사 응답결과

### 4) 세무·회계법인 조사결과

- 세무대리인의 88%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업수입금액이 적을수록 긍정적 답변율이 높게 나타남
  - 매출액 1억원 미만 세무·회계법인은 전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나, 매출액 100억원 이상 세무·회계법인은 66.7%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함
  - 매출액이 적을수록 세제지원에 높은 의존도를 나타내었으며, 회계법인의 긍정적 답변율이 세무법인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표 VI-4>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세무·회계법인)

(단위: 개, %)

구분		표본수 (개)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 됨	도움 안됨	도움됨
전체		(200)	2.0	10.0	62.0	26.0	12.0	88.0
업체 유형	세무법인	(169)	2.4	10.7	62.7	24.3	13.0	87.0
	회계법인	(31)	0.0	6.5	58.1	35.5	6.5	93.5
매출액	1억 미만	(3)	0.0	0.0	100.0	0.0	0.0	100.0
	1~5억 미만	(85)	2.4	7.1	64.7	25.9	9.4	90.6
	5~10억 미만	(76)	2.6	11.8	65.8	19.7	14.5	85.5
	10~50억 미만	(27)	0.0	11.1	48.1	40.7	11.1	88.9
	50~100억 미만	(6)	0.0	16.7	33.3	50.0	16.7	83.3
	100억 이상	(3)	0.0	33.3	33.3	33.3	33.3	66.7

주: 4점 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자료: 설문조사 응답결과

#### 나. 전자신고 세액공제와 전자신고자 수 및 전자신고율에 미친 효과 분석

-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직접적 효과는 전자신고 유도를 통한 전자신고율 제고임
  -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과 전자신고자 수 또는 전자신고율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면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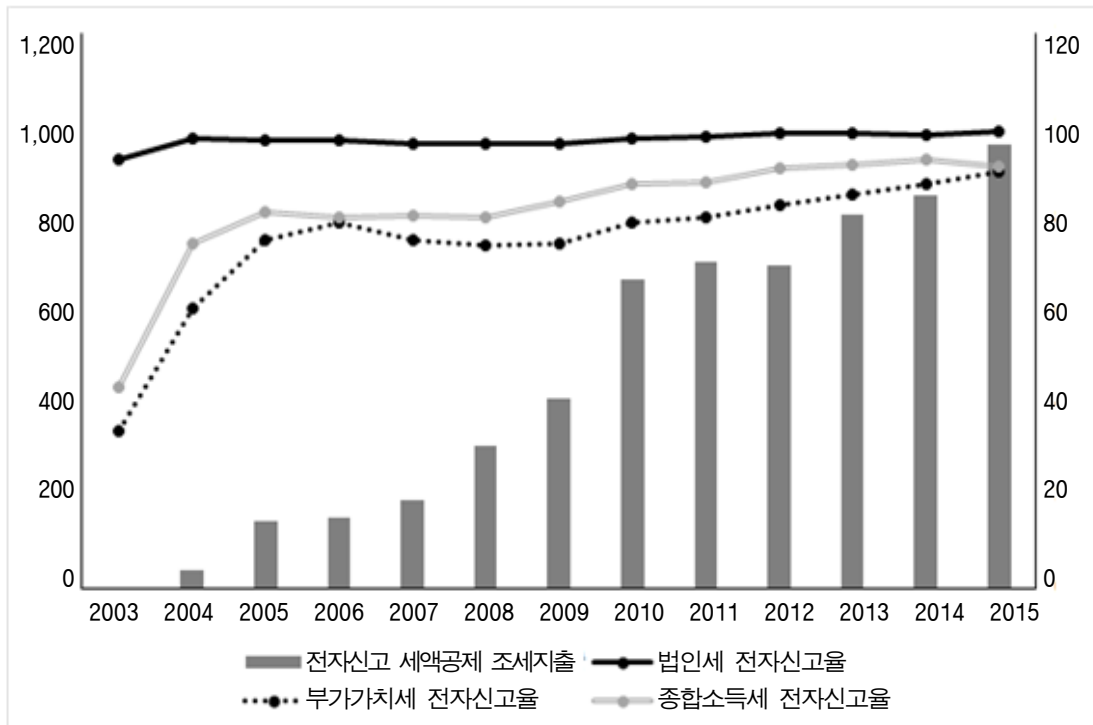
##### 1) 전자신고 세액공제와 전자신고율

-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과 전자신고율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자신고 세액공제로 인한 조세지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자신고율은 2005년 이후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음
  -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출은 2004년 40억원에서 2015년에는 958억원으로 11년간 20배가 넘게 증가하였으나, 동 기간 동안 법인사업자의 전자신고율은 1.5%p 증가에 그침

- 개인납세자의 전자신고율은 2004년과 비교하여 상당한 개선이 있었으나, 전자신고율이 90%를 돌파한 이후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고 있지 않음
  - 2004년 대비 개인사업자의 전자신고율은 29.7%p, 비사업자는 16.7%p가 증가함
-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율을 견인하는 효과는 도입 초기 1~2년간 뚜렷이 관찰되며, 이후에는 조세지출과 전자신고율 간 뚜렷한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음
  -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도입 첫해(2004년)와 다음해(2005년)에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과 전자신고율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함
    -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도입 첫해인 2004년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율은 전년도의 33.8%에서 60.3%로 1년 만에 26.5%p가 상승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율 역시 전년도의 43.5%에서 74.3%로 30.8%p가 증가함
    - 법인세 전자신고율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도입 이전에 이미 90%를 돌파했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한 추가상승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05년 이후에는 잇따른 세법개정과 조세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자신고율에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고 있지 않음

[그림 VI-2]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출과 전자신고율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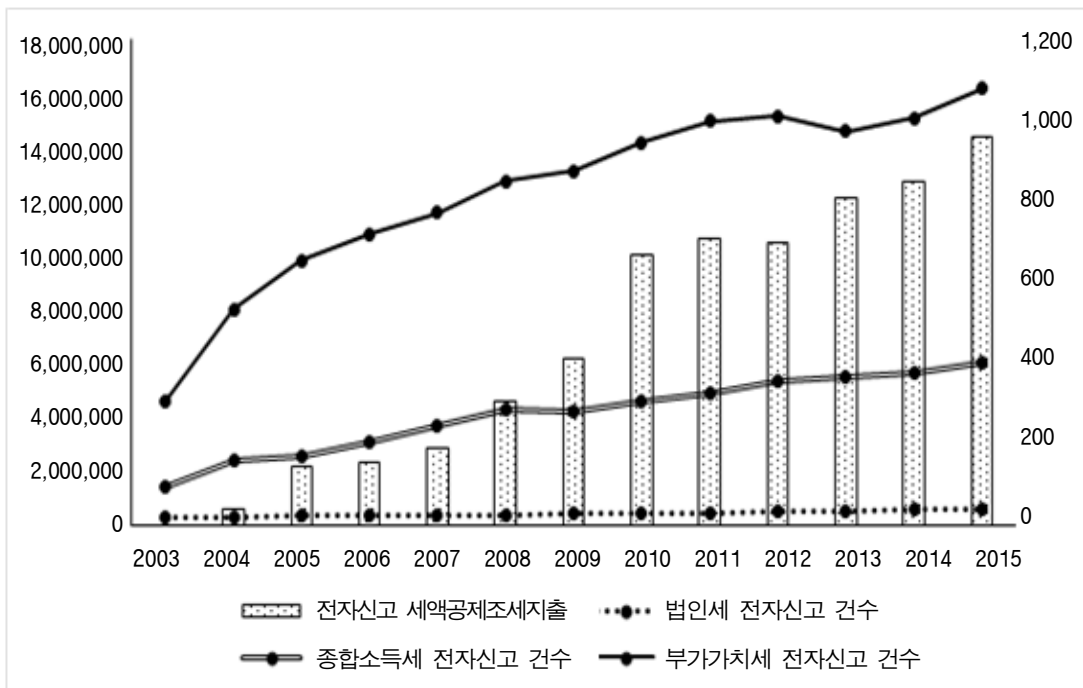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2) 전자신고 세액공제와 전자신고자 수

- 전자신고자 숫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신설 이전인 2003년 459만명에서 2015년에는 1,615만명으로 11년간 3.5배가 증가함
  -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도입 첫해인 2004년에 340만명, 다음해인 2005년에 180만명이 증가하여 2년간 증가한 전자신고자 숫자가 520만명에 달함
  - 세목별로 살펴보면 11년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자 숫자가 697만명이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자 숫자가 427만명, 법인세 전자신고자 숫자가 31만명 증가함

[그림 VI-3]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출과 전자신고자 수

(단위: 억원,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3) 소결

- 전자신고자 숫자의 증가 및 전자신고율 상승에는 전자신고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들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전부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효과로 보기에에는 무리가 있음

- 2004년 이후 정부는 국세행정전산화사업,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sup>15)</sup>를 포함한 전자신고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병행하여 왔음
    - 국세청은 국세행정전산화사업을 위해 최근 5년간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함
  - 미리채움서비스를 비롯한 홈택스 전자신고시스템의 편의성 제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등이 전자신고율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됨
- 서면신고자를 대상으로 전자신고가 아닌 서면신고를 선택한 이유에 관해 질문한 결과,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어 전자신고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은 2% 미만이었음
-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어 전자신고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법인사업자 0%, 개인사업자 1.3%, 개인비사업자 1.6%였음
  -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서면신고를 선택한 주된 이유가 아니므로 세제지원 확대로 서면신고자를 전자신고로 유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도입 초기 전자신고 문화의 조기 정착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자신고 세액공제와 전자신고율 간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있으므로 세제지원을 통해 전자신고율을 추가로 높이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인비사업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의 크기에 높은 민감도를 보이므로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의 확대가 전자신고율 제고로 연결될 여지가 있음
    - 개인비사업자의 76.2%가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을 2배 인상 시 전자신고를 선택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관련 세법개정이 전자신고율에 미친 효과 분석

- 전자신고 활성화 측면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관련 세법개정이 전자신고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임

15) 법인사업자는 2010년 1월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 1월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4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함

- 전자신고 세액공제 관련 세법개정 이후 전자신고율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면 조세지원이 전자신고 선택과 관련한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유의한 변화를 초래했으므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1) 전자신고 세액공제 관련 주요 세법개정 내용 요약

- 전자신고 세액공제와 관련하여서는 2008년과 2009년, 2010년, 2012년 네 차례에 걸쳐 주요한 세법개정이 있었으며, 세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임
  -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친 세법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건당 공제금액이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됨
  - 2008년과 2009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친 세법개정으로 세무사 및 회계사의 공제한도가 1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공제한도가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됨

<표 VI-5> 전자신고 세액공제 관련 주요 세법개정

연도	개정내용	적용시기
2008	- 세무사·회계법인 등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을 종전의 납세자 1인당 1만원(한도액 100만원,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은 300만원)에서 납세자 1인당 2만원(한도액 300만원,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은 500만원)으로 확대함	2008년 2월 22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09	-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개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1인당 4만원)이 되도록 인상하고, 연간 한도액을 300만원(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은 800만원)으로 확대함	2009년 1월 1일 이후 전자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2010	- 종전에는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한 경우에만 납세자 1인당 4만원을 세무사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자 1인당 2만원을 세무사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세무사의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12	- 세액공제 한도를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는 4백만원,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은 1천만원으로 확대함	2012년 2월 2일 이후 전자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 2010년 세법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이 법인세·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sup>16)</sup>

## 2) 세법개정 직후 전자신고율의 전반적인 변화 분석

- 네 차례의 세법개정 직후 조세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인 전자신고율은 오히려 하락하거나 소폭 증가에 그쳐 대조적인 양상을 보임
  - 2008년 조세지출은 전년 대비 60.4%p가 증가하였으나, 전자신고율은 오히려 전년보다 0.1~1.0%p가량 떨어짐
  - 2009년 조세지출은 전년 대비 33.1%p가 증가하였으나, 전자신고율은 전년 대비 0.1~3.4%p 상승에 그침
  - 2010년 조세지출은 전년 대비 62.7%p가 증가하였으나, 전자신고율은 1.2~4.4%p 상승에 그침

<표 VI-6> 전자신고율 증감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의 변동률

(단위: %)

연도	전자신고율 증감 <sup>1)</sup>			전자신고세액 공제금액의 변동률 <sup>2)</sup>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004	4.4	26.5	30.8	-
2005	-0.2	15.1	6.9	260.7
2006	0.0	3.5	-1.1	6.2
2007	-0.8	-4.0	1.0	24.7
2008	-0.1	-1.0	-0.7	60.4
2009	0.1	0.5	3.4	33.1
2010	1.2	4.4	3.9	62.7
2011	0.2	1.3	0.5	6.0
2012	0.7	2.4	3.1	-1.3
2013	0.1	2.2	0.7	15.5
2014	-0.3	2.3	0.9	5.2
2015	0.6	2.8	-1.5	13.0

주: 1) 당기 전자신고율-전기 전자신고율

2) (당기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출-전기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출)÷전기 전자신고 관련 조세지출×1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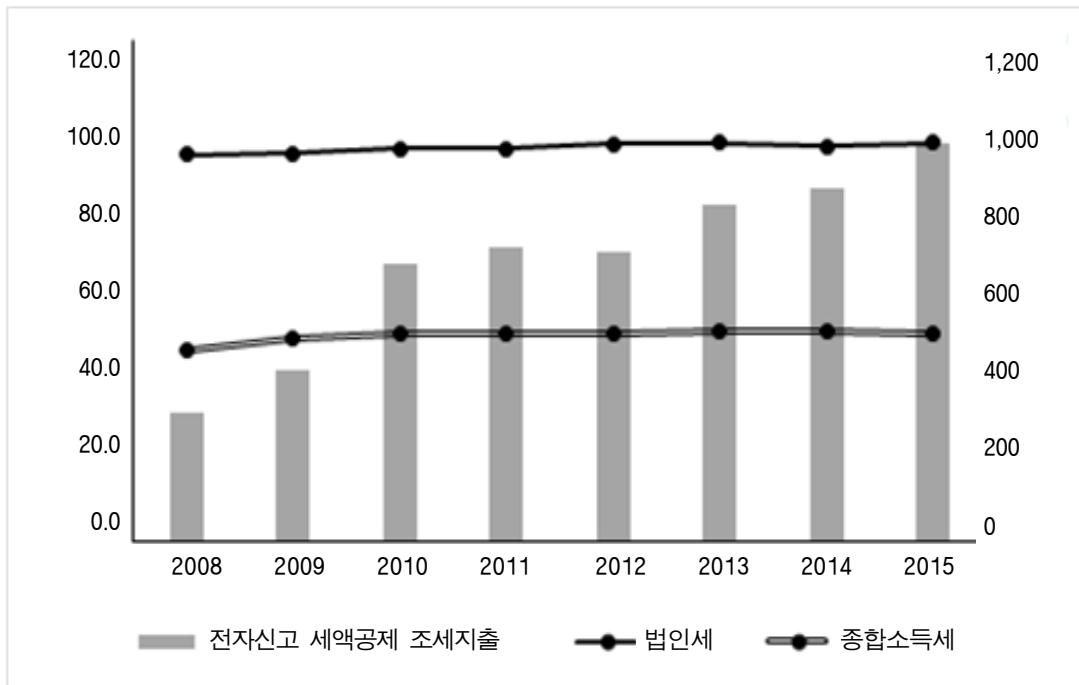
16) 종전에는 세무대리인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만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세액이 없는 세무대리인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음

### 3) 세법개정 직후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율 변화 분석

- 세법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의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가 크게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율은 소폭 증가에 그침
  - 세무대리인의 법인세 전자신고율(=세무대리인의 법인세 전자신고건수/법인세 총 신고건수)은 2009년에 0.4%p, 2010년에 1.0%p, 2012년에 0.9%p가 증가함
  - 세무대리인의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율(=세무대리인의 종합소득세 전자신고건수/종합소득세 총 신고건수)은 2009년에 3.4%p, 2010년에 1.0%p가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0.1%p가 감소함

[그림 VI-4] 총 신고건수 중 세무대리인에 의한 전자신고비율

(단위: 억원, %)



주: 1. 세무대리인에 의한 법인세 전자신고건수÷법인세 총 신고건수  
 2. 세무대리인에 의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건수÷종합소득세 총 신고건수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 일부 세목의 경우 직접 신고자의 전자신고율 상승 폭이 세무대리인을 앞지르고 있어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율이 소폭 상승한 것이 세법개정의 효과 때문인지 불명확함

- 세무대리인의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율은 2008년 45.7%에서 2015년 50.1%로 8년간 4.4%p 증가에 그친 반면 직접 신고자의 전자신고율은 34.2%에서 40.9%로 6.7%p가 증가함
- 직접 신고자의 공제금액이 14년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신고자의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율 상승 폭이 세무대리인을 앞질렀다는 것은 조세지원 이외에 기타 요인이 전자신고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함

<표 VI-7> 세무대리인과 직접 신고자의 전자신고율 비교

(단위: %)

연도	법인세		종합소득세	
	세무대리인 전자신고율 <sup>1)</sup>	직접 신고자 전자신고율 <sup>2)</sup>	세무대리인 전자신고율 <sup>1)</sup>	직접 신고자 전자신고율 <sup>2)</sup>
2008	92.9	3.1	45.7	34.2
2009	93.3	2.8	49.1	34.3
2010	94.3	3.0	50.1	37.2
2011	94.4	3.0	50.0	37.9
2012	95.4	2.8	49.9	41.0
2013	95.6	2.7	50.6	41.0
2014	94.8	3.1	50.4	42.1
2015	95.6	3.0	50.1	40.9

주: 1)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건수:총 신고건수

2)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한 건수:총신고건수

1. 2008년 이전연도 및 부가가치세는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한 건수에 대한 통계 자료가 생산되지 않아 분석이 불가능하였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4) 소결

□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세법개정 직후 조세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인 전자신고율이나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율 상승 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그동안의 세법개정이 세무대리인의 공제혜택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율에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세무대리인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가 전자신고율 제고에 실질적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됨

## 2. 세무행정비용 절감

-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효과 중 하나는 서면신고 자료 입력에 드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임
  -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통해 전자신고가 활성화되면 국세청이 서면신고 자료 입력에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무행정비용이 절감됨

### 1) 국세청 서면신고 입력비용 실적치

- 국세청 제공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6년에 서면신고 및 과세자료 등 입력에 총 60억 5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내부 공무원을 활용한 전산자료 입력에 29억원, 외주비용으로 31억원을 지출함

<표 VI-8> 서면신고 및 과세자료 등 입력비용예산

(단위: 백만원, 백만타)

구분		2016	2015	2014	2013	2012
공무원	서면신고 및 과세자료 등 입력예산 <sup>2)</sup>	2,924	3,305	1,460	1,499	1,605
	입력타수	1,648	1,677	678	633	191
외주	서면신고 및 과세자료 등 입력예산 <sup>1)</sup>	3,126	3,126	3,126	3,366	3,917
	입력타수	1,762	1,586	1,452	1,421	466
서면신고 및 과세자료 등 입력예산(공무원+외주)		6,050	6,431	4,586	4,865	5,522
입력타수(공무원+외주)		3,410	3,263	2,130	2,054	657

주: 1) 정보화센터는 서면신고자료, 기타 별도로 제출되는 첨부 서류, 과세자료 등의 입력을 총괄하는 부서로 입력을 전담하는 공무원인 직원들과 외주를 주어 입력 보조하는 외주직원으로 구성됨

2) 공무원인 직원의 추정비용은 외주직원들의 외주입력 예산액 대비 실제입력타수로 산출한 금액을 직원이 실제 입력한 타수를 곱하여 산출함

1. 입력자료는 신고서뿐 아니라 별도로 제출되는 첨부 서류, 기타 문서와 과세자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신고자료 입력에 드는 비용을 추출할 수는 없음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2) 서면신고 입력예산 절감효과 추정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전자신고 세액공제로 인한 세무행정비용 절감효과를 평가한 결과, 연평균 235억원의 세무행정비용 절감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도입 직전인 2003년의 전자신고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15년도의 서면신고건수는 10,853,926건으로 예상됨
- 2015년에 실제 서면신고된 건수는 1,670,751건으로 10,853,926건(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가 없고, 2003년의 전자신고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서면신고건수)과 1,670,751건(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된 2015년의 실제 서면신고건수)의 차이인 9,183,175건은 전자신고 세액공제로 인하여 서면신고에서 전자신고로 전환된 건수라 볼 수 있음
- 2015년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로 인하여 서면신고에서 전자신고로 전환된 건수가 9,183,175건이고, 2015년에 국세청이 서면신고 1건당 입력비용으로 평균 3,800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전자신고 세액공제로 절감된 세무행정비용은 두 값을 곱한 353억원(=9,183,175건×3,800원)으로 추정됨

## 3) 비용-효익 분석(조세지출 vs. 서면신고 입력비용 절감)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전자신고 세액공제로 인한 조세지출 합계는 3,310억원으로 동 기간 동안 절감된 세무행정비용의 합계 939억원을 초과하므로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운영으로 인한 실질적인 비용 절감효과는 없었다고 볼 수 있음
- 2015년을 예로 들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로 전자신고자 숫자가 늘어나 서식입력에 소요될 비용 353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지만,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이 무려 958억원에 달해 순효과로는 604억원만큼 추가적 비용지출이 있었음

<표 VI-9> 전자신고 세액공제로 인한 세무행정비용 절감효과 평가

(단위: 건, 백만원)

구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합계
가. 총 신고 건수(실적) <sup>1)</sup>	2015	610,244	11,246,543	5,954,281	17,811,068
	2014	562,341	10,773,884	5,516,499	16,852,724
	2013	522,898	10,663,434	5,447,494	16,633,826
	2012	492,632	11,872,788	5,289,054	17,654,474
나. 전자신고 세액공제 하에서 서면신고 건수(실적) <sup>2)</sup>	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합계
	2015	8,258	1,125,810	536,683	1,670,751
	2014	11,528	1,377,242	415,813	1,804,583
	2013	8,766	1,613,473	457,961	2,080,200
	2012	8,922	2,054,058	481,684	2,544,664
다. 서면신고 1건당 입력비용(추정) <sup>3)</sup>	연도	서면신고 입력비용 <sup>4)</sup>	서면신고 건수	서면신고 1건당 입력비용	
	2015	6,431	1,670,751	0.003849	
	2014	4,586	1,804,583	0.002541	
	2013	4,865	2,080,200	0.002338	
	2012	5,522	2,544,664	0.002170	
라.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없었을 경우, 서면신고 예상건수 <sup>5)</sup> (추정)	연도	법인세 <sup>6)</sup>	부가가치세 <sup>7)</sup>	종합소득세 <sup>8)</sup>	합계
	2015	44,547	7,445,211	3,364,168	10,853,926
	2014	41,050	7,132,311	3,116,821	10,290,182
	2013	38,171	7,059,193	3,077,834	10,175,198
	2012	35,962	7,859,785	2,988,315	10,884,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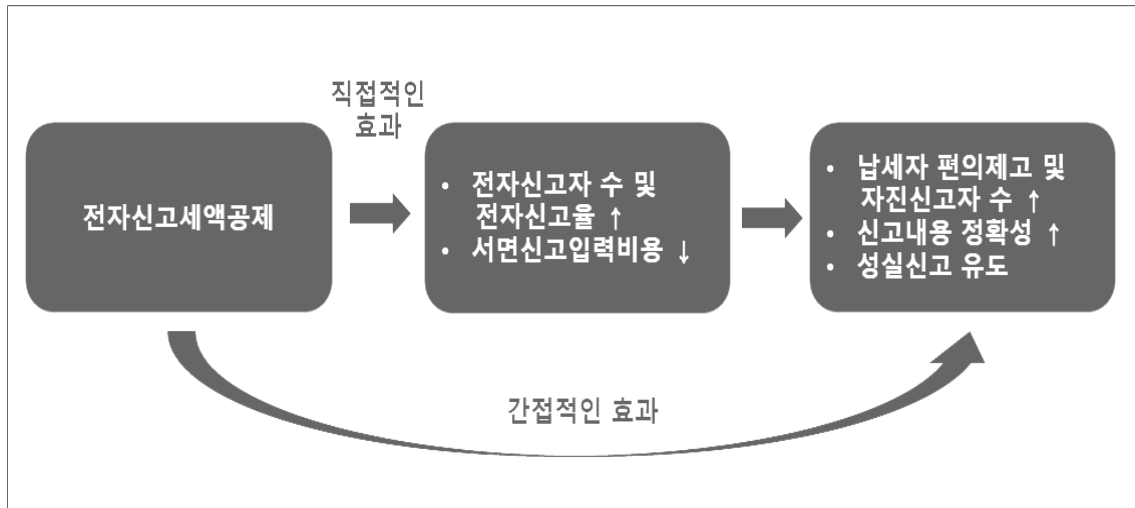
구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합계
마. 전자신고 세액공제로 인한 전자신고 전환건수 <sup>9)</sup> (추정)	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합계
	2015	36,289	6,319,401	2,827,485	9,183,175
	2014	29,522	5,755,069	2,701,008	8,485,599
	2013	29,405	5,445,720	2,619,873	8,094,998
	2012	27,040	5,805,727	2,506,631	8,339,398
바. 전자신고 세액공제로 절감된 세무 행정비용 <sup>10)</sup> (추정)	연도	전자신고 세액공제로 인한 전자신고 전환건수	서면신고 1건당 입력비용	전자신고 세액공제로 절감된 세무행정비용	
	2015	9,183,175	0.0038	35,346	
	2014	8,485,599	0.0025	21,561	
	2013	8,094,998	0.0023	18,926	
	2012	8,339,398	0.0022	18,096	
사. 전자신고 세액공제로 절감된 세무행정 비용과 조세 지출 비교	연도	전자신고 세액공제로 절감된 세무행정비용	전자신고 세액공제 <sup>11)</sup>	순효과	
	2015	35,346	95,800	△60,454	
	2014	21,561	84,800	△63,239	
	2013	18,926	80,600	△61,674	
	2012	18,096	69,800	△51,704	

- 주: 1)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서 추출한 세목별 총 신고건수  
 2) 실제 서면신고건수(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서 추출)  
 3) 국세청이 서면신고 자료 입력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국세청 내부자료) ÷ 실제 서면신고 건수  
 4) 국세청 내부자료(<표 VI-8> 참조)  
 5) 전자신고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2003년의 전자신고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서면 신고건수 [=총 신고건수(가)×(1-2003년의 전자신고율)]  
 6) 법인세 총 신고건수(가)×(1-2003년의 법인세 전자신고율 92.7%)  
 7) 부가가치세 총 신고건수(가)×(1-2003년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율 33.8%)  
 8) 종합소득세 총 신고건수(가)×(1-2003년의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율 43.5%)  
 9) [라]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없었을 경우 서면신고 예상건수 - [나]전자신고 세액공제하에서 서면신고 건수(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서 추출)  
 10) 전자신고 세액공제로 절감된 세무행정비용 = [마]전자신고 세액공제로 인한 전자신고 전환건수(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없었다면 서면신고를 하였을 납세자가 전자신고 세액공제 때문에 전자신고를 선택한 건수)×[다]서면신고 1건당 입력비용  
 11) 각 연도의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추출

### 3. 전자세정 안정화

-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직접적 효과가 전자신고 활성화라고 한다면 간접적 효과는 납세자 편의 증대 및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통한 전자세정의 안정화임
  - 전자신고는 세액계산 및 신고의 편리성을 제고함으로써 자진신고자 수를 늘리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자신고를 위해서는 파일형식 및 신고내용에 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자신고는 신고내용의 상호대사를 통해 허위·과소 신고를 쉽게 판별해낼 수 있게 해주므로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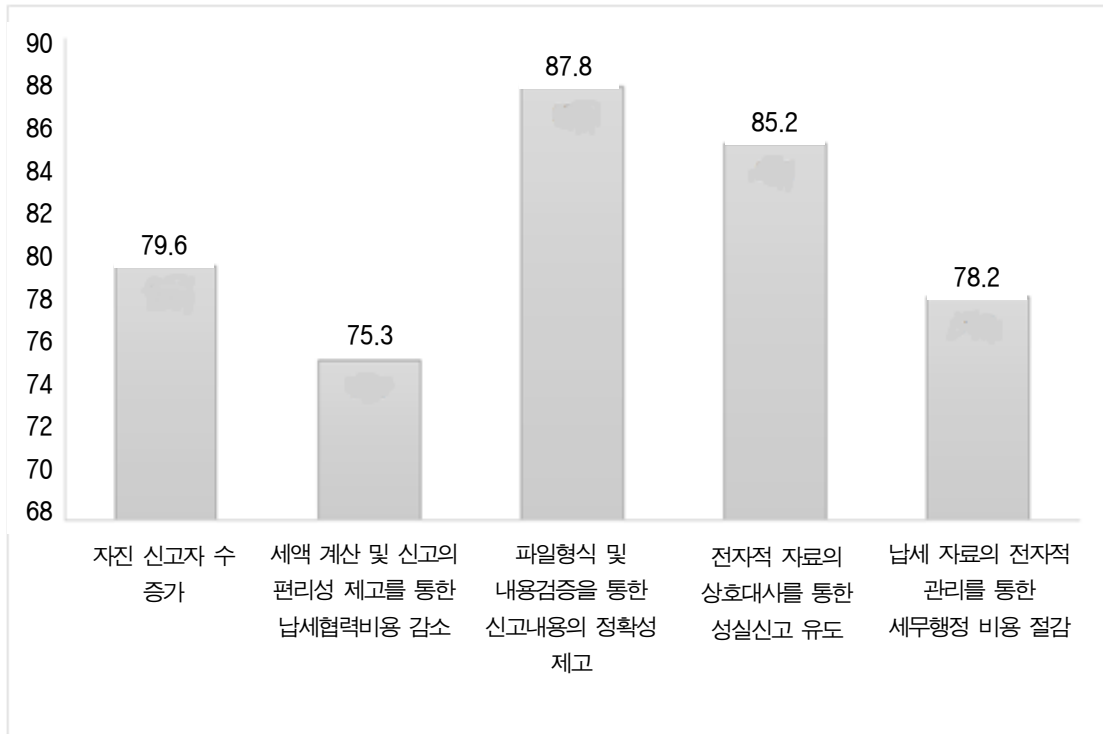
[그림 VI-5]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직·간접 효과



-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간접적 효과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전자신고자 숫자를 늘려 전자세정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5개 항목에서 고르게 75점 이상의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함
  - 세부항목별로 보면 파일형식 및 내용검증을 통한 신고내용의 정확성 제고가 87.8점으로 가장 높았고, 세액계산 및 신고의 편리성 제고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감소가 75.3점으로 가장 낮았음

[그림 VI-6] 전자신고의 기여도에 대한 설문결과

(단위: %)



주: 1. 항목별 Top2(매우 기여함 + 어느 정도 기여함) 비율  
 자료: 설문조사 응답결과

## Ⅶ. 설문조사 결과





## VII. 설문조사 결과

### 1. 조사의 개요

- 본 조사는 법인사업체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담당자, 개인사업자, 2016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비사업자, 회계 및 세무법인에서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전화면접조사(CATI)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됨

<표 VII-1> 본 조사 개요

구분	내 용
조사 대상	1) 2016년 법인세,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법인사업체, 개인사업자, 개인비사업자 2) 전국의 회계 및 세무법인에서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함
조사 지역	전국 17개 광역시도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전화면접조사(CATI)방법
조사 기간	2017년 8월 9일~ 8월 21일(working-day 기준, 총 8일)

- 조사 대상 유형(법인사업체, 개인사업자 및 개인비사업자, 세무대리인)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표본 배분함

<표 VII-2> 표본 배분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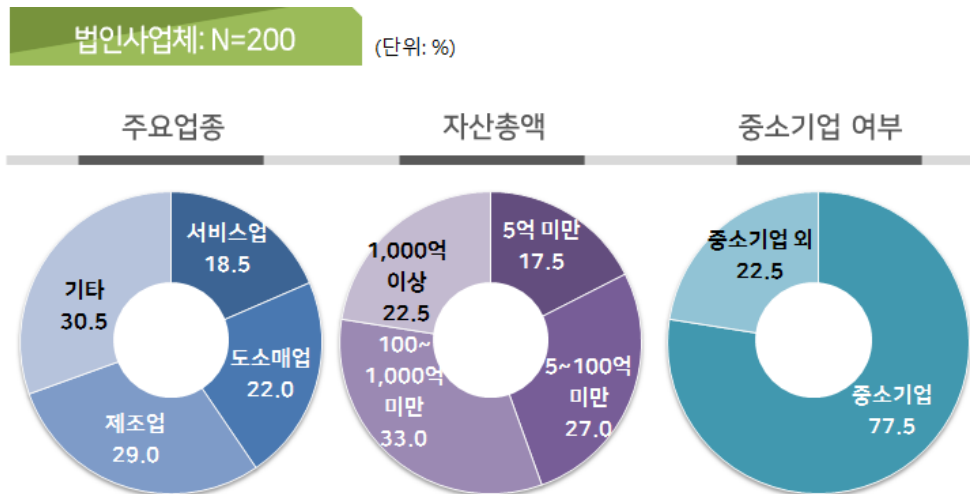
지역	법인사업체	개인		세무대리인	전체
		사업체	비사업자		
표본수	200	750	150	200	1,300

## 2. 응답자 특성

### 가. 법인사업체의 응답자 특성

- 조사된 법인사업체의 주요업종, 자산총액, 기업유형(중소기업여부)별 분포
  - 주요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금융보험업 등의 기타업종(30.5%), 제조업(29.0%), 도소매업(22.0%), 서비스업(18.5%) 순으로 분포
  - 자산총액이 100~1,000억 미만인 경우 33.0%로 나타났고, 자산총액 5~100억 미만(27.0%), 1,000억 이상(22.5%), 5억 미만(17.5%)의 순으로 조사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체의 비중이 77.5%,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는 22.5%를 차지

[그림 VII-1] 법인사업체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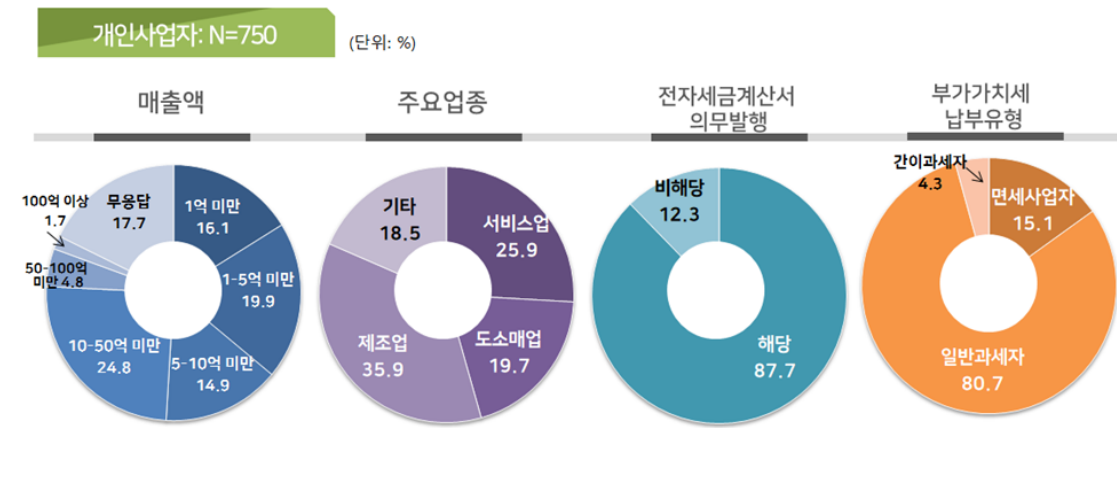


### 나. 개인사업자의 응답자 특성

- 조사된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주요업종,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여부, 부가가치세 납부유형별 분포
  - 응답된 개인사업자를 매출액별로 살펴보면, 10~50억 미만(24.8%), 1~5억 미만(19.9%), 1억 미만(16.1%) 순으로 분포

- 주요업종별로는 제조업(35.9%), 서비스업(25.9%), 도소매업(19.7%) 순으로 조사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87.7%로 대부분을 차지
- 부가가치세 납부유형별로는 일반과세자가 80.7%로 가장 많고, 면세사업자 (15.1%), 간이과세자(4.3%) 순으로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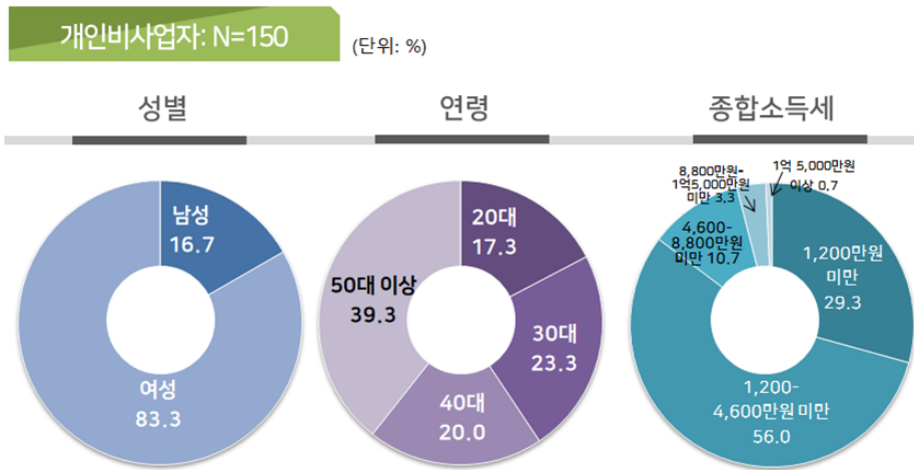
[그림 VII-2] 개인사업자의 일반적 특성



#### 다. 개인비사업자의 응답자 특성

- 조사된 개인비사업자의 성별, 연령별, 종합소득세별 분포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83.3%, 남성 16.7% 수준으로 여성의 응답 비중이 높음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39.3%로 가장 많고, 30대(23.3%), 40대(20.0%), 20대 (17.3%) 순으로 분포
  - 2016년 기준 신고한 종합소득별로는 1,200~4,600만원 미만인 경우가 56.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200만원 미만(29.3%), 4,600~8,800만원 미만(10.7%) 순으로 조사

[그림 VII-3] 개인비사업자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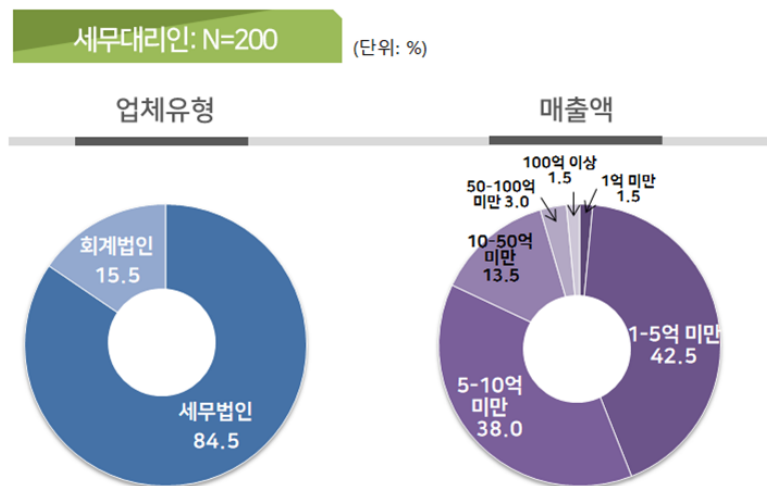


라. 세무대리인의 응답자 특성

□ 조사된 세무대리인의 업체유형, 매출액별 분포

- 업체유형별로 세무법인은 84.5%, 회계법인은 15.5%로 세무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2016년 매출액별로는 1~5억 미만이 42.5%, 5~10억 미만이 38.0%로 매출액 10~50억 미만 13.5% 순으로 조사됨

[그림 VII-4] 세무대리인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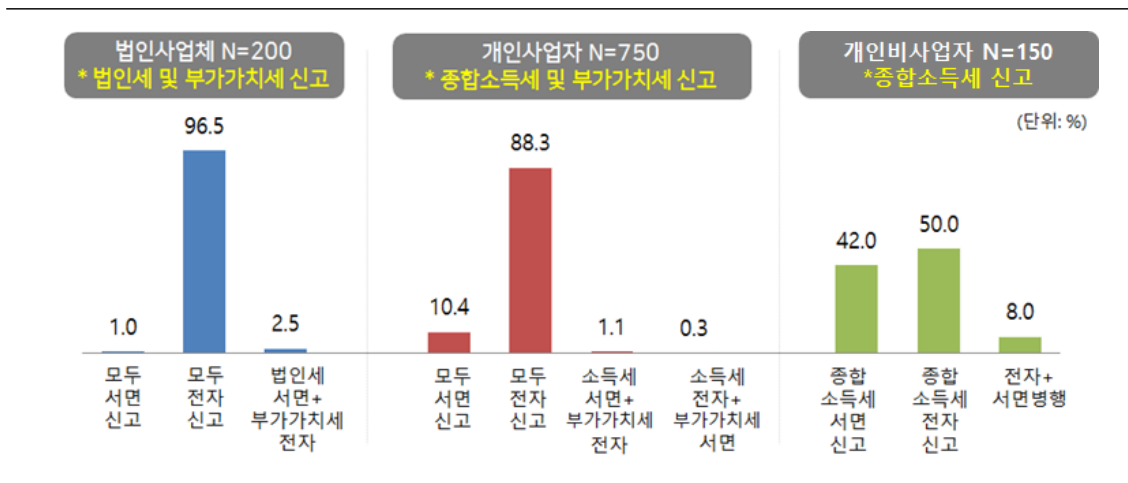
### 3. 주요 조사 결과

#### 가. 전자신고 이용 현황

##### 1)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

- 법인사업체 및 개인사업자 대부분과 개인비사업자의 절반 이상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전자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
  - (법인사업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한 법인사업체는 96.5%로 전자신고 이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상당수(88.3%)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전자 신고의 방식으로 신고
  - (개인비사업자) 개인비사업자는 절반(50.0%) 정도가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의 방식으로 신고
    - 단, 종합소득세를 모두 서면으로 신고한 비율은 42.0%로 법인사업체(1.0%) 및 개인사업자(10.4%)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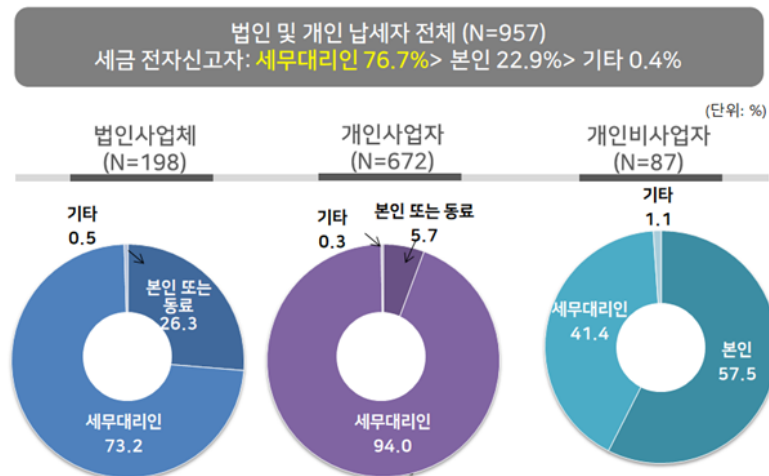
[그림 VII-5]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방식



## 2)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주체

- 법인 및 개인납세자의 4분의 3 수준인 76.7%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자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
  - (법인사업체) 법인사업체는 73.2%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한 것으로 조사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대부분(94.0%)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자신고를 하여 법인이나 개인비사업자 대비 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 비율이 높음
  - (개인비사업자) 개인비사업자의 절반(57.5%) 이상은 종합소득세를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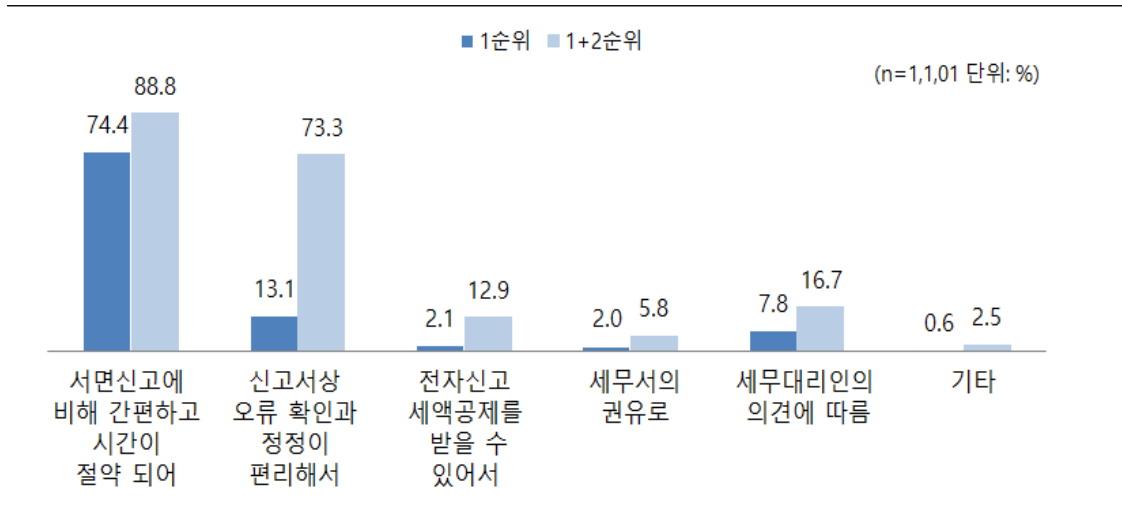
[그림 VII-6]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자신고를 한 사람



## 3) 전자신고를 선택한 주된 이유

- 전자신고를 선택한 1순위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4분의 3 정도인 74.4%가 ‘서면신고에 비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선택
  - 1+2순위(중복응답) 결과도 마찬가지로 ‘서면신고에 비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선택한 비율이 88.8%로 가장 높음
  - ‘신고서상 오류 확인과 정정이 편리해서’ 전자신고를 선택하는 비율은 1순위 기준 응답은 13.1%에 불과하나 1+2순위 응답에서는 73.3%로 높은 수준

[그림 VII-7] 전자신고를 선택한 주된 이유(1순위, 1+2순위)



- 일반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모두 ‘서면신고에 비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
  - 법인 및 개인납세자 모두 ‘서면신고에 비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87.9%) 전자신고를 선택하였으며, 이어 ‘신고서상 오류 확인과 정정이 편리해서’(70.3%), ‘세무대리인의 의견에 따름’(19.1%) 순으로 조사
    - (법인사업체) ‘서면신고에 비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어’(90.4%), ‘신고서상 오류 확인과 정정이 편리해서’(87.9%) 전자신고를 선택
    - (개인사업자) ‘세무대리인의 의견에 따라’ 전자신고를 선택한 비율이 23.7%로 법인(8.6%) 및 개인비사업자(0.0%) 보다 높은 수준
    - (개인비사업자)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선택한 비율이 절반(56.0%) 이상을 차지
  - (세무대리인) ‘서면신고에 비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어’, ‘신고서상 오류 확인과 정정이 편리해서’ 전자신고를 선택하는 비율이 일반납세자 대비 높은 수준
    -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선택한 비율은 법인 및 개인납세자는 14.6%로 조사된 반면, 세무대리인은 4.4%에 불과

<표 VII-3> 전자신고를 선택한 주된 이유\_1+2순위(복수응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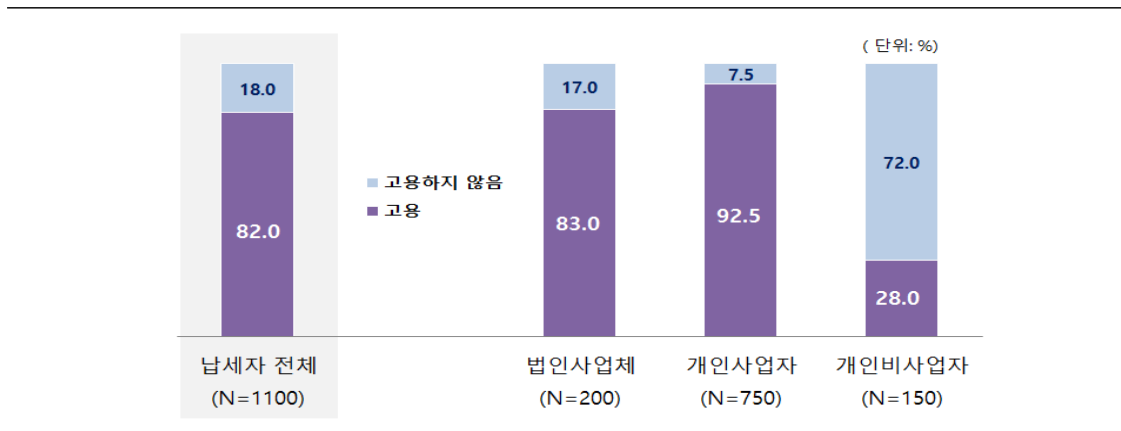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서면신고에 비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어	신고서상 오류 확인 과 정정이 편리해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의 권유로	세무 대리인의 의견에 따름	기타	
일반납세자	(920)	87.9	70.3	14.6	5.7	19.1	2.4	
납 세 자	법인사업체	(198)	90.4	87.9	8.1	1.5	8.6	3.5
	개인사업자	(672)	86.5	67.0	13.4	7.3	23.7	2.2
	개인비사업자	(50)	98.0	46.0	56.0	0.0	0.0	0.0
세무대리인	(181)	93.4	88.4	4.4	6.6	-	2.8	

## 나. 세무대리인 고용 현황

### 1) 세무대리인 고용 여부

- 개인 및 법인 납세자의 82.0%는 세무관련 업무를 처리해주는 세무대리인을 고용
  - (법인사업체) 법인사업체의 상당수(83.0%)가 외부 세무대리인을 고용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92.5%)이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고 있어 납세자 그룹에서 세무대리인 고용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
  - (개인비사업자) 반면, 개인비사업자는 28.0%가 외부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법인사업체 및 개인사업자 대비 세무대리인 고용이 비율이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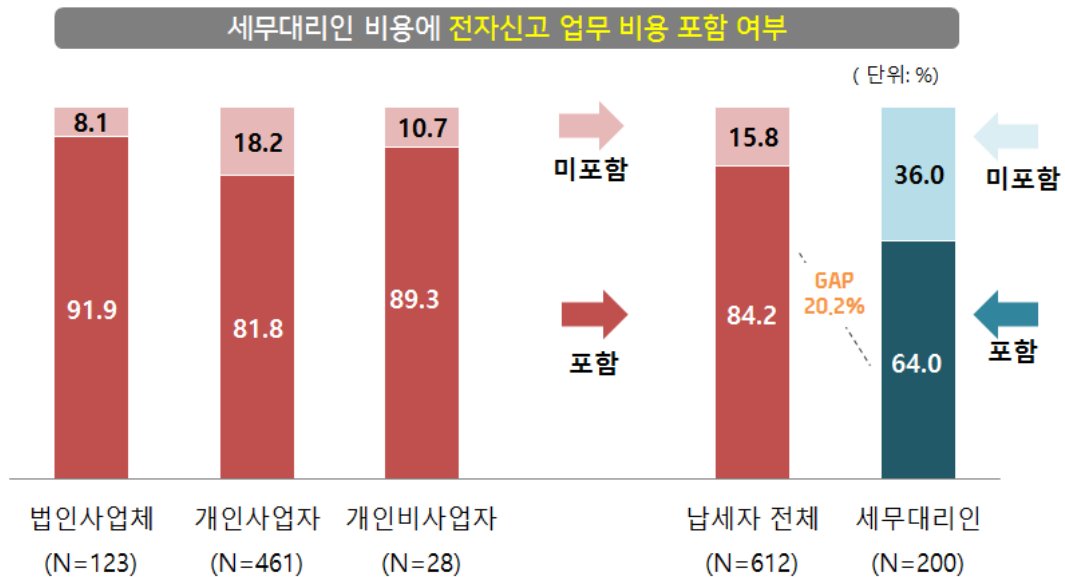
[그림 VII-8] 세무대리인 고용 여부



## 2) 세무대리인 지불비용 중 전자신고 업무비용의 포함 여부

- 세무대리인 지불비용에 전자신고 업무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간에 인식 차이 존재
  - 법인 및 개인납세자 전체의 84.2%는 세무대리인 지불비용에 전자신고 업무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
    - (법인사업체) 법인사업체는 세무대리인 비용에 전자신고 업무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91.9%로 개인사업자보다 높은 수준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81.8%가 세무대리인 비용에 전자신고 업무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하여 법인 및 개인비사업자 대비 낮은 수준
    - (개인비사업자) 개인비사업자의 89.3%가 세무대리인 비용에 전자신고 업무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
  - (세무대리인) 실제로는 세무대리인의 64.0%가 세무대리인 지불비용에 전자신고 업무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개인 및 법인 납세자의 인식과 약 20.2%p 차이를 보임

[그림 VII-9]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 중 전자신고 업무비용의 포함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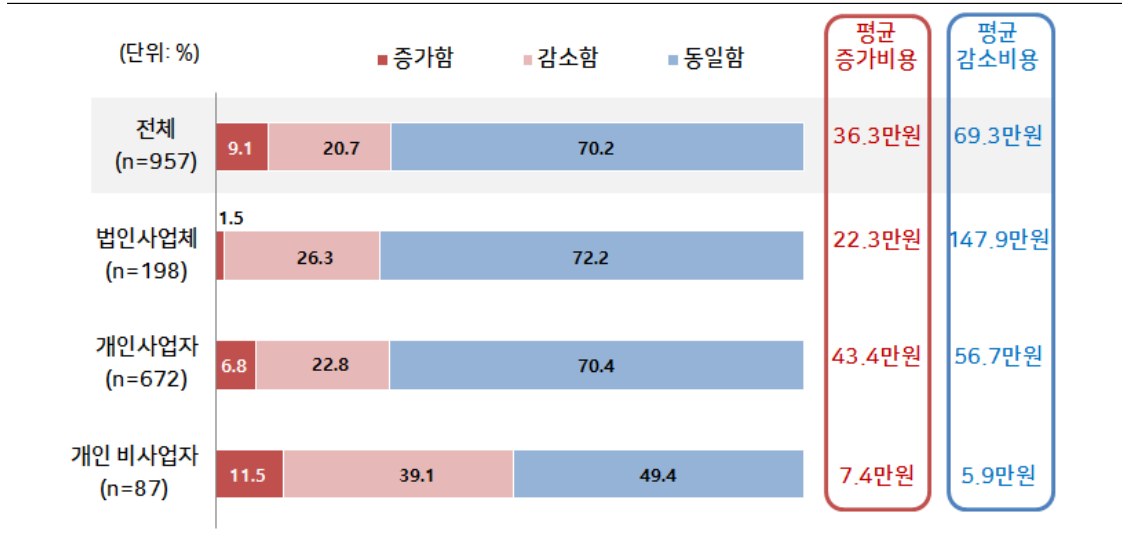
## 다. 전자신고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 1) 전자신고로 인한 세무 관련 업무비용 증감 및 비용

- 전자신고를 하는 법인 및 개인납세자의 90.9%는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와 비교하여 세무관련 업무비용이 동일하거나 감소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법인사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세무관련 업무 비용이 동일하거나 감소한다고 응답
  - (법인사업체) 법인사업체의 대부분인 98.5%는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와 비교하여 세무관련 업무비용이 동일하거나 감소한다고 인식
    - 동일하다는 응답이 72.2%, 감소한다는 응답이 26.3%로 조사된 반면, 증가한다는 의견은 1.5%에 불과함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대부분인 93.2%는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와 비교하여 세무관련 업무비용이 동일하거나 감소한다고 인식
    - 동일하다는 응답이 70.4%, 감소한다는 응답이 22.8%로 조사된 반면, 증가한다는 의견은 6.8%에 불과함
  - (개인비사업자) 개인비사업자의 상당수(88.5%)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와 비교하여 세무관련 업무비용이 동일하거나 감소한다고 인식
    - 동일하다는 응답이 49.4%, 감소한다는 응답이 39.1%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체 보다 업무비용이 감소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 법인 및 개인납세자의 전자신고로 인한 세무관련 업무 평균 감소 비용은 69.3만원, 증가 비용은 36.3만원으로 조사되어 감소 비용이 증가 비용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
  - (법인사업체) 법인사업체의 전자신고로 인한 업무 관련 감소 비용은 147.9만원, 증가 비용은 22.3만원으로 조사
    - 특히, 법인사업체는 감소 비용(147.9만원)과 증가 비용(22.3만원)이 크게 차이를 보이며 개인납세자 중 가장 감소 비용이 크게 나타남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전자신고로 인한 업무 관련 감소 비용은 56.7만원, 증가 비용은 43.4만원으로 조사
  - (개인비사업자) 개인비사업자의 전자신고로 인한 업무 관련 감소 비용은 5.9만원, 증가 비용은 7.4만원으로 조사

- 개인비사업자의 전자신고로 인한 업무 감소 및 증가 비용은 대체로 유사한 수준

[그림 VII-10] 전자신고시 세무관련 업무비용 증감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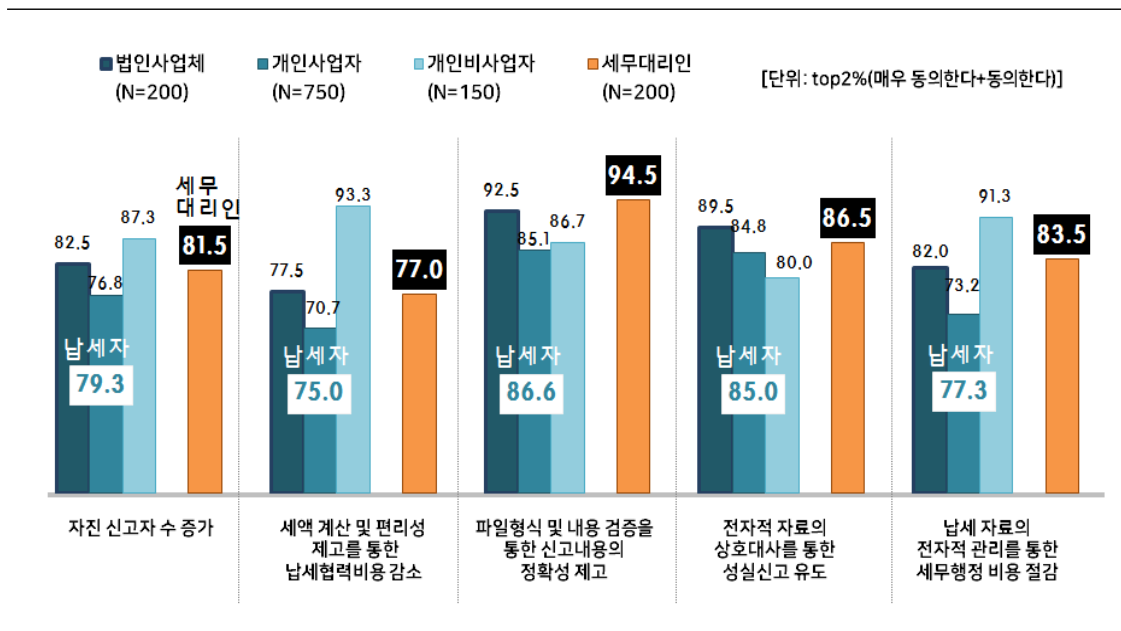


## 2) 전자신고의 기여도

- 전자신고의 기여도에 대해서 법인 및 개인납세자보다 세무대리인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파일형식 및 내용검증을 통한 신고내용의 정확성 제고’ 항목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음(납세자: 86.6%, 세무대리인: 94.5%)
- 개인 및 법인 납세자 모두 전자신고의 기여도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세액 계산 및 신고의 편리성 제고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감소’(70.7%) 항목에 대해서 법인 및 개인비사업자 대비 상대적으로 전자신고 기여도를 낮게 인식
  - (법인사업체) ‘파일형식 및 내용검증을 통한 신고내용의 정확성 제고’(92.5%) 항목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어 ‘전자적 자료의 상호대사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89.5%), ‘자진신고자 수 증가’(82.5%) 항목의 순으로 기여도가 높게 조사
  - (개인사업자) ‘파일형식 및 내용검증을 통한 신고내용의 정확성 제고’(85.1%) 전자적 자료의 상호대사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84.8%) 항목을 긍정적 인식

- (개인비사업자) ‘세액 계산 및 신고의 편리성 제고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감소’(93.3%) 항목의 기여도가 가장 높고 이어 납세 자료의 전자적 관리를 통한 세무행정의 비용 절감(91.3%), ‘자진신고자 수 증가’(87.3%) 등의 순으로 조사
- (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은 ‘파일형식 및 내용검증을 통한 신고내용의 정확성 제고’(94.5%) 항목에 대한 기여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납세자 긍정 응답비율 86.6%와 큰 차이를 보임
- 이어 ‘전자적 자료의 상호대사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86.5%), ‘납세 자료의 전자적 관리를 통한 세무행정의 비용 절감’(83.5%) 순으로 조사

[그림 VII-11]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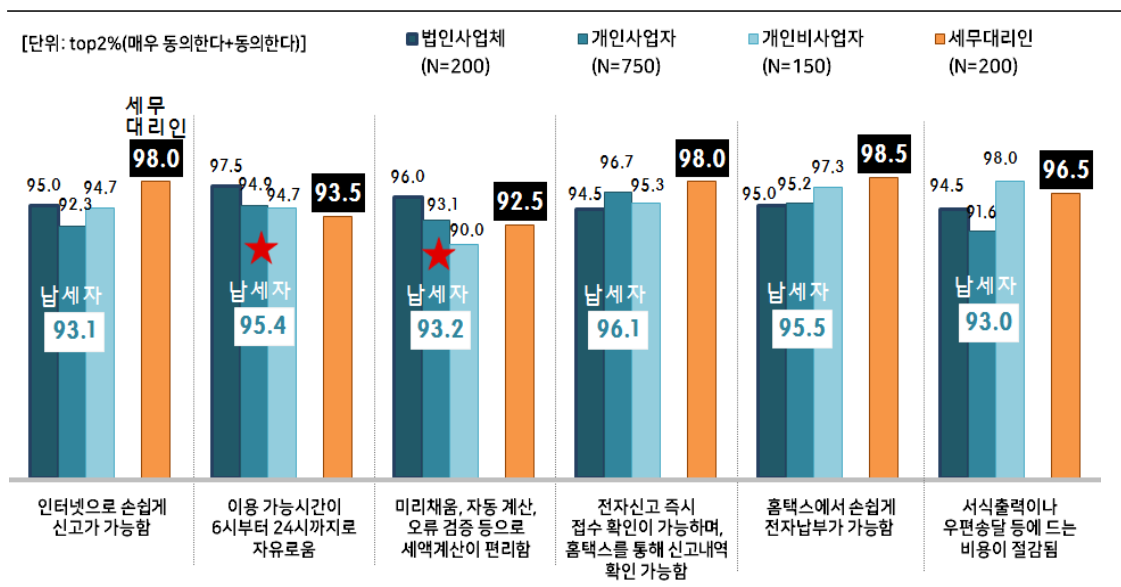


### 3) 전자신고의 편리성

- 전자신고의 편리성에 대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일반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자신고의 기여도보다 편리성에 대해서 더 높게 평가
- 법인 및 개인납세자는 ‘전자신고 완료 즉시 접수 확인이 가능 및 홈택스를 통해 신고내역을 손쉽게 확인 가능’(96.1%) 항목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

- (법인사업체) ‘이용가능 시간의 자유로움’(97.5%) 항목의 긍정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 ‘자동계산 및 오류 검증으로 인한 계산 편리’(96.0%) 항목 순으로 긍정적으로 인식
- (개인사업자) ‘홈택스를 통해 신고내역을 손쉽게 확인 가능’(96.7%) 항목의 긍정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 ‘홈택스에서 손쉽게 전자납부가 가능’(95.2%) 순으로 조사
- (개인비사업자) ‘서식출력이나 우편송달에 드는 비용이 절감’(98.0%) 항목의 긍정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미리채움, 자동계산, 오류 검증 등의 세액계산 편리성’ 항목은 90.0% 이상이 편리하다고 응답했지만 법인 및 개인비사업자 보다는 낮은 수준
- (세무대리인) ‘이용 가능 시간이 6시부터 24시까지 자유로움’(93.5%), ‘미리채움, 자동계산, 오류검증 등으로 세액계산이 편리’(92.5%) 항목을 제외한 모든 편리성 항목에 대해서 법인 및 개인납세자보다 긍정적으로 인식
  - ‘홈택스에서 손쉽게 전자납부가 가능’(98.5%), ‘인터넷으로 손쉽게 신고 가능’(98.0%), ‘전자신고 즉시 확인 가능 및 홈택스를 통해 신고내역 확인 가능’(98.0%) 항목에 대해서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인식

[그림 VII-12]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편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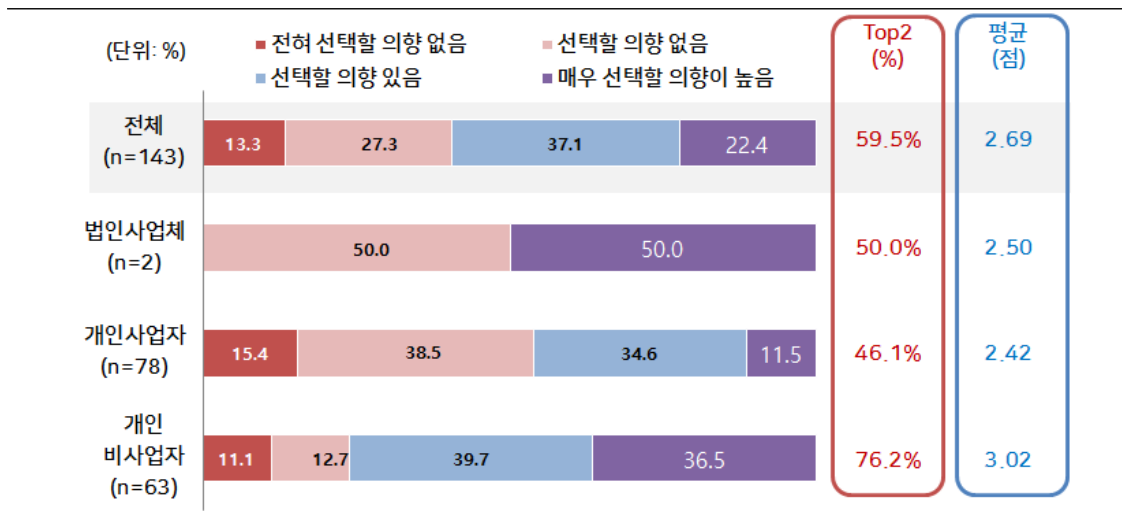


## 라.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인식

### 1) 전자신고 미이용자가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 2배 인상 시 전자신고를 선택할 의향

-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 2배 인상 시 전자신고 선택 의향은 절반(59.5%) 이상으로 조사
  - (개인비사업자) 개인비사업자의 경우 4분의 3 이상인 76.2%가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 2배 인상 시 전자신고를 선택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 (개인사업자)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을 인상하더라도 전자신고를 선택할 의향이 절반을 미치지 못하는 46.1% 수준

[그림 VII-13]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 2배 인상 시 전자신고 선택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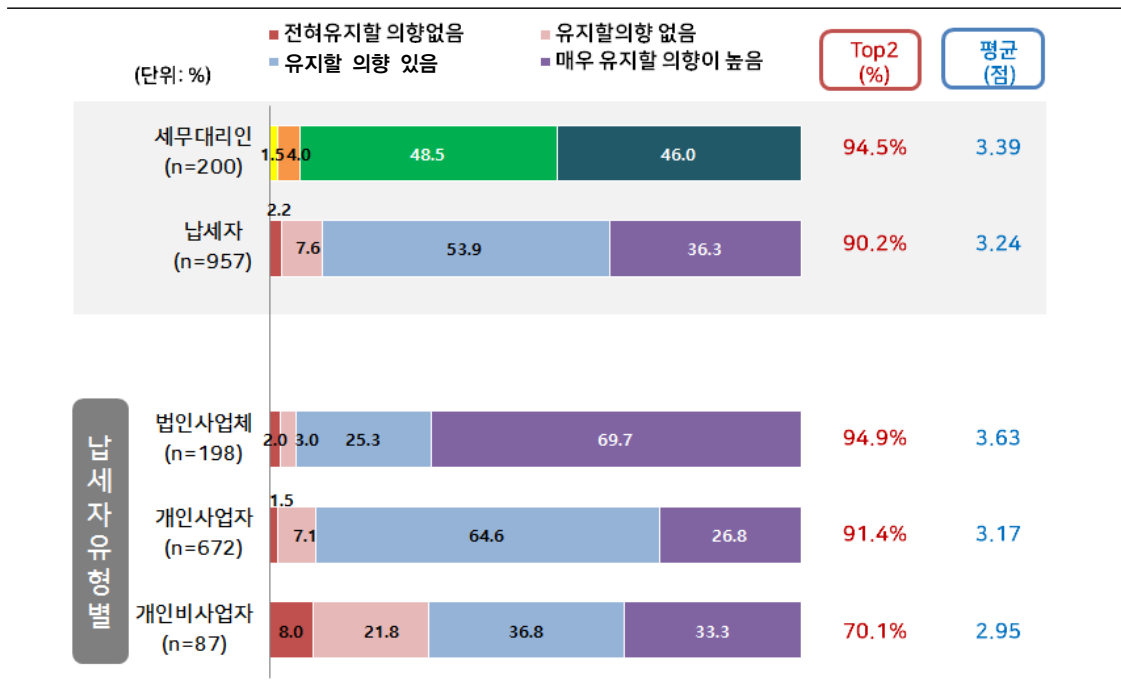


### 2) 전자신고 이용자가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 전자신고 유지 의향

- 전자신고를 하는 대부분(90.9%)의 이용자가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에도 전자신고를 유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세무대리인의 유지의향이 법인 및 개인납세자보다 높게 나타남
  - 법인사업체의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이 줄거나 폐지되어도 전자신고를 유지할 의향이 개인납세자보다 높은 수준

- (법인사업체) 유지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94.9%로 조사된 반면, 유지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5.0%에 불과
  - (개인사업자) 유지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91.4%로 조사된 반면, 유지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8.6%에 불과
  - (개인비사업자) 유지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0.1%, 유지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29.9%로 조사되었지만 다른 그룹에 비해서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 조정시 유지 의향이 낮은 것으로 조사
- (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은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줄거나 폐지되어도 94.5%인 대부분이 유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지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5.5%에 불과

[그림 VII-14]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 전자신고 유지할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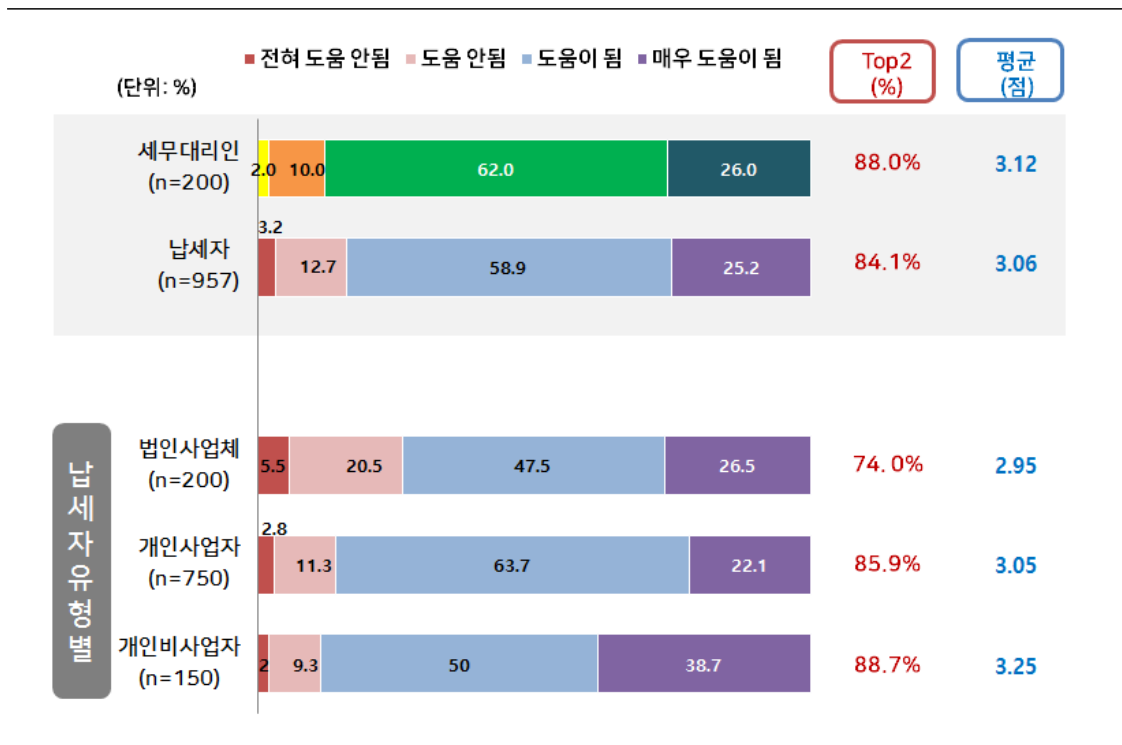


### 3)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 전체 응답자의 80.0% 이상이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법인 및 개인납세자보다 세무대리인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개인납세자의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84.0% 이상으로 유사한 수준이나 법인사업체는 다소 낮은 수준
  - (법인사업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4.0%로 조사된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0%로 조사되어 공제대상이 주로 세무대리인이기 때문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비용에 대한 체감이 다른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
  - (개인사업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5.9%로 조사된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1%에 불과
  - (개인비사업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8.7%로 조사된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3%에 불과
- (세무대리인)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88.0%로 조사되었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2.0%에 불과

[그림 VII-15]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 4)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 ‘납세자의 직접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26.9%), ‘세액공제금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되 전자신고의 편리성 제고’(23.8%)에 대한 응답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개인 및 법인납세자의 경우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이외에 ‘세액공제금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되 전자신고의 편리성 제고’(23.8%)와 같은 개선방향도 높은 수준으로 파악
    - (법인사업체) 인센티브 확대 이외에 ‘현행수준 유지’(26.0%), ‘전자신고 의무화’(17.5%)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개인납세자 대비 높은 수준
    - (개인사업자) ‘납세자의 직접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27.3%), ‘세액공제금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되 전자신고의 편리성 제고’(25.5%)에 대한 응답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개인비사업자) ‘납세자의 직접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인 54.0%를 차지
  - (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인 인센티브 확대’(39.0%), ‘현행수준 유지’(28.5%)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일반납세자와 차이를 보임

<표 VII-4>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현행 수준 유지	전자 신고의 의무화	세액공제 금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되 전자신고의 편리성을 제고	납세자의 직접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기타	
전체	(1300)	21.5	14.2	23.8	26.9	11.6	2.0	
일반납세자	(1100)	20.3	14.9	25.3	30.8	6.6	2.1	
납 세 자	법인사업체	(200)	26.0	17.5	24.5	26.5	4.0	1.5
	개인사업자	(750)	20.8	15.5	25.5	27.3	8.4	2.5
	개인비사업자	(150)	10.0	8.7	25.3	54.0	1.3	0.7
세무대리인	(200)	28.5	10.0	15.5	5.5	39.0	1.5	

## 4. 법인사업체 인식조사

### 가. 응답자 특성

####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 전체 법인사업체 중 77.5%가 중소기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주요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금융보험업 등의 기타업종(30.5%), 제조업(29.0%), 도소매업(22.0%), 서비스업(18.5%) 순으로 파악
  - 자산총액이 100~1,000억 미만인 경우 33.0%로 나타났고, 자산총액 5~100억 미만(27.0%), 1,000억 이상(22.5%), 5억 미만(17.5%)의 순으로 조사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체의 비중이 77.5%로 비해당하는 경우(22.5%)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
  - 매출액 100억 이상의 사업체가 51.0%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
    - 매출액 100~500억 미만은 25.0%, 500~1,000억 미만은 7.5% , 1,000억 이상은 18.5%로 조사

<표 VII-5>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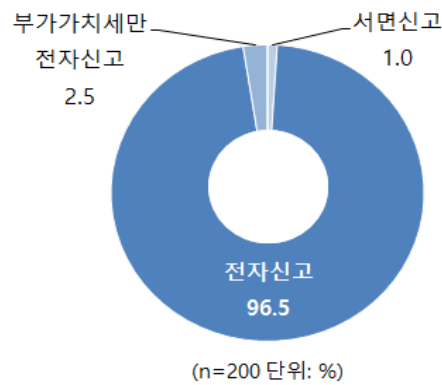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200)	100.0
주요업종	서비스업	(37)	18.5
	도소매업	(44)	22.0
	제조업	(58)	29.0
	기타	(61)	30.5
자산총액	5억 미만	(35)	17.5
	5~100억 미만	(54)	27.0
	100~1,000억 미만	(66)	33.0
	1,000억 이상	(45)	22.5
중소기업 여부	해당	(155)	77.5
	비해당	(45)	22.5
매출액	5억 미만	(17)	8.5
	5~10억 미만	(19)	9.5
	10~30억 미만	(23)	11.5
	30~50억 미만	(16)	8.0
	50~100억 미만	(16)	8.0
	100~500억 미만	(50)	25.0
	500~1,000억 미만	(15)	7.5
	1,000억 이상	(37)	18.5
무응답		(7)	3.5

## 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방식

- 전체 법인사업체 96.5%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모두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
  - 부가가치세만 전자신고하는 사업체는 2.5%, 모두 서면신고하는 사업체는 1.0% 정도

[그림 VII-16]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방식




<표 VII-6>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방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200)	100.0
서면신고	(2)	1.0
전자신고	(193)	96.5
부가가치세만 전자신고	(5)	2.5
법인세만 전자신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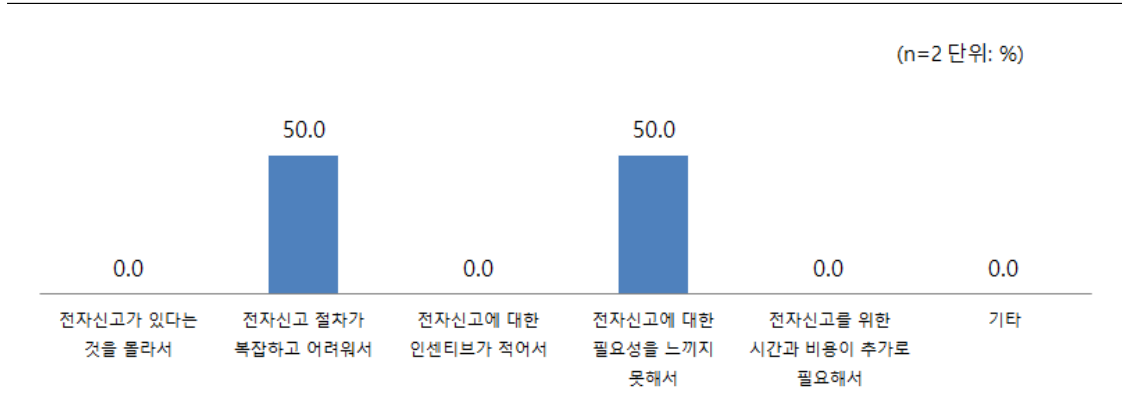
### 나. 전자신고 미운영 이유와 향후 이용 의향

#### 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

	<b>QA1.</b> 귀사에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2개의 법인사업체는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전자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그림 VII-17]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표 VII-7>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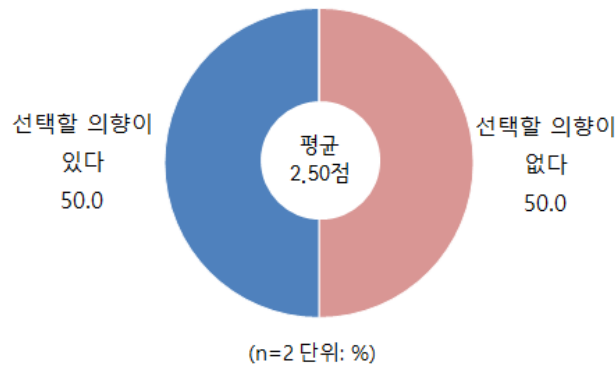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전자 신고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전자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전자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어서	전자 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전자 신고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필요해서	기타	
전체	(2)	0.0	50.0	0.0	50.0	0.0	0.0	
주요 업종	서비스업	(1)	0.0	0.0	0.0	100.0	0.0	0.0
	기타	(1)	0.0	100.0	0.0	0.0	0.0	0.0
자산 총액	5억 미만	(1)	0.0	100.0	0.0	0.0	0.0	0.0
	100~1,000억 미만	(1)	0.0	0.0	0.0	100.0	0.0	0.0
중소기업 여부	해당	(1)	0.0	100.0	0.0	0.0	0.0	0.0
	비해당	(1)	0.0	0.0	0.0	100.0	0.0	0.0
매출액	5억 미만	(1)	0.0	100.0	0.0	0.0	0.0	0.0
	5~10억 미만	(1)	0.0	0.0	0.0	100.0	0.0	0.0

## 2)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 2배 인상 시 전자신고 선택 의향

 	<b>QA2.</b> 귀사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을 현재보다 2배 인상할 경우 전자 신고를 선택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재 납세자가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접 세금을 신고한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 전자 신고를 하지 않은 2개 업체의 전자 신고 세액 공제 금액 2배 인상 시 전자 신고 를 선택 할 의향은 50% 수준

[그림 VII-18] 전자 신고 세액 공제 금액 2배 인상 시 전자 신고 선택 의향



<표 VII-8> 전자 신고 세액 공제 금액 2배 인상 시 전자 신고 선택 의향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선택할 의향이 없다	선택할 의향이 없다	선택할 의향이 있다	매우 선택할 의향이 높다	[평균]	
전체	(2)	0.0	50.0	50.0	0.0	2.50	
주요 업종	서비스업	(1)	0.0	0.0	100.0	0.0	3.00
	기타	(1)	0.0	100.0	0.0	0.0	2.00
자산 총액	5억 미만	(1)	0.0	100.0	0.0	0.0	2.00
	100~1,000억 미만	(1)	0.0	0.0	100.0	0.0	3.00
중소 기업 여부	해당	(1)	0.0	100.0	0.0	0.0	2.00
	비해당	(1)	0.0	0.0	100.0	0.0	3.00
매출액	5억 미만	(1)	0.0	100.0	0.0	0.0	2.00
	5~10억 미만	(1)	0.0	0.0	100.0	0.0	3.00

주: 선택 의향을 매우 선택 의향 있음(4점)~전혀 선택 의향 없음(1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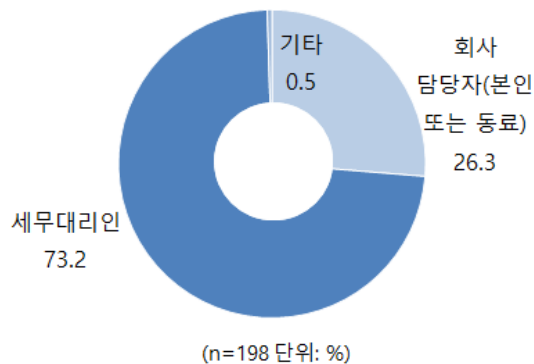
## 다. 전자신고 이용 행태

### 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신고를 한 사람

	<b>QB1.</b> 귀사에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신고를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

-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한 사업체 중 73.2%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 회사 담당자(본인 또는 동료)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한 비율은 26.3%, 기타 다른 사람이 전자신고한 비율은 0.5% 수준

[그림 VII-19]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신고를 한 사람



- 자산총액 1,000억 이상의 사업체 절반 이상(53.3%)은 회사 담당자가 전자신고한 것으로 조사
  - 주요업종에 관계없이 세무대리인에 의한 전자신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
  - 자산총액별로 자산총액 1,000억 미만인 사업체의 경우 세무대리인에 의한 신고 비율이 높은 반면, 1,000억 이상의 경우는 회사 담당자에 의한 신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는 담당자에 의한 신고 비율이 36.4%로 중소기업인 사업체(23.4%)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세무대리인에 의한 전자신고 비중이 높은 수준


- 매출액 5억 미만인 사업체의 경우 모두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

<표 VII-9>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신고를 한 사람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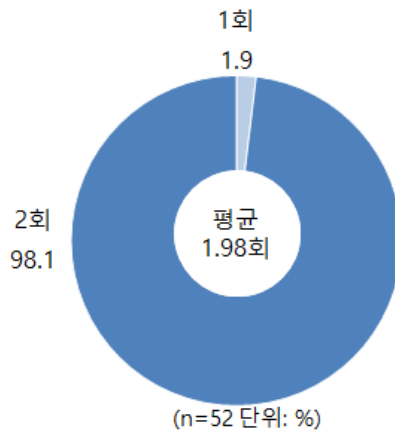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회사 담당자 (본인 또는 동료)	세무대리인	기타
전체		(198)	26.3	73.2	0.5
주요업종	서비스업	(36)	36.1	63.9	0.0
	도소매업	(44)	25.0	75.0	0.0
	제조업	(58)	15.5	84.5	0.0
	기타	(60)	31.7	66.7	1.7
자산 총액	5억 미만	(34)	11.8	88.2	0.0
	5~100억 미만	(54)	16.7	83.3	0.0
	100~1,000억 미만	(65)	23.1	76.9	0.0
	1,000억 이상	(45)	53.3	44.4	2.2
중소기업 여부	해당	(154)	23.4	76.0	0.6
	비해당	(44)	36.4	63.6	0.0
매출액	5억 미만	(16)	0.0	100.0	0.0
	5~10억 미만	(18)	27.8	72.2	0.0
	10~30억 미만	(23)	26.1	73.9	0.0
	30~50억 미만	(16)	18.8	81.3	0.0
	50~100억 미만	(16)	25.0	75.0	0.0
	100~500억 미만	(50)	32.0	68.0	0.0
	500~1,000억 미만	(15)	33.3	66.7	0.0
	1,000억 이상	(37)	29.7	67.6	2.7
무응답	(7)	28.6	71.4	0.0	

2) 2016년 동안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수행한 횟수

	<p><b>QB1-1.</b> 귀사가 2016년동안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수행한 횟수는 총 몇 번입니까? 예정신고를 제외한 연간 확정신고의 총 횟수를 말씀해 주십시오.</p>
---	--

-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한 사업체의 98.1%는 연 2회 모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
  - 연 1회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수행한 사업체는 1.9%(1개 업체)로 대부분 (98.1%) 2회 모두 신고

[그림 VII-20] 2016년 동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수행한 횟수




- 주요업종, 자산총액, 중소기업 여부, 매출액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횟수가 2회인 사업체가 대부분을 차지
  - 주요업종별로는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의 100.0%가 연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수행
    - 기타 업종의 5.3%는 연 1회 신고하여 다른 업종 대비 다소 높은 수준
  - 자산총액이 1,000억 미만인 사업체의 100.0%는 연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수행
    - 자산총액 1,000억 이상인 사업체의 4.2%는 연 1회 신고하여 다른 자산총액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연 2회 모두 수행
  - 매출액별로는 무응답인 경우를 제외하고 매출액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연 2회 모두 수행한 비중이 100.0%를 차지

<표 VII-10> 2016년 동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수행한 횟수

(단위: 명,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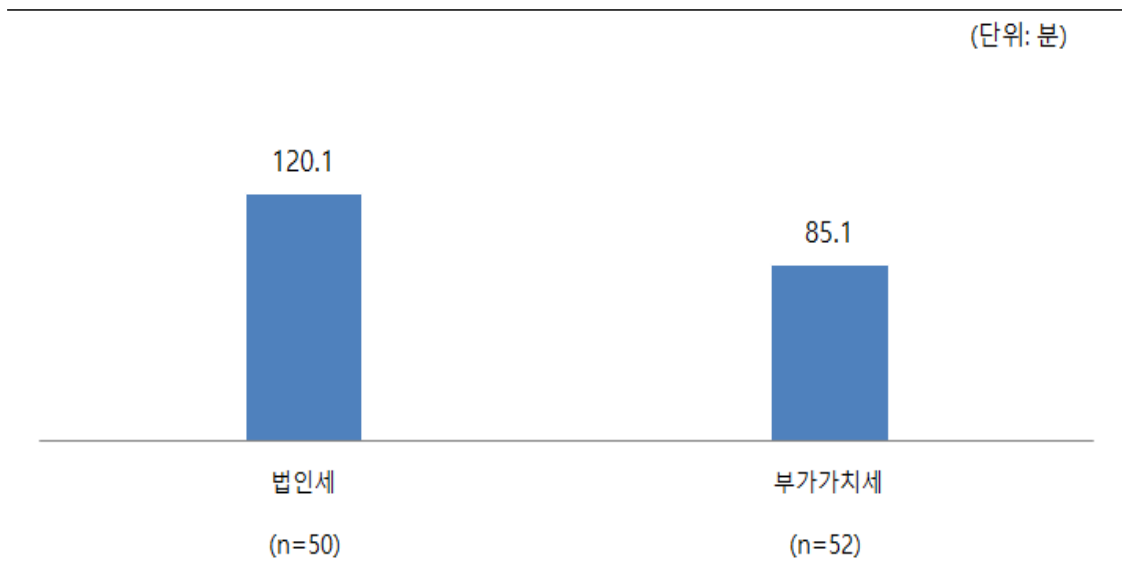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1회	2회	[평균]
전체		(52)	1.9	98.1	1.98
주요 업종	서비스업	(13)	0.0	100.0	2.00
	도소매업	(11)	0.0	100.0	2.00
	제조업	(9)	0.0	100.0	2.00
	기타	(19)	5.3	94.7	1.95
자산 총액	5억 미만	(4)	0.0	100.0	2.00
	5~100억 미만	(9)	0.0	100.0	2.00
	100~1,000억 미만	(15)	0.0	100.0	2.00
	1,000억 이상	(24)	4.2	95.8	1.96
중소기업 여부	해당	(36)	2.8	97.2	1.97
	비해당	(16)	0.0	100.0	2.00
매출액	5억 미만	-	-	-	-
	5~10억 미만	(5)	0.0	100.0	2.00
	10~30억 미만	(6)	0.0	100.0	2.00
	30~50억 미만	(3)	0.0	100.0	2.00
	50~100억 미만	(4)	0.0	100.0	2.00
	100~500억 미만	(16)	0.0	100.0	2.00
	500~1,000억 미만	(5)	0.0	100.0	2.00
	1,000억 이상	(11)	0.0	100.0	2.00
	무응답	(2)	50.0	50.0	1.50

### 3) 전자신고 시 1회당 사용시간

	<p><b>QB1-2.</b> 귀사가 전자신고 시 1회당 사용한 시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전자신고에 사용한 시간은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해 전송하는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합니다. 전자신고시 서식입력, 파일생성, 오류체크, 파일전송 단계별로 1회당 소요시간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회당 총 사용시간)</p>
---	---

- 전자신고 시 1회당 총 사용시간은 법인세가 부가가치세 대비 약 1.5배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
  - 법인세 전자신고의 총 사용시간은 120.1분, 부가가치세는 85.1분 수준

[그림 VII-21] 전자신고 시 1회당 사용시간\_총 사용시간



- 주요업종, 자산총액, 중소기업 여부, 매출액에 관계없이 대체로 법인세 전자신고가 부가가치세보다 더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
  - 주요업종별로는 기타 업종의 경우 법인세(208.7분)와 부가가치세(136.6분) 모두 다른 업종 대비 전자신고 총 사용시간이 길게 나타남
  - 자산총액별로는 자산총액이 1,000억 이상인 경우 법인세(188.6분), 부가가치세(134.8분) 모두 다른 자산총액 규모에 비해 총 사용시간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
  -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
  - 매출액별로는 대체로 법인세의 총 사용시간이 부가가치세에 비해 더 긴 것으로 조사
    - 매출액 50~100억 미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총 사용시간이 49.6분으로 법인세(45.4분)보다 상대적으로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


<표 VII-11> 전자신고 시 1회당 사용시간\_총 사용시간

(단위: 명, 분)

구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례수(명)	총 사용시간	사례수(명)	총 사용시간
전체		(50)	120.1	(52)	85.1
주요 업종	서비스업	(11)	47.8	(13)	48.0
	도소매업	(11)	92.2	(11)	73.8
	제조업	(9)	55.3	(9)	44.4
	기타	(19)	208.7	(19)	136.6
자산 총액	5억 미만	(4)	123.9	(4)	44.4
	5~100억 미만	(7)	32.2	(9)	42.3
	100~1,000억 미만	(15)	50.7	(15)	42.5
	1,000억 이상	(24)	188.6	(24)	134.8
중소기업 여부	해당	(35)	117.3	(36)	87.5
	비해당	(15)	126.5	(16)	80.2
매출액	5억 미만	-	-	-	-
	5~10억 미만	(5)	70.6	(5)	47.4
	10~30억 미만	(5)	158.6	(6)	68.2
	30~50억 미만	(3)	133.3	(3)	86.7
	50~100억 미만	(4)	45.4	(4)	49.6
	100~500억 미만	(16)	72.5	(16)	49.8
	500~1,000억 미만	(5)	129.2	(5)	93.6
	1,000억 이상	(10)	138.8	(11)	94.2
	무응답	(2)	541.0	(2)	512.0

주: 유형별 전자신고 총 사용시간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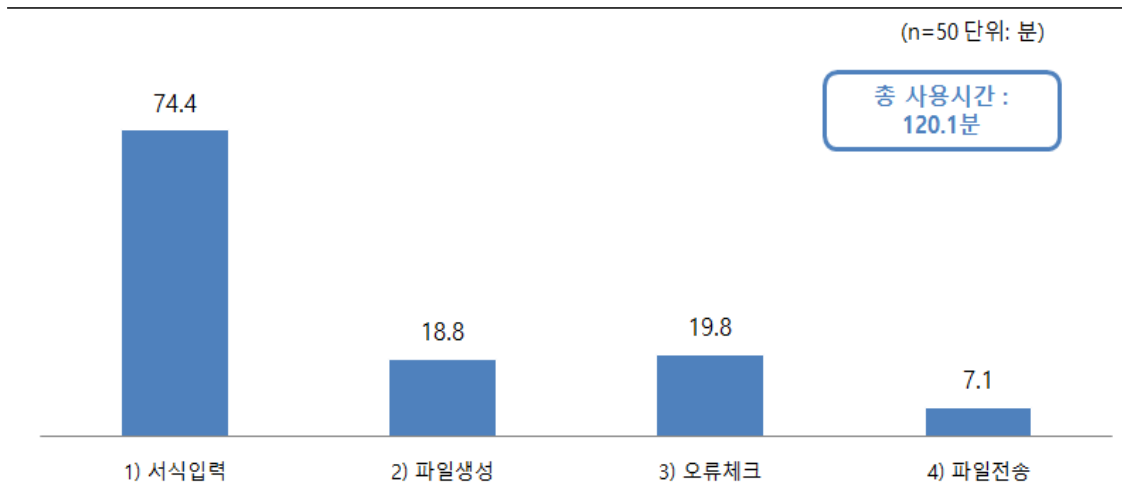
### 3-1) 법인세 전자신고 시 1회당 사용시간

	<p><b>QB1-2.</b> 귀사가 법인세 전자신고 시 1회당 사용한 시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법인세 전자신고에 사용한 시간은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법                  인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해                  전송하는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합니다.                  전자신고시 <u>서식입력, 파일생성, 오류체크, 파일전송</u> 단계별로 1회당 소요시간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p>
---	---

법인세를 전자신고한 사업체의 전자신고의 1회당 사용시간에서 서식입력이 가장 오래 소요

- 법인세 전자신고 시 전체 소요시간 120.1분 중 서식입력 시간이 74.4분으로 약 61.9%를 차지
  - 파일생성은 평균 18.8분, 오류체크는 19.8분, 파일전송은 7.1분 소요

[그림 VIII-22] 법인세 전자신고 시 1회당 사용시간



- 주요업종, 자산총액, 중소기업 여부, 매출액에 관계없이 서식입력이 가장 길게 소요
  - 주요업종별로 기타 업종의 경우 전자신고의 각 단계 모두 다른 업종 대비 소요시간이 긴 것으로 파악
    - 기타 업종의 서식입력 시간은 136.0분, 총 사용시간은 208.7분으로 조사
  - 자산총액이 1,000억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전자신고 각 단계의 소요시간이 긴 것으로 파악
    - 서식입력은 평균 117.0분, 총 사용시간은 188.6분 소요
  - 중소기업의 경우 오류체크 시간이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체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는 서식입력 소요시간이 더 긴 것으로 조사
    - 중소기업 서식입력시간 70.0분, 중소기업 비해당 사업체 84.6분
    - 중소기업 오류체크시간 22.3분, 중소기업 비해당 사업체 13.7분
  - 매출액별로는 10~30억 미만 사업체의 경우 전자신고 시 각 단계의 사용시간이 다른 매출액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파악


<표 VII-12> 법인세 전자신고 시 1회당 사용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사례수 (명)	1) 서식입력	2) 파일생성	3) 오류체크	4) 파일전송	1회당 총 사용시간
전체		(50)	74.4	18.8	19.8	7.1	120.1
주요 업종	서비스업	(11)	27.6	8.0	7.5	4.7	47.8
	도소매업	(11)	51.3	15.9	16.7	8.3	92.2
	제조업	(9)	29.7	17.2	5.3	3.1	55.3
	기타	(19)	136.0	27.6	35.4	9.7	208.7
자산 총액	5억 미만	(4)	106.3	6.5	9.3	1.8	123.9
	5~100억 미만	(7)	15.7	5.9	6.9	3.7	32.2
	100~1,000억 미만	(15)	25.1	12.0	7.6	6.0	50.7
	1,000억 이상	(24)	117.0	29.0	32.9	9.7	188.6
중소기업 여부	해당	(35)	70.0	18.5	22.3	6.5	117.3
	비해당	(15)	84.6	19.7	13.7	8.5	126.5
매출액	5억 미만	-	-	-	-	-	-
	5~10억 미만	(5)	52.0	4.4	10.2	4.0	70.6
	10~30억 미만	(5)	104.0	18.8	30.4	5.4	158.6
	30~50억 미만	(3)	110.0	17.0	5.3	1.0	133.3
	50~100억 미만	(4)	22.5	8.8	11.8	2.3	45.4
	100~500억 미만	(16)	45.9	12.0	10.2	4.4	72.5
	500~1,000억 미만	(5)	87.0	22.0	16.4	3.8	129.2
	1,000억 이상	(10)	89.4	23.9	17.2	8.3	138.8
무응답	(2)	227.5	99.5	152.5	61.5	5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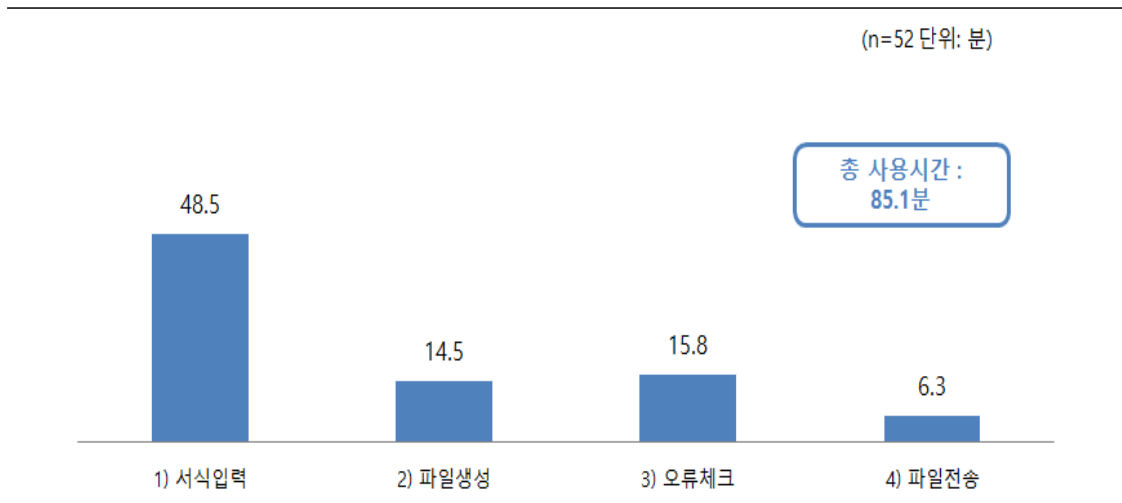
주: 전자신고 단계별 평균 사용시간을 산출

### 3-2)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1회당 사용시간

	<p><b>QB1-3.</b> 귀사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1회당 사용한 시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사용한 시간은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해 전송하는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합니다.                  전자신고시 서식입력, 파일생성, 오류체크, 파일전송 단계별로 1회당 소요시간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p>
---	---

-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한 사업체의 전자신고 1회당 사용시간에서 서식입력이 가장 오래 소요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전체 소요시간 85.1분 중 서식입력 시간이 48.5분으로 약 57.0%를 차지
    - 파일생성은 평균 14.5분, 오류체크는 15.8분, 파일전송은 6.3분 소요

[그림 VII-23]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1회당 사용시간



- 주요업종, 자산총액, 중소기업 여부, 매출액에 관계없이 서식입력 소요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남
  - 주요업종별로 기타 업종의 경우 전자신고의 각 단계 모두 다른 업종 대비 소요시간이 긴 것으로 파악됨
    - 서식입력 시간은 85.3분, 총 사용시간은 136.6분으로 조사
  - 자산총액이 1,000억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전자신고의 각 단계 모두 전반적으로 사용시간이 긴 것으로 파악
    - 서식입력 시간은 79.8분, 총 사용시간은 134.8분으로 조사
  - 중소기업 여부별로 두드러진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
  - 매출액별로는 총 사용시간이 500억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서식입력 소요시간이 55분 이상으로 다른 매출액 규모보다 서식입력 소요시간이 더 긴 것으로 조사



<표 VII-13>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1회당 사용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사례수 (명)	1) 서식입력	2) 파일생성	3) 오류체크	4) 파일전송	1회당 총 사용시간
전체		(52)	48.5	14.5	15.8	6.3	85.1
주요 업종	서비스업	(13)	27.3	9.1	7.4	4.2	48.0
	도소매업	(11)	31.2	13.6	22.4	6.6	73.8
	제조업	(9)	22.9	13.6	4.6	3.3	44.4
	기타	(19)	85.3	19.2	23.2	8.9	136.6
자산 총액	5억 미만	(4)	30.3	2.0	10.8	1.3	44.4
	5~100억 미만	(9)	21.7	10.8	5.1	4.7	42.3
	100~1,000억 미만	(15)	19.5	10.8	7.7	4.5	42.5
	1,000억 이상	(24)	79.8	20.3	25.8	8.9	134.8
중소기업 여부	해당	(36)	48.9	15.6	17.0	6.0	87.5
	비해당	(16)	47.8	12.2	13.2	7.0	80.2
매출액	5억 미만	-	-	-	-	-	-
	5~10억 미만	(5)	27.0	5.6	11.6	3.2	47.4
	10~30억 미만	(6)	45.0	16.0	3.5	3.7	68.2
	30~50억 미만	(3)	70.0	12.0	3.7	1.0	86.7
	50~100억 미만	(4)	27.5	12.5	7.3	2.3	49.6
	100~500억 미만	(16)	30.2	8.3	8.1	3.2	49.8
	500~1,000억 미만	(5)	57.0	16.4	16.6	3.6	93.6
	1,000억 이상	(11)	55.5	13.5	17.3	7.9	94.2
무응답	(2)	210.5	90.5	150.5	60.5	5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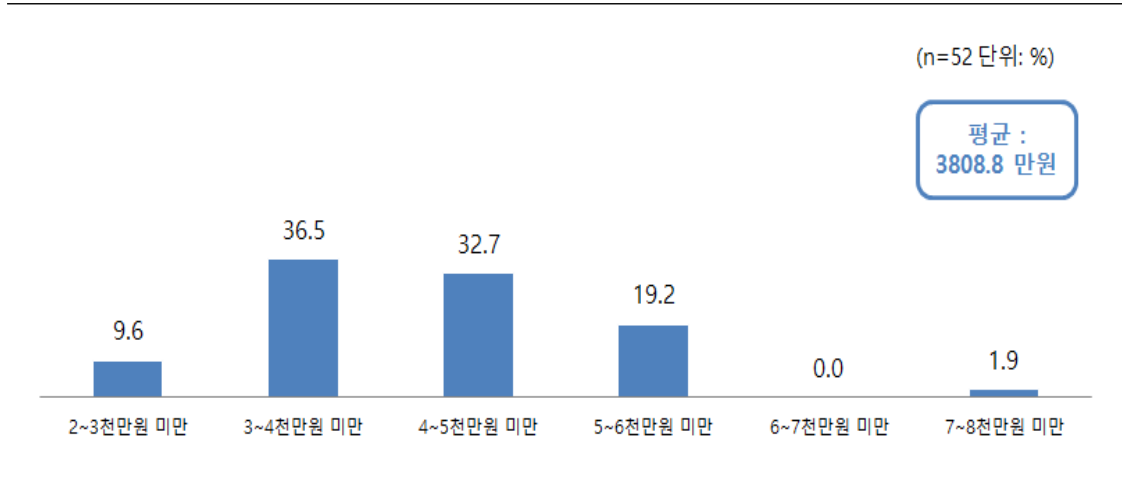
주: 전자신고 단계별 평균 사용시간을 산출

#### 4)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직원의 평균 연봉

	<b>QB1-4.</b>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직원의 연봉은 어느 정도입니까? 투입된 직원이 2명 이상일 경우 대략적인 평균 연봉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직원의 평균 연봉은 3808.8만원
-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직원의 연봉은 3~4천만원 미만(36.5%), 4~5천만원 미만(32.7%), 5~6천만원 미만(19.2%) 순으로 분포

[그림 VII-24]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직원의 평균 연봉




- 주요업종, 자산총액, 중소기업 여부, 매출액에 관계없이 대체로 평균 연봉은 3~4천만원 미만, 4~5천만원 미만이 높은 비중 차지
  - 주요업종별로는 서비스업(69.2%)과 제조업(55.6%)의 경우 평균 연봉을 3~4천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
    - 도소매업은 4~5천만원 미만(54.5%),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5~6천만원 미만 응답이 42.1%로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자산총액별로는 자산총액 5~100억 미만의 경우 평균 연봉 4천만원 미만인 비율이 100.0%, 자산총액 1,000억 이상의 경우에는 4천만원 이상이 83.4%로 파악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의 평균연봉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보다 높은 수준
  - 매출액별로 대체로 평균 연봉이 3~4천만원 미만, 4~5천만원 미만인 경우 높은 비중을 차지

<표 VII-14>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직원의 평균 연봉

(단위: 명, 만원)

구분		사례수 (명)	2~3천 만원 미만	3~4천 만원 미만	4~5천 만원 미만	5~6천 만원 미만	6~7천 만원 미만	7~8천 만원 미만	[평균]
전체		(52)	9.6	36.5	32.7	19.2	-	1.9	3,808.8
주요 업종	서비스업	(13)	0.0	69.2	23.1	7.7	-	0.0	3,461.5
	도소매업	(11)	27.3	18.2	54.5	0.0	-	0.0	3,409.1
	제조업	(9)	11.1	55.6	22.2	11.1	-	0.0	3,375.0
	기타	(19)	5.3	15.8	31.6	42.1	-	5.3	4,483.3
자산 총액	5억 미만	(4)	25.0	25.0	50.0	0.0	-	0.0	3,593.8
	5~100억 미만	(9)	22.2	77.8	0.0	0.0	-	0.0	2,844.4
	100~1,000억 미만	(15)	13.3	46.7	20.0	20.0	-	0.0	3,600.0
	1,000억 이상	(24)	0.0	16.7	50.0	29.2	-	4.2	4,336.8
중소기업 여부	해당	(36)	13.9	38.9	36.1	8.3	-	2.8	3,626.6
	비해당	(16)	0.0	31.3	25.0	43.8	-	0.0	4,218.8
매출액	5억 미만	-	-	-	-	-	-	-	-
	5~10억 미만	(5)	20.0	40.0	40.0	0.0	-	0.0	3,400.0
	10~30억 미만	(6)	16.7	16.7	16.7	50.0	-	0.0	4,083.3
	30~50억 미만	(3)	0.0	33.3	33.3	33.3	-	0.0	4,166.7
	50~100억 미만	(4)	0.0	75.0	25.0	0.0	-	0.0	3,400.0
	100~500억 미만	(16)	6.3	43.8	37.5	12.5	-	0.0	3,625.0
	500~1,000억 미만	(5)	20.0	0.0	40.0	20.0	-	20.0	4,400.0
	1,000억 이상	(11)	9.1	36.4	27.3	27.3	-	0.0	3,871.2
무응답	(2)	0.0	50.0	50.0	0.0	-	0.0	3,9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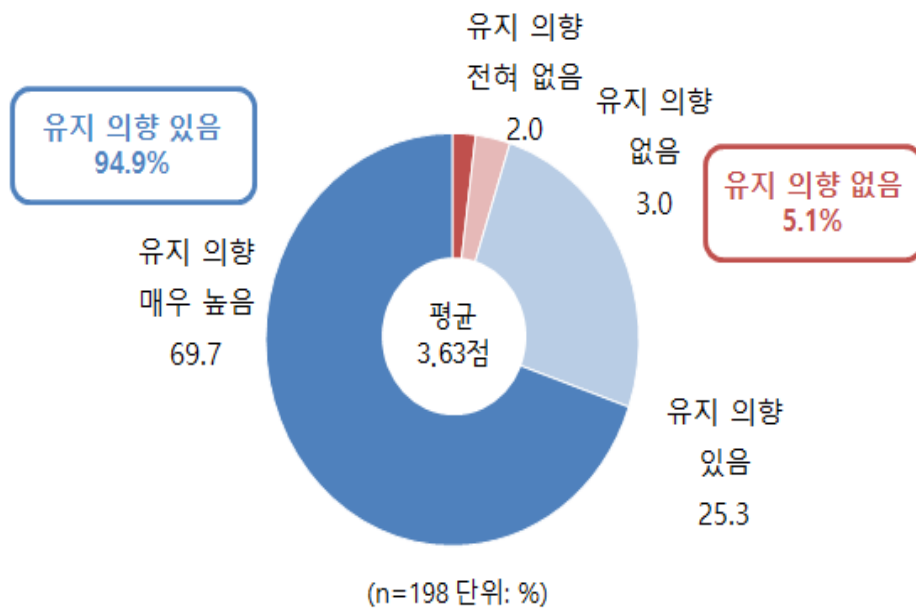
5)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 전자신고 유지할 의향

	<p><b>QB2.</b>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현재보다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 귀사는 전자신고를 유지할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p>
---	--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자의 94.9%가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에도 전자신고를 유지할 의향이 있음

- 전자신고를 유지할 의향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69.7%, 유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3% 수준
  - 유지할 의향이 없는 비율은 5.1%(유지 의향 없음 3.0% + 유지 의향 전혀 없음 2.0%) 정도

[그림 VII-25]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 전자신고 유지할 의향



- 자산총액 1,000억 이상, 매출액 500억 이상의 규모가 큰 사업체의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에도 전자신고 유지 의향이 높게 조사
  - 주요업종별로 전자신고 유지의향이 있는 응답비율이 90%를 상회하는 수준
  - 자산총액별로는 1,000억 이상의 경우 유지 의향이 있는 비율이 97.8%로 다른 자산총액 규모 대비 높은 수준
  - 중소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유지 의향 있는 비율이 약 95%로 높은 수준
  -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업체의 유지 의향이 높은 수준
    - 500~1,000억 미만과 1,000억 이상 업체의 유지 의향 있는 비율이 각각 100.0%를 차지함



<표 VII-15>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 전자신고 유지할 의향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명)	유지 의향 전혀 없음	유지 의향 없음	유지 의향 있음	유지 의향 매우 높음	의향 없음 (Bot2)	의향 있음 (Top2)	[평균]	
전체	(198)	2.0	3.0	25.3	69.7	5.1	94.9	3.63	
주요업종	서비스업	(36)	2.8	2.8	19.4	75.0	5.6	94.4	3.67
	도소매업	(44)	0.0	4.5	20.5	75.0	4.5	95.5	3.70
	제조업	(58)	5.2	1.7	24.1	69.0	6.9	93.1	3.57
	기타	(60)	0.0	3.3	33.3	63.3	3.3	96.7	3.60
자산총액	5억 미만	(34)	0.0	5.9	29.4	64.7	5.9	94.1	3.59
	5~100억 미만	(54)	3.7	3.7	27.8	64.8	7.4	92.6	3.54
	100~1,000억 미만	(65)	3.1	1.5	23.1	72.3	4.6	95.4	3.65
	1,000억 이상	(45)	0.0	2.2	22.2	75.6	2.2	97.8	3.73
중소기업 여부	해당	(154)	1.9	3.2	27.9	66.9	5.2	94.8	3.60
	비해당	(44)	2.3	2.3	15.9	79.5	4.5	95.5	3.73
매출액	5억 미만	(16)	0.0	6.3	12.5	81.3	6.3	93.8	3.75
	5~10억 미만	(18)	0.0	5.6	44.4	50.0	5.6	94.4	3.44
	10~30억 미만	(23)	0.0	4.3	39.1	56.5	4.3	95.7	3.52
	30~50억 미만	(16)	6.3	0.0	18.8	75.0	6.3	93.8	3.63
	50~100억 미만	(16)	6.3	0.0	25.0	68.8	6.3	93.8	3.56
	100~500억 미만	(50)	4.0	6.0	22.0	68.0	10.0	90.0	3.54
	500~1,000억 미만	(15)	0.0	0.0	33.3	66.7	0.0	100.0	3.67
	1,000억 이상	(37)	0.0	0.0	13.5	86.5	0.0	100.0	3.86
무응답	(7)	0.0	0.0	42.9	57.1	0.0	100.0	3.57	

주: 유지의향을 매우 높음(4점)~전혀 없음(1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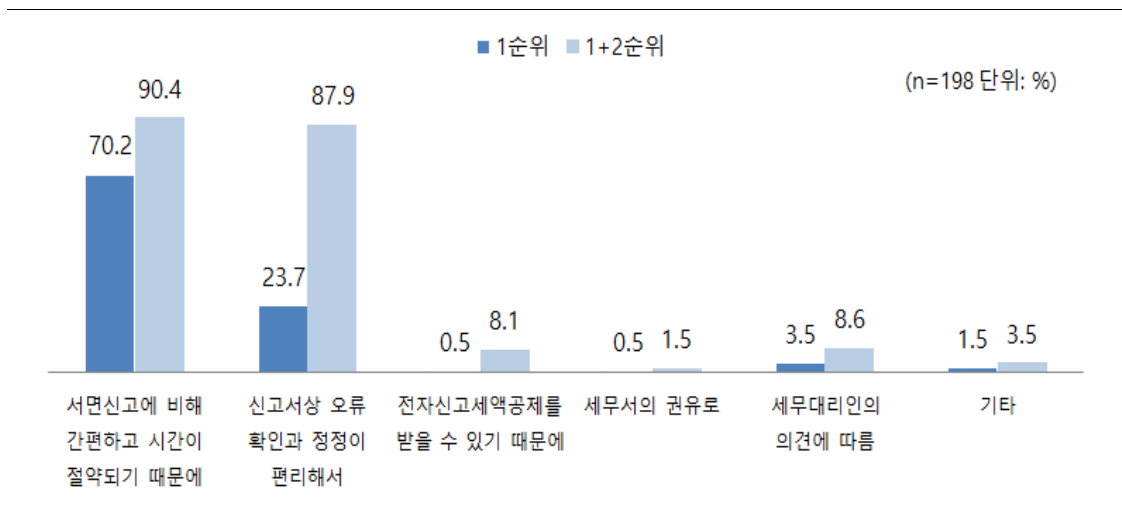
## 6) 전자신고를 선택한 주된 이유

 	<p><b>QB3.</b> 귀사가 전자신고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부터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p>
--	---

-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자의 전자신고를 선택한 주된 1순위 이유는 ‘서면 신고에 비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가 70.2%를 차지

- 1+2순위(중복응답) 기준으로도 ‘서면신고에 비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선택한 비율이 9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신고서상 오류 확인과 정정이 편리해서’ 전자신고 선택한 비율은 1순위 기준 23.7%, 1+2순위(중복응답) 기준 87.9%로 파악

[그림 VII-26] 전자신고를 선택한 주된 이유(1순위, 1+2순위)



-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체(90.9%) 및 매출액 500~1,000억 미만 사업체(93.3%)의 경우 ‘신고서상 오류확인과 정정이 편리해서’ 전자신고를 주로 선택
  - 주요업종별로 서비스업(94.4%)과 기타(91.7%) 업종인 경우 ‘서면신고에 비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
  - 자산총액 1,000억 이상인 경우 ‘서면신고에 비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93.3%), ‘신고서상 오류확인과 정정이 편리해서’(93.3%) 전자신고를 선택한 비율이 다른 자산총액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여부별로 전자신고를 선택한 주된 이유에 대한 차이가 존재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경우 ‘서면신고에 비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에 전자신고를 선택한 비율이 90.9%로 조사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신고서상 오류 확인과 정정이 편리해서’의 전자신고를 선택한 90.9%로 조사
  - 매출액별로 대체로 ‘서면신고에 비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 매출액 50~100억 미만(87.5%), 500~1,000억 미만(93.3%)의 경우 ‘신고서상 오류 확인 및 정정이 편리해서’ 선택한 비율이 더 높게 조사


<표 VII-16> 전자신고를 선택한 주된 이유\_1+2 순위(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서면 신고에 비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서	신고서상 오류 확인 편리	전자 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세무서의 권유로	세무 대리인의 의견	기타
전체		(198)	90.4	87.9	8.1	1.5	8.6	3.5
주요 업종	서비스업	(36)	94.4	86.1	8.3	0.0	8.3	2.8
	도소매업	(44)	88.6	88.6	4.5	2.3	11.4	4.5
	제조업	(58)	87.9	87.9	12.1	1.7	6.9	3.4
	기타	(60)	91.7	88.3	6.7	1.7	8.3	3.3
자산총액	5억 미만	(34)	91.2	85.3	5.9	2.9	11.8	2.9
	5~100억 미만	(54)	90.7	88.9	11.1	0.0	9.3	0.0
	100~1,000억 미만	(65)	87.7	84.6	7.7	3.1	9.2	7.7
	1,000억 이상	(45)	93.3	93.3	6.7	0.0	4.4	2.2
중소 기업 여부	해당	(154)	90.9	87.0	7.8	1.3	9.7	3.2
	비해당	(44)	88.6	90.9	9.1	2.3	4.5	4.5
매출액	5억 미만	(16)	93.8	93.8	0.0	6.3	6.3	0.0
	5~10억 미만	(18)	94.4	83.3	11.1	0.0	5.6	5.6
	10~30억 미만	(23)	82.6	82.6	17.4	0.0	13.0	4.3
	30~50억 미만	(16)	87.5	75.0	12.5	0.0	18.8	6.3
	50~100억 미만	(16)	75.0	87.5	12.5	6.3	18.8	0.0
	100~500억 미만	(50)	98.0	90.0	6.0	0.0	4.0	2.0
	500~1,000억 미만	(15)	80.0	93.3	6.7	0.0	6.7	13.3
	1,000억 이상	(37)	91.9	91.9	5.4	2.7	5.4	2.7
무응답	(7)	100.0	85.7	0.0	0.0	14.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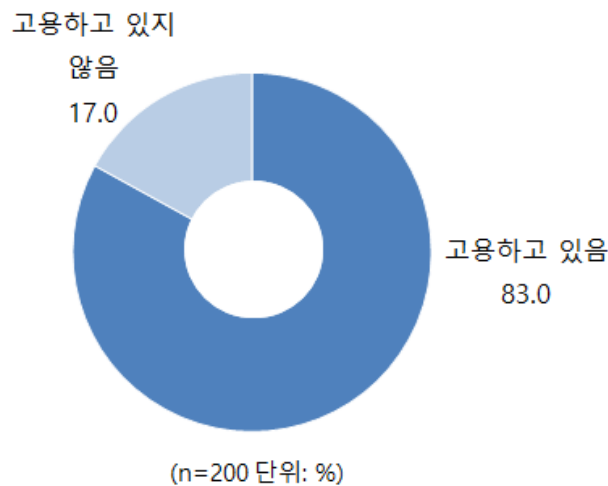
## 라. 전자신고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 1) 세무업무 처리 또는 조언을 위한 외부의 세무대리인 고용 여부

	QC1. 귀사는 세무업무를 처리 또는 조언해주는 외부의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고 계십니까?
---	--

- 전체 법인사업체 83.0%가 세무업무 처리 또는 조언을 위해 외부 세무대리인 고용
  - 세무업무 처리 혹은 조언을 위해 외부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는 비율은 17.0% 수준

[그림 VII-27] 세무업무 처리 또는 조언을 위한 외부의 세무대리인 고용 여부




- 주요업종, 자산총액, 중소기업 여부, 매출액에 관계없이 대체로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세무대리인을 고용한 비율이 93.1%로 다른 업종 대비 높은 수준
  - 자산총액이 낮을수록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조사
  - 중소기업 여부별로 두드러진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
  - 매출액 5억 미만의 사업체에서 세무대리인을 고용한 비율이 100.0%로 높은 수준

<표 VII-17> 세무업무 처리 또는 조언을 위한 외부의 세무대리인 고용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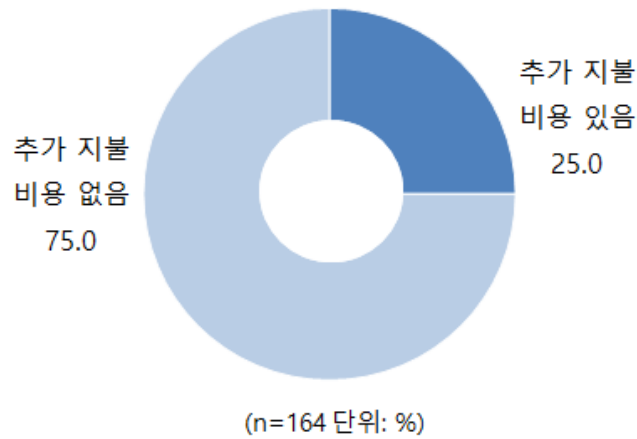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고용하고 있음	고용하고 있지 않음
전체		(200)	83.0	17.0
주요 업종	서비스업	(37)	81.1	18.9
	도소매업	(44)	77.3	22.7
	제조업	(58)	93.1	6.9
	기타	(61)	78.7	21.3
자산 총액	5억 미만	(35)	94.3	5.7
	5~100억 미만	(54)	90.7	9.3
	100~1,000억 미만	(66)	83.3	16.7
	1,000억 이상	(45)	64.4	35.6
중소기업 여부	해당	(155)	83.2	16.8
	비해당	(45)	82.2	17.8
매출액	5억 미만	(17)	100.0	0.0
	5~10억 미만	(19)	78.9	21.1
	10~30억 미만	(23)	87.0	13.0
	30~50억 미만	(16)	81.3	18.8
	50~100억 미만	(16)	81.3	18.8
	100~500억 미만	(50)	76.0	24.0
	500~1,000억 미만	(15)	80.0	20.0
	1,000억 이상	(37)	86.5	13.5
	무응답	(7)	85.7	14.3

2) 전자신고를 위해 고정비용 외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추가 비용 여부

	<p><b>QC2.</b> 귀사가 2016년 사업연도에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전자 신고를 위하여 고정비용 외에 추가로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이 있습니까?</p>
---	---

-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75.0%가 전자 신고를 위해 고정비용 외에 세무대리인에게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 추가로 비용을 지불한 비중은 25.0% 수준

[그림 VII-28] 전자신고를 위해 고정비용 외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추가 비용 여부




- 주요업종, 자산총액, 중소기업 여부, 매출액에 관계없이 전자신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
  - 주요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경우 추가 지불비용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79.3%로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 대비 높은 수준
  - 자산총액별로는 자산총액 1,000억 이상의 경우 추가 지불비용이 없는 비율이 79.3%로 다른 자산총액 규모 대비 높은 수준
    - 100~1,000억 미만의 경우에는 70.4%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중소기업 여부별로는 중소기업 사업체(74.2%)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77.8%)의 응답비율은 비슷한 수준
  - 매출액별로는 매출액 30~50억 미만의 사업체인 경우 추가 지불비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4.6%로 높은 수준
    - 반면, 매출액 5~10억 미만의 경우 64.3%로 낮게 파악

<표 VII-18> 전자신고를 위해 고정비용 외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추가 비용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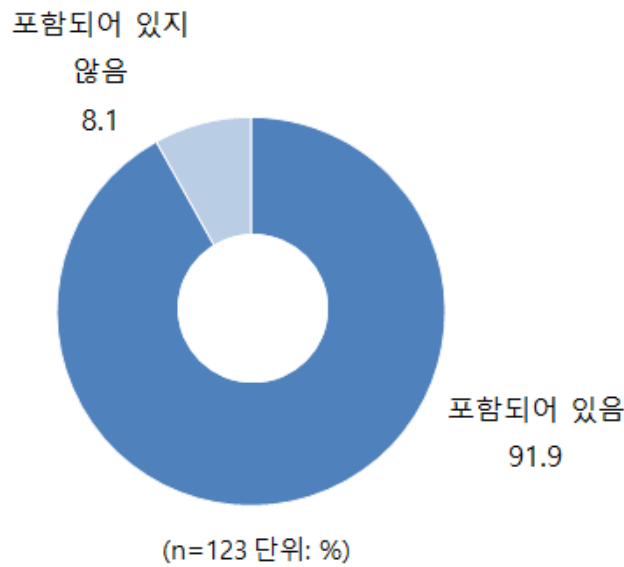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추가 지불비용 있음	추가 지불비용 없음
전체		(164)	25.0	75.0
주요업종	서비스업	(29)	20.7	79.3
	도소매업	(34)	26.5	73.5
	제조업	(54)	27.8	72.2
	기타	(47)	23.4	76.6
자산총액	5억 미만	(32)	21.9	78.1
	5~100억 미만	(49)	24.5	75.5
	100~1,000억 미만	(54)	29.6	70.4
	1,000억 이상	(29)	20.7	79.3
중소기업 여부	해당	(128)	25.8	74.2
	비해당	(36)	22.2	77.8
매출액	5억 미만	(16)	31.3	68.8
	5~10억 미만	(14)	35.7	64.3
	10~30억 미만	(20)	25.0	75.0
	30~50억 미만	(13)	15.4	84.6
	50~100억 미만	(13)	30.8	69.2
	100~500억 미만	(38)	21.1	78.9
	500~1,000억 미만	(12)	16.7	83.3
	1,000억 이상	(32)	28.1	71.9
	무응답	(6)	16.7	83.3

3)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 중 전자신고 업무비용의 포함 여부

	<p><b>QC3.</b> 귀사가 세금신고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에는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	---

- 세무대리인에게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업체의 91.9%는 전자신고 업무비용이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
  - 고용한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 중 전자신고 업무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8.1% 정도에 불과함

[그림 VII-29]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 중 전자신고 업무비용의 포함 여부




- 주요업종, 자산총액, 중소기업 여부, 매출액에 관계없이 전자신고 업무비용에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지불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경우 세무대리인 지불비용 중 전자신고 업무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7%로 대부분을 차지
  - 자산총액별로는 자산총액 100~1,000억 미만의 경우(86.8%)를 제외하고 전자신고 업무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
  - 중소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전자신고 업무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수준(중소기업 해당 91.6%, 중소기업 비해당 92.9%)
  - 매출액 5억 미만과 5~10억 미만의 모든 사업체의 경우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 중 전자신고 업무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

<표 VII-19>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 중 전자신고 업무비용의 포함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포함되어 있음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전체		(123)	91.9	8.1
주요 업종	서비스업	(23)	95.7	4.3
	도소매업	(25)	88.0	12.0
	제조업	(39)	89.7	10.3
	기타	(36)	94.4	5.6
자산 총액	5억 미만	(25)	96.0	4.0
	5~100억 미만	(37)	94.6	5.4
	100~1,000억 미만	(38)	86.8	13.2
	1,000억 이상	(23)	91.3	8.7
중소기업 여부	해당	(95)	91.6	8.4
	비해당	(28)	92.9	7.1
매출액	5억 미만	(11)	100.0	0.0
	5~10억 미만	(9)	100.0	0.0
	10~30억 미만	(15)	86.7	13.3
	30~50억 미만	(11)	90.9	9.1
	50~100억 미만	(9)	77.8	22.2
	100~500억 미만	(30)	93.3	6.7
	500~1,000억 미만	(10)	80.0	20.0
	1,000억 이상	(23)	95.7	4.3
무응답		(5)	10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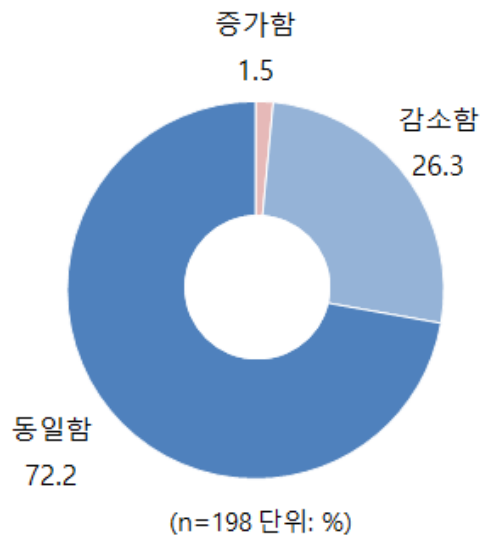
#### 4) 전자신고시 세무관련 업무비용 증감에 대한 의견

	<p><b>QC4.</b>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에 비하여 귀사의 세무 관련 업무비용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감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	--

전자신고를 하는 법인 사업체의 98.5%는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와 비교하여 세무관련 업무비용이 동일하거나 감소한다고 인식

- 동일하다는 응답이 72.2%, 감소한다는 응답이 26.3%로 조사됨
-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와 비교하여 세무관련 업무비용이 증가한다는 의견은 1.5%에 불과함

[그림 VII-30] 전자신고시 세무관련 업무비용 증감에 대한 의견




- 주요업종, 자산총액, 중소기업 여부, 매출액에 관계없이 업무비용이 동일하거나 감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
  - 주요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경우 모두 세무관련 업무비용이 동일하거나 감소한다고 인식(동일함 63.9% + 감소함 36.1%)
  - 자산총액별로는 5억 이상의 경우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업무비용이 동일하다는 의견이 70%를 상회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의 경우 모두 세무관련 업무비용이 동일하거나 감소한다고 인식(동일함 75.0% + 감소함 25.0%)
  - 매출액별로는 매출액 10~30억 미만, 30~50억 미만, 500~1,000억 미만을 제외하고 모두 업무비용이 동일하거나 감소한다고 인식

<표 VII-20> 전자신고시 세무관련 업무비용 증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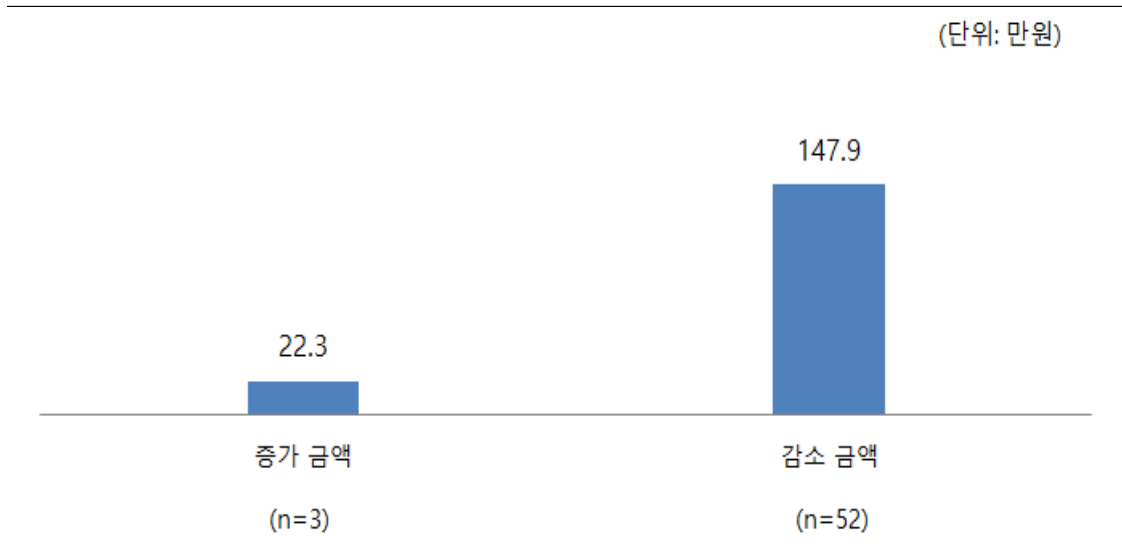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증가함	감소함	동일함
전체		(198)	1.5	26.3	72.2
주요 업종	서비스업	(36)	0.0	36.1	63.9
	도소매업	(44)	2.3	27.3	70.5
	제조업	(58)	1.7	19.0	79.3
	기타	(60)	1.7	26.7	71.7
자산 총액	5억 미만	(34)	2.9	29.4	67.6
	5~100억 미만	(54)	1.9	20.4	77.8
	100~1,000억 미만	(65)	1.5	29.2	69.2
	1,000억 이상	(45)	0.0	26.7	73.3
중소기업 여부	해당	(154)	1.9	26.6	71.4
	비해당	(44)	0.0	25.0	75.0
매출액	5억 미만	(16)	0.0	37.5	62.5
	5~10억 미만	(18)	0.0	16.7	83.3
	10~30억 미만	(23)	4.3	26.1	69.6
	30~50억 미만	(16)	6.3	31.3	62.5
	50~100억 미만	(16)	0.0	56.3	43.8
	100~500억 미만	(50)	0.0	16.0	84.0
	500~1,000억 미만	(15)	6.7	13.3	80.0
	1,000억 이상	(37)	0.0	29.7	70.3
	무응답	(7)	0.0	28.6	71.4

5)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감 금액

	<p><b>QC4-1/QC4-2.</b> 회사담당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에 비하여 세무 관련 업무비용이 연간 얼마나 증가 혹은 감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	--

- 전자신고 시 서면신고에 비해 세무 관련 업무의 평균 감소 금액은 147.9만원으로 증가 금액(22.3만원)에 비해 7배 정도 높은 수준

[그림 VII-31]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감 금액\_평균





- 주요업종, 자산총액, 중소기업 여부, 매출액에 관계없이 세무 관련 업무의 평균 감소 금액이 증가 금액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평균 업무 감소 비용이 412.7만원으로 가장 높게 조사
  - 자산총액별로는 100~1,000억 미만인 275.4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체보다 업무 감소 비용을 약 6배 이상 높게 인식
    - 중소기업 평균 업무 감소 비용 179.7만원, 중소기업 비해당 사업체 29.5만원
  - 매출액별로는 50~100억 미만 사업체의 평균 업무 감소 비용이 412.9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VII-21>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감 금액\_평균표

(단위: 명,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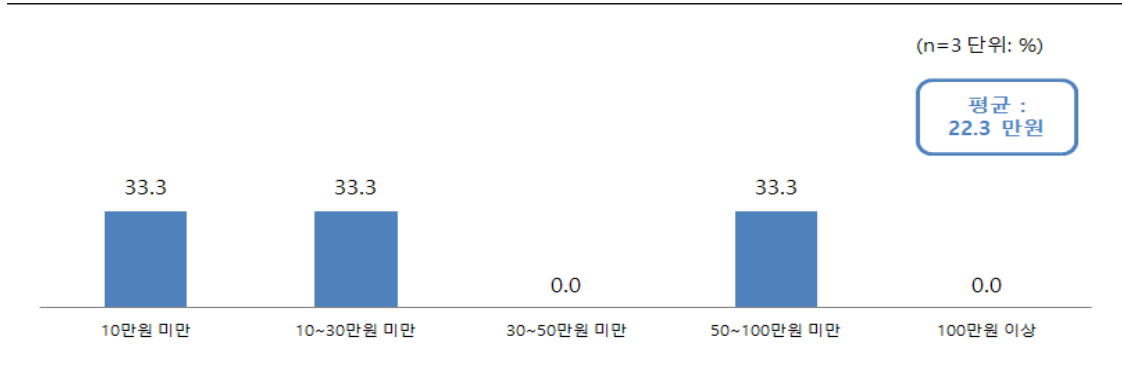
구분		업무비용 증가		업무비용 감소	
		사례수(명)	평균 금액	사례수(명)	평균 금액
전체		(3)	22.3	(52)	147.9
주요 업종	서비스업	-	-	(13)	9.5
	도소매업	(1)	16.0	(12)	46.2
	제조업	(1)	50.0	(11)	412.7
	기타	(1)	1.0	(16)	154.6
자산 총액	5억 미만	(1)	1.0	(10)	38.9
	5~100억 미만	(1)	16.0	(11)	149.3
	100~1,000억 미만	(1)	50.0	(19)	275.4
	1,000억 이상	-	-	(12)	35.8
중소기업 여부	해당	(3)	22.3	(41)	179.7
	비해당	-	-	(11)	29.5
매출액	5억 미만	-	-	(6)	57.8
	5~10억 미만	-	-	(3)	342.0
	10~30억 미만	(1)	1.0	(6)	35.2
	30~50억 미만	(1)	50.0	(5)	219.6
	50~100억 미만	-	-	(9)	412.9
	100~500억 미만	-	-	(8)	121.3
	500~1,000억 미만	(1)	16.0	(2)	9.0
	1,000억 이상	-	-	(11)	25.5
무응답	-	-	(2)	12.5	

5-1)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가 금액

 	<p><b>QC4-1.</b> 회사담당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에 비하여 세무 관련 업무비용이 연간 얼마나 증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	--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업무비용이 증가한다고 응답한 사업체(전체 법인사업체의 1.5%)의 업무비용 증가 금액은 평균 22.3만원 수준

[그림 VII-32]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가 금액



-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업무비용이 증가한다고 응답한 사업체 모두 중소기업
  -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가 금액을 1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업체는 주요업종이 서비스 및 도소매 및 제조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으로 파악
    - 자산총액은 5억 미만, 매출액은 10~30억 미만으로 조사


<표 VII-22>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가 금액

(단위: 명,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10만원 미만	10~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 만원 이상	[평균]
전체		(3)	33.3	33.3	-	33.3	-	22.3
주요 업종	서비스업	-	-	-	-	-	-	-
	도소매업	(1)	-	100.0	-	-	-	16.0
	제조업	(1)	-	-	-	100.0	-	50.0
	기타	(1)	100.0	-	-	-	-	1.0
자산 총액	5억 미만	(1)	100.0	-	-	-	-	1.0
	5~100억 미만	(1)	-	100.0	-	-	-	16.0
	100~1,000억 미만	(1)	-	-	-	100.0	-	50.0
	1,000억 이상	-	-	-	-	-	-	-
중소기업 여부	해당	(3)	33.3	33.3	-	33.3	-	22.3
	비해당	-	-	-	-	-	-	-
매출액	5억 미만	-	-	-	-	-	-	-
	5~10억 미만	-	-	-	-	-	-	-
	10~30억 미만	(1)	100.0	-	-	-	-	1.0
	30~50억 미만	(1)	-	-	-	100.0	-	50.0
	50~100억 미만	-	-	-	-	-	-	-
	100~500억 미만	-	-	-	-	-	-	-
	500~1,000억 미만	(1)	-	100.0	-	-	-	16.0
	1,000억 이상	-	-	-	-	-	-	-
무응답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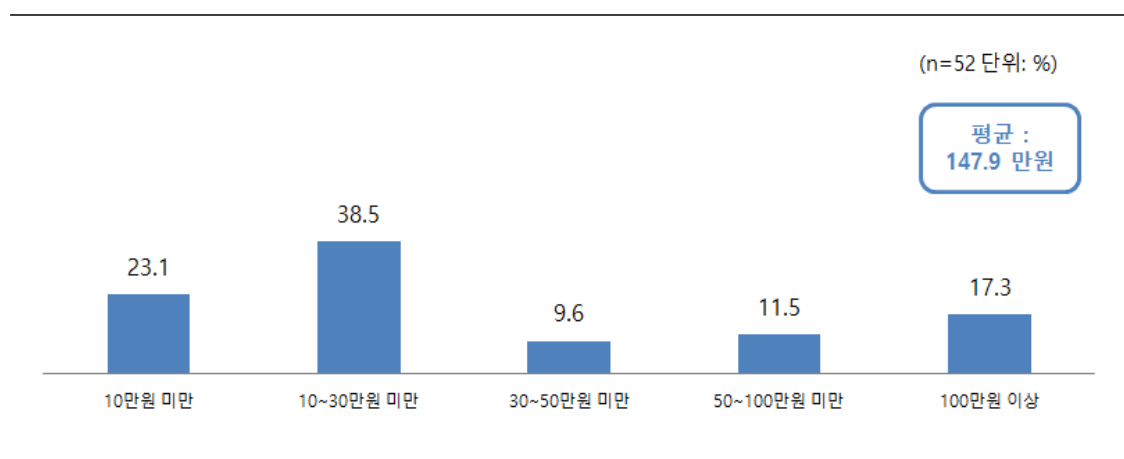
- 업무비용 증가 금액을 10~3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업체의 주요업종은 도  
소매업으로 파악
  - 자산총액이 5~100억 미만이고, 매출액은 500~1,000억 미만으로 파악
- 업무비용 증가 금액을 50~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업체의 주요업종은 제  
조업으로 파악
  - 자산총액은 100~1,000억 미만이며, 매출액은 30~50억 미만으로 조사

### 5-2)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감소 금액

	<b>QC4.2.</b> 회사담당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에 비하여 세무 관련 업무비용이 연간 얼마나 감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업무비용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사업체(전체 법인사업  
체의 26.3%)의 평균 감소금액은 147.9만원 수준
-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 감소 비용은 10~30만원 미만 38.5%, 10만원  
미만 23.1%, 100만원 이상 17.3% 순으로 조사

[그림 VII-33]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감소 금액



- 주요업종이 제조업인 사업체와 매출액이 50~100억 미만인 사업체의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의 평균 감소 비용이 각각 412.7만원, 412.9만원으로 높게 파악


- 업종별로 서비스업(92.4%)과 도소매업(83.4%)의 경우에 평균 감소 비용을 3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수준
  - 반면, 제조업의 경우는 30만원 이상 응답비율이 72.8%로 높게 파악
- 중소기업 여부별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감소 비용을 5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7%,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는 18.2%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평균 감소 비용을 더 높게 인지
- 매출액별로는 매출액 50~100억 미만인 사업체의 50만원 이상 감소한다는 응답이 55.5%로 다른 매출액 규모 대비 높은 수준

<표 VII-23>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감소금액

(단위: 명,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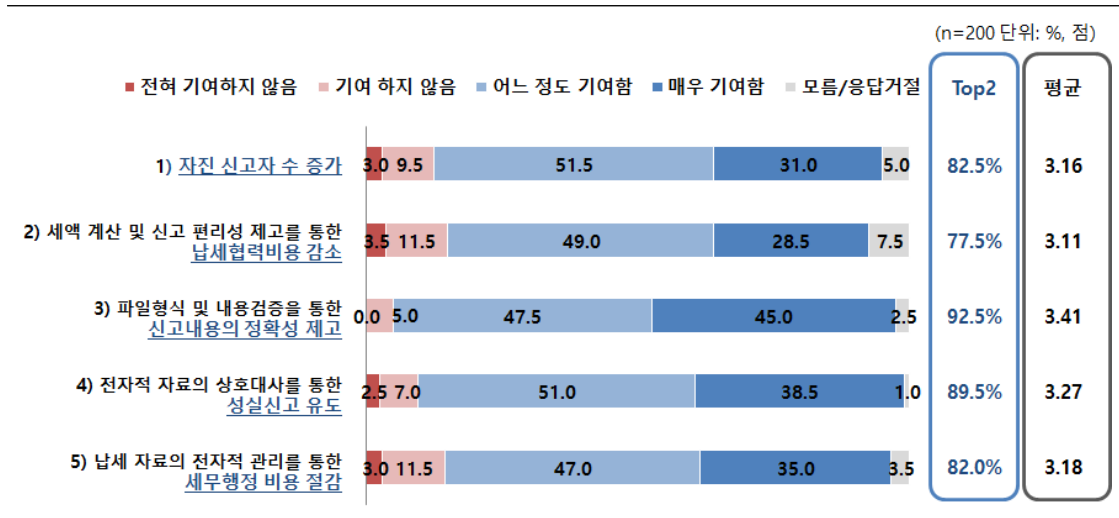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10만원 미만	10~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 만원 이상	[평균]
전체		(52)	23.1	38.5	9.6	11.5	17.3	147.9
주요 업종	서비스업	(13)	46.2	46.2	0.0	7.7	0.0	9.5
	도소매업	(12)	41.7	41.7	8.3	0.0	8.3	46.2
	제조업	(11)	0.0	27.3	18.2	27.3	27.3	412.7
	기타	(16)	6.3	37.5	12.5	12.5	31.3	154.6
자산 총액	5억 미만	(10)	40.0	50.0	0.0	0.0	10.0	38.9
	5~100억 미만	(11)	0.0	63.6	18.2	0.0	18.2	149.3
	100~1,000억 미만	(19)	36.8	10.5	10.5	21.1	21.1	275.4
	1,000억 이상	(12)	8.3	50.0	8.3	16.7	16.7	35.8
중소기업 여부	해당	(41)	26.8	36.6	4.9	12.2	19.5	179.7
	비해당	(11)	9.1	45.5	27.3	9.1	9.1	29.5
매출액	5억 미만	(6)	33.3	50.0	0.0	0.0	16.7	57.8
	5~10억 미만	(3)	0.0	66.7	0.0	0.0	33.3	342.0
	10~30억 미만	(6)	16.7	33.3	16.7	16.7	16.7	35.2
	30~50억 미만	(5)	40.0	0.0	20.0	20.0	20.0	219.6
	50~100억 미만	(9)	0.0	33.3	11.1	33.3	22.2	412.9
	100~500억 미만	(8)	25.0	37.5	12.5	0.0	25.0	121.3
	500~1,000억 미만	(2)	50.0	50.0	0.0	0.0	0.0	9.0
	1,000억 이상	(11)	27.3	45.5	9.1	9.1	9.1	25.5
	무응답	(2)	50.0	50.0	0.0	0.0	0.0	12.5

## 6) 전자신고의 기여도

	<p><b>QC5.</b> 귀사는 전자신고가 다음의 측면에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b>QC5-1.</b> 자진신고자 수 증가</p> <p><b>QC5-2.</b> 세액 계산 및 신고의 편리성 제고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감소</p> <p><b>QC5-3.</b> 파일형식 및 내용검증을 통한 신고내용의 정확성 제고</p> <p><b>QC5-4.</b> 전자적 자료의 상호대사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p> <p><b>QC5-5.</b> 납세 자료의 전자적 관리를 통한 세무행정 비용 절감</p>
---	--

- 전체 법인사업체의 상당수가 전자신고의 기여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 특히, ‘파일형식 및 내용검증을 통한 신고내용의 정확성 제고’의 항목에 대한 기여도가 92.5%(어느정도 기여함 47.5% + 매우 기여함 45.0%)로 가장 높은 수준
  - 이어 ‘전자적 자료의 상호대사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89.5%), ‘자진 신고자 수 증가’(82.5%), ‘납세 자료의 전자적 관리를 통한 세무행정의 비용 절감’(82.0%)의 순으로 조사

[그림 VII-34] 전자신고의 기여도



- 주요업종, 자산총액, 중소기업 여부, 매출액에 관계없이 대체로 ‘신고내용의 정확성 제고’ 측면에서의 전자신고 기여도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의 전자신고 기여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

- 자산총액별로는 자산총액 5억 미만을 제외하고 ‘신고내용의 정확성 제고’ 항목의 긍정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
  - 자산총액 5억 미만인 경우에는 ‘성실신고 유도’의 긍정 응답이 97.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중소기업은 ‘납세협력 비용이 감소’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보다 전자신고의 기여도가 높다고 인식
- 매출액별로 매출액 30~50억 미만인 사업체가 ‘자진신고자 수 증가’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자신고 기여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


<표 VII-24> 전자신고의 기여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명)	자진 신고자 수 증가		세액 계산 및 신고의 편리성 제고로 납세협력 비용 감소		파일 형식, 내용검증을 통한 신고내용의 정확성 제고		전자적 자료의 상호대사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		납세 자료의 전자적 관리로 세무행정 비용 절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전체	(200)	82.5	3.16	77.5	3.11	92.5	3.41	89.5	3.27	82.0	3.18	
주요업종	서비스업	(37)	75.7	2.97	70.3	2.94	94.6	3.35	83.8	3.22	81.1	3.23
	도소매업	(44)	77.3	3.10	79.5	3.12	93.2	3.49	88.6	3.27	79.5	3.14
	제조업	(58)	86.2	3.24	74.1	3.06	89.7	3.40	89.7	3.30	81.0	3.16
	기타	(61)	86.9	3.26	83.6	3.25	93.4	3.40	93.4	3.27	85.2	3.21
자산총액	5억 미만	(35)	88.6	3.06	77.1	3.13	94.3	3.35	97.1	3.40	80.0	3.21
	5~100억 미만	(54)	83.3	3.13	74.1	3.04	94.4	3.38	88.9	3.13	81.5	3.13
	100~1,000억 미만	(66)	77.3	3.14	80.3	3.13	92.4	3.52	87.9	3.29	80.3	3.13
	1,000억 이상	(45)	84.4	3.33	77.8	3.15	88.9	3.34	86.7	3.30	86.7	3.29
중소기업 여부	해당	(155)	83.2	3.16	75.5	3.07	93.5	3.42	90.3	3.26	83.2	3.22
	비해당	(45)	80.0	3.17	84.4	3.23	88.9	3.36	86.7	3.29	77.8	3.07
매출액	5억 미만	(17)	82.4	3.19	70.6	3.29	88.2	3.35	88.2	3.18	88.2	3.35
	5~10억 미만	(19)	78.9	2.95	78.9	3.22	100.0	3.42	89.5	3.42	63.2	3.07
	10~30억 미만	(23)	82.6	3.29	82.6	2.87	91.3	3.14	95.7	3.04	82.6	2.91
	30~50억 미만	(16)	75.0	3.00	87.5	3.53	100.0	3.50	100.0	3.50	100.0	3.63
	50~100억 미만	(16)	87.5	3.13	75.0	2.93	93.8	3.53	93.8	3.31	87.5	3.44
	100~500억 미만	(50)	82.0	3.17	72.0	2.96	90.0	3.42	84.0	3.14	80.0	3.09
	500~1,000억 미만	(15)	86.7	3.13	80.0	3.21	86.7	3.40	86.7	3.40	86.7	3.20
	1,000억 이상	(37)	81.1	3.18	83.8	3.19	94.6	3.49	86.5	3.33	78.4	3.14
무응답	(7)	100.0	3.71	57.1	3.00	85.7	3.50	100.0	3.43	85.7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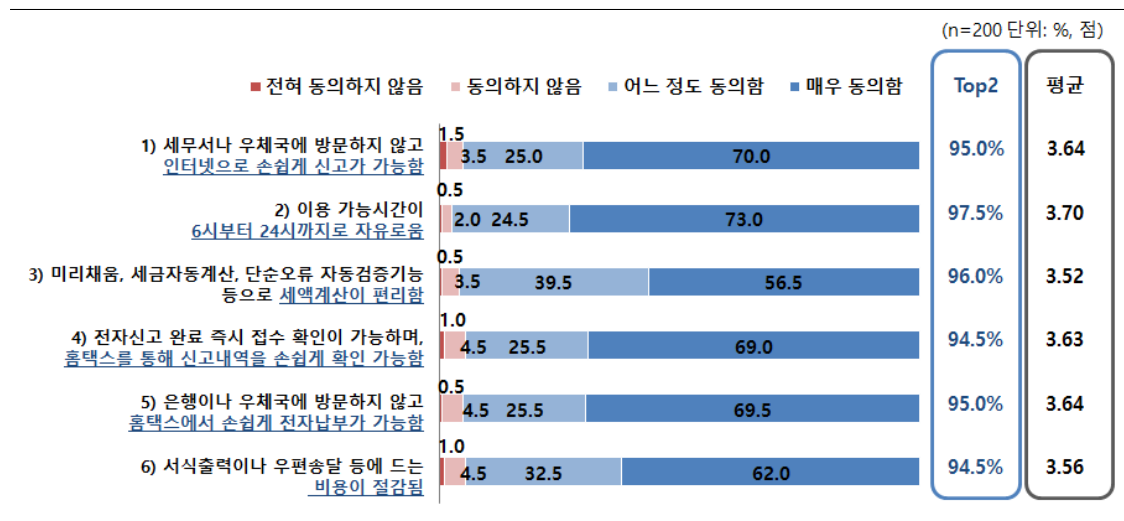
주: 1. 항목별 Top2(매우 기여함 + 어느 정도 기여함) 비율  
 2. 기여도를 매우 기여함(4점)~전혀 기여하지 않음(1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음.

## 7)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편리성

	<p><b>QC6.</b> 귀사는 전자신고가 서면신고에 비하여 가지는 다음의 편리성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p> <p><b>QC6-1.</b> 세무서나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함</p> <p><b>QC6-2.</b> 이용 가능시간이 6시부터 24시까지로 자유로움</p> <p><b>QC6-3.</b> 미리채움서비스, 세금 자동 계산, 단순오류 자동검증기능 등으로 인하여 세액계산이 편리함</p> <p><b>QC6-4.</b> 전자신고 완료 즉시 접수 확인이 가능하며, 홈택스를 통해 신고내역을 손쉽게 확인 가능함</p> <p><b>QC6-5.</b>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손쉽게 전자납부가 가능함</p> <p><b>QC6-6.</b> 서식출력이나 우편송달 등에 드는 비용이 절감됨</p>
---	---

- 서면신고에 비해 전자신고가 편리하다는 응답은 모든 항목에서 94.0% 이상으로 대부분 전자신고 편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특히, ‘이용 가능시간이 6시~24시까지 자유로움’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중이 97.5%(어느 정도 동의함 24.5% + 매우 동의함 73.0%)로 높은 수준
  - 이어 ‘세액 계산의 편리함’(96.0%), ‘인터넷으로 손쉽게 신고가능’(95.0%), ‘홈택스에서 손쉽게 전자납부 가능’(95.0%) 등의 순으로 높게 평가

[그림 VII-35]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편리성



- 주요업종, 자산총액, 중소기업 여부, 매출액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시간이 6시~24시 까지 자유로움’ 항목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 업종별로 전체 도소매업체는 ‘전자신고 완료 후 접수확인이 가능하며, 홈택스로 신고내역에 대한 확인 가능’ 항목과 ‘은행이나 우체국 방문 없이 홈택스로 전자납부 가능’ 항목에 대해 편리하다고 평가
- 자산총액별로는 자산총액 5억 미만의 전체 사업체는 ‘이용시간의 자유로움’, ‘세액 계산의 편리함’ 항목에 대해 편리하다고 평가
- 중소기업 여부별로는 ‘이용시간의 자유로움’ 항목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보다 긍정적으로 평가
- 매출액별로는 매출액 100~500억 미만 사업체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대다수(96.0%)가 편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표 VII-25>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편리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세무서나 우체국에 방문없이 인터넷 으로 신고가 가능함		이용 시간이 6시~24로 자유로움		미리채움 자동계산, 단순오류 검증기능 으로 세액계산 편리함		전자신고 완료 후 접수확인 가능 및 홈택스로 신고내역 확인가능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없이 홈택스로 전자납부 가능		서식출력 이나 우편송달 비용이 절감됨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전체	(200)	95.0	3.64	97.5	3.70	96.0	3.52	94.5	3.63	95.0	3.64	94.5	3.56	
주요업종	서비스업	(37)	97.3	3.68	97.3	3.73	89.2	3.35	94.6	3.57	91.9	3.49	91.9	3.38
	도소매업	(44)	95.5	3.61	95.5	3.64	97.7	3.57	100.0	3.75	100.0	3.75	97.7	3.66
	제조업	(58)	91.4	3.59	96.6	3.66	98.3	3.57	94.8	3.66	93.1	3.66	93.1	3.59
	기타	(61)	96.7	3.67	100.0	3.77	96.7	3.54	90.2	3.54	95.1	3.64	95.1	3.56
자산총액	5억 미만	(35)	97.1	3.51	100.0	3.60	100.0	3.46	94.3	3.54	97.1	3.60	97.1	3.51
	5~100억 미만	(54)	92.6	3.69	94.4	3.69	94.4	3.48	92.6	3.61	92.6	3.67	98.1	3.67
	100~1,000억 미만	(66)	97.0	3.68	98.5	3.74	95.5	3.59	98.5	3.70	95.5	3.64	90.9	3.50
	1,000억 이상	(45)	93.3	3.60	97.8	3.73	95.6	3.51	91.1	3.60	95.6	3.64	93.3	3.53
중소기업 여부	해당	(155)	95.5	3.63	97.4	3.68	96.1	3.50	94.8	3.63	96.1	3.65	94.8	3.55
	비해당	(45)	93.3	3.64	97.8	3.78	95.6	3.58	93.3	3.60	91.1	3.60	93.3	3.56
매출액	5억 미만	(17)	94.1	3.53	100.0	3.82	88.2	3.41	82.4	3.35	94.1	3.65	88.2	3.47
	5~10억 미만	(19)	100.0	3.74	100.0	3.74	100.0	3.58	100.0	3.63	94.7	3.58	94.7	3.47
	10~30억 미만	(23)	95.7	3.57	95.7	3.57	95.7	3.35	95.7	3.61	100.0	3.78	95.7	3.65
	30~50억 미만	(16)	93.8	3.56	100.0	3.69	100.0	3.44	93.8	3.50	81.3	3.19	93.8	3.50
	50~100억 미만	(16)	87.5	3.69	87.5	3.69	93.8	3.44	100.0	3.75	93.8	3.75	93.8	3.75
	100~500억 미만	(50)	96.0	3.72	98.0	3.70	96.0	3.60	96.0	3.76	98.0	3.74	96.0	3.58
	500~1,000억 미만	(15)	93.3	3.53	100.0	3.73	93.3	3.60	93.3	3.53	93.3	3.40	93.3	3.47
	1,000억 이상 무응답	(7)	100.0	3.57	100.0	3.71	100.0	3.29	100.0	3.71	100.0	3.86	100.0	3.57

주: 1. 항목별 Top2(매우 동의함 + 어느 정도 동의함)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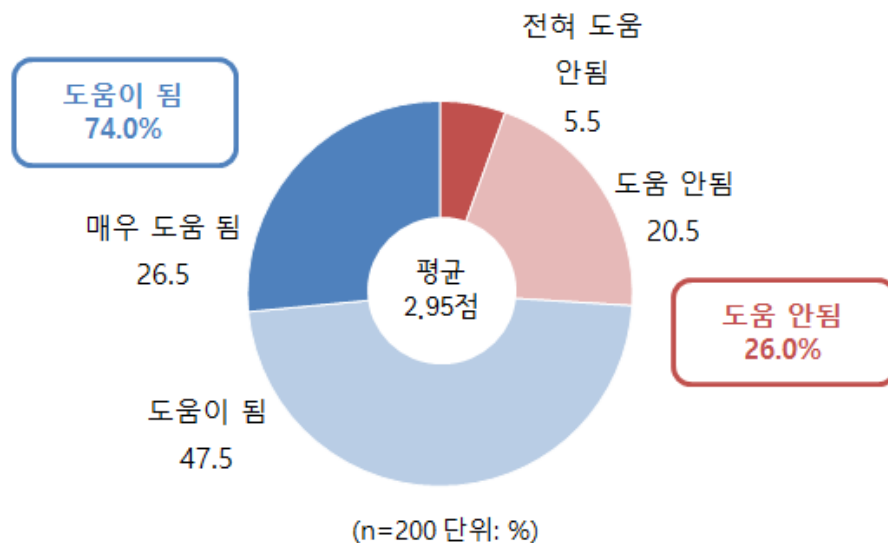
2. 동의 정도를 매우 동의함(4점)-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음.

8)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p>QC7. 귀사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p>
--	--

- 전체 사업체의 74.0%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
  -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5%,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5%로 조사

[그림 VII-36]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 자산총액 5억 미만, 매출액 10억 미만인 사업체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85.0% 이상으로 높은 수준
  - 업종별로 제조업(81.0%) 및 기타(82.0%) 업종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업종 대비 높게 조사
  - 자산총액이 낮을수록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으로 파악
  - 중소기업의 77.4%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는 62.2%가 도움이 된다고 인식

- 매출액 규모 5억 미만(88.2%), 5~10억 미만(84.2%) 사업체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매출액 규모 대비 높은 수준


<표 VII-26>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 됨	도움 안됨 (Bot2)	도움됨 (Top2)	[평균]
전체		(200)	5.5	20.5	47.5	26.5	26.0	74.0	2.95
주요 업종	서비스업	(37)	13.5	27.0	40.5	18.9	40.5	59.5	2.65
	도소매업	(44)	6.8	27.3	40.9	25.0	34.1	65.9	2.84
	제조업	(58)	0.0	19.0	55.2	25.9	19.0	81.0	3.07
	기타	(61)	4.9	13.1	49.2	32.8	18.0	82.0	3.10
자산 총액	5억 미만	(35)	0.0	14.3	54.3	31.4	14.3	85.7	3.17
	5~100억 미만	(54)	7.4	7.4	51.9	33.3	14.8	85.2	3.11
	100~1,000억 미만	(66)	6.1	25.8	45.5	22.7	31.8	68.2	2.85
	1,000억 이상	(45)	6.7	33.3	40.0	20.0	40.0	60.0	2.73
중소 기업 여부	해당	(155)	3.9	18.7	49.0	28.4	22.6	77.4	3.02
	비해당	(45)	11.1	26.7	42.2	20.0	37.8	62.2	2.71
매출액	5억 미만	(17)	0.0	11.8	58.8	29.4	11.8	88.2	3.18
	5~10억 미만	(19)	5.3	10.5	63.2	21.1	15.8	84.2	3.00
	10~30억 미만	(23)	8.7	21.7	43.5	26.1	30.4	69.6	2.87
	30~50억 미만	(16)	6.3	18.8	31.3	43.8	25.0	75.0	3.13
	50~100억 미만	(16)	0.0	18.8	56.3	25.0	18.8	81.3	3.06
	100~500억 미만	(50)	6.0	22.0	52.0	20.0	28.0	72.0	2.86
	500~1,000억 미만	(15)	6.7	26.7	40.0	26.7	33.3	66.7	2.87
	1,000억 이상	(37)	8.1	29.7	37.8	24.3	37.8	62.2	2.78
	무응답	(7)	0.0	0.0	42.9	57.1	0.0	100.0	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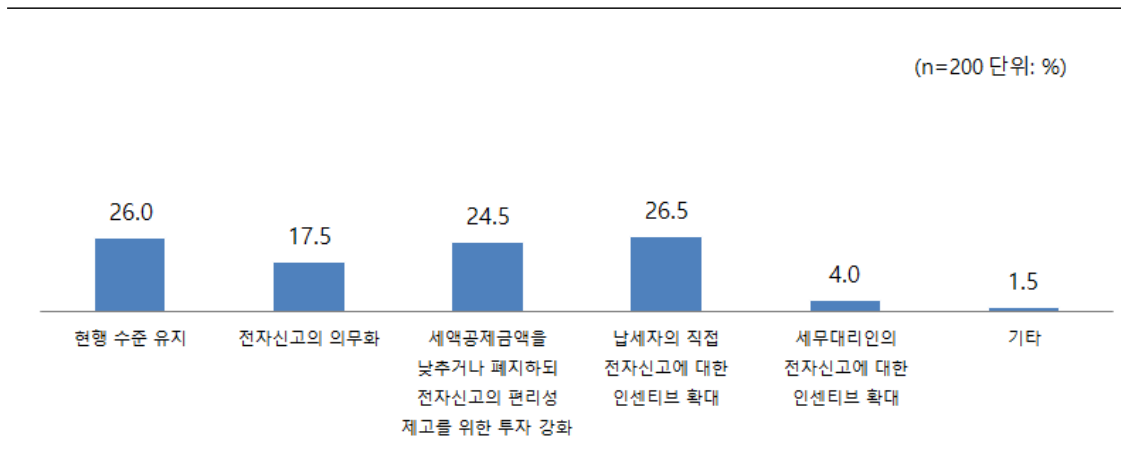
주: 도움 정도를 매우 도움 됨(4점)~전혀 도움 안됨(1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음.

## 9)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가장 바람직한 개선방향

	<b>QC8.</b> 귀사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가장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납세자 직접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26.5%)가 ‘현행수준 유지’(26.0%), ‘전자신고의 편리성 제고를 위한 투자’(24.5%)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편리성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24.5%)나 ‘전자신고의 의무화’(17.5%)와 같이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이외의 개선방향도 42.0%로 높은 수준으로 파악

[그림 VII-37]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 주요업종, 자산총액, 중소기업 여부, 매출액에 관계없이 ‘납세자 직접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현행수준 유지’에 대한 개선 요구가 대체로 비슷한 수준
- 주요업종별로 서비스업의 경우 ‘편리성 제고를 위한 투자’(27.0%), 도소매업의 경우 ‘전자신고의 의무화’(25.0%)에 대한 인센티브 이외의 개선 요구가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자산총액별로는 자산총액 5억 미만의 경우 ‘편리성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에 대한 개선 요구가 28.6% 수준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는 ‘현행수준 유지’(37.8%), ‘편리성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28.9%)와 같은 인센티브 이외의 개선 요구가 높은 편

- 매출액별로는 5억 미만의 경우 ‘전자신고의 의무화’(29.4%)에 대한 개선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표 VII-27>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명)	현행수준 유지	전자 신고의 의무화	세액공제 금액을 낮추고 전자신고 편리성 제고	납세자의 직접 전자신고시 인센티브 확대	세무대리인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기타
전체		(200)	26.0	17.5	24.5	26.5	4.0	1.5
주요업종	서비스업	(37)	29.7	24.3	27.0	13.5	2.7	2.7
	도소매업	(44)	15.9	25.0	25.0	29.5	4.5	0.0
	제조업	(58)	25.9	12.1	24.1	32.8	3.4	1.7
	기타	(61)	31.1	13.1	23.0	26.2	4.9	1.6
자산총액	5억 미만	(35)	25.7	17.1	28.6	22.9	5.7	0.0
	5~100억 미만	(54)	25.9	18.5	18.5	29.6	5.6	1.9
	100~1,000억 미만	(66)	21.2	21.2	25.8	25.8	3.0	3.0
	1,000억 이상	(45)	33.3	11.1	26.7	26.7	2.2	0.0
중소기업 여부	해당	(155)	22.6	20.0	23.2	28.4	3.9	1.9
	비해당	(45)	37.8	8.9	28.9	20.0	4.4	0.0
매출액	5억 미만	(17)	17.6	29.4	17.6	23.5	11.8	0.0
	5~10억 미만	(19)	21.1	21.1	21.1	26.3	10.5	0.0
	10~30억 미만	(23)	26.1	8.7	34.8	26.1	4.3	0.0
	30~50억 미만	(16)	43.8	12.5	18.8	12.5	6.3	6.3
	50~100억 미만	(16)	18.8	18.8	31.3	25.0	6.3	0.0
	100~500억 미만	(50)	24.0	20.0	22.0	32.0	0.0	2.0
	500~1,000억 미만	(15)	33.3	20.0	26.7	20.0	0.0	0.0
	1,000억 이상	(37)	27.0	13.5	21.6	32.4	2.7	2.7
	무응답	(7)	28.6	14.3	42.9	14.3	0.0	0.0

## 5. 개인사업자 인식조사

### 가. 응답자 특성

####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 전체 개인사업자 중 87.7%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에 해당
  - 매출액별로 살펴보면, 10~50억 미만(24.8%), 1~5억 미만(19.9%), 1억 미만(16.1%) 순으로 분포
  - 부가가치세 납부유형별로는 일반과세자가 8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이어 면세사업자(15.1%), 간이과세자(4.3%) 순으로 파악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별로는 해당되는 사업자는 87.7%, 비해당은 12.3% 수준
  - 주요 업종별로는 제조업(35.9%), 서비스업(25.9%), 도소매업(19.7%) 순으로 파악

<표 VII-28>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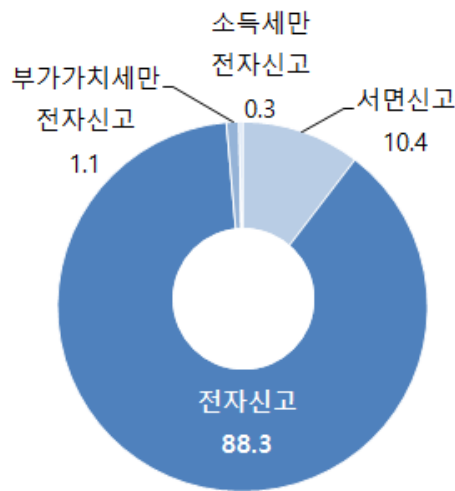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750)	100.0
매출액	1억 미만	(121)	16.1
	1~5억 미만	(149)	19.9
	5~10억 미만	(112)	14.9
	10~50억 미만	(186)	24.8
	50~100억 미만	(36)	4.8
	100억 이상	(13)	1.7
	무응답	(133)	17.7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113)	15.1
	일반과세자	(605)	80.7
	간이과세자	(32)	4.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658)	87.7
	비해당	(92)	12.3
주요업종	서비스업	(194)	25.9
	도소매업	(148)	19.7
	제조업	(269)	35.9
	기타	(139)	18.5

## 2)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방식

- 전체 개인사업자의 88.3%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모두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
  - 모두 서면신고를 하는 비중은 10.4%로 파악
    - 부가가치세만 전자신고하는 비중은 1.1%, 소득세만 전자신고하는 비중은 0.3%에 불과

[그림 VII-38]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방식



(n=750 단위: %)


<표 VII-29>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방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750)	100.0
서면신고	(78)	10.4
전자신고	(662)	88.3
부가가치세만 전자신고	(8)	1.1
소득세만 전자신고	(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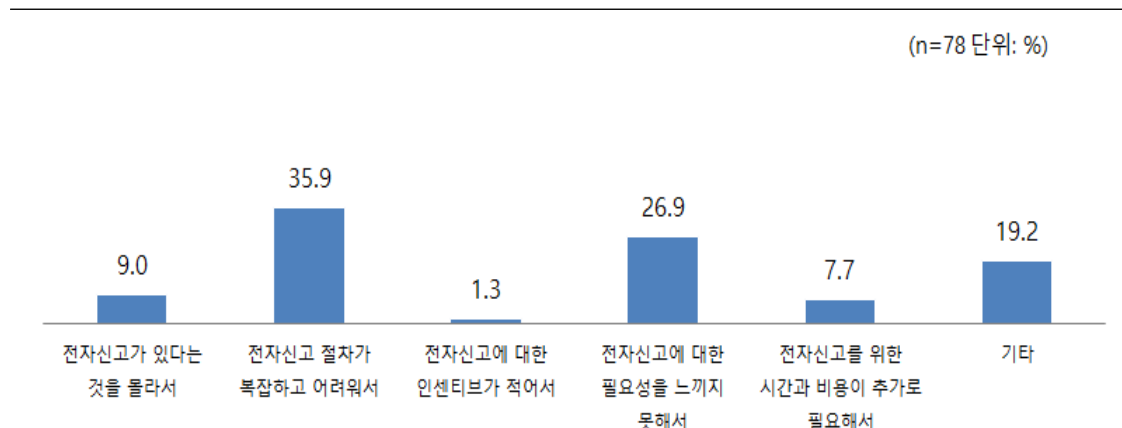
## 나. 전자신고 미운영 이유와 향후 이용 의향

### 1)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

	<b>QA1.</b> 귀하께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35.9%가 ‘전자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 이어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전자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6.9%), 기타(19.2%) 순으로 조사

[그림 VII-39]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



- 매출액이 10~50억 미만인 경우 ‘전자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비율이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매출액별로 10억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편
    - 1억 미만은 48.4%, 1~5억 미만은 55.6%, 5~10억 미만은 36.4%로 높은 수준
  - 부가가치세 납부유형별로는 일반과세자(38.8%)와 간이과세자(37.5%)는 ‘전자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음


- 면세사업자의 경우 ‘전자신고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30.8%)와 ‘전자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0.8%)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비율이 높음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전자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52.4%) 전자신고를 하지 않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
  - 의무발행 사업자의 경우 ‘전자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전자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5.1%로 파악
- 주요업종별로는 ‘전자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비중이 서비스업(46.2%), 기타 업종(38.9%), 도소매업(31.3%) 순으로 높은 편
  - 제조업인 경우 ‘전자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비중이 38.9%로 다른 업종 대비 높은 수준

<표 VII-30>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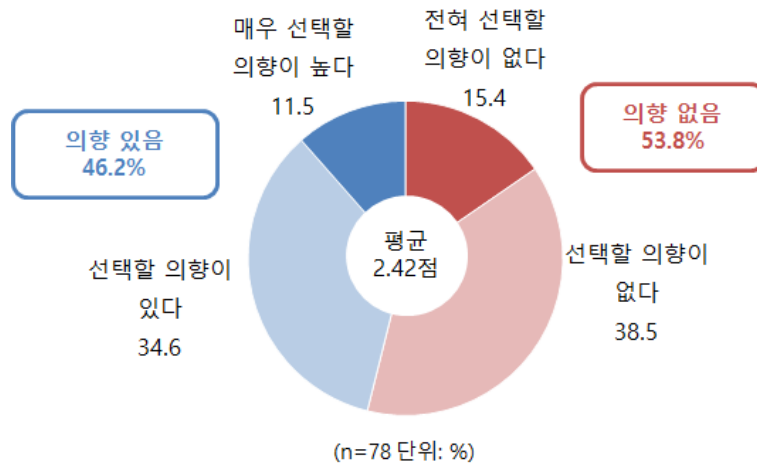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명)	전자 신고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전자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전자신고 인센티브가 적어서	전자신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전자신고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필요해서	기타
전체		(78)	9.0	35.9	1.3	26.9	7.7	19.2
매출액	1억 미만	(31)	16.1	48.4	0.0	19.4	6.5	9.7
	1~5억 미만	(9)	11.1	55.6	11.1	11.1	0.0	11.1
	5~10억 미만	(11)	9.1	36.4	0.0	18.2	18.2	18.2
	10~50억 미만	(13)	0.0	7.7	0.0	61.5	0.0	30.8
	무응답	(14)	0.0	21.4	0.0	28.6	14.3	35.7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13)	30.8	23.1	0.0	30.8	0.0	15.4
	일반과세자	(49)	4.1	38.8	2.0	24.5	8.2	22.4
	간이과세자	(16)	6.3	37.5	0.0	31.3	12.5	12.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57)	5.3	29.8	1.8	35.1	10.5	17.5
	비해당	(21)	19.0	52.4	0.0	4.8	0.0	23.8
주요업종	서비스업	(26)	11.5	46.2	3.8	23.1	3.8	11.5
	도소매업	(16)	18.8	31.3	0.0	18.8	6.3	25.0
	제조업	(18)	0.0	22.2	0.0	38.9	5.6	33.3
	기타	(18)	5.6	38.9	0.0	27.8	16.7	11.1

## 2)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 2배 인상 시 전자신고 선택 의향

	<p><b>QA2.</b> 귀하께서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을 현재보다 2배 인상할 경우 전자신고를 선택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재 납세자가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접 세금을 신고한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p>
---	--

-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46.2%가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 2배 인상 시 전자신고를 선택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
  - 전자신고를 선택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6%, 매우 의향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11.5%, 전체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46.2% 수준

[그림 VII-40]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 2배 인상 시 전자신고 선택 의향



- 매출액 1~5억 미만인 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인 사업자의 전자신고 선택 의향이 높은 것으로 파악
  - 매출액별로 1~5억 미만의 경우 전자신고 선택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6.7%로 높은 수준
  - 부가가치세 납부유형별로는 간이과세자의 전자신고 선택 의향이 56.3%로 높은 수준
    - 일반과세자의 전자신고 선택 의향은 44.9%, 면세사업자는 38.5%로 파악

-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사업자의 전자신고 선택 의향이 52.4%로 의무발행에 해당하는 사업자(43.9%) 대비 높은 수준
- 주요업종별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전자신고 선택 의향이 절반(50.0%)을 차지

<표 VII-31>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 2배 인상 시 전자신고 선택 의향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선택할 의향이 없다	선택할 의향이 없다	선택할 의향이 있다	매우 선택할 의향이 높다	의향 없음 (Bot2)	의향 있음 (Top2)	[평균]
전체		(78)	15.4	38.5	34.6	11.5	53.8	46.2	2.42
매출액	1억 미만	(31)	19.4	41.9	32.3	6.5	61.3	38.7	2.26
	1~5억 미만	(9)	11.1	22.2	22.2	44.4	33.3	66.7	3.00
	5~10억 미만	(11)	27.3	45.5	18.2	9.1	72.7	27.3	2.09
	10~50억 미만	(13)	15.4	46.2	38.5	0.0	61.5	38.5	2.23
	무응답	(14)	0.0	28.6	57.1	14.3	28.6	71.4	2.86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13)	7.7	53.8	30.8	7.7	61.5	38.5	2.38
	일반과세자	(49)	18.4	36.7	32.7	12.2	55.1	44.9	2.39
	간이과세자	(16)	12.5	31.3	43.8	12.5	43.8	56.3	2.5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57)	15.8	40.4	35.1	8.8	56.1	43.9	2.37
	비해당	(21)	14.3	33.3	33.3	19.0	47.6	52.4	2.57
주요업종	서비스업	(26)	15.4	34.6	34.6	15.4	50.0	50.0	2.50
	도소매업	(16)	18.8	37.5	25.0	18.8	56.3	43.8	2.44
	제조업	(18)	16.7	33.3	38.9	11.1	50.0	50.0	2.44
	기타	(18)	11.1	50.0	38.9	0.0	61.1	38.9	2.28

주: 선택 의향을 매우 높음(4점)-전혀 없음(1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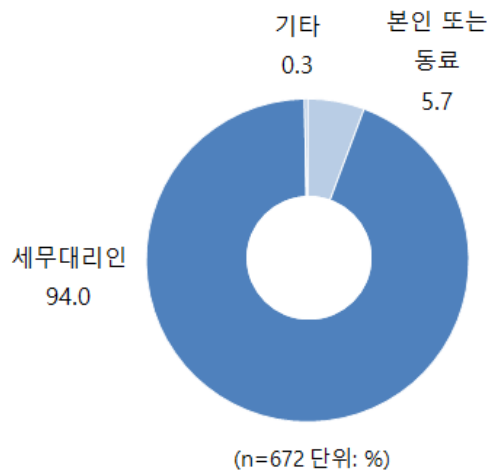
## 다. 전자신고 이용 행태

### 1)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신고를 한 사람

	<b>QB1.</b> 귀하의 사업장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신고를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한 사업자 대부분(94.0%)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 본인 또는 동료에 의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비율은 5.7%, 기타 다른 사람에게 의한 전자신고 비율은 0.3%에 불과

[그림 VII-41]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신고를 한 사람



- 매출액,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여부, 주요업종에 관계없이 세무대리인에 의한 전자신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
  - 매출액이 높을수록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자신고를 수행한 사업자의 비율이 높은 경향으로 조사
  - 부가가치세 납부유형별로는 본인 또는 동료에 의한 전자신고 비율이 간이과세자의 경우 31.3%로 다른 납부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본인 또는 동료에 의한 전자신고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6.0%, 일반과세자는 4.9% 정도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에 의한 전자신고 비율은 95.3%로 비해당하는 사업자(83.1%) 대비 12.2%p 높은 것으로 파악
- 주요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 비율이 98.8%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

<표 VII-32>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신고를 한 사람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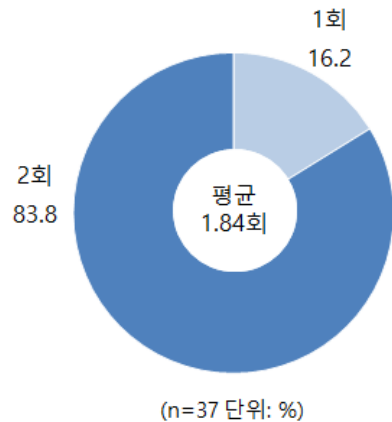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본인 또는 동료	세무대리인	기타
전체		(672)	5.7	94.0	0.3
매출액	1억 미만	(90)	13.3	85.6	1.1
	1~5억 미만	(140)	10.0	90.0	0.0
	5~10억 미만	(101)	3.0	97.0	0.0
	10~50억 미만	(173)	2.9	97.1	0.0
	50~100억 미만	(36)	0.0	97.2	2.8
	100억 이상	(13)	0.0	100.0	0.0
	무응답	(119)	3.4	96.6	0.0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100)	6.0	94.0	0.0
	일반과세자	(556)	4.9	94.8	0.4
	간이과세자	(16)	31.3	68.8	0.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601)	4.5	95.3	0.2
	비해당	(71)	15.5	83.1	1.4
주요업종	서비스업	(168)	11.3	88.1	0.6
	도소매업	(132)	9.1	90.9	0.0
	제조업	(251)	0.8	98.8	0.4
	기타	(121)	4.1	95.9	0.0

## 2) 2016년 동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수행한 횟수

	<b>QB1-1.</b> 귀하께서는 2016년에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수행한 횟수는 총 몇 번입니까? 예정신고를 제외한 연간 확정신고의 총 횟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	---

- 본인 또는 동료가 전자신고한 사업자의 83.8%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회 모두 수행
  - 연 1회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수행한 비중은 16.2%로 개인사업자의 상당수 (83.8%)가 연 2회 모두 신고

[그림 VII-42] 2016년 동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수행한 횟수



- 매출액,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여부, 주요업종에 관계없이 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횟수가 2회인 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
  - 매출액별은 매출액이 높아질수록 부가가치세를 2회 모두 신고한 비율이 높은 경향으로 조사
    - 특히, 매출액 5억 이상인 사업자의 100.0%가 부가가치세 2회 모두 신고
  - 부가가치세 납부유형별로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1회만 수행하였다는 응답이 60.0%로 다른 납부유형 대비 높은 수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별로는 해당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2회 모두 신고 비율이 88.9%로 비해당인 경우(70.0%)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


- 주요업종별로 부가가치세 2회 모두 신고한 비율이 도소매업과 제조업 모두 100.0%로 높은 비중을 차지

<표 VII-33> 2016년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수행한 횟수

(단위: 명, %, 회)

구분		사례수(명)	1회	2회	[평균]
전체		(37)	16.2	83.8	1.84
매출액	1억 미만	(11)	36.4	63.6	1.64
	1~5억 미만	(14)	14.3	85.7	1.86
	5~10억 미만	(3)	0.0	100.0	2.00
	10~50억 미만	(5)	0.0	100.0	2.00
	무응답	(4)	0.0	100.0	2.00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5)	40.0	60.0	1.60
	일반과세자	(27)	3.7	96.3	1.96
	간이과세자	(5)	60.0	40.0	1.4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27)	11.1	88.9	1.89
	비해당	(10)	30.0	70.0	1.70
주요업종	서비스업	(19)	21.1	78.9	1.79
	도소매업	(12)	0.0	100.0	2.00
	제조업	(2)	0.0	100.0	2.00
	기타	(4)	50.0	50.0	1.50

### 3)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p><b>QB1-2.</b> 귀하께서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한 시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전자신고에 사용한 시간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홈텍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해 전송하는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합니다. 전자신고시 서식입력, 파일생성, 오류체크, 파일전송 단계별로 1회당 소요시간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회당 총 사용시간)</p>
---	--

- 전자신고시 1회당 총 사용시간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비슷한 수준
  - 소득세 전자신고의 총 사용시간은 33.7분, 부가가치세는 33.9분 정도

[그림 VII-43]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_총 사용시간



- 매출액,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주요업종에 관계없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 총 사용시간은 비슷한 수준
  - 매출액별로는 매출액이 1~5억 미만인 경우 소득세(43.3분)와 부가가치세(41.6분) 모두 다른 매출액 규모 대비 소요시간이 긴 것으로 파악
  - 부가가치세 납부유형별로 면세사업자의 소득세(62.2분)와 부가가치세(64.0분)의 총 사용시간이 긴 편

<표 VII-34>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_총 사용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사례수 (명)	소득세	사례수 (명)	부가가치세
전체		(37)	33.7	(37)	33.9
매출액	1억 미만	(11)	31.0	(11)	32.4
	1~5억 미만	(14)	43.3	(14)	41.6
	5~10억 미만	(3)	21.7	(3)	30.6
	10~50억 미만	(5)	31.8	(5)	25.8
	무응답	(4)	19.8	(4)	23.1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5)	62.2	(5)	64.0
	일반과세자	(27)	29.3	(27)	29.3
	간이과세자	(5)	29.4	(5)	28.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27)	36.3	(27)	35.7
	비해당	(10)	26.7	(10)	29.2
주요업종	서비스업	(19)	25.4	(19)	28.8
	도소매업	(12)	29.2	(12)	25.1
	제조업	(2)	36.5	(2)	22.0
	기타	(4)	85.8	(4)	90.6

주: 유형별 전자신고 총 사용시간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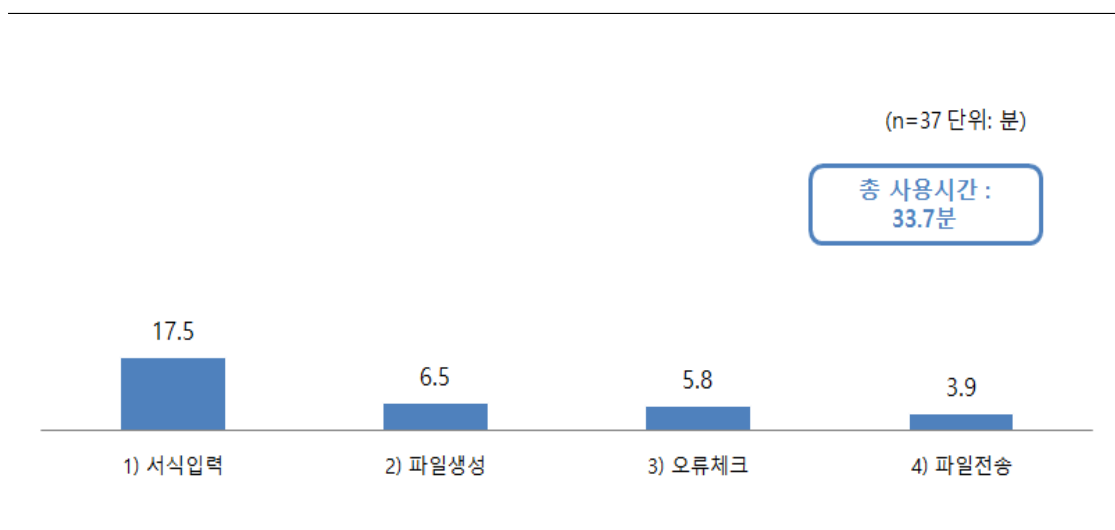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소득세(36.3분)와 부가가치세(35.7분) 모두 다른 업종 대비 총 사용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
- 주요업종별로는 서비스, 도소매 및 제조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총 사용시간이 긴 편으로 조사

### 3-1) 소득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p><b>QB1-2.</b> 귀하께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한 시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사용한 시간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홈텍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해 전송하는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합니다. 전자신고시 <u>서식입력</u>, <u>파일생성</u>, <u>오류체크</u>, <u>파일전송</u> 단계별로 1회당 소요시간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p>
---	---

- 본인 또는 동료에 의해 전자신고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의 1회당 사용시간에서 서식입력이 가장 오래 소요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의 전체 소요시간 33.7분 중 서식입력 시간이 17.5분으로 약 51.9%를 차지
    - 파일생성은 평균 6.5분, 오류체크는 5.8분, 파일전송은 3.9분 소요

[그림 VII-44] 소득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 매출액,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여부, 주요업종에 관계없이 서식입력 시간이 가장 길게 소요
  - 매출액별로는 10~50억원 미만의 경우 서식입력 시간이 평균 23.0분으로 다른 매출 규모대비 소요시간이 긴 것으로 파악
  - 부가가치세 납부유형별로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전자신고의 각 단계 모두 다른 납부유형에 비해 소요시간이 긴 것으로 파악
    - 면세사업자의 서식입력 시간은 19.2분, 총 사용시간은 62.2분로 조사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사업자의 서식입력 시간은 18.2분, 총 사용시간은 36.3분으로 비해당사업자 대비 긴 것으로 파악
  - 주요업종별로는 서비스, 도소매 및 제조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의 각 단계별 소요시간이 긴 편


<표 VII-35> 소득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사례수 (명)	1) 서식입력	2) 파일생성	3) 오류체크	4) 파일전송	1회당 총 사용시간
전체		(37)	17.5	6.5	5.8	3.9	33.7
매출액	1억 미만	(11)	19.6	6.4	3.5	1.5	31.0
	1~5억 미만	(14)	16.6	9.0	9.9	7.8	43.3
	5~10억 미만	(3)	10.0	4.7	4.7	2.3	21.7
	10~50억 미만	(5)	23.0	4.6	2.6	1.6	31.8
	무응답	(4)	13.5	2.3	2.0	2.0	19.8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5)	19.2	17.2	12.8	13.0	62.2
	일반과세자	(27)	17.1	4.9	4.7	2.6	29.3
	간이과세자	(5)	18.0	4.8	4.6	2.0	29.4
전자세금계산 서 의무발행	해당	(27)	18.2	7.2	6.3	4.6	36.3
	비해당	(10)	15.6	4.7	4.3	2.1	26.7
주요업종	서비스업	(19)	13.4	4.9	4.6	2.5	25.4
	도소매업	(12)	17.4	5.6	3.9	2.3	29.2
	제조업	(2)	32.5	1.0	1.0	2.0	36.5
	기타	(4)	30.0	20.0	19.0	16.8	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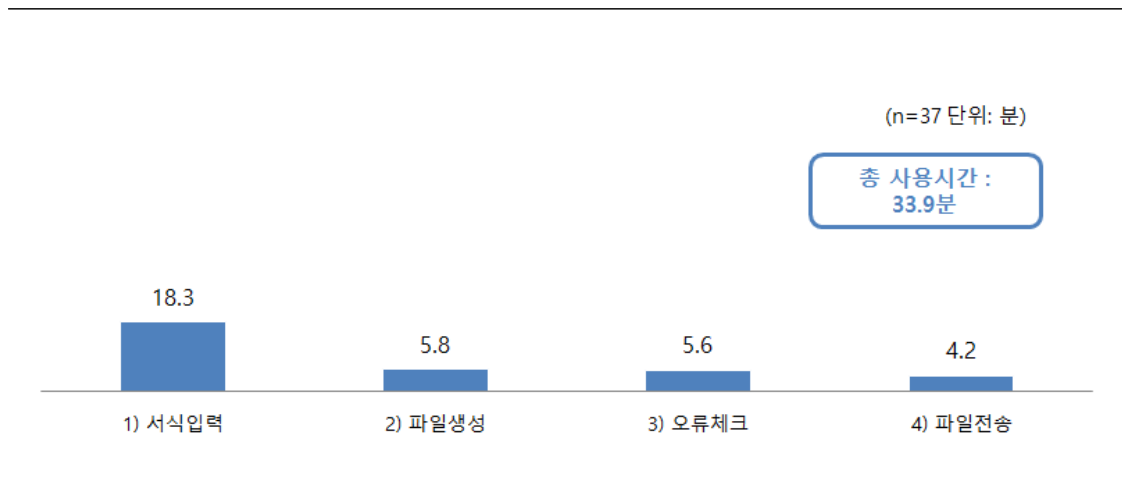
주: 전자신고 단계별 평균 사용시간 산출

### 3-2)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서 1회당 사용시간

	<p><b>QB1-3.</b> 귀하께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1회당 사용한 시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사용한 시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해 전송하는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합니다. 전자신고서 <u>서식입력, 파일생성, 오류체크, 파일전송</u> 단계별로 1회당 소요시간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p>
---	---

- 본인 또는 동료에 의해 전자신고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의 1회당 사용시간에서 서식입력이 가장 오래 소요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서 전체 소요시간 33.9분 중 서식입력 시간이 18.3분으로 약 54.0%를 차지
    - 파일생성은 평균 5.8분, 오류체크는 5.6분, 파일전송은 4.3분 소요

[그림 VII-45]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서 1회당 사용시간



- 매출액,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여부, 주요업종에 관계없이 서식입력이 가장 오래 소요
  - 매출액별로는 매출액 1억 미만과 5~10억 미만의 경우 서식입력 시간이 각각 21.7분으로 다른 매출액 규모 대비 오래 소요되는 편
  - 부가가치세 납부유형별로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전자신고의 각 단계 모두 일반 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에 비해 길게 소요

- 면세사업자의 서식입력 시간은 23.8분, 총 사용시간은 64.0분으로 조사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
- 주요 업종별로는 서비스 및 도소매 및 제조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의 경우에 전자신고 각 단계 모두 전자신고 소요시간이 다른 업종 대비 긴 편
- 기타 업종의 서식입력 시간은 36.6분, 총 사용시간은 90.6분으로 파악



<표 VII-36>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사례수 (명)	1) 서식입력	2) 파일생성	3) 오류체크	4) 파일전송	1회당 총 사용시간
전체		(37)	18.3	5.8	5.6	4.2	33.9
매출액	1억 미만	(11)	21.7	4.2	5.0	1.5	32.4
	1~5억 미만	(14)	15.6	8.6	8.9	8.5	41.6
	5~10억 미만	(3)	21.7	4.3	2.3	2.3	30.6
	10~50억 미만	(5)	17.0	4.8	2.4	1.6	25.8
	무응답	(4)	17.3	2.5	2.0	1.3	23.1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5)	23.8	13.6	15.8	10.8	64.0
	일반과세자	(27)	17.0	4.9	4.0	3.4	29.3
	간이과세자	(5)	20.0	2.8	3.8	2.0	28.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27)	18.5	6.6	5.5	5.1	35.7
	비해당	(10)	17.8	3.7	5.9	1.8	29.2
주요업종	서비스업	(19)	16.7	4.4	4.1	3.6	28.8
	도소매업	(12)	14.9	4.8	3.1	2.3	25.1
	제조업	(2)	17.5	1.5	1.5	1.5	22.0
	기타	(4)	36.3	17.5	22.5	14.3	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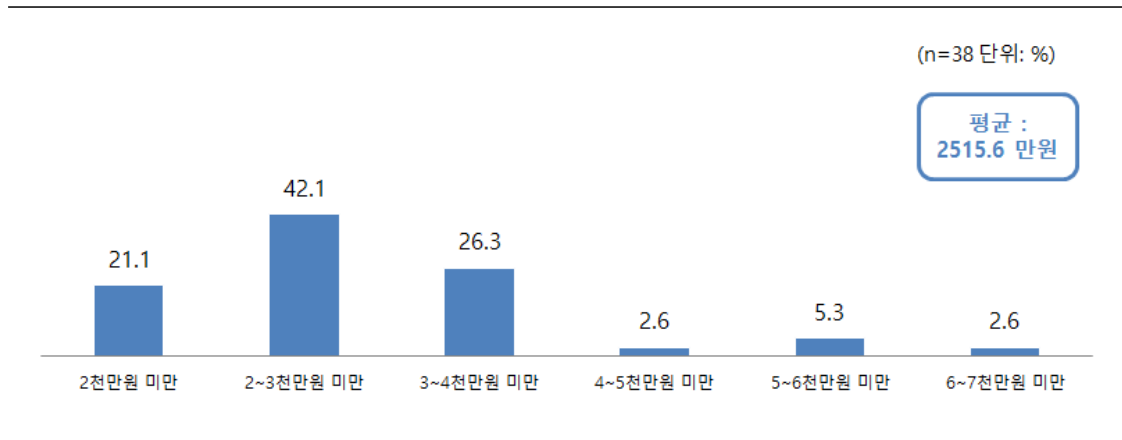
주: 전자신고 단계별 평균 사용시간 산출

#### 4)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인원의 평균 연봉

 	<b>QB1-4.</b>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인원의 연봉은 어느 정도입니까? 투입된 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 대략적인 평균 연봉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직원의 평균 연봉은 2,515.6만원
  -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인원의 평균 연봉은 2~3천만원이 42.1%로 가장 많았고, 3~4천만원(26.3%), 2천만원(21.1%) 순으로 파악

[그림 VII-46]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인원의 평균 연봉



- 매출액,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여부, 주요업종에 관계없이 대체로 평균 연봉은 2~3천만원이 높은 비중 차지
  - 매출액별로는 매출액 1억 미만인 사업자의 평균 연봉은 2천만원이 41.7%로 조사
    - 평균 연봉이 2~3천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매출액 1~5억 미만 (50.0%), 5~10억 미만(100.0%)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평균 연봉이 3~4천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매출액 10~50억 미만이 60.0%로 절반 이상 차지
  - 부가가치세 납부유형별로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평균 연봉 2천만원 미만인 비율이 50.0%로 절반 수준
    - 일반과세자의 경우 2~3천만원이 48.1%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에 따라 비해당하는 사업자의 평균 연봉은 2~3천만원 미만 응답비율이 54.5%로 절반 이상을 차지
- 주요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경우 평균 연봉이 2~3천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9%, 도소매업은 3~4천만원 미만 응답이 41.7%로 조사

<표 VII-37>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인원의 평균 연봉

(단위: 명,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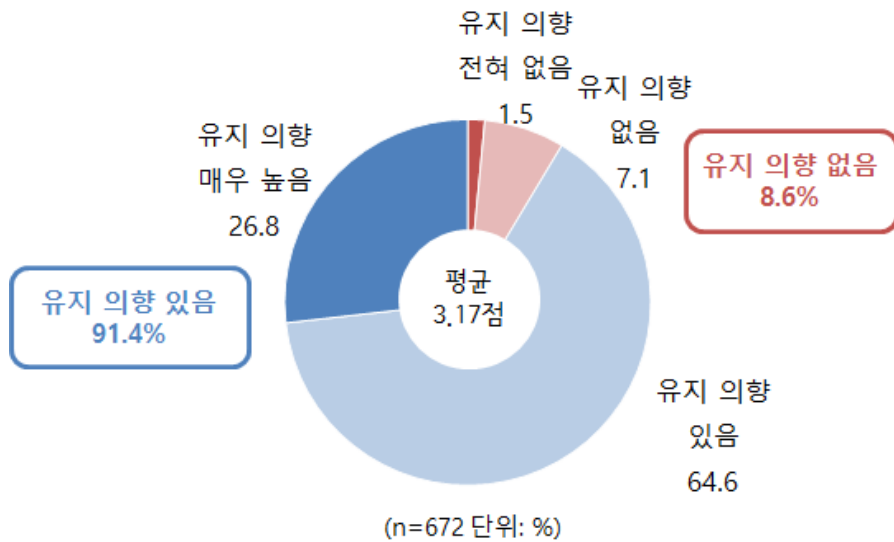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2천 만원 미만	2~3천 만원 미만	3~4천 만원 미만	4~5천 만원 미만	5~6천 만원 미만	6~7천 만원 미만	[평균]
전체		(38)	21.1	42.1	26.3	2.6	5.3	2.6	2,515.6
매출액	1억 미만	(12)	41.7	25.0	25.0	0.0	8.3	0.0	2,182.6
	1~5억 미만	(14)	14.3	50.0	28.6	0.0	0.0	7.1	2,585.7
	5~10억 미만	(3)	0.0	100.0	0.0	0.0	0.0	0.0	2,200.0
	10~50억 미만	(5)	0.0	20.0	60.0	20.0	0.0	0.0	3,160.0
	무응답	(4)	25.0	50.0	0.0	0.0	25.0	0.0	2,700.0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6)	50.0	16.7	33.3	0.0	0.0	0.0	1,900.0
	일반과세자	(27)	11.1	48.1	29.6	3.7	3.7	3.7	2,688.9
	간이과세자	(5)	40.0	40.0	0.0	0.0	20.0	0.0	2,318.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27)	14.8	37.0	37.0	3.7	3.7	3.7	2,729.6
	비해당	(11)	36.4	54.5	0.0	0.0	9.1	0.0	1,990.1
주요업종	서비스업	(19)	5.3	57.9	21.1	0.0	10.5	5.3	2,752.6
	도소매업	(12)	25.0	25.0	41.7	8.3	0.0	0.0	2,590.9
	제조업	(2)	0.0	50.0	50.0	0.0	0.0	0.0	2,900.0
	기타	(5)	80.0	20.0	0.0	0.0	0.0	0.0	1,280.0

5)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 전자신고 유지할 의향

	<p><b>QB2.</b>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현재보다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 귀하는 전자신고를 유지할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p>
---	--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자의 91.4%가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현재보다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에도 전자신고를 유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
  - 전자신고를 유지할 의향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6.8%, 유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4.6%로 유지 의향이 있는 총 비율은 91.4% 수준
    - 유지할 의향이 없는 비율은 8.6%(유지 의향 없음 7.1% + 유지 의향 전혀 없음 1.5%) 정도

[그림 VII-47]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 전자신고 유지할 의향



- 매출액,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여부, 주요 업종에 관계 없이 대체로 전자신고 유지 의향이 높은 수준
  - 매출액별로는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전자신고 유지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
    - 매출액 100억 이상의 경우 유지 의향이 100.0%로 높은 수준

-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여부 및 주요 업종별로는 항목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
  - 모든 항목에서 전자신고 유지 의향이 90% 이상인 것으로 파악

<표 VII-38>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 전자신고 유지할 의향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명)	유지 의향 전혀 없음	유지 의향 없음	유지 의향 있음	유지 의향 매우 높음	의향 없음 (Bot2)	의향 있음 (Top2)	[평균]
전체		(672)	1.5	7.1	64.6	26.8	8.6	91.4	3.17
매출액	1억 미만	(90)	3.3	12.2	56.7	27.8	15.6	84.4	3.09
	1~5억 미만	(140)	2.9	12.1	56.4	28.6	15.0	85.0	3.11
	5~10억 미만	(101)	1.0	5.9	66.3	26.7	6.9	93.1	3.19
	10~50억 미만	(173)	1.2	1.7	65.3	31.8	2.9	97.1	3.28
	50~100억 미만	(36)	0.0	5.6	55.6	38.9	5.6	94.4	3.33
	100억 이상	(13)	0.0	0.0	92.3	7.7	0.0	100.0	3.08
	무응답	(119)	0.0	7.6	77.3	15.1	7.6	92.4	3.08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100)	0.0	7.0	66.0	27.0	7.0	93.0	3.20
	일반과세자	(556)	1.6	7.4	64.4	26.6	9.0	91.0	3.16
	간이과세자	(16)	6.3	0.0	62.5	31.3	6.3	93.8	3.19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601)	1.3	7.2	65.4	26.1	8.5	91.5	3.16
	비해당	(71)	2.8	7.0	57.7	32.4	9.9	90.1	3.20
주요업종	서비스업	(168)	0.6	8.9	58.3	32.1	9.5	90.5	3.22
	도소매업	(132)	2.3	7.6	67.4	22.7	9.8	90.2	3.11
	제조업	(251)	0.4	6.4	65.3	27.9	6.8	93.2	3.21
	기타	(121)	4.1	5.8	68.6	21.5	9.9	90.1	3.07

주: 유지 의향을 매우 높음(4점)-전혀 없음(1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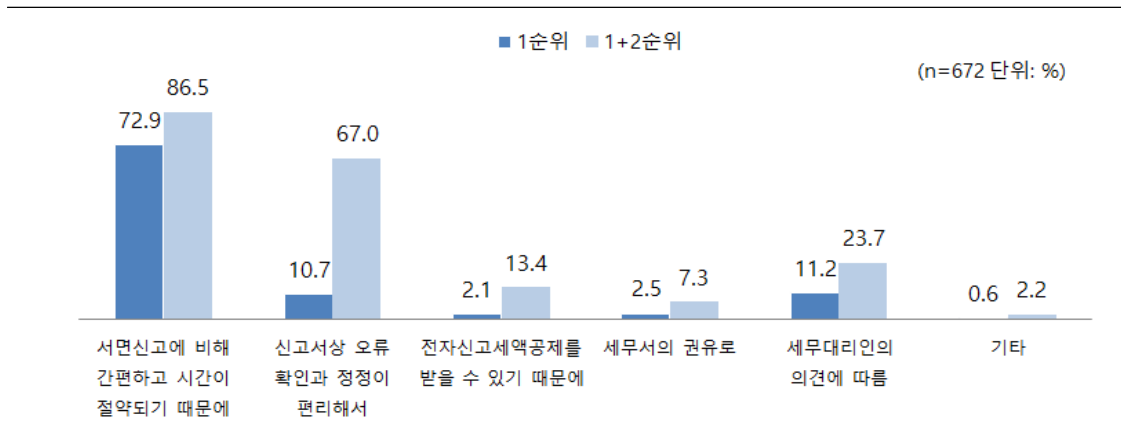
## 6) 전자신고를 선택한 주된 이유



QB3. 귀하가 전자신고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부터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자의 72.9%는 전자신고를 선택한 주된 1순위 이유에 대해서 ‘서면신고 대비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조사
  - 1+2순위(중복응답) 기준으로도 ‘서면신고 대비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선택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8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이어 1순위 기준으로 ‘세무대리인의 의견에 따름’을 전자신고를 선택한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11.2%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1+2순위 기준으로는 ‘신고서상 오류 확인과 정정이 편리해서’가 67.0%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

[그림 VII-48] 전자신고를 선택한 주된 이유(1순위, 1+2순위)



- 매출액,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여부, 주요 업종에 관계없이 ‘서면신고에 비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28.9%) 전자신고를 주로 선택한 것으로 조사
  - 매출액별로는 매출액 1억 미만의 경우 ‘세무대리인 의견에 따름’을 전자신고 선택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28.9%로 다른 매출액 규모 대비 높은 수준

- 매출액 100억 이상의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23.1%) 전자신고를 선택한 응답이 다른 매출액 규모 대비 높은 수준
- 부가가치세 납부유형별로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세무대리인 의견에 따름’ 응답이 34.0%로 다른 납부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신고 대비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는 ‘신고서상 오류 확인과 정정이 편리해서’(68.2%) 전자신고를 선택한 비율이 의무발행 비해당 사업자보다 높은 수준
- 주요업종별로는 업종에 관계없이 전자신고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응답 경향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



<표 VII-39> 전자신고를 선택한 주된 이유\_1+2 순위(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명)	서면신고에 비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신고서상 오류 확인과 정정이 편리해서	전자신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의 권유로	세무대리인 의견에 따름	기타	
전체	(672)	86.5	67.0	13.4	7.3	23.7	2.2	
매출액	1억 미만	(90)	86.7	58.9	16.7	6.7	28.9	2.2
	1~5억 미만	(140)	82.1	67.9	12.9	10.7	23.6	2.9
	5~10억 미만	(101)	81.2	70.3	10.9	11.9	21.8	4.0
	10~50억 미만	(173)	89.0	65.9	12.1	6.4	24.3	2.3
	50~100억 미만	(36)	88.9	83.3	13.9	2.8	11.1	0.0
	100억 이상	(13)	100.0	61.5	23.1	0.0	15.4	0.0
	무응답	(119)	89.9	66.4	14.3	3.4	25.2	0.8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100)	85.0	62.0	10.0	6.0	34.0	3.0
	일반과세자	(556)	86.5	68.0	13.8	7.7	21.8	2.2
	간이과세자	(16)	93.8	62.5	18.8	0.0	25.0	0.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601)	85.9	68.2	13.0	7.0	23.5	2.5
	비해당	(71)	91.5	56.3	16.9	9.9	25.4	0.0
주요업종	서비스업	(168)	87.5	68.5	13.1	6.0	23.2	1.8
	도소매업	(132)	83.3	66.7	12.9	9.8	23.5	3.8
	제조업	(251)	88.0	66.5	15.1	8.0	21.1	1.2
	기타	(121)	85.1	66.1	10.7	5.0	29.8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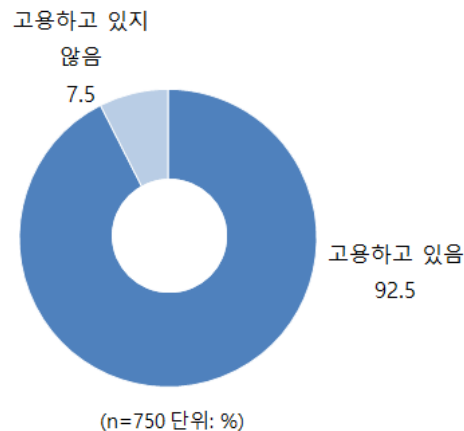
## 라. 전자신고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 1) 세무업무 처리 또는 조언을 위한 외부의 세무대리인 고용 여부

 	<b>QC1.</b> 귀하께서는 세무업무를 처리 또는 조언해주는 외부의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고 계십니까?
--	---

- 전체 개인사업자의 외부 세무대리인 고용비율은 92.5%로 높은 수준
  - 세무업무를 처리 또는 조언을 위해 외부의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7.5%로 조사

[그림 VII-49] 세무업무 처리 또는 조언을 위한 외부의 세무대리인 고용 여부





- 간이과세자(50.0%)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외부 세무대리인 고용 비율이 90% 수준임
  - 매출액별로는 매출액이 많아질수록 세무대리인 고용 비율이 높은 경향으로 조사
  - 부가가치세 납부유형별로는 면세사업자(95.6%)와 일반과세자(94.2%)의 경우 대부분이 외부 세무대리인 고용
    - 반면, 간이과세자는 외부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는 비율은 절반(50.0%) 수준
  - 주요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세무대리인 고용 비율이 98.1%로 대부분을 차지

<표 VII-40> 세무업무 처리 또는 조연을 위한 외부의 세무대리인 고용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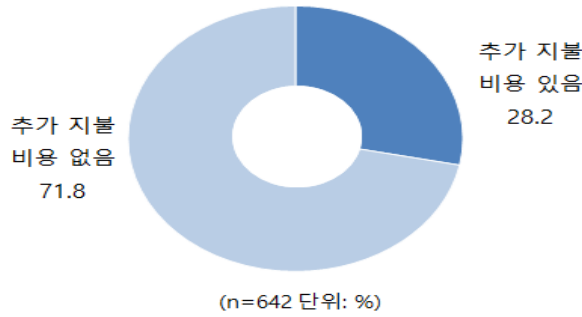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고용하고 있음	고용하고 있지 않음
전체		(750)	92.5	7.5
매출액	1억 미만	(121)	80.2	19.8
	1~5억 미만	(149)	90.6	9.4
	5~10억 미만	(112)	95.5	4.5
	10~50억 미만	(186)	97.8	2.2
	50~100억 미만	(36)	97.2	2.8
	100억 이상	(13)	100.0	0.0
	무응답	(133)	94.0	6.0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113)	95.6	4.4
	일반과세자	(605)	94.2	5.8
	간이과세자	(32)	50.0	50.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658)	94.2	5.8
	비해당	(92)	80.4	19.6
주요업종	서비스업	(194)	86.6	13.4
	도소매업	(148)	89.9	10.1
	제조업	(269)	98.1	1.9
	기타	(139)	92.8	7.2

2) 전자신고를 위해 고정비용 외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추가 비용 여부

 	<p>QC2. 귀하께서 2016년 사업연도에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전자 신고를 위하여 고정비용 외에 추가로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이 있습니까?</p>
---	---

-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71.8%는 전자 신고를 위해 고정비용 외에 세무대리인에게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 세무대리인에게 추가 비용을 지불한 비중은 28.2% 수준

[그림 VII-50] 전자신고를 위해 고정비용 외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추가 비용 여부



- 매출액,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여부, 주요 업종에 관계 없이 대체로 세무대리인에게 추가로 지불한 비용이 없는 것으로 조사
  - 매출액별로는 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 매출액 50~100억 미만 사업자는 80.0%, 매출액 100억 이상 사업자는 84.6%로 높은 수준
  - 부가가치세 납부유형별로는 간이과세자의 추가 지불비용이 없다는 응답이 81.8%로 다른 유형 대비 높은 것으로 파악
  - 업종별로는 추가 지불비용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70%를 상회하는 수준

<표 VII-41> 전자신고를 위해 고정비용 외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추가 비용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추가 지불비용 있음	추가 지불비용 없음	
전체	(642)	28.2	71.8	
매출액	1억 미만	(79)	20.3	79.7
	1~5억 미만	(128)	26.6	73.4
	5~10억 미만	(99)	35.4	64.6
	10~50억 미만	(172)	30.2	69.8
	50~100억 미만	(35)	20.0	80.0
	100억 이상	(13)	15.4	84.6
	무응답	(116)	30.2	69.8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96)	31.3	68.8
	일반과세자	(535)	27.9	72.1
	간이과세자	(11)	18.2	81.8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581)	28.2	71.8
	비해당	(61)	27.9	72.1
주요업종	서비스업	(152)	23.7	76.3
	도소매업	(124)	26.6	73.4
	제조업	(250)	31.2	68.8
	기타	(116)	29.3	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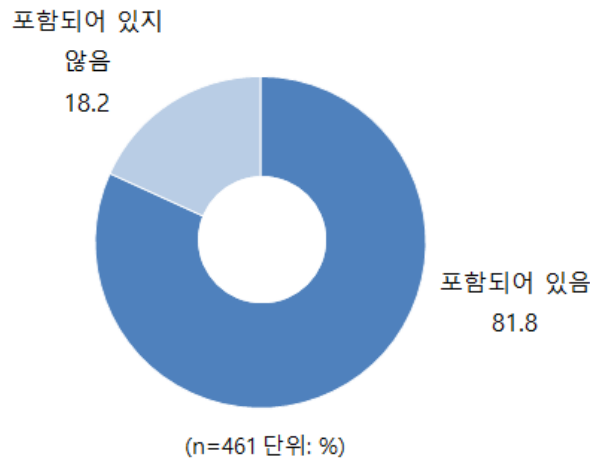
### 3)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 중 전자신고 업무비용의 포함 여부



QC3. 귀하가 세금신고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에는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세무대리인에게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업자 중 전자신고 업무비용이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81.8%로 높은 수준
- 고용한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 중 전자신고 업무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8.2%으로 조사

[그림 VII-51]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 중 전자신고 업무비용의 포함 여부



- 매출액,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여부, 주요 업종에 관계없이 대체로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이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
- 매출액별로는 1억 미만의 경우 전자신고 업무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응답이 87.3%로 다른 매출액 규모 대비 높은 수준
- 부가가치세 납부유형별로는 전자신고 업무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면세사업자(83.3%), 일반과세자(81.6%), 간이과세자(77.8%) 순으로 분포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포함되었다는 응답이 81.8% 수준


- 주요업종별로는 포함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서비스업(85.3%)과 제조업(83.7%)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표 VII-42>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 중 전자신고 업무비용의 포함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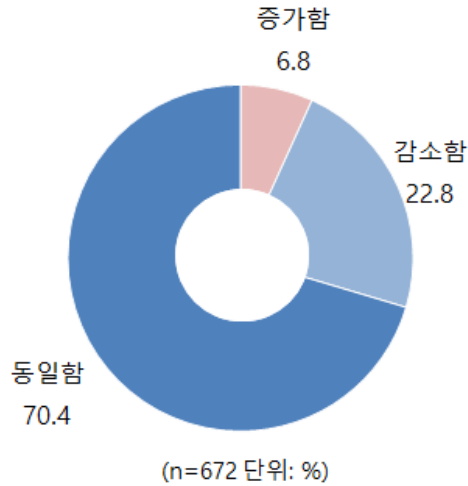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포함되어 있음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전체		(461)	81.8	18.2
매출액	1억 미만	(63)	87.3	12.7
	1~5억 미만	(94)	78.7	21.3
	5~10억 미만	(64)	81.3	18.8
	10~50억 미만	(120)	80.0	20.0
	50~100억 미만	(28)	75.0	25.0
	100억 이상	(11)	81.8	18.2
	무응답	(81)	86.4	13.6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66)	83.3	16.7
	일반과세자	(386)	81.6	18.4
	간이과세자	(9)	77.8	22.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417)	81.8	18.2
	비해당	(44)	81.8	18.2
주요업종	서비스업	(116)	85.3	14.7
	도소매업	(91)	78.0	22.0
	제조업	(172)	83.7	16.3
	기타	(82)	76.8	23.2

#### 4) 전자신고시 세무관련 업무비용 증감에 대한 의견

	<b>QC4.</b>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에 비하여 귀사의 세무 관련 업무비용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감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전자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의 93.2%는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에 비해 세무업무비용이 동일하거나 감소한다고 인식함
  - 동일하다는 응답은 70.4%, 감소한다는 22.8%임
  -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에 비하여 세무업무비용이 증가한다는 의견은 6.8%에 불과함

[그림 VII-52] 전자신고시 세무 관련 업무비용 증감에 대한 의견





- 대체적으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를 하는 경우에 비해서 세무업무비용이 동일하거나 감소한다는 의견이 90%를 상회함
  - 매출액별로는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세무관련 업무비용이 동일하거나 감소한다는 의견이 많아지는 경향으로 조사
    - 특히, 매출액 100억 이상의 경우 모두 업무비용이 동일하거나 감소한다고 인식
  - 부가가치세 납부유형별로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모두 세무관련 업무비용이 동일하거나 감소한다고 인식
    - 특히, 간이과과세자의 경우 업무비용이 감소한다는 의견이 37.5%로 높은 편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과 관계없이 세무관련 업무 비용이 동일하거나 감소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3.0% 이상으로 높은 수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는 동일(71.5%)하다는 응답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감소(33.8%)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 주요업종별로 도소매업의 경우 세무관련 업무비용이 동일하거나 감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7.8%로 가장 높게 조사

<표 VII-43> 전자신고시 세무관련 업무비용 증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증가함	감소함	동일함
전체		(672)	6.8	22.8	70.4
매출액	1억 미만	(90)	10.0	25.6	64.4
	1~5억 미만	(140)	6.4	22.9	70.7
	5~10억 미만	(101)	7.9	16.8	75.2
	10~50억 미만	(173)	5.2	26.6	68.2
	50~100억 미만	(36)	2.8	25.0	72.2
	100억 이상	(13)	0.0	23.1	76.9
	무응답	(119)	8.4	19.3	72.3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100)	7.0	21.0	72.0
	일반과세자	(556)	7.0	22.7	70.3
	간이과세자	(16)	0.0	37.5	62.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601)	7.0	21.5	71.5
	비해당	(71)	5.6	33.8	60.6
주요업종	서비스업	(168)	7.1	23.8	69.0
	도소매업	(132)	2.3	25.8	72.0
	제조업	(251)	8.4	21.5	70.1
	기타	(121)	8.3	20.7	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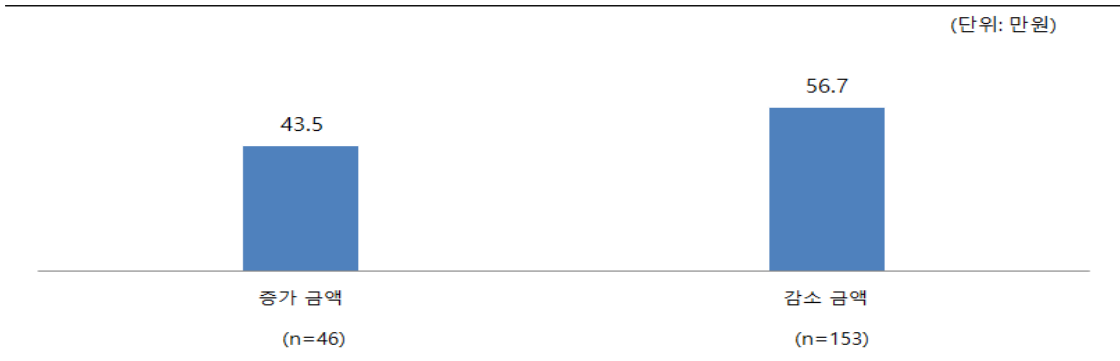
5)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감 금액

 	<p><b>QC4-1/QC4-2.</b>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에 비하여 세무 관련 업무비용이 연간 얼마나 증가 혹은 감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	---

서면신고에 비하여 세무 관련 업무의 평균 감소 금액은 증가 금액 대비 약 13.2만원 높은 편

○ 세무 관련 업무비용의 평균 감소 금액은 56.7만원, 증가 금액은 43.5만원 수준

[그림 VII-53]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감 금액\_평균




-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주요업종에 관계없이 대체로 업무비용의 평균 감소 금액이 증가 금액에 비해 높은 편
  - 매출액별로는 10~50억 미만의 경우 업무비용의 평균 감소 금액(110.3만원)이 증가 금액(45.9만원)에 비해 높게 파악
  - 부가가치세 납부유형별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업무비용의 평균 감소 금액이 59.7만원으로 다른 납부유형 대비 높은 수준
  - 주요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업무비용의 평균 감소 금액이 97.2만원으로 다른 업종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조사

<표 VII-44>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감 금액\_평균표

(단위: 명,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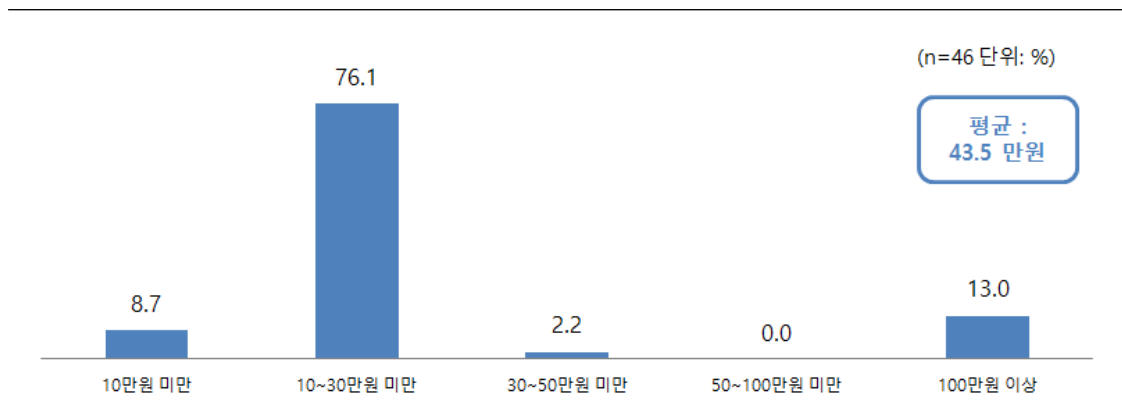
구분	업무비용 증가		업무비용 감소		
	사례수(명)	평균 금액	사례수(명)	평균 금액	
전체	(46)	43.5	(153)	56.7	
매출액	1억 미만	(9)	18.0	(23)	31.8
	1~5억 미만	(9)	78.9	(32)	39.3
	5~10억 미만	(8)	65.6	(17)	43.9
	10~50억 미만	(9)	45.9	(46)	110.3
	50~100억 미만	(1)	25.0	(9)	21.2
	100억 이상	-	-	(3)	20.3
	무응답	(10)	16.5	(23)	26.7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7)	27.3	(21)	46.4
	일반과세자	(39)	46.4	(126)	59.7
	간이과세자	-	-	(6)	30.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42)	43.8	(129)	58.2
	비해당	(4)	40.5	(24)	49.0
주요업종	서비스업	(12)	76.3	(40)	23.0
	도소매업	(3)	5.0	(34)	35.7
	제조업	(21)	42.9	(54)	97.2
	기타	(10)	17.0	(25)	51.8

### 5-1)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가 금액

	<p><b>QC4-1.</b>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에 비하여 세무 관련 업무비용이 연간 얼마나 증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	---

-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업무비용이 증가한다고 응답한 사업자(전체 개인사업자의 6.8%)의 평균 증가 금액은 43.5만원
  - 서면신고에 비해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가 금액이 10~30만원 미만의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6.1%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
    - 이어 100만원 이상(13.0%), 10만원 미만(8.7%) 순으로 조사

[그림 VII-54]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가 금액





- 매출액,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여부, 주요 업종에 관계 없이 증가 비용 금액을 10~3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 매출액별로는 매출액 1억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증가 비용 금액이 10~30만원 미만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0.0%로 높은 비중을 차지
  - 부가가치세 납부유형별로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증가 비용 금액을 10~3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5.7%로 일반과세자(74.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경우 업무비용 증가 금액을 1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0%로 다른 업종 대비 높은 수준

<표 VII-45>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가 금액

(단위: 명,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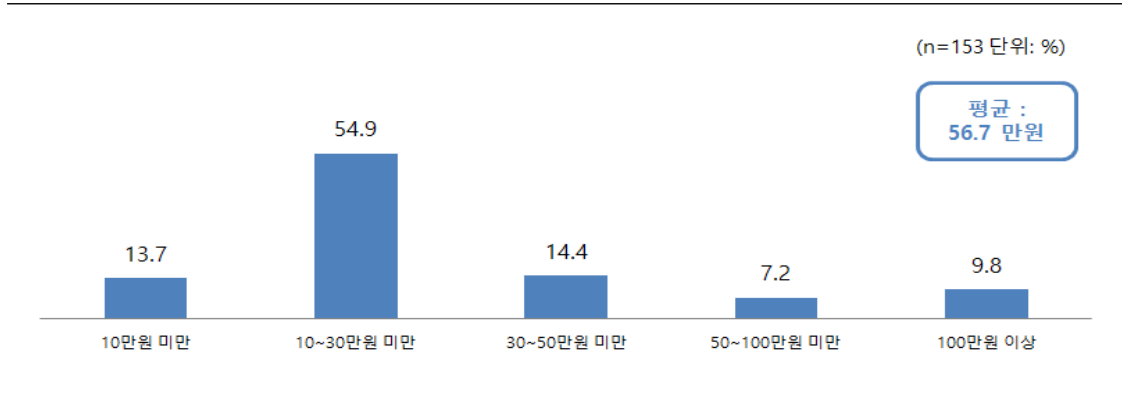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10만원 미만	10~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평균]
전체		(46)	8.7	76.1	2.2	-	13.0	43.5
매출액	1억 미만	(9)	0.0	100.0	0.0	-	0.0	18.0
	1~5억 미만	(9)	22.2	55.6	0.0	-	22.2	78.9
	5~10억 미만	(8)	0.0	75.0	0.0	-	25.0	65.6
	10~50억 미만	(9)	0.0	66.7	11.1	-	22.2	45.9
	50~100억 미만	(1)	0.0	100.0	0.0	-	0.0	25.0
	100억 이상	-	-	-	-	-	-	-
	무응답	(10)	20.0	80.0	0.0	-	0.0	16.5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7)	0.0	85.7	0.0	-	14.3	27.3
	일반과세자	(39)	10.3	74.4	2.6	-	12.8	46.4
	간이과세자	-	-	-	-	-	-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42)	9.5	76.2	2.4	-	11.9	43.8
	비해당	(4)	0.0	75.0	0.0	-	25.0	40.5
주요업종	서비스업	(12)	0.0	75.0	0.0	-	25.0	76.3
	도소매업	(3)	100.0	0.0	0.0	-	0.0	5.0
	제조업	(21)	0.0	81.0	4.8	-	14.3	42.9
	기타	(10)	10.0	90.0	0.0	-	0.0	17.0

5-2)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감소 금액

 	<p><b>QC4.2.</b>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에 비하여 세무 관련 업무비용이 연간 얼마나 감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	---

-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세무 관련 업무비용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사업자(전체 개인사업자의 22.8%)의 평균 감소금액은 56.7만원 수준
-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세무관련 업무비용의 감소금액이 10~30만원 미만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9%로 절반 이상을 차지
  - 이어 업무비용 감소금액이 30~50만원 미만인 경우는 14.4%,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13.7% 순으로 조사

[그림 VII-55]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감소 금액



- 매출액,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여부, 주요 업종에 관계 없이 감소 비용 금액을 10~3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
  - 매출액별로는 매출액 1억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업무비용 감소금액을 30~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6.1%로 다른 매출액 규모 대비 높은 수준
  - 부가가치세 납부유형별로는 면세사업자(57.1%)와 일반과세자(55.6%) 모두 업무비용 감소금액을 10~30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


<표 VII-46>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감소금액

(단위: 명,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10만원 미만	10~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평균]
전체		(153)	13.7	54.9	14.4	7.2	9.8	56.7
매출액	1억 미만	(23)	17.4	43.5	26.1	4.3	8.7	31.8
	1~5억 미만	(32)	12.5	50.0	9.4	12.5	15.6	39.3
	5~10억 미만	(17)	17.6	58.8	11.8	5.9	5.9	43.9
	10~50억 미만	(46)	13.0	54.3	10.9	8.7	13.0	110.3
	50~100억 미만	(9)	11.1	77.8	11.1	0.0	0.0	21.2
	100억 이상	(3)	33.3	33.3	0.0	33.3	0.0	20.3
	무응답	(23)	8.7	65.2	21.7	0.0	4.3	26.7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21)	14.3	57.1	14.3	4.8	9.5	46.4
	일반과세자	(126)	12.7	55.6	14.3	7.9	9.5	59.7
	간이과세자	(6)	33.3	33.3	16.7	0.0	16.7	30.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129)	13.2	55.8	14.0	7.8	9.3	58.2
	비해당	(24)	16.7	50.0	16.7	4.2	12.5	49.0
주요업종	서비스업	(40)	10.0	77.5	2.5	10.0	0.0	23.0
	도소매업	(34)	17.6	17.6	44.1	8.8	11.8	35.7
	제조업	(54)	9.3	64.8	7.4	5.6	13.0	97.2
	기타	(25)	24.0	48.0	8.0	4.0	16.0	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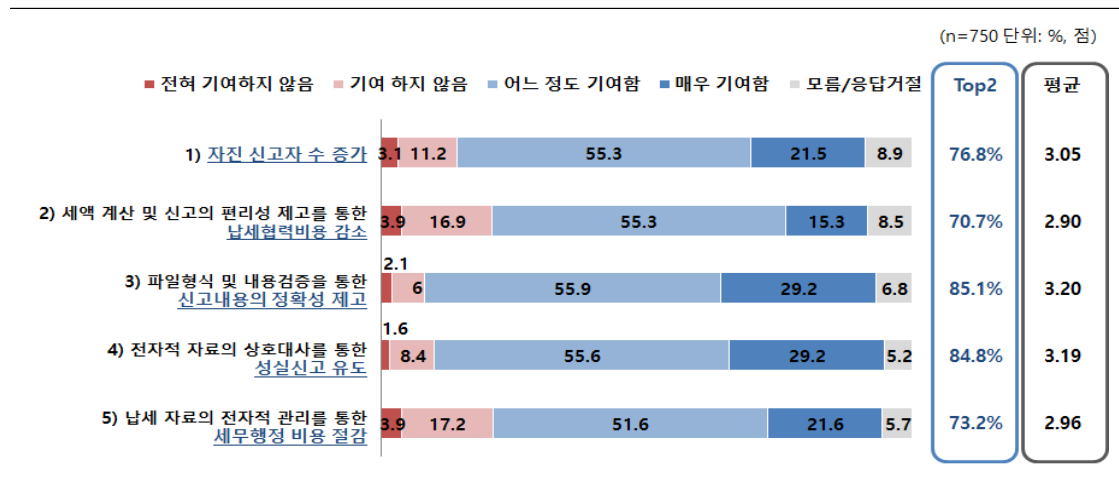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
- 주요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의 경우 업무비용 감소금액을 30~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1%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

## 6) 전자신고의 기여도

	<p><b>QC5.</b> 귀사는 전자신고가 다음의 측면에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b>QC5-1.</b> 자진신고자 수 증가</p> <p><b>QC5-2.</b> 세액 계산 및 신고의 편리성 제고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감소</p> <p><b>QC5-3.</b> 파일형식 및 내용검증을 통한 신고내용의 정확성 제고</p> <p><b>QC5-4.</b> 전자적 자료의 상호대사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p> <p><b>QC5-5.</b> 납세 자료의 전자적 관리를 통한 세무행정 비용 절감</p>
---	--

- 전체 개인사업자의 상당수가 전자신고의 기여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 특히, ‘파일형식 및 내용 검증을 통한 신고내용의 정확성 제고’의 항목에 대한 기여도가 85.1%(어느정도 기여함 55.9% + 매우 기여함 29.2%)로 높은 수준
  - ‘전자적 자료의 상호대사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 항목에 대한 기여도 응답 비율도 84.8%(어느정도 기여함 55.6% + 매우 기여함 29.2%)로 높은 수준

[그림 VII-56] 전자신고의 기여도



- 매출액,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여부, 주요 업종 등에 관계없이 대체로 ‘신고내용의 정확성 제고’와 ‘성실신고 유도’의 측면에서 전자신고 기여도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높은 것으로 파악

- 매출액별로는 10~50억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신고 기여도의 모든 항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 응답비율이 높은 수준
- 부가가치세 납부유형별로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전자적 자료의 상호대사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88.5%) 항목에서 전자신고의 기여도가 높다고 인식
  -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파일형식 및 내용검증을 통한 신고내용의 정확성 제고’(85.3%) 항목에서의 기여도가 높다고 인식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여부별로는 의무발행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전자신고 기여도의 모든 항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 응답비율이 높은 편
- 주요업종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

<표 VII-47> 전자신고의 기여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명)	자진 신고자 수 증가		세액 계산 및 신고의 편리성 제고로 납세협력 비용 감소		파일형식, 내용검증을 통한 신고내용의 정확성제고		전자적 자료의 상호대사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		납세 자료의 전자적 관리로 세무행정 비용 절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전체	(750)	76.8	3.05	70.7	2.90	85.1	3.20	84.8	3.19	73.2	2.96	
매출액	1억 미만	(121)	69.4	2.98	67.8	2.89	77.7	3.08	77.7	3.17	67.8	2.95
	1~5억 미만	(149)	78.5	3.05	67.1	2.81	87.2	3.26	85.9	3.15	72.5	2.98
	5~10억 미만	(112)	69.6	3.00	60.7	2.73	84.8	3.17	87.5	3.20	70.5	2.86
	10~50억 미만	(186)	82.3	3.10	75.8	3.01	89.8	3.29	88.7	3.28	76.9	3.01
	50~100억 미만	(36)	77.8	3.14	72.2	2.97	88.9	3.26	80.6	3.20	77.8	2.97
	100억 이상	(13)	84.6	3.17	84.6	3.17	92.3	3.38	84.6	3.08	61.5	3.00
	무응답	(133)	78.9	3.01	76.7	2.94	81.2	3.10	83.5	3.11	75.9	2.98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113)	74.3	3.02	70.8	2.94	85.8	3.19	88.5	3.19	73.5	2.96
	일반과세자	(605)	78.0	3.06	70.7	2.89	85.3	3.22	84.3	3.19	72.9	2.96
	간이과세자	(32)	62.5	2.85	68.8	2.89	78.1	2.97	81.3	3.13	78.1	3.07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658)	77.4	3.06	71.1	2.91	85.6	3.21	85.9	3.19	74.8	2.97
	비해당	(92)	72.8	2.96	67.4	2.83	81.5	3.15	77.2	3.18	62.0	2.94
주요업종	서비스업	(194)	74.7	3.01	76.3	2.97	86.1	3.23	83.5	3.15	75.8	3.05
	도소매업	(148)	74.3	3.02	62.2	2.77	85.8	3.26	84.5	3.18	62.8	2.85
	제조업	(269)	81.0	3.11	71.7	2.93	86.2	3.19	87.0	3.24	77.7	2.99
	기타	(139)	74.1	3.00	69.8	2.87	80.6	3.13	82.7	3.13	71.9	2.92

주: 1. 항목별 Top2(매우 기여함 + 어느 정도 기여함)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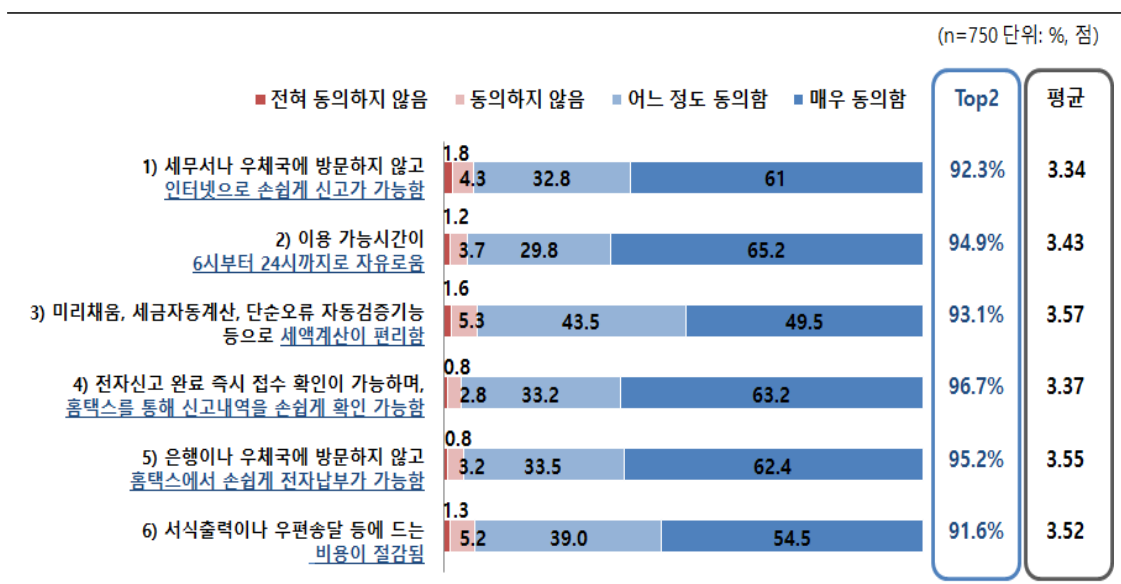
2. 항목별 유지 의향을 매우 높음(4점)~전혀 없음(1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음.

## 7)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편리성

	<p><b>QC6.</b> 귀사는 전자신고가 서면신고에 비하여 가지는 다음의 편리성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p> <p><b>QC6-1.</b> 세무서나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함</p> <p><b>QC6-2.</b> 이용 가능시간이 6시부터 24시까지로 자유로움</p> <p><b>QC6-3.</b> 미리채움서비스, 세금 자동 계산, 단순오류 자동검증기능 등으로 인하여 세액계산이 편리함</p> <p><b>QC6-4.</b> 전자신고 완료 즉시 접수 확인이 가능하며, 홈택스를 통해 신고내역을 손쉽게 확인 가능함</p> <p><b>QC6-5.</b>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손쉽게 전자납부가 가능함</p> <p><b>QC6-6.</b> 서식출력이나 우편송달 등에 드는 비용이 절감됨</p>
---	---

- 서면신고에 비해 전자신고가 편리하다는 응답이 모든 항목에서 90% 이상으로 나타나 대부분 전자신고 편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특히, ‘전자신고 완료 즉시 접수 확인 가능하며, 홈택스를 통해 신고내역을 손쉽게 확인 가능함’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중이 96.7%(어느 정도 동의함 33.2% + 매우 동의함 63.2%)로 가장 높은 수준
    - 이어 ‘홈택스에서 손쉽게 전자납부 가능함’(95.2%), ‘이용 가능시간이 6시부터 24시까지로 자유로움’(94.9%), ‘세액계산이 편리함’(93.1%) 순으로 조사

[그림 VII-57]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편리성



- 주요업종, 자산총액, 중소기업 여부, 매출액에 관계없이 ‘홈택스를 통해 신고내역 손쉽게 확인 가능함’ 항목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 매출액별로는 100억 이상 사업자의 경우 대체로 모든 항목에 대해 편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00.0%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
  - 부가가치세 납부유형별로는 간이과세자의 ‘서식출력, 우편송달 비용이 절감됨’에서 전자신고가 편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3.8%로 다른 납부유형 대비 높은 수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모든 항목에 대해 편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조사
  - 주요업종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



〈표 VII-48〉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편리성

(단위: 명, %)

구분	사 례 수 (명)	세무서나 우체국에 방문없이 인터넷 으로 신고가 가능함		이용 시간이 6시~24로 자유로움		미리채움 자동 계산, 단순오류 검증기능 으로 세액계산 편리함		전자신고 완료 후 접수확인 가능 및 홈택스로 신고내역 확인가능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없이 홈택스로 전자납부 가능		서식출력 이나 우편송달 비용이 절감됨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전체	(750)	92.3	3.43	94.9	3.43	93.1	3.57	96.7	3.37	95.2	3.55	91.6	3.52	
매출액	1억 미만	(121)	80.2	3.19	89.3	3.19	86.8	3.39	91.7	3.23	87.6	3.35	86.8	3.32
	1~5억 미만	(149)	93.3	3.50	94.6	3.50	95.3	3.61	96.0	3.46	97.3	3.59	90.6	3.62
	5~10억 미만	(112)	93.8	3.41	94.6	3.41	91.1	3.54	95.5	3.32	93.8	3.52	89.3	3.46
	10~50억 미만	(186)	97.3	3.58	97.8	3.58	94.6	3.68	100.0	3.45	98.9	3.68	95.7	3.65
	50~100억 미만	(36)	94.4	3.53	94.4	3.53	94.4	3.69	97.2	3.53	94.4	3.61	91.7	3.56
	100억 이상	(13)	100.0	3.62	100.0	3.62	100.0	3.92	100.0	3.69	100.0	3.69	84.6	3.77
	무응답	(133)	92.5	3.35	96.2	3.35	94.7	3.50	97.7	3.28	95.5	3.50	94.0	3.42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113)	92.9	3.47	92.0	3.47	93.8	3.58	96.5	3.40	93.8	3.59	89.4	3.46
	일반과세자	(605)	93.1	3.45	95.9	3.45	93.4	3.58	97.2	3.39	95.7	3.55	91.9	3.54
	간이과세자	(32)	75.0	3.03	87.5	3.03	84.4	3.38	87.5	3.06	90.6	3.31	93.8	3.38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658)	93.3	3.45	96.2	3.45	93.6	3.59	97.4	3.38	96.2	3.56	92.1	3.53
	비해당	(92)	84.8	3.29	85.9	3.29	89.1	3.45	91.3	3.32	88.0	3.47	88.0	3.45
주요업종	서비스업	(194)	94.3	3.49	95.9	3.61	95.4	3.41	98.5	3.58	97.9	3.60	93.3	3.47
	도소매업	(148)	90.5	3.39	92.6	3.50	91.2	3.36	93.9	3.49	90.5	3.43	89.2	3.33
	제조업	(269)	93.7	3.43	96.3	3.58	92.6	3.33	98.5	3.58	96.3	3.53	92.9	3.42
	기타	(139)	88.5	3.41	93.5	3.57	92.8	3.42	93.5	3.51	94.2	3.47	89.2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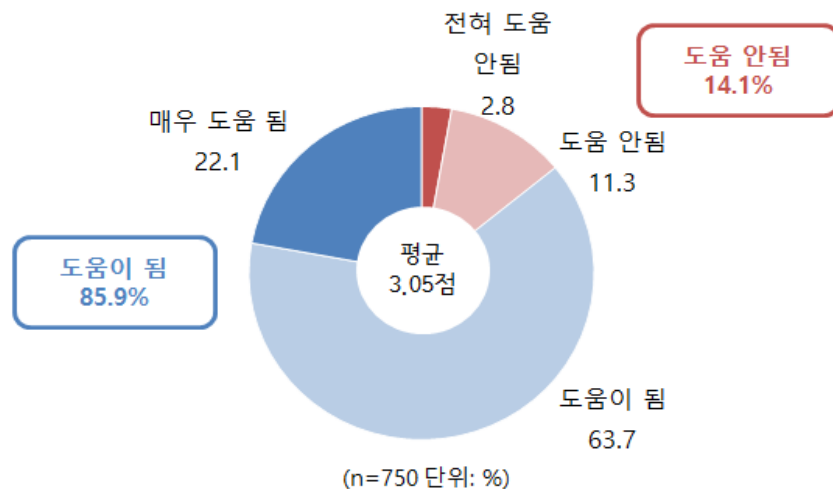
주: 1. 항목별 Top2(매우 동의함 + 어느 정도 동의함) 비율  
 2. 항목별 동의 정도를 매우 동의함(4점)~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음.

## 8)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p>QC7. 귀사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p>
--	--

- 전체 사업자의 85.9%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
  -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63.7%,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2.1%로 조사

[그림 VII-58]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 매출액,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여부, 주요 업종에 관계없이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한 비율이 높은 수준
  - 매출액별로는 매출액이 100억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비율이 92.3%(도움이 됨 76.9% + 매우 도움이 됨 15.4%)로 높게 조사
  - 부가가치세 납부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86.6%로 비해당하는 사업자(80.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 주요업종별로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서비스업은 88.7%, 제조업은 87.0%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편



<표 VII-49>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 됨	도움 안됨 (Bot2)	도움됨 (Top2)	[평균]	
전체	(750)	2.8	11.3	63.7	22.1	14.1	85.9	3.05	
매출액	1억 미만	(121)	2.5	12.4	66.1	19.0	14.9	85.1	3.02
	1~5억 미만	(149)	2.0	13.4	57.7	26.8	15.4	84.6	3.09
	5~10억 미만	(112)	1.8	12.5	65.2	20.5	14.3	85.7	3.04
	10~50억 미만	(186)	4.3	10.2	63.4	22.0	14.5	85.5	3.03
	50~100억 미만	(36)	5.6	16.7	61.1	16.7	22.2	77.8	2.89
	100억 이상	(13)	0.0	7.7	76.9	15.4	7.7	92.3	3.08
	무응답	(133)	2.3	7.5	66.9	23.3	9.8	90.2	3.11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113)	5.3	7.1	65.5	22.1	12.4	87.6	3.04
	일반과세자	(605)	2.5	12.1	62.8	22.6	14.5	85.5	3.06
	간이과세자	(32)	0.0	12.5	75.0	12.5	12.5	87.5	3.0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658)	2.4	10.9	65.2	21.4	13.4	86.6	3.06
	비해당	(92)	5.4	14.1	53.3	27.2	19.6	80.4	3.02
주요업종	서비스업	(194)	2.1	9.3	62.4	26.3	11.3	88.7	3.13
	도소매업	(148)	4.1	12.2	62.8	20.9	16.2	83.8	3.01
	제조업	(269)	3.0	10.0	65.4	21.6	13.0	87.0	3.06
	기타	(139)	2.2	15.8	63.3	18.7	18.0	82.0	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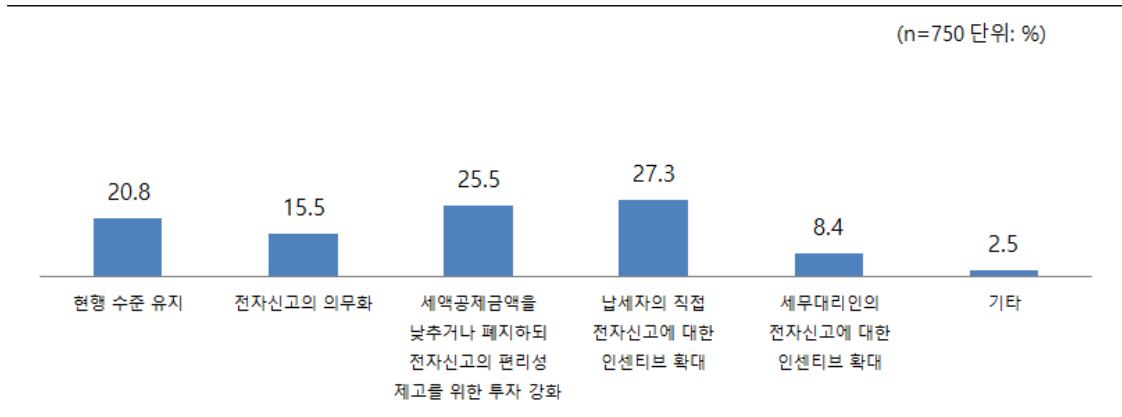
주: 도움 정도를 매우 도움 됨(4점)~전혀 도움 안됨(1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음.

### 9)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b>QC8.</b> 귀사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가장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납세자의 직접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27.3%)는 ‘전자신고 편리성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25.5%), ‘현행수준 유지’(20.8%)와 큰 차이가 없었음
- ‘전자신고의 편리성 제고’(25.5%)와 ‘전자신고의 의무화’(15.5%)와 같이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이외의 개선방향도 41%가 선택함

[그림 VII-59]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 부가가치세 납부 유형, 주요업종에 관계없이 대체로 ‘납세자의 직접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자신고 편리성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현행수준 유지’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


<표 VII-50>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명)	현행수준 유지	전자 신고의 의무화	세액공제 금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되 전자 신고의 편리성 제고	납세자의 직접 전자신고 인센티브 확대	세무 대리인의 전자신고 인센티브 확대	기타	
전체	(750)	20.8	15.5	25.5	27.3	8.4	2.5	
매출액	1억 미만	(121)	30.6	9.9	28.1	20.7	6.6	4.1
	1~5억 미만	(149)	15.4	11.4	28.2	29.5	10.7	4.7
	5~10억 미만	(112)	19.6	17.9	17.9	33.0	11.6	0.0
	10~50억 미만	(186)	13.4	17.7	27.4	30.6	8.6	2.2
	50~100억 미만	(36)	19.4	30.6	22.2	25.0	2.8	0.0
	100억 이상	(13)	30.8	0.0	38.5	23.1	7.7	0.0
	무응답	(133)	28.6	17.3	23.3	22.6	6.0	2.3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113)	18.6	15.9	29.2	26.5	7.1	2.7
	일반과세자	(605)	21.0	15.7	24.3	27.6	8.9	2.5
	간이과세자	(32)	25.0	9.4	34.4	25.0	3.1	3.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658)	21.3	16.1	24.3	27.4	9.0	2.0
	비해당	(92)	17.4	10.9	33.7	27.2	4.3	6.5
주요업종	서비스업	(194)	21.6	7.2	27.8	28.9	12.4	2.1
	도소매업	(148)	20.9	16.9	25.0	28.4	4.7	4.1
	제조업	(269)	23.4	20.4	23.8	22.7	7.1	2.6
	기타	(139)	14.4	15.8	25.9	33.1	9.4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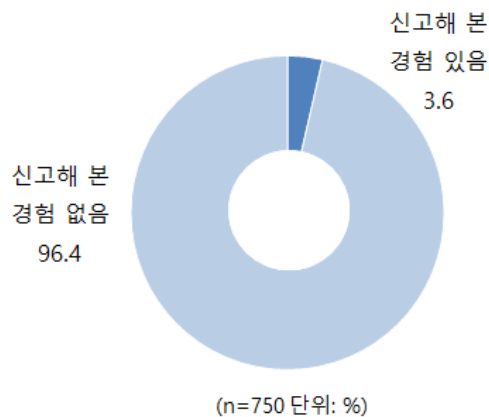
- 매출액별로 매출액 100억 이상의 경우 ‘전자신고의 편리성 제고’에 대한 개선 요구가 38.5%로 높은 수준
  - 매출액 50~100억 미만의 경우에는 ‘전자신고의 의무화’(30.6%)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 편
- 부가가치세 납부유형별로는 인센티브 확대 이외의 면세사업자(29.2%)와 간이과세자(34.4%)의 경우 ‘전자신고의 편리성 제고’개선 요구가 높음
-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하는 경우 ‘전자신고의 편리성 제고’에 대한 개선 요구가 33.7%로 ‘납세자 직접신고 인센티브 확대’(27.2%) 대비 높은 수준
- 주요업종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

#### 10) 전화신고 방식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

	<b>QC9</b> 귀하는 전화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

- 전체 개인사업자의 96.4%가 전화신고 방식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없음
  - 전체 개인사업자 중 전화신고의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본 경험이 있는 사업자는 3.6%에 불과

[그림 VII-60] 전화신고 방식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





-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여부, 주요업종에 관계 없이 대부분 전화신고의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
  - 매출액별로 100억 이상의 사업체 중 15.4%가 전화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매출액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부가가치세 납부유형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
  - 주요업종별로 도소매업의 경우 전화신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8.6%로 높은 비율을 차지

<표 VII-51> 전화신고 방식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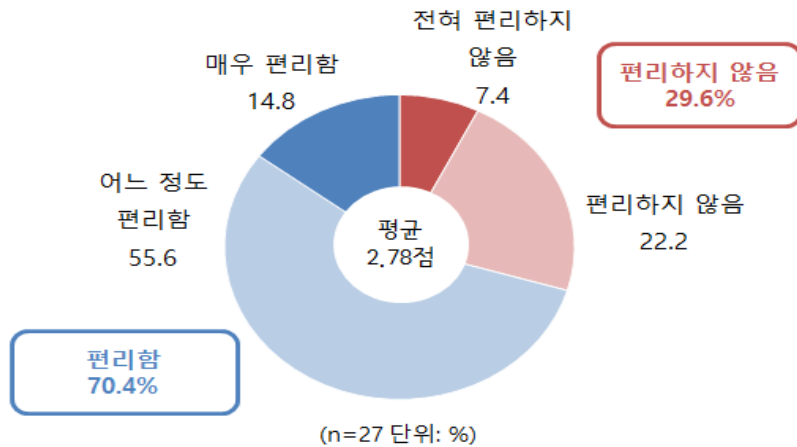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신고해 본 경험 있음	신고해 본 경험 없음
전체		(750)	3.6	96.4
매출액	1억 미만	(121)	4.1	95.9
	1~5억 미만	(149)	2.7	97.3
	5~10억 미만	(112)	8.0	92.0
	10~50억 미만	(186)	1.6	98.4
	50~100억 미만	(36)	5.6	94.4
	100억 이상	(13)	15.4	84.6
	무응답	(133)	1.5	98.5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113)	2.7	97.3
	일반과세자	(605)	3.8	96.2
	간이과세자	(32)	3.1	96.9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658)	3.5	96.5
	비해당	(92)	4.3	95.7
주요업종	서비스업	(194)	3.6	96.4
	도소매업	(148)	1.4	98.6
	제조업	(269)	5.6	94.4
	기타	(139)	2.2	97.8

## 11) 전자신고 대비 전화신고 방식의 편리함 정도

 	<p>QC9-1.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전화신고 방식이 전자신고 방식에 비하여 얼마나 편리하다고 느끼셨습니까?</p>
--	---

- 전화신고의 경험이 있는 사업자 중 전자신고 대비 전화신고가 편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0.4%(매우 편리함 14.8% + 어느 정도 편리함 55.6%) 수준
- 전화신고 방식이 편리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9.6%(전혀 편리하지 않음 7.4% + 편리하지 않음 22.2%) 정도

[그림 VII-61] 전자신고 대비 전화신고 방식의 편리함 정도



-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여부, 주요업종에 관계 없이 전자신고에 비해 전화신고가 편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 매출액별로 매출액 1억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전화신고가 더 편리하다는 의견이 100.0%로 높은 수준
- 부가가치세 납부유형별로는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전화신고가 전자신고에 비해 편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00.0%로 조사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여부별로는 의무발행에 비해당하는 사업자의 편리하다는 응답이 75.0%로 의무발행에 해당하는 사업자(69.6%) 대비 다소 높은 수준
- 주요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기타 업종의 경우 편리하다는 의견이 100.0%로 조사

<표 II -52> 전자신고 대비 전화신고 방식의 편리함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편리 하지 않음	편리 하지 않음	어느 정도 편리함	매우 편리함	편리 하지 않음 (Bot2)	편리함 (Top2)	[평균]	
전체	(27)	7.4	22.2	55.6	14.8	29.6	70.4	2.78	
매출액	1억 미만	(5)	0.0	0.0	60.0	40.0	0.0	100.0	3.40
	1~5억 미만	(4)	0.0	50.0	0.0	50.0	50.0	50.0	3.00
	5~10억 미만	(9)	11.1	22.2	66.7	0.0	33.3	66.7	2.56
	10~50억 미만	(3)	33.3	0.0	66.7	0.0	33.3	66.7	2.33
	50~100억 미만	(2)	0.0	50.0	50.0	0.0	50.0	50.0	2.50
	100억 이상	(2)	0.0	50.0	50.0	0.0	50.0	50.0	2.50
	무응답	(2)	0.0	0.0	100.0	0.0	0.0	100.0	3.00
부가가치세 납부유형	면세사업자	(3)	0.0	0.0	66.7	33.3	0.0	100.0	3.33
	일반과세자	(23)	8.7	26.1	52.2	13.0	34.8	65.2	2.70
	간이과세자	(1)	0.0	0.0	100.0	0.0	0.0	100.0	3.0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해당	(23)	8.7	21.7	56.5	13.0	30.4	69.6	2.74
	비해당	(4)	0.0	25.0	50.0	25.0	25.0	75.0	3.00
주요업종	서비스업	(7)	0.0	28.6	57.1	14.3	28.6	71.4	2.86
	도소매업	(2)	0.0	0.0	100.0	0.0	0.0	100.0	3.00
	제조업	(15)	13.3	26.7	53.3	6.7	40.0	60.0	2.53
	기타	(3)	0.0	0.0	33.3	66.7	0.0	100.0	3.67

주: 편리함 정도를 매우 편리함(4점)-전혀 편리하지 않음(1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음.

## 6. 개인비사업자 인식조사

### 가. 응답자 특성

####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 개인비사업자의 85.3%(1,200만원 미만 29.3% + 1,200~4,600만원 미만 56.0%)가 2016년 기준 신고한 종합소득이 4,600만원 미만으로 조사

○ 성별로 살펴보면, 개인비사업자의 83.3%가 여성이며, 남성은 16.7% 수준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39.3%로 가장 많았고, 30대(23.3%), 40대(20.0%), 20대(17.3%) 순으로 분포
- 2016년 기준 신고한 종합소득별로는 1,200~4,600만원 미만인 경우가 56.0%로 절반 이상을 차지
  - 1,200만원 미만(29.3%), 4,600~8,800만원 미만(10.7%) 순으로 조사

〈표 VII-53〉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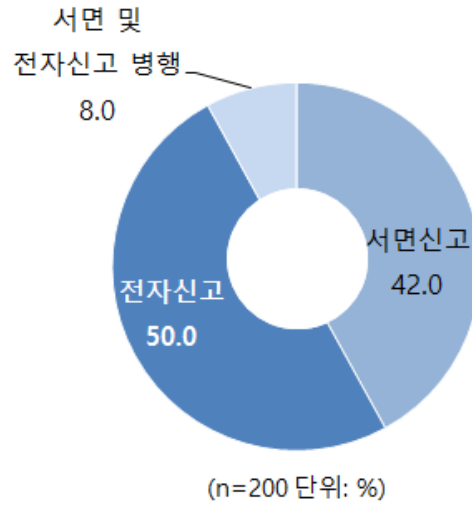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150)	100.0
성별	남성	(25)	16.7
	여성	(125)	83.3
연령	20대	(26)	17.3
	30대	(35)	23.3
	40대	(30)	20.0
	50대 이상	(59)	39.3
소득세 신고방식	서면신고	(63)	42.0
	전자신고	(75)	50.0
	서면 및 전자신고 병행	(12)	8.0
종합소득	1,200만원 미만	(44)	29.3
	1,200~4,600만원 미만	(84)	56.0
	4,600~8,800만원 미만	(16)	10.7
	8,800만원~1억5,000만원 미만	(5)	3.3
	1억 5,000만원 이상	(1)	0.7

## 2) 소득세 신고방식

- 전체 개인비사업자의 절반(50.0%)이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
  -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는 비중은 42.0%, 서면 및 전자신고를 병행하여 신고하는 비중은 8.0%에 불과

[그림 VII-62] 소득세 신고방식




<표 VII-54> 소득세 신고방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150)	100.0
소득세 신고방식	서면신고	(63)	42.0
	전자신고	(75)	50.0
	서면 및 전자신고 병행	(12)	8.0

#### 나. 전자신고 미운영 이유와 향후 이용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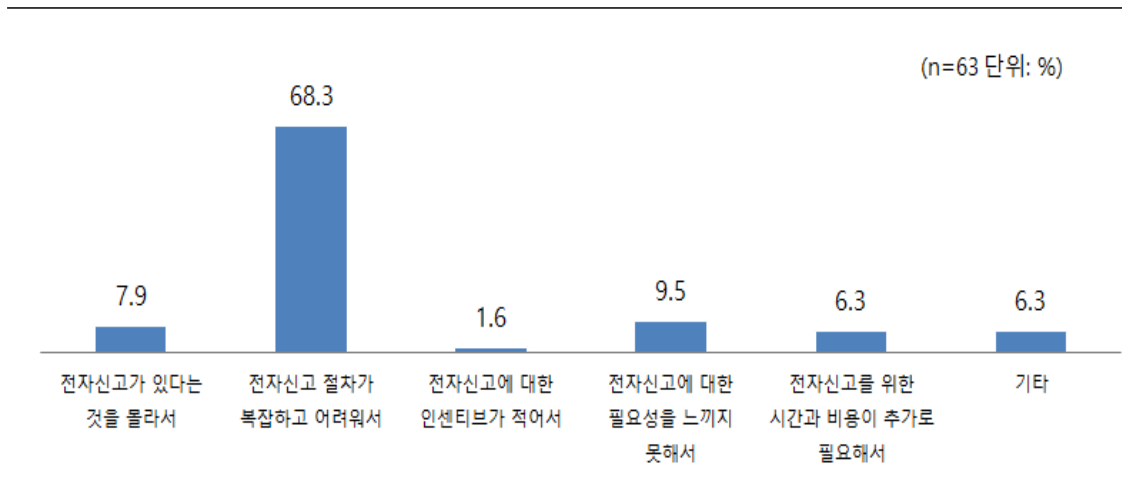
##### 1) 소득세 신고 시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b>QA1.</b> 귀하께서는 소득세 신고 시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소득세를 전자신고로 하지 않은 개인비사업자 중 3분의 2가량(68.3%)이 ‘전자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 이어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전자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9.5%), ‘전자신고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7.9%), ‘전자신고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필요해서’(6.3%) 순으로 조사

[그림 VII-63] 소득세 신고 시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 성별, 연령 및 종합소득에 관계없이 ‘전자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전자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전자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비율이 80.0%로 상당수를 차지
  - 연령대별로는 ‘전자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를 응답한 비율이 20대는 85.7%, 30대는 80.0%로 높은 수준
    - 40대의 경우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전자신고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로 응답한 비율이 15.4%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은 편
    - 50대의 경우는 ‘전자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의 응답비율이 12.1%로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종합소득별로는 종합소득 1,2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자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전자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3.3%로 높은 수준

<표 VII-55> 소득세 신고 시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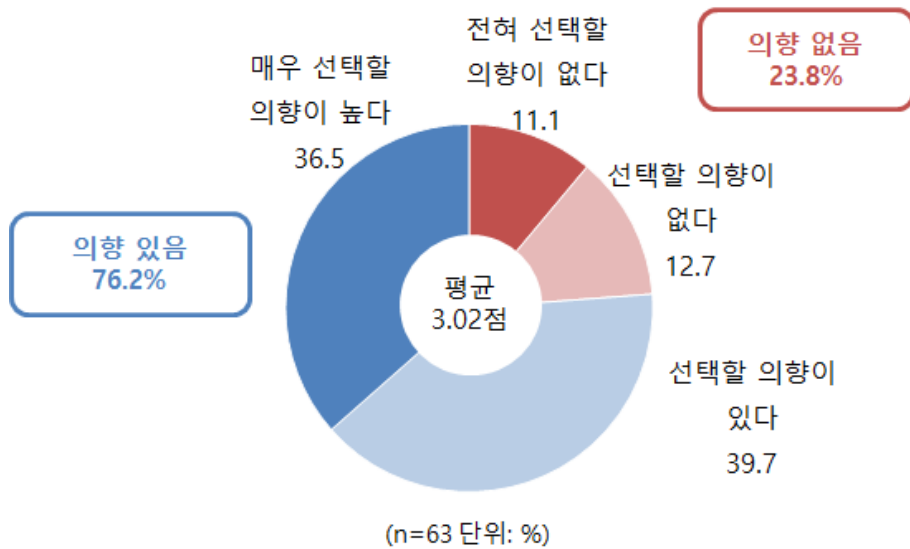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명)	전자 신고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전자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전자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어서	전자 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전자 신고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필요해서	기타
전체		(63)	7.9	68.3	1.6	9.5	6.3	6.3
성별	남성	(5)	20.0	80.0	0.0	0.0	0.0	0.0
	여성	(58)	6.9	67.2	1.7	10.3	6.9	6.9
연령	20대	(7)	0.0	85.7	0.0	0.0	0.0	14.3
	30대	(10)	0.0	80.0	0.0	10.0	10.0	0.0
	40대	(13)	15.4	53.8	7.7	7.7	7.7	7.7
	50대 이상	(33)	9.1	66.7	0.0	12.1	6.1	6.1
종합 소득	1,200만원 미만	(18)	0.0	83.3	0.0	11.1	0.0	5.6
	1,200~4,600만원 미만	(38)	10.5	60.5	2.6	7.9	10.5	7.9
	4,600~8,800만원 미만	(5)	20.0	80.0	0.0	0.0	0.0	0.0
	8,800만원~1억5,000만원 미만	(1)	0.0	0.0	0.0	100.0	0.0	0.0
	1억 5,000만원 이상	(1)	0.0	100.0	0.0	0.0	0.0	0.0

2)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 2배 인상 시 전자신고 선택 의향

	<p><b>QA2.</b> 귀하께서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을 현재보다 2배 인상할 경우 전자신고를 선택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재 납세자가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접 세금을 신고한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p>
---	--

- 전자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비사업자 중 76.2%가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 2배 인상 시 전자신고를 선택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
  - 전자신고를 선택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7%, 매우 의향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36.5%로, 전체 긍정적인 응답이 76.2% 수준

[그림 VII-64]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 2배 인상 시 전자신고 선택 의향



- 사례가 1건밖에 없는 종합소득 8,800만원 이상인 구간을 제외하고는 성별, 연령 및 종합소득에 관계없이 전자신고를 선택할 의향이 70% 수준으로 높게 파악
  - 성별로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2배 인상할 경우 전자신고를 선택할 의향이 남성은 80.0%, 여성은 75.9%로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연령대별로는 20대(85.7%)와 30대(80.0%)의 연령대가 전자신고를 선택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파악
  - 종합소득별로는 종합소득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자신고를 선택할 의향이 있는 비율이 88.9%로 파악

<표 VII-56>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 2배 인상 시 전자신고 선택 의향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선택할 의향이 없다	선택할 의향이 없다	선택할 의향이 있다	매우 선택할 의향이 높다	의향 없음 (Bot2)	의향 있음 (Top2)	[평균]
전체		(63)	11.1	12.7	39.7	36.5	23.8	76.2	3.02
성별	남성	(5)	20.0	0.0	60.0	20.0	20.0	80.0	2.80
	여성	(58)	10.3	13.8	37.9	37.9	24.1	75.9	3.03
연령	20대	(7)	14.3	0.0	57.1	28.6	14.3	85.7	3.00
	30대	(10)	10.0	10.0	0.0	80.0	20.0	80.0	3.50
	40대	(13)	0.0	30.8	30.8	38.5	30.8	69.2	3.08
	50대 이상	(33)	15.2	9.1	51.5	24.2	24.2	75.8	2.85
종합 소득	1,200만원 미만	(18)	5.6	5.6	55.6	33.3	11.1	88.9	3.17
	1,200~4,600만원 미만	(38)	13.2	15.8	26.3	44.7	28.9	71.1	3.03
	4,600~8,800만원 미만	(5)	0.0	0.0	100.0	0.0	0.0	100.0	3.00
	8,800만원~1억5,000만원 미만	(1)	0.0	100.0	0.0	0.0	100.0	0.0	2.00
	1억 5,000만원 이상	(1)	100.0	0.0	0.0	0.0	100.0	0.0	1.00

주: 선택 의향을 매우 선택할 의향 있음(4점)~전혀 선택할 의향 없음(1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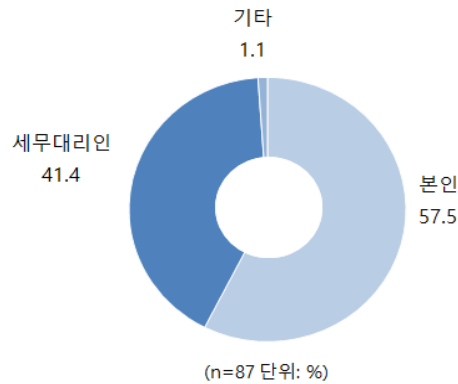
## 다. 전자신고 이용 행태

### 1)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자신고를 한 사람

	<p><b>Q</b>1. 귀하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전자신고를 수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p>
---	---

-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개인비사업자 중 절반(57.5%) 이상이 본인이 직접 신고  
 세무대리인에 의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의 비율은 41.4%, 기타 다른 사람에 의한 전자신고 비율은 1.1% 수준

[그림 VII-65]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자신고를 한 사람




- 연령대와 종합소득이 낮을수록 본인에 의한 전자신고 비율이 높은 경향으로 조사
  - 성별로는 본인에 의한 전자신고 비율이 남성은 60.0%, 여성은 56.7% 수준
  - 연령대별로 20대와 30대의 젊은 연령대는 본인에 의한 전자신고 비율이 각각 73.7%, 68.0%로 높은 수준
    - 40대와 50대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 비율이 52.9%, 53.8%로 높음 수준
  - 종합소득별로는 종합소득이 낮은 1,200만원 미만과 1,200~4,60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 의한 전자신고 비율이 61.5%, 60.9%로 높은 것으로 조사
    - 종합소득이 높은 4,600~8,800만원 미만과 8,800만원~1억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 의한 신고 비율이 54.5%, 75.0%로 높게 파악

<표 VII-57>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자신고를 한 사람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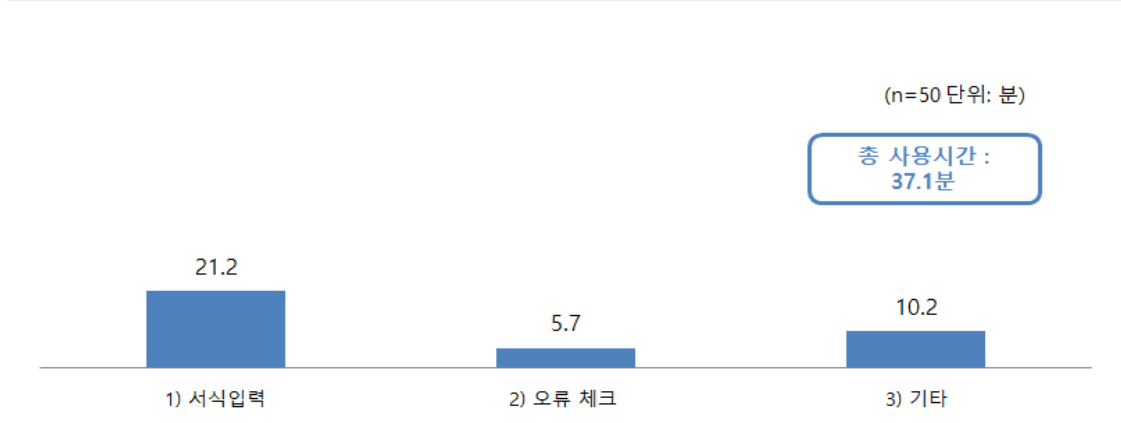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본인	세무대리인	기타
전체		(87)	57.5	41.4	1.1
성별	남성	(20)	60.0	40.0	0.0
	여성	(67)	56.7	41.8	1.5
연령	20대	(19)	73.7	26.3	0.0
	30대	(25)	68.0	32.0	0.0
	40대	(17)	41.2	52.9	5.9
	50대 이상	(26)	46.2	53.8	0.0
종합 소득	1,200만원 미만	(26)	61.5	38.5	0.0
	1,200~4,600만원 미만	(46)	60.9	37.0	2.2
	4,600~8,800만원 미만	(11)	45.5	54.5	0.0
	8,800만원~1억5,000만원 미만	(4)	25.0	75.0	0.0
	1억 5,000만원 이상	-	-	-	-

## 2)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p><b>QB1-1.</b> 귀하의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한 시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전자신고에 사용한 시간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오류검증을 거쳐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를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합니다. 전자신고 서식입력, 오류체크, 기타 단계별로 1회당 소요시간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p>
---	---

-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를 수행한 비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의 1회당 사용시간은 약 37.1분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전체 평균 사용시간 37.1분 중 서식입력 시간이 21.2분으로 약 57.1%를 차지
    - 오류체크는 평균 5.7분, 기타는 10.2분 소요

[그림 VII-66]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 성별 및 연령대 및 종합소득에 관계없이 서식입력 시간이 가장 길게 소요
  -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 소요시간이 11.7분으로 남성(5.4분)에 비해 긴 것으로 조사
  -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경우 서식입력 시간이 평균 33.1분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긴 것으로 파악
  - 종합소득별로는 종합소득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서식입력 시간이 28.9분으로 긴 것으로 조사


<표 VII-58>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사례수 (명)	1) 서식입력	2) 오류 체크	3) 기타	1회당 총 사용시간
전체		(50)	21.2	5.7	10.2	37.1
성별	남성	(12)	23.3	5.5	5.4	34.2
	여성	(38)	20.6	5.8	11.7	38.1
연령	20대	(14)	33.1	5.7	9.9	48.7
	30대	(17)	16.5	7.4	14.9	38.8
	40대	(7)	9.7	3.1	3.7	16.5
	50대 이상	(12)	20.8	4.8	7.5	33.1
종합 소득	1,200만원 미만	(16)	28.9	6.9	15.0	50.8
	1,200~4,600만원 미만	(28)	16.4	4.6	8.5	29.5
	4,600~8,800만원 미만	(5)	16.0	7.2	6.0	29.2
	8,800만원~1억5,000만원 미만	(1)	60.0	10.0	1.0	71.0
	1억 5,000만원 이상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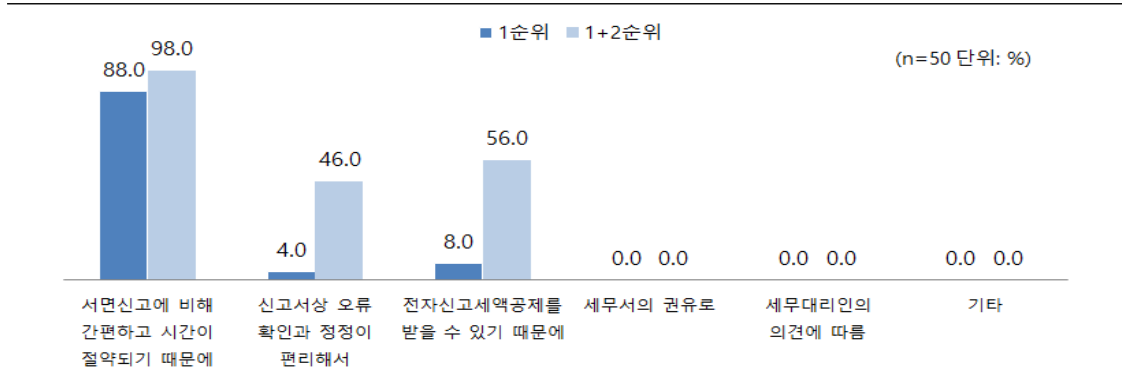
주: 전자신고 단계별 평균 사용시간 산출

### 3) 전자신고를 선택한 주된 이유

	<p><b>QB1-2.</b> 귀하께서는 전자신고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부터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p>
---	---

-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를 수행한 비사업자의 전자신고를 선택한 주된 이유 1순위는 ‘서면신고에 비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가 88.0%를 차지
- 1+2순위(중복응답) 기준으로도 ‘서면신고에 비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선택하였다는 응답이 98.0%로 대부분을 차지
  - 이어 전자신고를 선택한 주된 이유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1순위 기준 8.0%, 1+2순위 기준 56.0%), ‘신고서상 오류 확인과 정정이 편리해서’(1순위 기준 4.0%, 1+2순위 기준 46.0%) 순으로 높게 파악

[그림 VII-67] 전자신고를 선택한 주된 이유(1순위, 1+2순위)




- 성별 및 연령대 및 종합소득에 관계없이 ‘서면신고에 비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 되기 때문에’가 전자신고를 선택한 주된 이유로 조사
  - 성별로는 ‘서면신고에 비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선택하였다는 응답비율이 남성의 경우 100.0%로 높은 수준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를 전자 신고 선택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83.8%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파악
  - 종합소득별로는 종합소득 1,200만원 이상의 경우 모든 비사업자(100.0%)가 ‘서면 신고에 비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를 전자신고 선택한 이유로 응답

<표 VII-59> 전자신고를 선택한 주된 이유\_1+2 순위(복수응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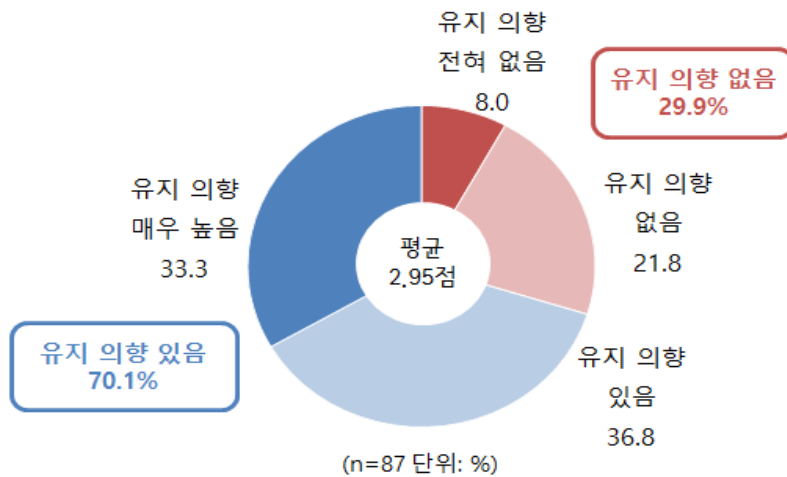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서면신고에 비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신고서상 오류 확인과 정정이 편리해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의 권유로	세무대리인의 의견에 따름	기타
전체	(50)	98.0	46.0	56.0	-	-	-
성별	남성	(12)	100.0	41.7	58.3	-	-
	여성	(38)	97.4	47.4	55.3	-	-
연령	20대	(14)	100.0	57.1	42.9	-	-
	30대	(17)	94.1	47.1	58.8	-	-
	40대	(7)	100.0	71.4	28.6	-	-
	50대 이상	(12)	100.0	16.7	83.3	-	-
종합 소득	1,200만원 미만	(16)	93.8	43.8	62.5	-	-
	1,200~4,600만원 미만	(28)	100.0	46.4	53.6	-	-
	4,600~8,800만원 미만	(5)	100.0	60.0	40.0	-	-
	8,800만원~1억5,000만원 미만	(1)	100.0	0.0	100.0	-	-
	1억 5,000만원 이상	-	-	-	-	-	-

#### 4)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 전자신고 유지할 의향

	<b>QB2.</b>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현재보다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 귀하는 전자신고를 유지할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	---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자의 70.1%는 전자신고세액 공제 금액이 현재보다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에도 전자신고를 유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
  - 전자신고를 유지할 의향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33.3%, 유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8%로 유지 의향이 있는 총 비율은 70.1% 수준
    - 유지할 의향이 없는 비율은 29.9%(유지 의향 없음 21.8% + 유지 의향 전혀 없음 8.0%) 수준

[그림 VII-68]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 전자신고 유지할 의향



- 성별 및 연령대 및 종합소득에 관계없이 전자신고 유지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
  - 성별로는 남성의 유지 의향이 70.0%, 여성의 유지 의향이 70.1%로 비슷한 수준
  -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경우 전자신고세액 공제 금액이 줄어들거나 폐지되면 전자신고를 유지하겠다는 의향이 52.6%로 다른 연령대 대비 낮은 편으로 조사
    - 50대 이상의 전자신고 유지 의향은 80.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으로 조사
  - 종합소득별로는 종합소득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유지 의향이 높은 경향으로 파악

<표 VII-60>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 전자신고 유지할 의향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명)	유지 의향 전혀 없음	유지 의향 없음	유지 의향 있음	유지 의향 매우 높음	의향 없음 (Bot2)	의향 있음 (Top2)	[평균]
전체		(87)	8.0	21.8	36.8	33.3	29.9	70.1	2.95
성별	남성	(20)	5.0	25.0	30.0	40.0	30.0	70.0	3.05
	여성	(67)	9.0	20.9	38.8	31.3	29.9	70.1	2.93
연령	20대	(19)	0.0	47.4	21.1	31.6	47.4	52.6	2.84
	30대	(25)	8.0	20.0	44.0	28.0	28.0	72.0	2.92
	40대	(17)	11.8	17.6	35.3	35.3	29.4	70.6	2.94
	50대 이상	(26)	11.5	7.7	42.3	38.5	19.2	80.8	3.08
종합 소득	1,200만원 미만	(26)	7.7	26.9	38.5	26.9	34.6	65.4	2.85
	1,200~4,600만원 미만	(46)	8.7	21.7	32.6	37.0	30.4	69.6	2.98
	4,600~8,800만원 미만	(11)	0.0	18.2	54.5	27.3	18.2	81.8	3.09
	8,800만원~1억5,000만원 미만	(4)	25.0	0.0	25.0	50.0	25.0	75.0	3.00
	1억 5,000만원 이상	-	-	-	-	-	-	-	-

주: 유지 의향을 매우 높음(4점)~전혀 없음(1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음.

## 라. 전자신고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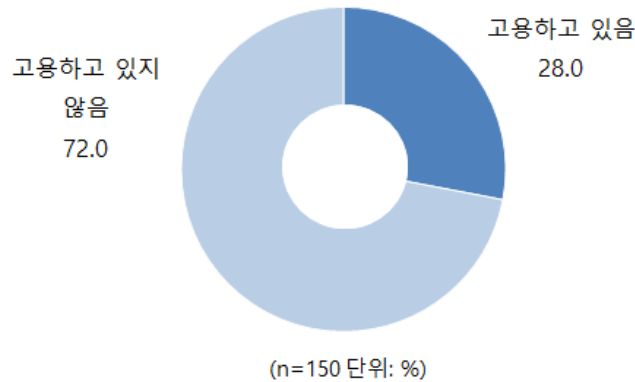
### 1) 세무업무 처리 또는 조언을 위한 외부의 세무대리인 고용 여부

	<p><b>QC1.</b> 귀하께서는 세무업무를 처리 또는 조언해주는 외부의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고 계십니까?</p>
---	--

전체 개인비사업자의 외부 세무대리인 고용비율은 28.0% 수준

○ 개인비사업자의 72.0%는 세무업무 처리와 조언을 위해 외부의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그림 VII-69] 세무업무 처리 또는 조언을 위한 외부의 세무대리인 고용 여부




- 종합소득이 많아질수록 외부 세무대리인 고용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으로 조사
  - 성별로는 남성의 외부 세무대리인 고용비율이 32.0%, 여성은 27.2%로 남성인 경우 세무대리인 고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을 제외하고, 대체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외부 세무대리인 고용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으로 파악
  - 종합소득별로는 종합소득이 1,200만원 미만인 개인비사업자의 외부 세무대리인 고용비율은 22.7%로 다른 종합소득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표 VII-61> 세무업무 처리 또는 조언을 위한 외부의 세무대리인 고용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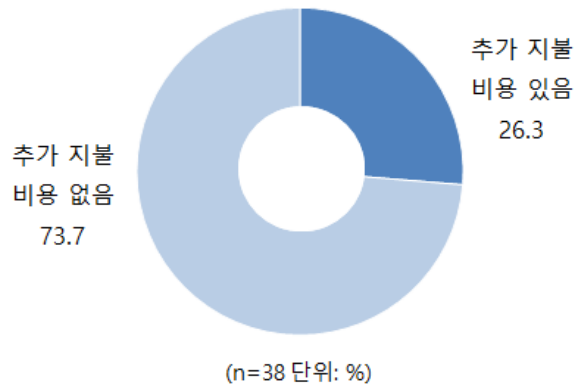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고용하고 있음	고용하고 있지 않음
전체		(150)	28.0	72.0
성별	남성	(25)	32.0	68.0
	여성	(125)	27.2	72.8
연령	20대	(26)	23.1	76.9
	30대	(35)	28.6	71.4
	40대	(30)	33.3	66.7
	50대 이상	(59)	27.1	72.9
종합소득	1,200만원 미만	(44)	22.7	77.3
	1,200~4,600만원 미만	(84)	25.0	75.0
	4,600~8,800만원 미만	(16)	43.8	56.3
	8,800만원~1억5,000만원 미만	(5)	60.0	40.0
	1억 5,000만원 이상	(1)	100.0	0.0

## 2) 전자신고를 위해 고정비용 외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추가 비용 여부

	<p><b>QC2.</b> 귀하께서는 2016년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하여 고정비용 외에 추가로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이 있습니까?</p>
---	---

-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고 있는 비사업자의 73.7%는 전자신고를 위해 고정비용 외에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추가 비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
  - 세무대리인에게 추가 비용을 지불한 비중은 26.3% 수준

[그림 VII-70] 전자신고를 위해 고정비용 외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추가 비용 여부





- 성별 및 연령대 및 종합소득에 관계없이 대체로 세무대리인에게 추가로 지불한 비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
  - 성별로는 여성인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추가로 지불비용이 없다는 응답이 76.7%, 남성은 62.5%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추가로 지불한 비용이 없는 편
  - 연령대별로는 세무대리인에게 추가로 지불한 비용이 없다는 응답이 30대(77.8%)와 50대 이상(78.6%)에서 높은 것으로 파악
  - 종합소득이 1,200~4,600만원 미만과 4,600~8,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추가로 지불한 비용이 없다는 응답이 84.2%, 83.3%로 높은 수준

<표 VII-62> 전자신고를 위해 고정비용 외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추가 비용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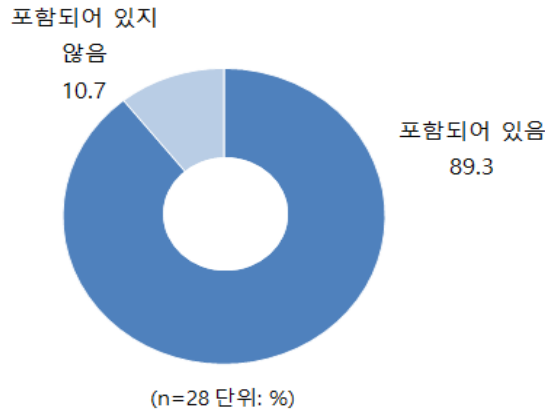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추가 지불비용 있음	추가 지불비용 없음
전체		(38)	26.3	73.7
성별	남성	(8)	37.5	62.5
	여성	(30)	23.3	76.7
연령	20대	(6)	33.3	66.7
	30대	(9)	22.2	77.8
	40대	(9)	33.3	66.7
	50대 이상	(14)	21.4	78.6
종합 소득	1,200만원 미만	(10)	30.0	70.0
	1,200~4,600만원 미만	(19)	15.8	84.2
	4,600~8,800만원 미만	(6)	16.7	83.3
	8,800만원~1억5,000만원 미만	(3)	100.0	0.0
	1억 5,000만원 이상	-	-	-

3)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 중 전자신고 업무비용의 포함 여부

 	<p>QC3. 귀하가 세금신고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에는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	--

- 세무대리인에게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개인비사업자 중 전자신고 업무비용이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89.3%로 높은 수준
- 고용한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 중 전자신고 업무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0.7% 수준

[그림 VII-71]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 중 전자신고 업무비용의 포함 여부




- 종합소득이 적을수록 전자신고 업무비용이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으로 파악
  -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전자신고 업무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1.3%로 남성(80.0%)에 비해 11.3%p 높은 수준
  - 연령대별로는 30대와 50대 이상인 경우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에 전자신고 업무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00.0%로 조사
  - 종합소득별로는 종합소득이 적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자신고 업무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응답이 100.0%로 높은 수준

<표 VII-63>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 중 전자신고 업무비용의 포함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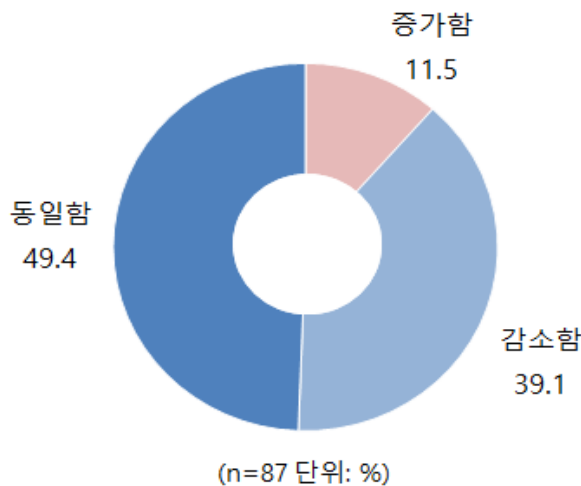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포함되어 있음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전체		(28)	89.3	10.7
성별	남성	(5)	80.0	20.0
	여성	(23)	91.3	8.7
연령	20대	(4)	75.0	25.0
	30대	(7)	100.0	0.0
	40대	(6)	66.7	33.3
	50대 이상	(11)	100.0	0.0
종합 소득	1,200만원 미만	(7)	100.0	0.0
	1,200~4,600만원 미만	(16)	87.5	12.5
	4,600~8,800만원 미만	(5)	80.0	20.0
	8,800만원~1억5,000만원 미만	-	-	-
	1억 5,000만원 이상	-	-	-

#### 4) 전자신고서 세무관련 업무비용 증감에 대한 의견

	<p>QC4.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에 비하여 귀하의 세무 관련 업무비용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감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	---

- 전자신고를 하는 개인비사업자의 88.5%는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에 비해 세무업무비용이 동일하거나 감소한다고 응답함
  - 동일하다는 응답이 49.4%, 감소한다는 응답이 39.1%임
  -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에 비하여 세무업무비용이 증가한다는 의견은 11.5%에 불과함

[그림 VII-72]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 관련 업무비용에 대한 의견



- 종합소득 8,800만원 이상인 구간을 제외하고는 성별, 연령대 및 종합소득에 관계 없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를 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세무업무비용이 동일하거나 감소한다는 응답이 80%를 상회함
  -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에는 세무 관련 업무비용이 동일하거나 감소한다는 의견이 91.0%로 높은 편(동일함 52.2% + 감소함 38.8%)
    - 여성의 경우 업무비용이 증가한다는 의견이 9.0%에 불과



-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하고 세무 관련 업무비용이 동일하다는 의견이 5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종합소득별로는 종합소득이 적어질수록 세무관련 업무비용이 동일하거나 감소한다는 의견이 많아지는 경향으로 조사

<표 VII-64>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관련 업무비용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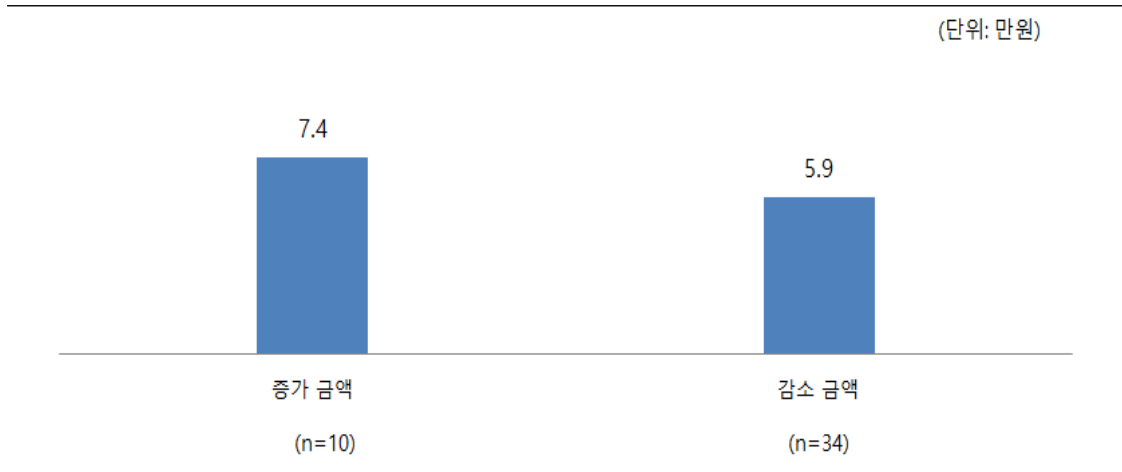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증가함	감소함	동일함
전체		(87)	11.5	39.1	49.4
성별	남성	(20)	20.0	40.0	40.0
	여성	(67)	9.0	38.8	52.2
연령	20대	(19)	10.5	36.8	52.6
	30대	(25)	8.0	40.0	52.0
	40대	(17)	23.5	52.9	23.5
	50대 이상	(26)	7.7	30.8	61.5
종합 소득	1,200만원 미만	(26)	7.7	34.6	57.7
	1,200~4,600만원 미만	(46)	8.7	45.7	45.7
	4,600~8,800만원 미만	(11)	18.2	36.4	45.5
	8,800만원~1억5,000만원 미만	(4)	50.0	0.0	50.0
	1억 5,000만원 이상	-	-	-	-

### 5)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감 금액

 	<b>QC4-1/QC4-2.</b>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에 비하여 세무 관련 업무비용이 연간 얼마나 증가 혹은 감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전자신고시 세무 관련 업무비용의 평균 증가 및 감소 금액은 비슷한 수준
  - 증가금액은 7.4만원, 감소금액은 5.9만원으로 조사

[그림 VII-73]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감 금액\_평균



□ 성별, 연령, 종합소득에 관계없이 업무비용의 평균 증가 금액과 감소 금액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

<표 VII-65>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감 금액\_평균표

(단위: 명, %, 만원)

구분		업무비용 증가		업무비용 감소	
		사례수(명)	평균 금액	사례수(명)	평균 금액
전체		(10)	7.4	(34)	5.9
성별	남성	(4)	7.3	(8)	4.9
	여성	(6)	7.5	(26)	6.2
연령	20대	(2)	9.0	(7)	7.1
	30대	(2)	6.0	(10)	6.5
	40대	(4)	3.0	(9)	3.9
	50대 이상	(2)	16.0	(8)	6.3
종합소득	1,200만원 미만	(2)	5.5	(9)	5.8
	1,200~4,600만원 미만	(4)	4.3	(21)	5.6
	4,600~8,800만원 미만	(2)	15.5	(4)	7.5
	8,800만원~1억5,000만원 미만	(2)	7.5	-	-
	1억 5,000만원 이상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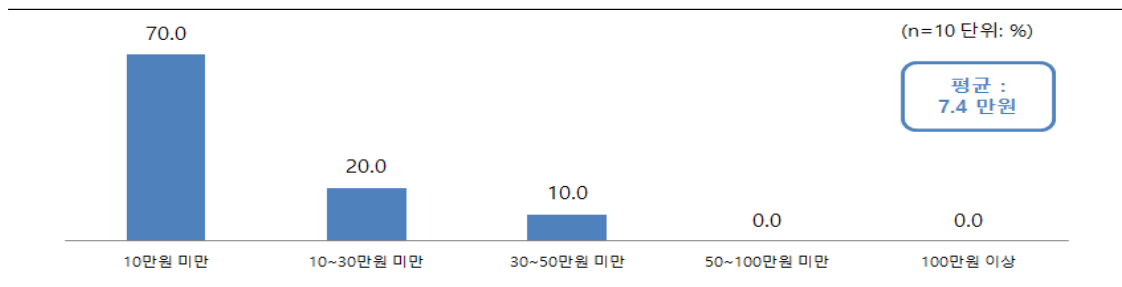
### 5-1)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가 금액

**Q** QC4-1.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에 비하여 세무 관련 업무비용이 연간 얼마나 증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업무비용이 증가한다고 응답한 비사업자(전체 개인비사업자의 11.5%)의 평균 증가 금액은 7.4만원
  - 서면신고에 비해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가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0.0%로 높은 수준
    - 이어 10~30만원 미만(20.0%), 30~50만원 미만(10.0%) 순으로 조사

[그림 VII-74]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가 금액





- 성별 및 연령대 및 종합소득에 관계없이 10만원 미만 응답이 대체로 높은 편

<표 VII-66>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증가 금액

(단위: 명,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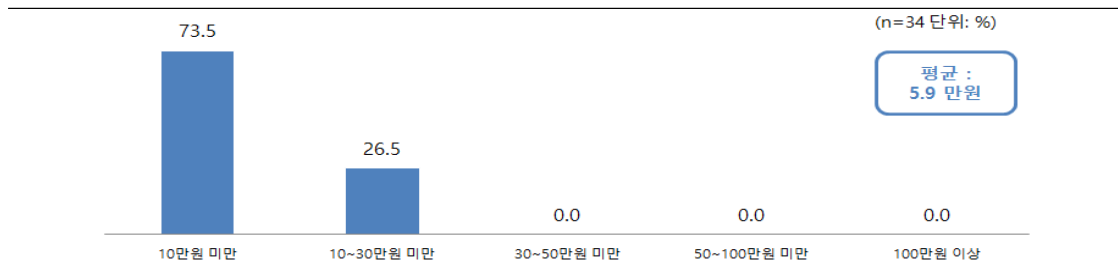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10만원 미만	10~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평균]
전체		(10)	70.0	20.0	10.0	-	-	7.4
성별	남성	(4)	50.0	50.0	0.0	-	-	7.3
	여성	(6)	83.3	0.0	16.7	-	-	7.5
연령	20대	(2)	50.0	50.0	0.0	-	-	9.0
	30대	(2)	50.0	50.0	0.0	-	-	6.0
	40대	(4)	100.0	0.0	0.0	-	-	3.0
	50대 이상	(2)	50.0	0.0	50.0	-	-	16.0
종합소득	1,200만원 미만	(2)	50.0	50.0	0.0	-	-	5.5
	1,200~4,600만원 미만	(4)	100.0	0.0	0.0	-	-	4.3
	4,600~8,800만원 미만	(2)	50.0	0.0	50.0	-	-	15.5
	8,800만원~1억5,000만원 미만	(2)	50.0	50.0	0.0	-	-	7.5
	1억 5,000만원 이상	-	-	-	-	-	-	-

## 5-2)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감소 금액

 	<b>QC4-2.</b>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에 비하여 세무 관련 업무비용이 연간 얼마나 감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업무비용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비사업자(전체 개인비사업자의 11.5%)의 평균 감소금액은 5.9만원 수준
  -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세무관련 업무비용의 감소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3.5%로 4분의 3가량 차지
    - 이어 10~30만원 미만은 26.5%로 조사

[그림 VII-75]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감소 금액




- 성별 및 연령대 및 종합소득에 관계없이 10만원 미만 응답이 대체로 높은 편

<표 VII-67>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 감소 금액

(단위: 명,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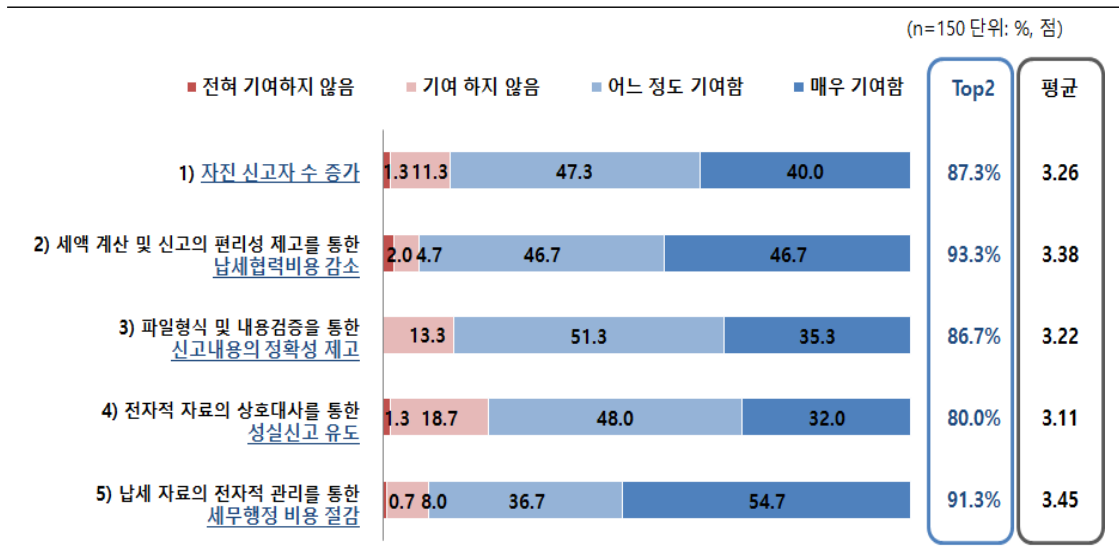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10만원 미만	10~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평균]
전체		(34)	73.5	26.5	-	-	-	5.9
성별	남성	(8)	87.5	12.5	-	-	-	4.9
	여성	(26)	69.2	30.8	-	-	-	6.2
연령	20대	(7)	71.4	28.6	-	-	-	7.1
	30대	(10)	70.0	30.0	-	-	-	6.5
	40대	(9)	100.0	0.0	-	-	-	3.9
	50대 이상	(8)	50.0	50.0	-	-	-	6.3
종합소득	1,200만원 미만	(9)	66.7	33.3	-	-	-	5.8
	1,200~4,600만원 미만	(21)	76.2	23.8	-	-	-	5.6
	4,600~8,800만원 미만	(4)	75.0	25.0	-	-	-	7.5
	8,800만원~1억5,000만원 미만	-	-	-	-	-	-	-
1억 5,000만원 이상		-	-	-	-	-	-	-

## 6) 전자신고의 기여도

	<p>QC5. 귀사는 전자신고가 다음의 측면에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QC5-1. 자진신고자 수 증가</p> <p>QC5-2. 세액 계산 및 신고의 편리성 제고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감소</p> <p>QC5-3. 파일형식 및 내용검증을 통한 신고내용의 정확성 제고</p> <p>QC5-4. 전자적 자료의 상호대사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p> <p>QC5-5. 납세 자료의 전자적 관리를 통한 세무행정 비용 절감</p>
---	--

- 전체 개인비사업자의 상당수가 전자신고의 기여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특히, ‘세액 계산 및 신고의 편리성 제고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감소’의 항목에 대한 기여도가 93.3%(어느정도 기여함 46.7% + 매우 기여함 46.7%)로 높은 수준
  - ‘납세 자료의 전자적 관리를 통한 세무행정 비용 절감’ 항목에 대한 기여도 응답비율도 91.3%(어느정도 기여함 36.7% + 매우 기여함 54.7%)로 높은 수준

[그림 VII-76] 전자신고의 기여도



- 남성, 20대, 종합소득이 4,600만원 이상인 비사업자의 경우 ‘납세협력 비용 감소’ 측면에서 전자신고가 기여한다는 긍정적 응답이 100.0%로 상당히 높게 평가
-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세무행정 비용 절감’ 측면에서 전자신고가 기여한다는 응답이 92.0%로 남성(88.0%)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

-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실신고 유도’ 측면에서 기여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으로 조사
  - 40대인 경우 ‘신고내용의 정확성 제고’ 측면에서 기여한다는 응답이 100.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
- 종합소득에 관계없이 대체로 ‘납세협력 비용 감소’ 측면에서 전자신고가 기여한다는 응답이 90%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표 VII-68> 전자신고의 기여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명)	자진 신고자 수 증가		세액 계산 및 신고의 편리성 제고로 납세협력 비용 감소		파일형식, 내용검증을 통한 신고내용의 정확성제고		전자적 자료의 상호대사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		납세 자료의 전자적 관리로 세무행정 비용 절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전체	(150)	87.3	3.26	93.3	3.38	86.7	3.22	80.0	3.11	91.3	3.45	
성별	남성	(25)	84.0	3.24	100.0	3.48	88.0	3.12	60.0	2.84	88.0	3.28
	여성	(125)	88.0	3.26	92.0	3.36	86.4	3.24	84.0	3.16	92.0	3.49
연령	20대	(26)	84.6	3.23	100.0	3.54	80.8	3.04	61.5	2.73	76.9	3.23
	30대	(35)	80.0	3.11	91.4	3.34	82.9	3.11	77.1	3.03	94.3	3.49
	40대	(30)	93.3	3.43	90.0	3.40	100.0	3.43	83.3	3.37	93.3	3.60
	50대 이상	(59)	89.8	3.27	93.2	3.32	84.7	3.25	88.1	3.19	94.9	3.46
종합소득	1,200만원 미만	(44)	88.6	3.18	93.2	3.27	90.9	3.20	77.3	2.95	95.5	3.50
	1,200~4,600만원 미만	(84)	88.1	3.30	91.7	3.43	83.3	3.21	78.6	3.10	88.1	3.48
	4,600~8,800만원 미만	(16)	81.3	3.25	100.0	3.44	87.5	3.19	93.8	3.44	100.0	3.38
	8,800만원~1억5,000만원 미만	(5)	80.0	3.40	100.0	3.40	100.0	3.40	80.0	3.40	100.0	3.20
	1억 5,000만원 이상	(1)	100.0	3.00	100.0	3.00	100.0	4.00	100.0	4.00	0.0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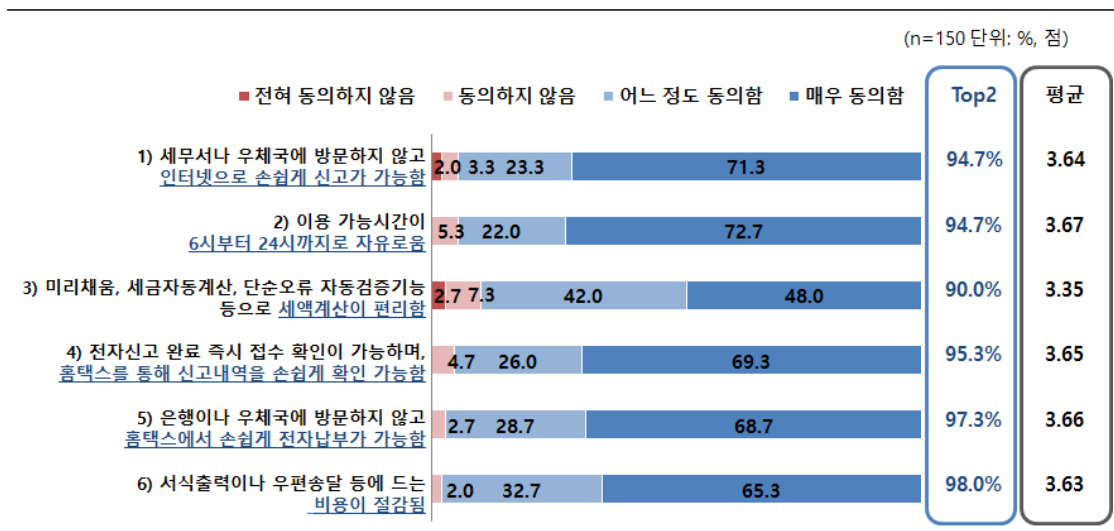
주: 1. 항목별 Top2(매우 기여함 + 어느 정도 기여함) 비율  
 2. 기여도를 매우 기여함(4점)~전혀 기여하지 않음(1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음.

## 7)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편리성

	<p><b>QC6.</b> 귀사는 전자신고가 서면신고에 비하여 가지는 다음의 편리성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p> <p><b>QC6-1.</b> 세무서나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함</p> <p><b>QC6-2.</b> 이용 가능시간이 6시부터 24시까지로 자유로움</p> <p><b>QC6-3.</b> 미리채움서비스, 세금 자동 계산, 단순오류 자동검증기능 등으로 인하여 세액계산이 편리함</p> <p><b>QC6-4.</b> 전자신고 완료 즉시 접수 확인이 가능하며, 홈택스를 통해 신고내역을 손쉽게 확인 가능함</p> <p><b>QC6-5.</b>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손쉽게 전자납부가 가능함</p> <p><b>QC6-6.</b> 서식출력이나 우편송달 등에 드는 비용이 절감됨</p>
---	---

- 서면신고에 비해 전자신고가 편리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모든 항목에서 90% 이상으로 파악되어 대부분 전자신고의 편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특히, ‘서식출력이나 우편송달 등에 드는 비용이 절감됨’ 항목에서의 긍정적 응답이 98.0%(어느정도 동의함 32.7% + 매우 동의함 65.3%)로 높은 비중 차지
  - 이어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손쉽게 전자납부가 가능함’(97.3%), ‘전자신고 완료 즉시 접수 확인이 가능하며, 홈택스를 통해 신고내역을 손쉽게 확인 가능함’(95.3%) 순으로 조사

[그림 VII-77]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편리성



- 성별 및 연령대 및 종합소득에 관계없이 ‘서식출력이나 우편송달 비용이 절감됨’ 항목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6가지 항목의 편리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
  -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경우 ‘세무서나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손쉽게 신고 가능함’ 항목에서 편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00.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
  - 종합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전체 6가지 항목에 대한 긍정적 응답비율이 높았음



〈표 VII-69〉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편리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명)	세무서나 우체국에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함		이용 시간이 6시~24로 자유로움		미리채움 자동계산, 단순오류 검증기능으로 세액계산 편리함		전자신고 완료 후 접수확인 가능 및 홈택스로 신고내역 확인가능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없이 홈택스로 전자납부 가능		서식출력이나 우편송달 비용이 절감됨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전체	(150)	94.7	3.64	94.7	3.67	90.0	3.35	95.3	3.65	97.3	3.66	98.0	3.63	
성별	남성	(25)	92.0	3.60	96.0	3.64	84.0	3.36	92.0	3.52	96.0	3.52	96.0	3.52
	여성	(125)	95.2	3.65	94.4	3.68	91.2	3.35	96.0	3.67	97.6	3.69	98.4	3.66
연령	20대	(26)	100.0	3.73	88.5	3.42	84.6	3.31	96.2	3.65	92.3	3.58	96.2	3.50
	30대	(35)	94.3	3.77	94.3	3.71	94.3	3.46	94.3	3.66	97.1	3.71	97.1	3.71
	40대	(30)	90.0	3.53	96.7	3.77	86.7	3.37	96.7	3.80	100.0	3.73	100.0	3.73
	50대 이상	(59)	94.9	3.58	96.6	3.71	91.5	3.31	94.9	3.56	98.3	3.63	98.3	3.59
종합소득	1,200만원 미만	(44)	93.2	3.59	90.9	3.64	90.9	3.27	97.7	3.75	97.7	3.66	100.0	3.70
	1,200~4,600만원 미만	(84)	95.2	3.74	95.2	3.70	90.5	3.43	92.9	3.62	96.4	3.70	97.6	3.65
	4,600~8,800만원 미만	(16)	93.8	3.38	100.0	3.63	81.3	3.19	100.0	3.56	100.0	3.50	93.8	3.44
	8,800만원~1억5,000만원 미만	(5)	100.0	3.40	100.0	3.60	100.0	3.40	100.0	3.40	100.0	3.40	100.0	3.20
	1억 5,000만원 이상	(1)	100.0	3.00	100.0	4.00	100.0	3.00	100.0	4.00	100.0	4.00	100.0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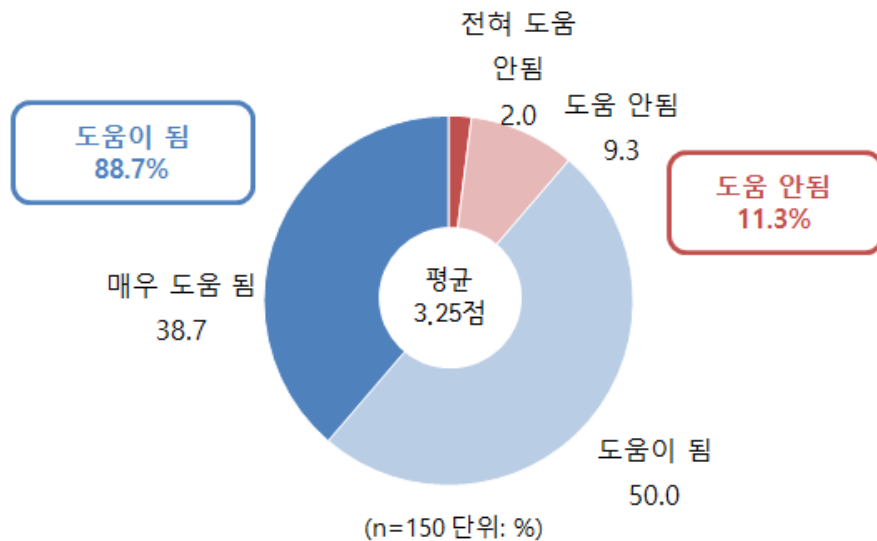
주: 1. 항목별 Top2(매우 동의함 + 어느 정도 동의함) 비율  
 2. 동의 정도를 매우 동의함(4점)~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음.

8)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p>QC7. 귀사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p>
--	--

- 전체 사업자의 88.7%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
  -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50.0%,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8.7%로 조사

[그림 VII-78]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 성별, 연령 및 종합소득에 관계없이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비율은 92.0%, 여성은 88.0%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으로 파악
  - 종합소득별로는 종합소득이 낮아질수록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


<표 VII-70>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명)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 됨	도움 안됨 (Bot2)	도움됨 (Top2)	[평균]
전체		(150)	2.0	9.3	50.0	38.7	11.3	88.7	3.25
성별	남성	(25)	0.0	8.0	64.0	28.0	8.0	92.0	3.20
	여성	(125)	2.4	9.6	47.2	40.8	12.0	88.0	3.26
연령	20대	(26)	0.0	7.7	69.2	23.1	7.7	92.3	3.15
	30대	(35)	0.0	8.6	28.6	62.9	8.6	91.4	3.54
	40대	(30)	3.3	6.7	46.7	43.3	10.0	90.0	3.30
	50대 이상	(59)	3.4	11.9	55.9	28.8	15.3	84.7	3.10
종합 소득	1,200만원 미만	(44)	2.3	0.0	50.0	47.7	2.3	97.7	3.43
	1,200~4,600만원 미만	(84)	1.2	11.9	47.6	39.3	13.1	86.9	3.25
	4,600~8,800만원 미만	(16)	0.0	12.5	68.8	18.8	12.5	87.5	3.06
	8,800만원~1억5,000만원 미만	(5)	0.0	40.0	40.0	20.0	40.0	60.0	2.80
	1억 5,000만원 이상	(1)	100.0	0.0	0.0	0.0	100.0	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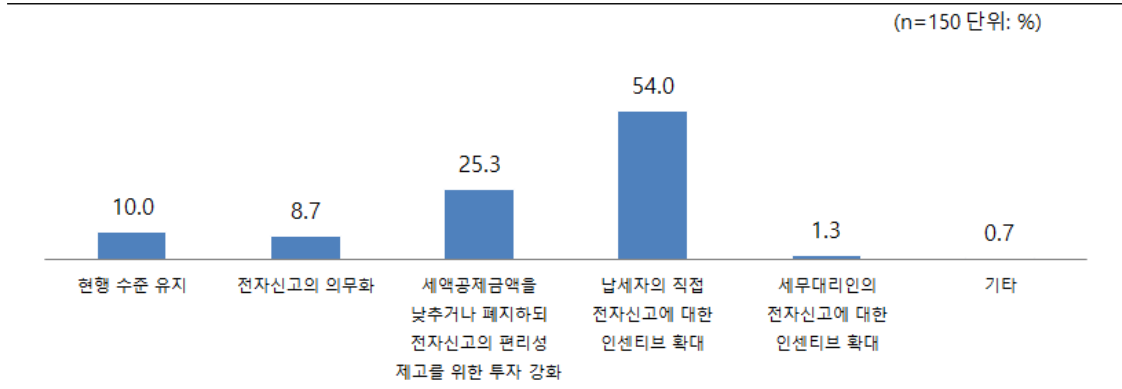
주: 도움 정도를 매우 도움 됨(4점)~전혀 도움 안됨(1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음.

### 9)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p><b>QC8.</b> 귀사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가장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	---

-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 ‘납세자의 직접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개선 요구가 54.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법인사업체나 개인사업자에 비해 전자신고의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은 수준임
- ‘세액공제금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되 전자신고의 편리성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25.3%), ‘전자신고 의무화’(8.7%)와 같이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이외의 개선방향에 대한 응답 비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임

[그림 VII-79]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 성별 및 연령대 및 종합소득에 관계없이 ‘납세자의 직접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 수준으로 파악
  - 성별로는 남성의 ‘납세자의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개선 요구가 64.0%, 여성은 52.0%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수준
    - 여성의 ‘전자신고의 편리성 제고’에 대한 개선요구는 27.2%로 남성(16.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표 VII-71>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명)	현행 수준 유지	전자 신고의 의무화	세액공제 금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되 전자 신고의 편리성 제고	납세자의 직접 전자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세무 대리인의 전자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기타
전체		(150)	10.0	8.7	25.3	54.0	1.3	0.7
성별	남성	(25)	8.0	12.0	16.0	64.0	0.0	0.0
	여성	(125)	10.4	8.0	27.2	52.0	1.6	0.8
연령	20대	(26)	15.4	11.5	19.2	53.8	0.0	0.0
	30대	(35)	8.6	17.1	22.9	51.4	0.0	0.0
	40대	(30)	13.3	3.3	23.3	56.7	3.3	0.0
	50대 이상	(59)	6.8	5.1	30.5	54.2	1.7	1.7
종합 소득	1,200만원 미만	(44)	13.6	9.1	15.9	61.4	0.0	0.0
	1,200~4,600만원 미만	(84)	9.5	10.7	28.6	48.8	1.2	1.2
	4,600~8,800만원 미만	(16)	6.3	0.0	31.3	62.5	0.0	0.0
	8,800만원~1억5,000만원 미만	(5)	0.0	0.0	20.0	60.0	20.0	0.0
	1억 5,000만원 이상	(1)	0.0	0.0	10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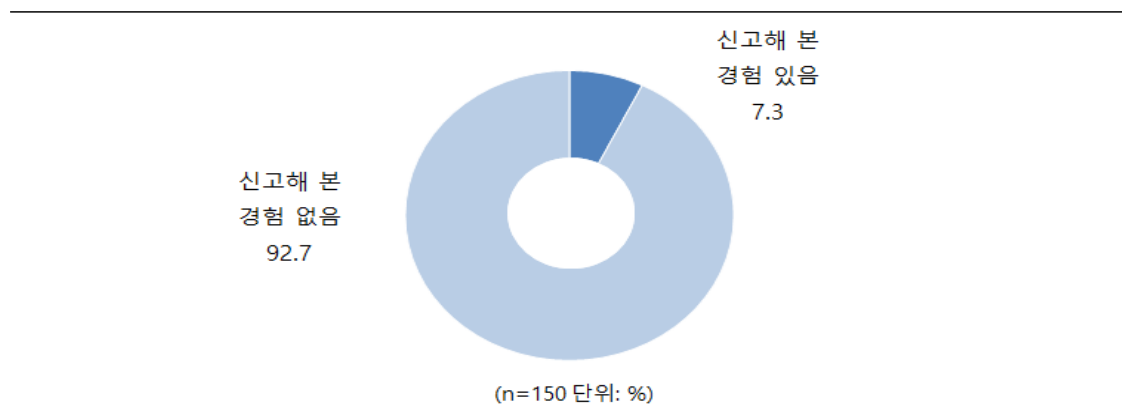
-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세액공제금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되 전자신고의 편리성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경향으로 조사
- 종합소득별로는 종합소득이 4,600~8,800만원인 경우 ‘납세자 직접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62.5%)와 ‘전자신고의 편리성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31.3%)에 대한 개선 요구가 다른 종합소득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10) 전화신고 방식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

	<p><b>QC9</b> 귀하는 전화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p>
---	---

- 전체 개인비사업자의 92.7%가 전화신고 방식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없음
  - 전체 개인비사업자 중 전화신고의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본 경험이 있는 비사업자는 7.3% 정도

[그림 VII-80] 전화신고 방식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



- 성별 및 연령대 및 종합소득에 관계없이 전화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본 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
  -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경우 전화신고를 신고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이 11.5%로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종합소득별로는 종합소득 1,200만원 미만과 4,600~8,800만원 미만인 비사업자의 전화신고 경험 비율이 각각 13.6%, 12.5%의 수준

<표 VII-72> 전화신고 방식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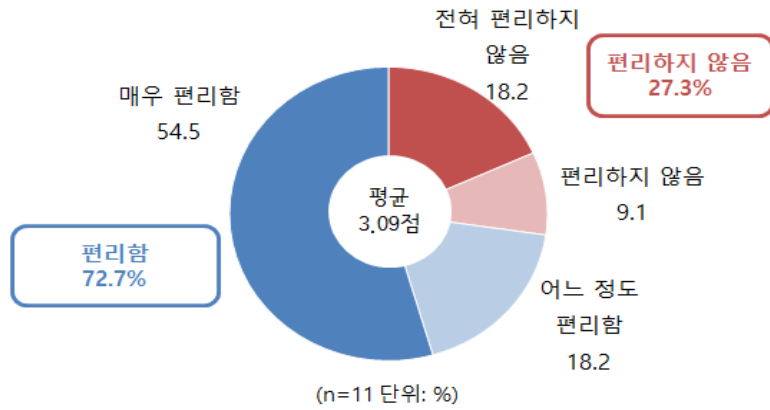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신고해 본 경험 있음	신고해 본 경험 없음
전체		(150)	7.3	92.7
성별	남성	(25)	4.0	96.0
	여성	(125)	8.0	92.0
연령	20대	(26)	11.5	88.5
	30대	(35)	5.7	94.3
	40대	(30)	6.7	93.3
	50대 이상	(59)	6.8	93.2
종합 소득	1,200만원 미만	(44)	13.6	86.4
	1,200~4,600만원 미만	(84)	3.6	96.4
	4,600~8,800만원 미만	(16)	12.5	87.5
	8,800만원~1억5,000만원 미만	(5)	0.0	100.0
	1억 5,000만원 이상	(1)	0.0	100.0

### 11) 전자신고 대비 전화신고 방식의 편리함 정도

 	<p>QC9-1.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전화신고 방식이 전자신고 방식에 비하여 얼마나 편리하다고 느끼셨습니까?</p>
--	---

- 전화신고의 경험이 있는 11명의 비사업자 중 전자신고 대비 전화신고가 편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2.7%(매우 편리함 54.5% + 어느 정도 편리함 18.2%) 수준
- 전화신고 방식이 편리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7.3%(전혀 편리하지 않음 18.2% + 편리하지 않음 9.1%) 수준

[그림 VII-81] 전자신고 대비 전화신고 방식의 편리함 정도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종합소득이 적을수록 전자신고 대비 전화신고가 편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으로 조사
  -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전화신고 방식이 전자신고에 비하여 편리하다는 의견이 80.0%(매우 편리함 60.0% + 어느 정도 편리함 20.0%)로 높은 수준
  -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경우 전자신고 대비 전화신고가 편리하다는 응답이 33.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종합소득별로는 종합소득 1,200만원 미만의 경우 전화신고가 편리하다는 의견이 100.0%로 조사

<표 VII-73> 전자신고 대비 전화신고 방식의 편리함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폐 수 (명)	전혀 편리하지 않음	편리하지 않음	어느 정도 편리함	매우 편리함	편리하지 않음 (Bot2)	편리함 (Top2)	[평균]	
전체	(11)	18.2	9.1	18.2	54.5	27.3	72.7	3.09	
성별	남성	(1)	0.0	100.0	0.0	0.0	100.0	0.0	2.00
	여성	(10)	20.0	0.0	20.0	60.0	20.0	80.0	3.20
연령	20대	(3)	33.3	33.3	0.0	33.3	66.7	33.3	2.33
	30대	(2)	50.0	0.0	0.0	50.0	50.0	50.0	2.50
	40대	(2)	0.0	0.0	50.0	50.0	0.0	100.0	3.50
	50대 이상	(4)	0.0	0.0	25.0	75.0	0.0	100.0	3.75
종합 소득	1,200만원 미만	(6)	0.0	0.0	0.0	100.0	0.0	100.0	4.00
	1,200~4,600만원 미만	(3)	33.3	0.0	66.7	0.0	33.3	66.7	2.33
	4,600~8,800만원 미만	(2)	50.0	50.0	0.0	0.0	100.0	0.0	1.50
	8,800만원~1억5,000만원 미만	-	-	-	-	-	-	-	-
	1억 5,000만원 이상	-	-	-	-	-	-	-	-

주: 편리함 정도를 매우 편리함(4점)~전혀 편리하지 않음(1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음.

## 6. 세무대리인 인식조사

### 가. 응답자 특성

- 전체 세무대리인의 상당수가 세무법인 소속인 것으로 파악
  - 업체유형별로 세무법인은 84.5%, 회계법인은 15.5%로 조사
  - 2016년 매출액별로는 매출액 10억 미만인 업체가 82.0%(1억 미만 1.5% + 1~5억 미만 42.5% + 5~10억 미만 38.0%)를 차지


<표 VII-74>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200)	100.0
업체 유형	세무법인	(169)	84.5
	회계법인	(31)	15.5
매출액	1억 미만	(3)	1.5
	1~5억 미만	(85)	42.5
	5~10억 미만	(76)	38.0
	10~50억 미만	(27)	13.5
	50~100억 미만	(6)	3.0
	100억 이상	(3)	1.5

### 나. 전자신고 이용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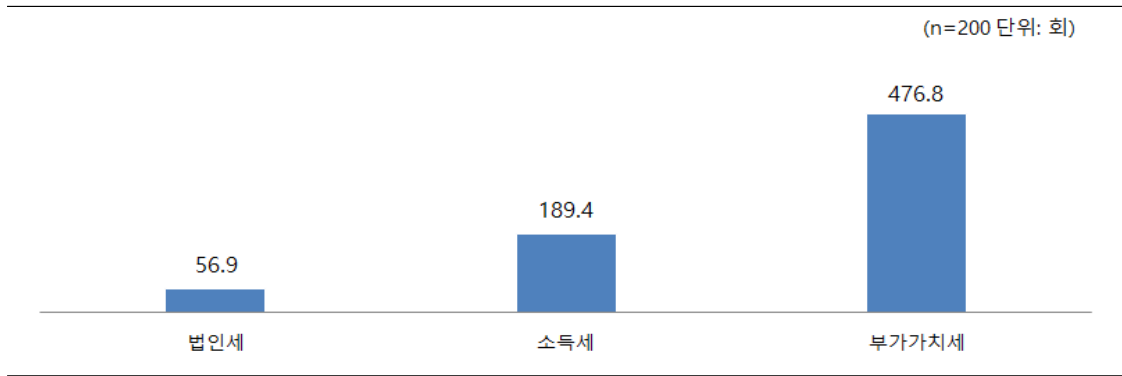
#### 1)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한 횟수

	<p>Q1. 귀사에서 2016년 사업연도에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한 횟수는 총 몇 번입니까? <u>법인세</u>와 <u>소득세</u>, <u>부가가치세</u>를 구분해서 연간 신고하셨던 총 횟수를 말씀해 주십시오.</p>
---	--

-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금을 전자신고로 신고한 평균 횟수는 부가가치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

- 부가가치세의 평균 신고 횟수는 476.8회 수준
  - 이어 소득세는 평균 189.4회, 법인세는 56.9회 순으로 조사

[그림 VII-82]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로 세금을 신고한 횟수\_평균



- 업체유형 및 매출액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
  - 업체유형별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 세무법인 대비 회계법인이 세금을 더 많이 신고하는 것으로 조사
    - 회계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평균 604.1회, 소득세는 233.1회, 법인세는 84.7회 순으로 조사
  - 매출액별로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 매출액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세금을 신고한 횟수가 더 많아지는 경향으로 파악



<표 VII-75>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로 세금을 신고한 횟수\_평균표

(단위: 명, 회)

구분		사례수 (명)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전체		(200)	56.9	189.4	476.8
업체 유형	세무법인	(169)	51.8	181.4	453.4
	회계법인	(31)	84.7	233.1	604.1
매출액	1억 미만	(3)	13.0	33.0	103.3
	1~5억 미만	(85)	43.6	149.8	370.4
	5~10억 미만	(76)	62.3	192.5	470.1
	10~50억 미만	(27)	98.3	335.6	874.7
	50~100억 미만	(6)	18.7	37.8	101.2
	100억 이상	(3)	46.3	379.7	1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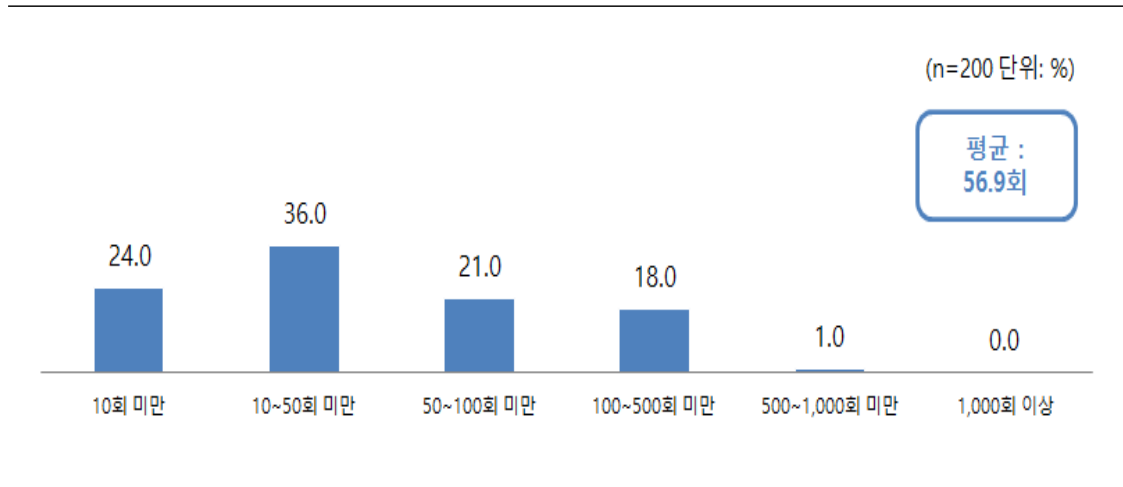
주: 유형별 신고 횟수의 평균 산출

1-1)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횟수

 	<p><b>Q1.</b> 귀사에서 2016년 사업연도에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한 횟수는 총 몇 번입니까? <u>법인세</u>를 연간 신고하셨던 총 횟수를 말씀해 주십시오.</p>
--	--

- 납세자를 대리하여 법인세를 전자신고로 신고한 횟수는 10~50회 미만(36.0%)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
  - 이어 10회 미만(24.0%), 50~100회 미만(21.0%), 100~500회 미만(18.0%)의 순으로 파악

[그림 VII-83]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로 법인세를 신고한 횟수





- 업체유형 및 매출액에 관계없이 대체로 10회 미만, 10~50회 미만의 응답 비율이 높은 수준
  - 업체유형별로 세무법인은 평균 법인세 신고 횟수가 51.8회, 회계법인은 평균 84.7회로 세무법인 대비 회계법인의 신고 횟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
  - 매출액별로는 매출액 10~50억 미만(98.3회), 5~10억 미만(62.3회) 등의 순으로 평균 법인세 신고 횟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

<표 VII-76>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로 법인세를 신고한 횟수

(단위: 명,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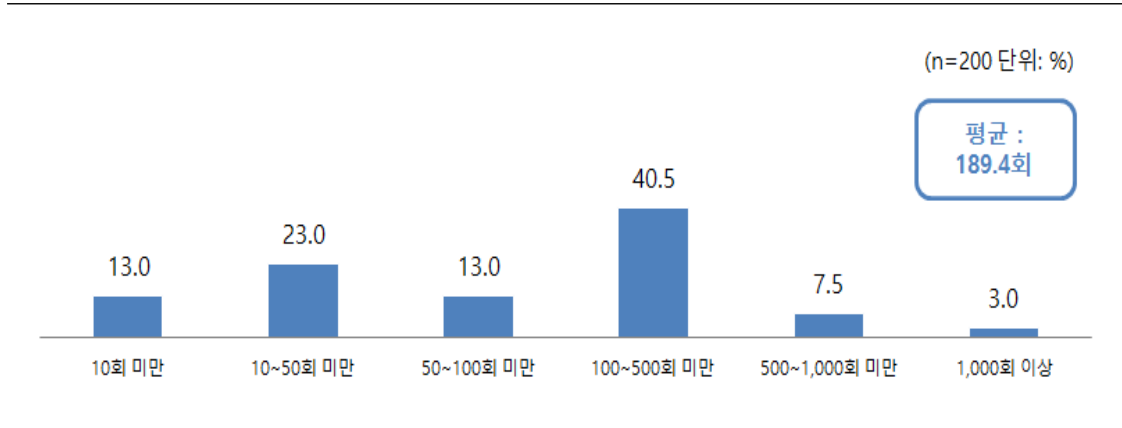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10회 미만	10~50회 미만	50~ 100회 미만	100~ 500회 미만	500~ 1,000회 미만	1,000회 이상	[평균]
전체		(200)	24.0	36.0	21.0	18.0	1.0	-	56.9
업체 유형	세무법인	(169)	21.3	38.5	20.7	19.5	0.0	-	51.8
	회계법인	(31)	38.7	22.6	22.6	9.7	6.5	-	84.7
매출액	1억 미만	(3)	0.0	100.0	0.0	0.0	0.0	-	13.0
	1~5억 미만	(85)	20.0	48.2	22.4	8.2	1.2	-	43.6
	5~10억 미만	(76)	26.3	30.3	17.1	26.3	0.0	-	62.3
	10~50억 미만	(27)	25.9	11.1	25.9	33.3	3.7	-	98.3
	50~100억 미만	(6)	50.0	33.3	16.7	0.0	0.0	-	18.7
	100억 이상	(3)	33.3	0.0	66.7	0.0	0.0	-	46.3

1-2)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한 횟수

 	<p>Q1. 귀사에서 2016년 사업연도에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한 횟수는 총 몇 번입니까? <u>소득세</u>를 연간 신고하셨던 총 횟수를 말씀해 주십시오.</p>
--	---

- 납세자를 대리하여 소득세를 전자신고로 신고한 횟수는 100~500회 미만(40.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이어 10~50회 미만(23.0%), 50~100회 미만(13.0%), 10회 미만(13.0%) 순으로 분포

[그림 VII-84]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로 소득세를 신고한 횟수




- 업체유형 및 매출액에 관계없이 대체로 100~500회 미만의 응답 비율이 높은 수준
  - 업체유형별로는 회계법인이 평균 소득세를 신고한 횟수가 233.1회로 세무법인의 평균 신고 횟수(181.4회) 대비 많은 것으로 파악
  - 매출액이 10~50억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평균 335.6회 신고하는 것으로 조사

<표 VII-77>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로 소득세를 신고한 횟수

(단위: 명,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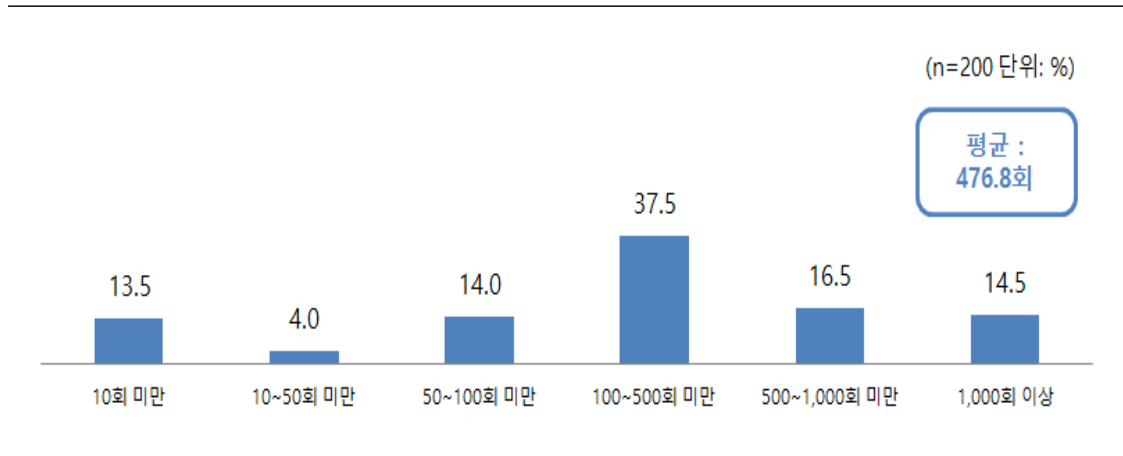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10회 미만	10~50회 미만	50~100회 미만	100~500회 미만	500~1,000회 미만	1,000회 이상	[평균]
전체		(200)	13.0	23.0	13.0	40.5	7.5	3.0	189.4
업체 유형	세무법인	(169)	9.5	22.5	14.2	43.8	8.3	1.8	181.4
	회계법인	(31)	32.3	25.8	6.5	22.6	3.2	9.7	233.1
매출액	1억 미만	(3)	0.0	100.0	0.0	0.0	0.0	0.0	33.0
	1~5억 미만	(85)	8.2	29.4	14.1	42.4	3.5	2.4	149.8
	5~10억 미만	(76)	13.2	17.1	15.8	43.4	9.2	1.3	192.5
	10~50억 미만	(27)	18.5	11.1	7.4	37.0	14.8	11.1	335.6
	50~100억 미만	(6)	50.0	33.3	0.0	16.7	0.0	0.0	37.8
	100억 이상	(3)	33.3	0.0	0.0	33.3	33.3	0.0	379.7

### 1-3)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횟수

	<b>Q1.</b> 귀사에서 2016년 사업연도에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한 횟수는 총 몇 번입니까? <u>부가가치세</u> 를 구분해서 연간 신고하셨던 총 횟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	---

- 납세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로 신고한 횟수는 100~500회 미만(37.5%) 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
  - 이어 500~1,000회 미만(16.5%), 1,000회 이상(14.5%), 50~100회 미만(14.0%) 순으로 파악

[그림 VII-85]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횟수




- 업체유형 및 매출액에 관계없이 대체로 100~500회 미만의 응답 비율이 높은 수준
  - 업체유형별로 회계법인의 평균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가 604.1회로 세무법인의 평균 신고 횟수(453.4회)대비 더 많은 것으로 파악
  - 매출액이 10~50억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평균 874.7회 신고하는 것으로 조사

<표 VII-78>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횟수

(단위: 명, %, 회)

구분		사례수 (명)	10회 미만	10~50회 미만	50~ 100회 미만	100~ 500회 미만	500~ 1,000회 미만	1,000회 이상	[평균]
전체		(200)	13.5	4.0	14.0	37.5	16.5	14.5	476.8
업체 유형	세무법인	(169)	10.1	4.1	13.6	39.1	18.3	14.8	453.4
	회계법인	(31)	32.3	3.2	16.1	29.0	6.5	12.9	604.1
매출액	1억 미만	(3)	0.0	0.0	66.7	33.3	0.0	0.0	103.3
	1~5억 미만	(85)	11.8	5.9	12.9	47.1	15.3	7.1	370.4
	5~10억 미만	(76)	10.5	3.9	14.5	31.6	22.4	17.1	470.1
	10~50억 미만	(27)	18.5	0.0	7.4	29.6	11.1	33.3	874.7
	50~100억 미만	(6)	50.0	0.0	33.3	16.7	0.0	0.0	101.2
	100억 이상	(3)	33.3	0.0	0.0	33.3	0.0	33.3	1203.0

## 2) 전자신고시 1회당 총 사용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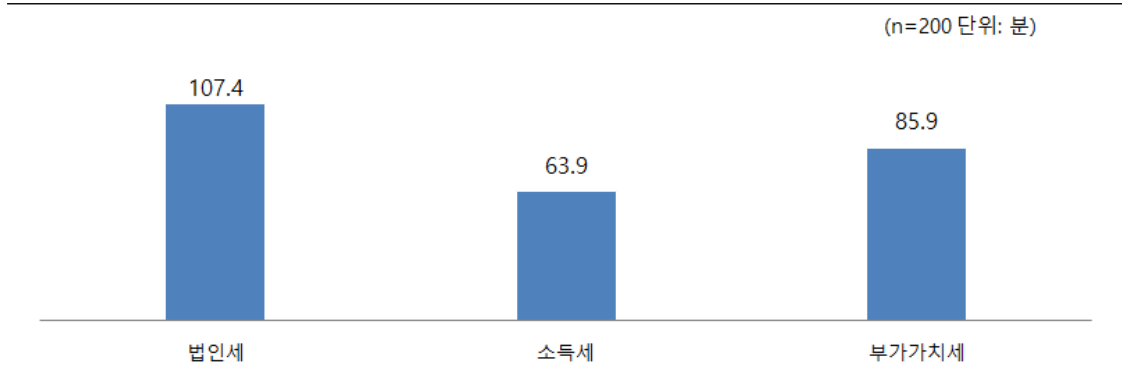
	<p><b>Q2.</b> 귀사가 전자신고 1회당 사용한 시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법인세 전자신고에 사용한 시간은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해 전송하는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합니다. 전자신고 서식입력, 파일생성, 오류체크, 파일전송 단계별로 1회당 소요시간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회당 총 사용시간)</p>
---	---

□ 전자신고시 1회당 총 사용시간은 법인세 신고시 가장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

○ 법인세 전자신고의 총 소요시간은 107.4분 수준

- 이어 부가가치세는 총 85.9분, 소득세는 63.9분 소요

[그림 VII-86]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_총 사용시간



- 업체유형 및 매출액에 관계없이 대체로 법인세 전자신고가 가장 오래 소요
  - 업체유형별로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 세무법인 대비 회계법인의 1회당 총 사용시간이 더 긴 것으로 조사
    - 회계법인의 법인세 총 소요시간은 167.7분, 부가가치세는 154.4분, 소득세는 127.9분 순으로 파악
  - 매출액이 10~50억 미만인 경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 다른 매출액 규모에 비하여 1회당 총 사용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
    - 매출액 10~50억 미만인 경우 법인세는 201.4분, 부가가치세는 153.7분, 소득세는 120.0분 순으로 파악


<표 VII-79>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_총 사용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사례수 (명)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전체		(200)	107.4	63.9	85.9
업체유형	세무법인	(169)	96.3	52.3	73.3
	회계법인	(31)	167.7	127.9	154.4
매출액	1억 미만	(3)	41.3	42.0	47.7
	1~5억 미만	(85)	94.0	63.1	87.6
	5~10억 미만	(76)	91.7	46.9	59.3
	10~50억 미만	(27)	201.4	120.0	153.7
	50~100억 미만	(6)	68.5	45.1	66.6
	100억 이상	(3)	175.7	74.0	174.4

주: 유형별 전자신고 총 사용시간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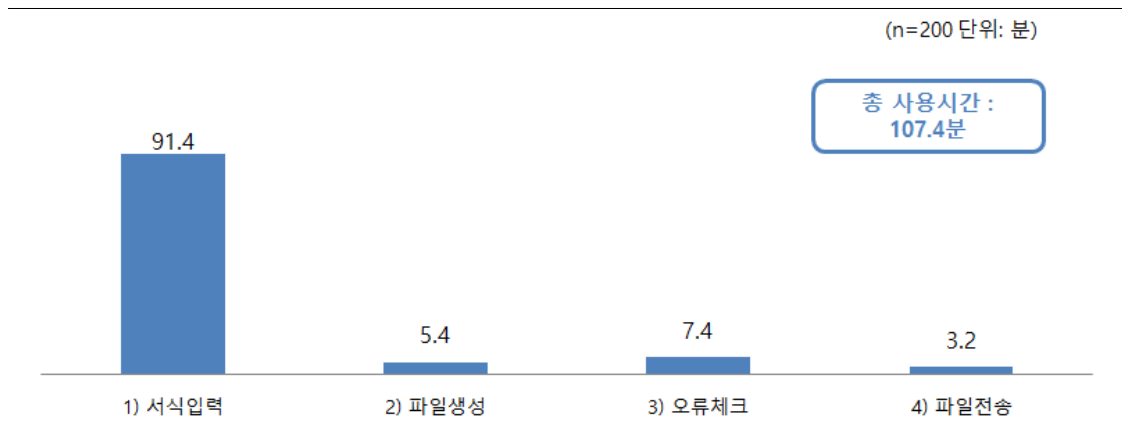
## 2-1) 법인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p><b>Q2.</b> 귀사가 법인세 전자신고 1회당 사용한 시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법인세 전자신고에 사용한 시간은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해 전송하는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합니다. 전자신고 <u>서식입력, 파일생성, 오류체크, 파일전송</u> 단계별로 1회당 소요시간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p>
---	--

### □ 법인세 전자신고시 1회당 약 107.4분 소요

- 법인세 전자신고의 전체 평균 소요시간(107.4분) 중 서식입력 시간이 91.4분으로 높은 비중(85.1%)을 차지
  - 오류체크는 7.4분, 파일생성은 평균 5.4분, 파일전송은 3.2분 순으로 소요

[그림 VII-87] 법인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 □ 업체유형 및 매출액에 관계없이 법인세 전자신고시 서식입력 시간이 가장 길게 소요

- 업체유형별로는 회계법인의 경우 서식입력 시간이 145.3분으로 세무법인(81.5분) 대비 소요시간이 긴 것으로 파악
- 매출액별로는 매출액이 10~50억 미만인 업체의 서식입력 시간이 187.7분으로 다른 매출 규모대비 긴 것으로 파악


<표 VII-80> 법인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사례 수 (명)	1) 서식입력	2) 파일생성	3) 오류체크	4) 파일전송	1회당 총 사용시간
전체		(200)	91.4	5.4	7.4	3.2	107.4
업체 유형	세무법인	(169)	81.5	5.3	6.2	3.3	96.3
	회계법인	(31)	145.3	5.7	13.9	2.8	167.7
매출액	1억 미만	(3)	24.3	4.7	7.0	5.3	41.3
	1~5억 미만	(85)	77.7	5.0	7.2	4.1	94.0
	5~10억 미만	(76)	75.8	6.4	6.9	2.6	91.7
	10~50억 미만	(27)	187.7	3.5	8.1	2.1	201.4
	50~100억 미만	(6)	46.7	5.5	14.0	2.3	68.5
	100억 이상	(3)	163.3	4.7	5.0	2.7	175.7

주: 전자신고 단계별 평균 사용시간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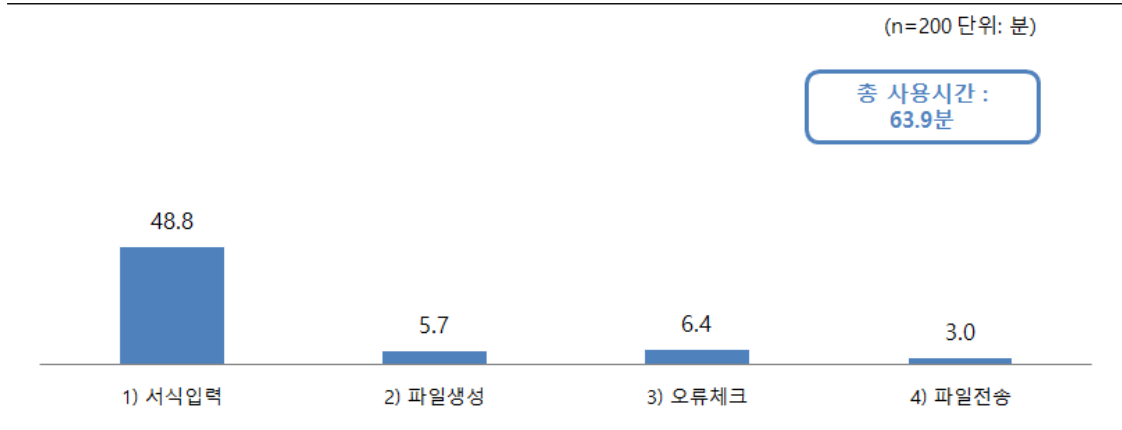
## 2-2) 소득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p><b>Q4.</b> 귀사가 소득세 전자신고 1회당 사용한 시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사용한 시간은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해          전송하는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합니다. 전자신고 서식입력, 파일생성, 오류체크,          파일전송 단계별로 1회당 소요시간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p>
---	--

소득세 전자신고시 1회당 약 63.9분 소요

- 소득세 전자신고의 전체 평균 소요시간(63.9분) 중 서식입력 시간이 48.8분으로 76.8%를 차지
- 오류체크는 6.4분, 파일생성은 5.7분, 파일전송은 3.0분 순으로 소요

[그림 VII-88] 소득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 업체유형 및 매출액에 관계없이 서식입력 시간이 가장 오래 소요
  - 업체유형별로 회계법인의 경우 서식입력 시간이 107.3분으로 세무법인(38.1분) 대비 서식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이 3.5배가량 긴 것으로 파악
  - 매출액별로는 매출액이 10~50억 미만인 경우 서식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이 109.2분으로 다른 매출액 규모 대비 긴 것으로 파악


<표 VII-81> 소득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사례수 (명)	1) 서식입력	2) 파일생성	3) 오류체크	4) 파일전송	1회당 총 사용시간
전체		(200)	48.8	5.7	6.4	3.0	63.9
업체 유형	세무법인	(169)	38.1	5.6	5.5	3.1	52.3
	회계법인	(31)	107.3	6.6	11.4	2.6	127.9
매출액	1억 미만	(3)	27.7	5.0	4.3	5.0	42.0
	1~5억 미만	(85)	46.9	6.0	6.6	3.6	63.1
	5~10억 미만	(76)	31.6	6.6	6.0	2.7	46.9
	10~50억 미만	(27)	109.2	3.0	5.7	2.1	120.0
	50~100억 미만	(6)	25.0	4.3	14.0	1.8	45.1
	100억 이상	(3)	62.3	4.3	4.7	2.7	74.0

주: 전자신고 단계별 평균 사용시간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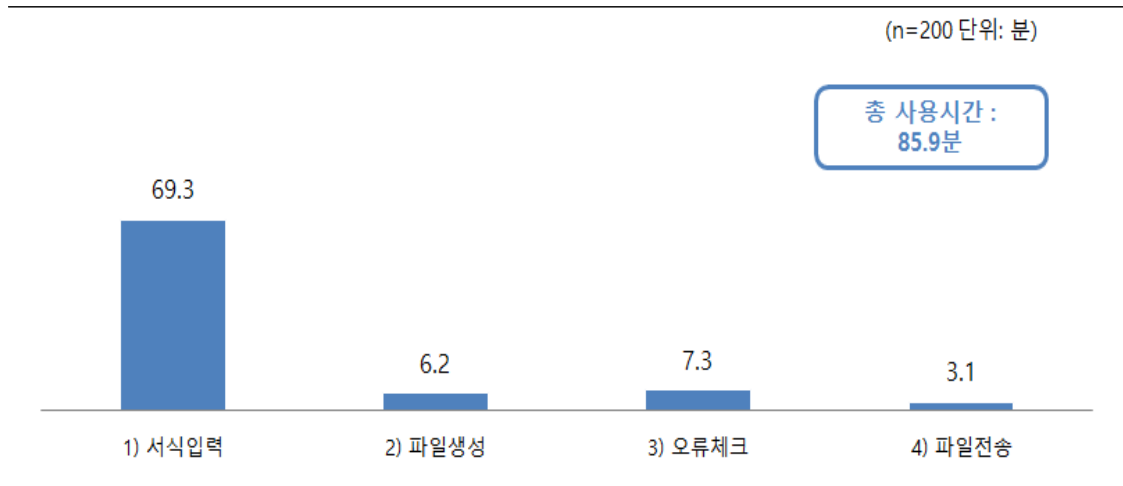
### 2-3)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p><b>Q3.</b> 귀사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1회당 사용한 시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사용한 시간은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해 전송하는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합니다. 전자신고 서식입력, 파일생성, 오류체크, 파일전송 단계별로 1회당 소요시간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p>
---	---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1회당 약 85.9분 소요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의 전체 평균 소요시간(85.9분) 중 서식입력 시간이 69.3분으로 80.7% 차지
- 오류체크는 7.3분, 파일생성은 6.2분, 파일전송은 3.1분 순으로 소요

[그림 VII-89]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 업체유형 및 매출액에 관계없이 서식입력 시간이 가장 길게 소요

- 업체유형별로는 회계법인의 서식입력 시간이 133.1분으로 세무법인(57.6분)에 비해 2.5배가량 길게 소요
- 매출액별로 서식입력 시간은 매출액 10~50억 미만(140.6분), 100억 이상(162.7분)의 경우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


<표 VII-82>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1회당 사용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사례수 (명)	1) 서식입력	2) 파일생성	3) 오류체크	4) 파일전송	1회당 총 사용시간
전체		(200)	69.3	6.2	7.3	3.1	85.9
업체 유형	세무법인	(169)	57.6	6.0	6.5	3.2	73.3
	회계법인	(31)	133.1	7.0	11.7	2.6	154.4
매출액	1억 미만	(3)	31.0	4.7	7.0	5.0	47.7
	1~5억 미만	(85)	70.2	6.6	7.2	3.6	87.6
	5~10억 미만	(76)	42.8	6.7	6.9	2.9	59.3
	10~50억 미만	(27)	140.6	4.2	6.8	2.1	153.7
	50~100억 미만	(6)	45.0	4.3	15.5	1.8	66.6
	100억 이상	(3)	162.7	4.3	4.7	2.7	17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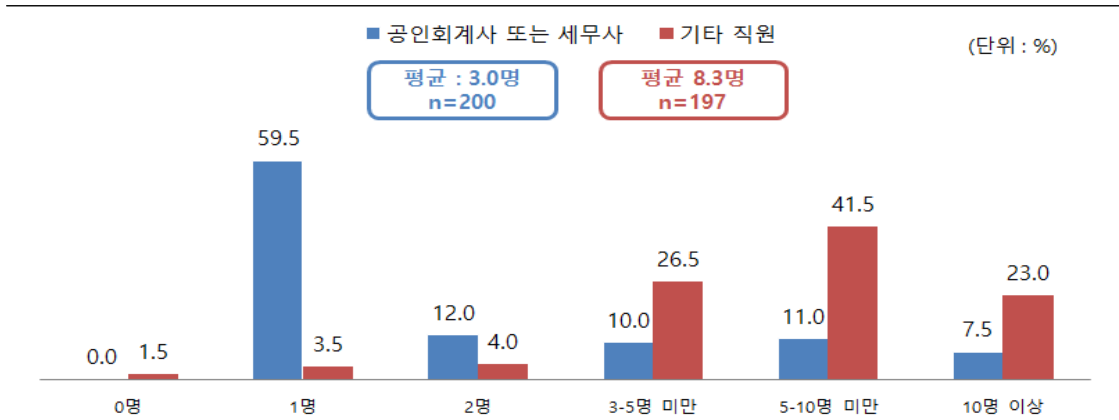
주: 전자신고 단계별 평균 사용시간 산출

### 3)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총 인원

	<p><b>Q5.</b> 귀사가 2016년도 동안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u>먼저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u>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기타 직원)</p>
---	--

- 전자신고를 위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보다 기타 직원을 더 많이 투입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평균 투입인원은 3.0명, 기타 직원은 8.3명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제외한 직원이 전자신고에 비해 2.5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
    - 투입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1명(59.5%), 2명(12.0%), 5~10명(11.0%) 순으로 분포
    - 반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를 제외하고 투입된 기타 직원은 5~10명(41.5%), 3~5명(26.5%), 10명 이상(23.0%) 순으로 분포

[그림 VII-90]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총 인원



- 업체유형 및 매출액에 관계없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제외한 기타 직원의 투입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
  - 업체유형별로 회계법인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기타 직원의 투입 인원이 각각 9.1명, 15.9명으로 모두 세무법인 대비 투입 인원이 더 많은 수준
    - 세무법인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기타 직원을 각각 1.9명, 6.9명 투입
  - 매출액별로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기타 직원 모두 매출액이 높아질수록 투입인원이 많아지는 경향으로 파악


<표 VII-83>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총 인원

(단위: 명)

구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기타 직원	
		사례수(명)	[평균]	사례수(명)	[평균]
전체		(200)	3.0	(200)	8.3
업체 유형	세무법인	(169)	1.9	(169)	6.9
	회계법인	(31)	9.1	(31)	15.9
매출액	1억 미만	(3)	1.3	(3)	5.3
	1~5억 미만	(85)	1.8	(85)	6.1
	5~10억 미만	(76)	2.5	(76)	7.3
	10~50억 미만	(27)	6.0	(27)	12.4
	50~100억 미만	(6)	8.0	(6)	21.2
	100억 이상	(3)	17.0	(3)	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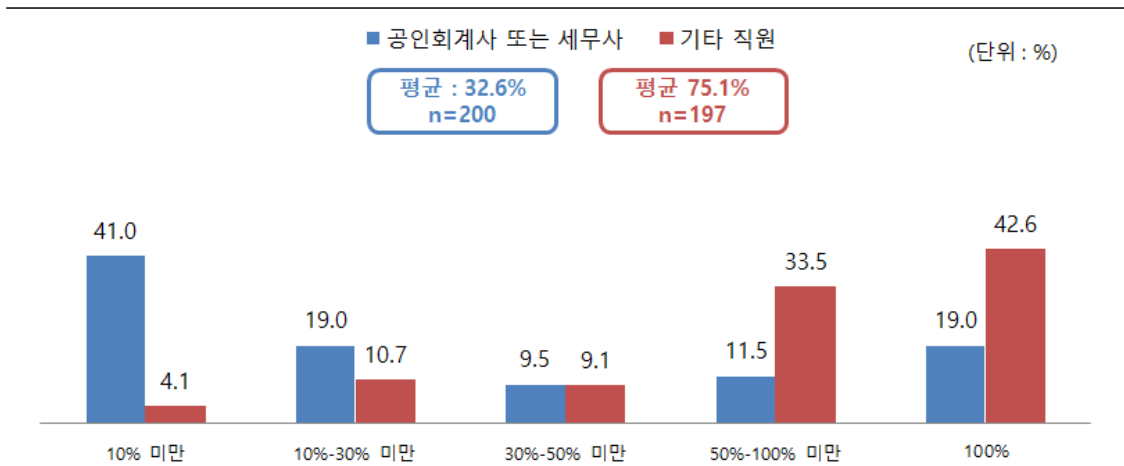
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및 기타 직원 각각 평균 산출

#### 4)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인원의 업무 중 전자신고 업무의 비중

	<p><b>Q5.</b> 귀사가 2016년도 동안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에 관해 여쭙겠습니다.</p> <p><b>Q5-1.</b> 그렇다면 투입된 인원의 전체 업무에서 전자신고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투입된 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평균 비중으로 말씀해주세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기타 직원)</p>
---	---

-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대비 기타 직원의 전자신고 업무 비중이 높은 수준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평균 전자신고 업무 비중은 32.6%, 기타 직원은 평균 전자신고 업무 비중이 75.1%로 조사되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대비 2.3 배 정도 전자신고 업무에 더 투입된 것으로 조사
    - 투입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전자신고 업무 비중은 10% 미만(41.0%), 10~30% 미만(19.0%), 100%(19.0%) 순으로 파악
    - 반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를 제외하고 투입된 직원의 전자신고 업무 비중은 100%(42.6%), 50~100% 미만(33.5%), 10~30% 미만(10.7%) 순으로 파악

[그림 VII-91]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인원의 전자신고 업무의 비중



- 업체유형 및 매출액에 관계없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제외한 기타 직원의 업무에서 전자신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

- 업체유형별로 세무법인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35.1%)와 기타 직원(78.0%) 모두 회계법인 대비 전자신고가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
  - 회계법인의 경우 전자신고 업무의 비중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19.4%, 기타 직원은 59.6% 수준
- 매출액별로는 기타 직원의 경우 매출액이 1억 미만(100.0%), 1~5억 미만(82.8%)의 매출액 규모가 낮은 업체에서 전자신고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


<표 VII-84> 전체 업무에서 전자신고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명, %)

구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기타 직원	
		사례수(명)	[평균]	사례수(명)	[평균]
전체		(200)	32.6	(197)	75.1
업체 유형	세무법인	(169)	35.1	(166)	78.0
	회계법인	(31)	19.4	(31)	59.6
매출액	1억 미만	(3)	66.3	(3)	100.0
	1~5억 미만	(85)	33.1	(83)	82.8
	5~10억 미만	(76)	33.8	(75)	72.4
	10~50억 미만	(27)	27.0	(27)	65.3
	50~100억 미만	(6)	17.0	(6)	40.3
	100억 이상	(3)	36.7	(3)	63.3

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및 기타 직원 각각 평균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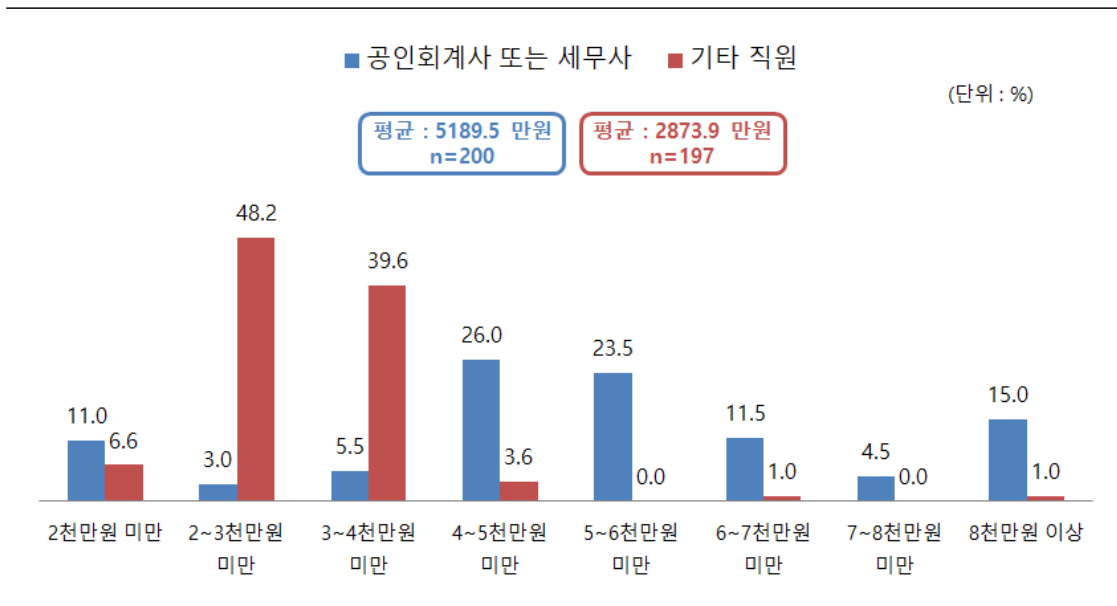
### 5)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인원의 평균 연봉

	<p><b>Q5.</b> 귀사가 2016년도 동안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에 관해 여쭙겠습니다.</p> <p><b>Q5-2.</b> 전자신고에 투입된 인원의 평균 연봉은 어느 정도입니까?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기타 직원)</p>
---	--

-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평균 연봉이 세무대리인에 비해 높은 수준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평균 연봉은 5,189.5만원, 기타 직원은 2,873.9만원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연봉이 기타 직원 대비 약 1.8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
  - 투입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연봉은 4~5천만원 미만(26.0%), 5~6천만원 미만(23.5%), 8천만원 이상(15.0%) 순으로 분포
  - 반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를 제외하고 투입된 직원의 연봉은 2~3천만원 미만(48.2%), 3~4천만원 미만(39.6%) 순으로 분포

[그림 VII-92]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인원의 평균 연봉



- 업체유형 및 매출액에 관계없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평균 연봉이 기타 직원 대비 높은 것으로 파악
  - 업체유형별로 회계법인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6,532.3만원)와 기타 직원(3,727.4만원) 모두 세무법인 대비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인원의 평균 연봉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
    - 세무법인의 경우 평균 연봉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4,943.2만원, 기타 직원은 2,714.5만원 수준
  - 매출액별로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경우 매출액 10~50억 미만인 업체의 평균 연봉이 6,537.0만원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 기타 직원의 경우에는 매출액 5~10억 미만인 업체의 평균 연봉이 3,080.0만원으로 높은 편


<표 VII-85>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인원의 평균 연봉

(단위: 명, 만원)

구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기타 직원	
		사례수(명)	[평균]	사례수(명)	[평균]
전체		(200)	5189.5	(197)	2873.9
업체 유형	세무법인	(169)	4943.2	(166)	2714.5
	회계법인	(31)	6532.3	(31)	3727.4
매출액	1억 미만	(3)	2633.3	(3)	2333.3
	1~5억 미만	(85)	5200.0	(83)	2756.0
	5~10억 미만	(76)	4776.3	(75)	3080.0
	10~50억 미만	(27)	6537.0	(27)	2763.0
	50~100억 미만	(6)	5916.7	(6)	2716.7
	100억 이상	(3)	4333.3	(3)	28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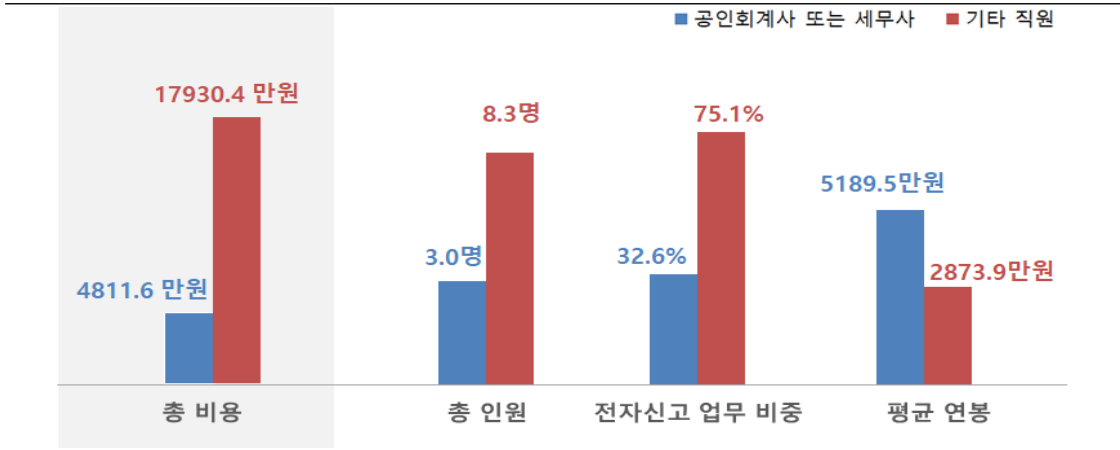
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및 기타 직원 각각 평균 산출

## 6)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 사용된 총 비용

	<p><b>Q5.</b> 귀사가 2016년도에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에 관해 여쭙겠습니다.</p> <p><b>Q5-3.</b>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 사용된 총 비용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기타 직원)</p>
---	---

-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경우 기타 직원 대비 더 높은 비용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비용은 평균 4,811.6만원, 기타 직원의 비용은 17,930.4만원 수준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대비 약 3.7배 정도 높은 수준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대비 기타 직원의 전자신고 투입 인원 및 투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총 사용 비용이 높은 것으로 판단

[그림 VII-93]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 사용된 총 비용



- 업체유형 및 매출액에 관계없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제외한 기타 직원에 대해 사용된 총 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
  - 업체유형별로 회계법인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15,872.4만원), 기타 직원(31,649.4만원) 모두 세무법인 대비 사용된 총 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
    - 세무법인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 사용된 비용은 2,782.7만원, 기타 직원은 15,368.4만원 수준
  - 매출액별로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기타 직원 모두 매출액이 높아질수록 전자신고 방법을 통해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 사용된 총 비용이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으로 조사


<표 VII-86>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 사용된 총 비용

(단위: 명, 만원)

구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기타 직원		
	사례수(명)	[평균]	사례수(명)	[평균]	
전체	(200)	4,811.6	(197)	17,930.4	
업체 유형	세무법인	(169)	2,782.7	(166)	15,368.4
	회계법인	(31)	15,872.4	(31)	31,649.4
매출액	1억 미만	(3)	2,613.3	(3)	12,000.0
	1~5억 미만	(85)	2,900.3	(83)	14,149.5
	5~10억 미만	(76)	3,238.0	(75)	18,902.4
	10~50억 미만	(27)	11,266.9	(27)	24,596.7
	50~100억 미만	(6)	15,285.8	(6)	17,140.0
	100억 이상	(3)	21,983.3	(3)	45,7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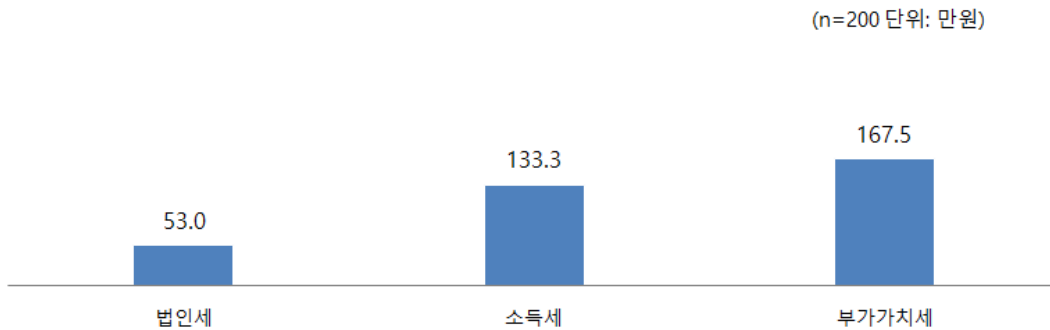
주: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및 기타 직원 각각 평균 산출  
 2. 총 비용은 ‘전자신고를 위해 투입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총 인원 × 전자신고 업무 비율 × 평균연봉’의 식으로 산출함.

## 7)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하여 공제받은 금액

	<p><b>Q6.</b> 귀사가 2016년 한해 동안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공제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구분해서 연간 공제받으신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p>
---	--

- 전자신고를 통한 세금 신고로 공제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평균 167.5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
  - 이어 납세자를 대리하여 공제받은 평균 금액은 소득세(133.3만원), 법인세(53.0만원) 순으로 조사

[그림 VII-94]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하여 공제받은 금액\_평균



- 업체유형 및 매출액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공제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
  - 업체유형별로 세무법인은 소득세(137.0만원)와 부가가치세(169.2만원)의 경우 회계법인 대비 공제받은 금액이 다소 높은 수준
    - 반면, 회계법인은 법인세(79.3만원)의 공제금액이 세무법인(48.0만원) 대비 높은 것으로 파악
  - 매출액별로는 매출액이 10~50억 미만인 경우 공제금액이 다른 매출 규모에 비해 대체로 높은 것으로 조사
    - 매출액 10~50억 미만의 법인세 공제금액은 133.0만원, 소득세는 301.5만원, 부가가치세는 261.5만원 수준


<표 VII-87>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하여 공제받은 금액\_평균표

(단위: 명, 만원)

구분		사례수 (명)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전체		(200)	53.0	133.3	167.5
업체유형	세무법인	(169)	48.0	137.0	169.2
	회계법인	(31)	79.3	112.6	158.5
매출액	1억 미만	(3)	32.7	52.7	163.3
	1~5억 미만	(85)	43.2	116.3	127.2
	5~10억 미만	(76)	34.4	107.7	167.8
	10~50억 미만	(27)	133.0	301.5	261.5
	50~100억 미만	(6)	125.0	200.0	200.0
	100억 이상	(3)	0.0	0.00	10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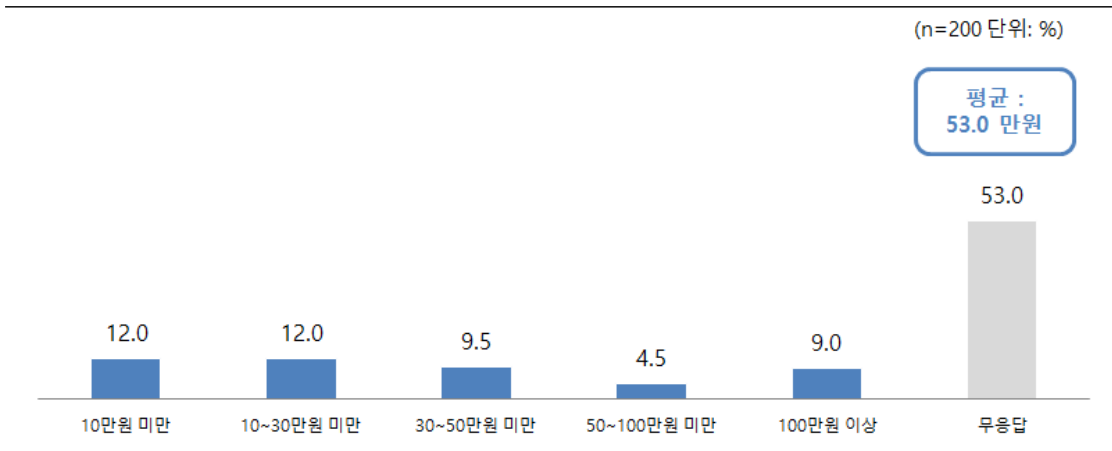
주: 유형별 공제금액의 평균 산출

### 7-1)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공제받은 금액

	<p><b>Q6.</b> 귀사가 2016년 한해 동안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u>법인세</u>를 신고하고 공제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p>
---	---

- 법인세 전자신고에 의한 공제금액은 30만원 미만이 약 24.0%(10만원 미만 12.0% + 10~30만원 미만 12.0%) 수준
- 이어 30~50만원 미만(9.5%), 100만원 이상(9.0%) 순으로 분포

[그림 VII-95]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공제받은 금액




- 전자신고를 통한 법인세 공제금액은 회계법인, 매출액 10~100억 미만인 경우 높음
  - 업체유형별로 회계법인의 법인세 공제금액은 79.3만원, 세무법인은 48.0만원으로 회계법인의 공제금액이 높은 수준
    - 회계법인의 경우 법인세 전자 신고를 통해 공제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비율이 16.1%로 세무법인(7.7%)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
  - 매출액별로는 매출액 10~50억 미만의 경우 공제금액이 133.0만원, 50~100억 미만인 경우는 125.0만원으로 다른 매출액 규모 대비 높은 수준
    - 특히, 매출액이 10~50억 미만의 경우 공제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분의 1가량(25.9%)을 차지

<표 VII-88>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공제받은 금액

(단위: 명,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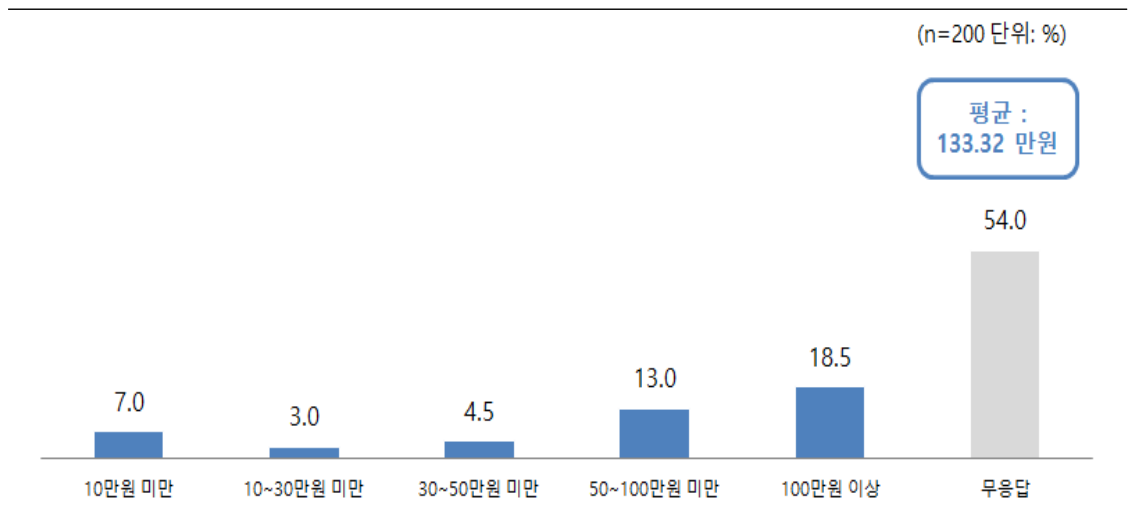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10만원 미만	10~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 만원 이상	무응답	[평균]
전체		(200)	12.0	12.0	9.5	4.5	9.0	53.0	53.0
업체 유형	세무법인	(169)	11.8	13.6	9.5	4.1	7.7	53.3	48.0
	회계법인	(31)	12.9	3.2	9.7	6.5	16.1	51.6	79.3
매출액	1억 미만	(3)	0.0	33.3	66.7	0.0	0.0	0.0	32.7
	1~5억 미만	(85)	16.5	15.3	9.4	5.9	9.4	43.5	43.2
	5~10억 미만	(76)	7.9	11.8	10.5	3.9	2.6	63.2	34.4
	10~50억 미만	(27)	11.1	3.7	3.7	0.0	25.9	55.6	133.0
	50~100억 미만	(6)	0.0	0.0	0.0	16.7	16.7	66.7	125.0
	100억 이상	(3)	33.3	0.0	0.0	0.0	0.0	66.7	0.0

7-2)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여 공제받은 금액

	<p><b>Q6.</b> 귀사가 2016년 한해 동안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공제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p>
---	--

- 소득세 전자신고에 의한 공제금액은 50만원 이상이 약 31.5%(100만원 이상 18.5% + 50~100만원 미만 13.0%)로 3분의 1가량 차지
  - 이어 10만원 미만(7.0%), 30~50만원 미만(4.5%) 순으로 분포

[그림 VII-96]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여 공제받은 금액



- 소득세 전자신고에 의한 공제금액은 세무법인, 매출액 10~50억 미만인 경우 높음
  - 업체유형별로는 세무법인의 소득세 공제금액이 137.0만원으로 회계법인(112.6만원)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매출액별로는 매출액이 10~50억 미만인 경우 평균 공제금액이 301.5만원으로 다른 매출액 규모 대비 높은 수준
    - 특히, 매출액 10~50억 미만인 경우 소득세 공제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9%로 파악

<표 VII-89>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여 공제받은 금액

(단위: 명,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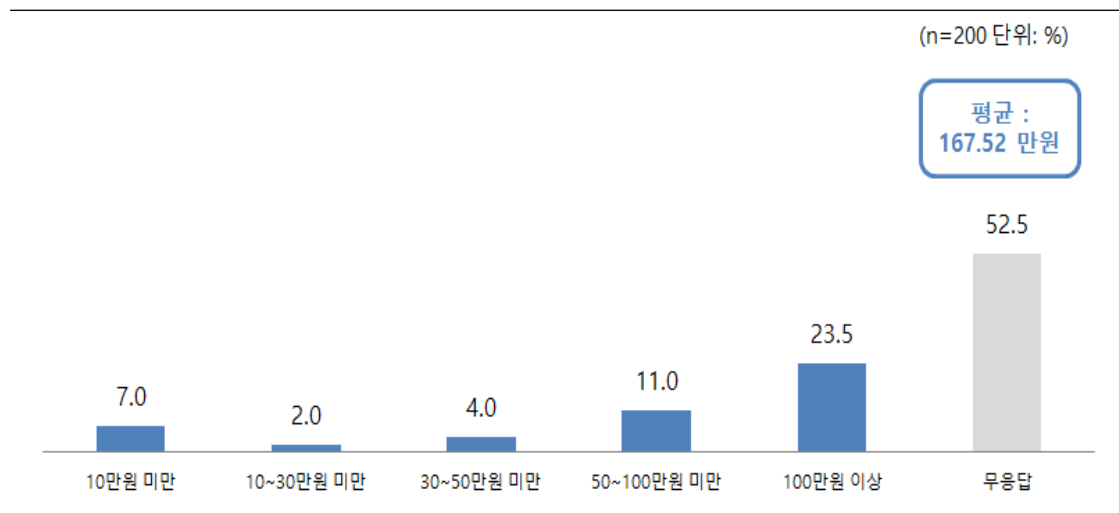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10만원 미만	10~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 만원 이상	무응답	[평균]
전체		(200)	7.0	3.0	4.5	13.0	18.5	54.0	133.3
업체 유형	세무법인	(169)	6.5	3.0	4.7	13.6	18.3	53.8	137.0
	회계법인	(31)	9.7	3.2	3.2	9.7	19.4	54.8	112.6
매출액	1억 미만	(3)	0.0	33.3	33.3	33.3	0.0	0.0	52.7
	1~5억 미만	(85)	8.2	3.5	7.1	17.6	18.8	44.7	116.3
	5~10억 미만	(76)	3.9	2.6	2.6	11.8	17.1	61.8	107.7
	10~50억 미만	(27)	11.1	0.0	0.0	3.7	25.9	59.3	301.5
	50~100억 미만	(6)	0.0	0.0	0.0	0.0	16.7	83.3	200.0
	100억 이상	(3)	33.3	0.0	0.0	0.0	0.0	66.7	0.00

7-3)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공제받은 금액

**Q6.** 귀사가 2016년 한해 동안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공제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구분해서 연간 공제받으신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의한 공제금액은 100만원 이상이 23.5%로 4분의 1가량 차지  
 이어 50~100만원 미만이 11.0%, 10만원 미만이 7.0% 순으로 분포

[그림 VII-97]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공제받은 금액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의한 공제금액은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높은 수준
  - 업체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
  - 매출액별로는 10~50억 미만인 경우 평균 공제금액이 261.5만원으로 높은 편
    - 매출액이 10~50억 미만인 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25.9%로 높은 편이나, 1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11.1%로 다른 매출액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표 VII-90>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공제받은 금액

(단위: 명,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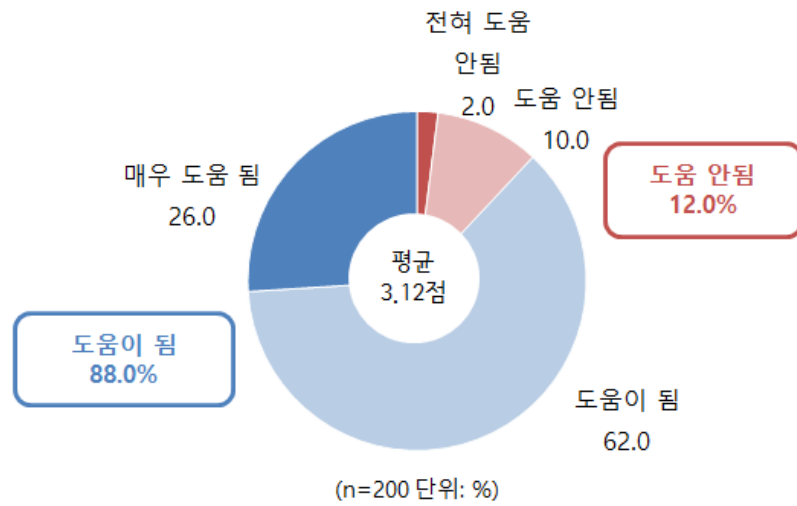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10만원 미만	10~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 만원 이상	무응답	[평균]
전체		(200)	7.0	2.0	4.0	11.0	23.5	52.5	167.5
업체 유형	세무법인	(169)	7.1	1.2	3.6	11.8	23.7	52.7	169.2
	회계법인	(31)	6.5	6.5	6.5	6.5	22.6	51.6	158.5
매출액	1억 미만	(3)	0.0	0.0	0.0	33.3	66.7	0.0	163.3
	1~5억 미만	(85)	9.4	2.4	5.9	15.3	22.4	44.7	127.2
	5~10억 미만	(76)	3.9	2.6	3.9	9.2	22.4	57.9	167.8
	10~50억 미만	(27)	11.1	0.0	0.0	3.7	25.9	59.3	261.5
	50~100억 미만	(6)	0.0	0.0	0.0	0.0	16.7	83.3	200.0
	100억 이상	(3)	0.0	0.0	0.0	0.0	33.3	66.7	1002.0

8)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p>Q7. 귀사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p>
---	---

- 세무대리인의 88.0%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
  -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26.0%,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62.0%로 조사

[그림 VII-98]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 업체의 매출액이 적을수록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으로 조사
  - 업체유형별로 회계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3.5%로 세무법인(87.0%)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매출액별로는 매출액이 작은 5억 미만의 경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0% 이상으로 조사
    - 매출액 1억 미만은 100.0%, 1~5억 미만은 90.6% 수준



<표 VII-91>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 됨	도움 안됨 (Bot2)	도움됨 (Top2)	[평균]	
전체	(200)	2.0	10.0	62.0	26.0	12.0	88.0	3.12	
업체 유형	세무법인	(169)	2.4	10.7	62.7	24.3	13.0	87.0	3.09
	회계법인	(31)	0.0	6.5	58.1	35.5	6.5	93.5	3.29
매출액	1억 미만	(3)	0.0	0.0	100.0	0.0	0.0	100.0	3.00
	1~5억 미만	(85)	2.4	7.1	64.7	25.9	9.4	90.6	3.14
	5~10억 미만	(76)	2.6	11.8	65.8	19.7	14.5	85.5	3.03
	10~50억 미만	(27)	0.0	11.1	48.1	40.7	11.1	88.9	3.30
	50~100억 미만	(6)	0.0	16.7	33.3	50.0	16.7	83.3	3.33
	100억 이상	(3)	0.0	33.3	33.3	33.3	33.3	66.7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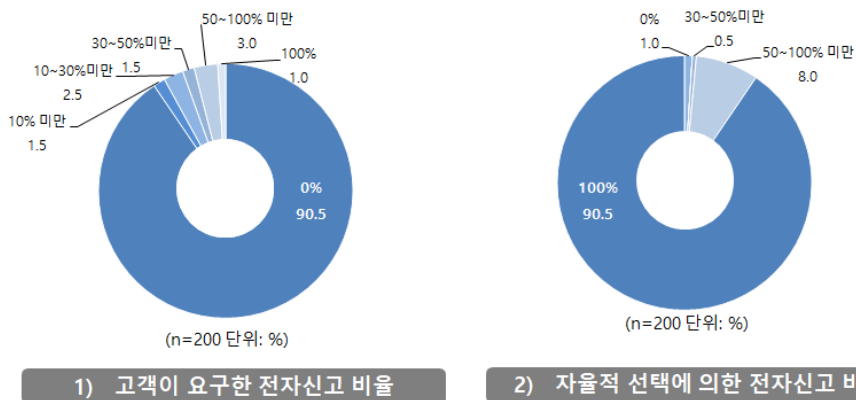
주: 도움 정도를 매우 도움 됨(4점)-전혀 도움 안됨(1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음.

9) 고객 요구 혹은 자율적 선택에 의해 전자신고를 한 비율

 	<p><b>Q8.</b> 고객이 전자신고를 요구해서 전자신고를 한 비율과 귀사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전자신고를 한 비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해 주십시오.</p> <p>1) 고객이 요구한 전자신고 비율 2) 자율적 선택에 의한 전자신고 비율</p>
--	--

- 고객의 요구 없이 자율적으로 전자신고를 수행한 비율이 90.5%로 대부분을 차지
  - 고객이 요구하여 전자신고를 수행한 비중이 50~100% 미만인 경우는 3.0%, 10~30% 미만인 경우는 2.5%로 조사
  - 자율적 선택에 의해 전자신고를 수행한 비중이 50~100% 미만인 경우가 8.0%로 조사

[그림 VII-99] 고객 요구 혹은 자율적 선택에 의해 전자신고를 한 비율




- 업체유형 및 매출액에 관계없이 고객의 요구가 없더라도 자율적으로 전자신고를 수행한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
  - 업체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
  - 매출액별로는 매출액 10~50억 미만의 경우 고객의 요구에 의한 전자신고 비율이 약 18.5% 수준으로 다른 매출액 규모 대비 높은 편
    - 매출액 10~50억 미만의 경우 고객 요구에 의한 비중이 30~50% 미만과 50~100% 미만인 경우 각각 7.4%, 100%인 경우는 3.7% 수준

<표 VII-92> 고객 요구 혹은 자율적 선택에 의해 전자신고를 한 비율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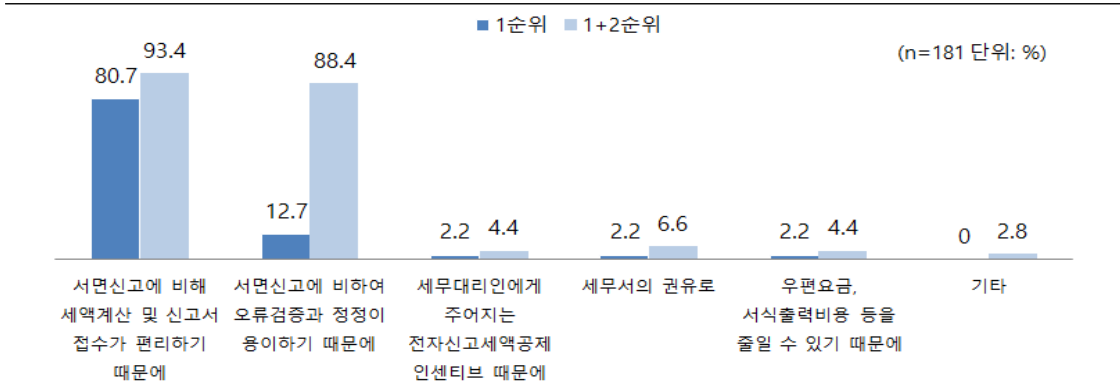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고객의 요구에 의한 전자신고							자율적 선택에 의한 전자신고							
		0%	10% 미만	10~30% 미만	30~50% 미만	50~100% 미만	100%	[평균]	0%	10% 미만	10~30% 미만	30~50% 미만	50~100% 미만	100%	[평균]	
전체	(200)	90.5	1.5	2.5	1.5	3.0	1.0	3.5	1.0	-	-	0.5	8.0	90.5	96.5	
업체 유형	세무법인	(169)	90.5	1.2	3.0	1.8	3.0	0.6	3.2	0.6	-	-	0.6	8.3	90.5	96.8
	회계법인	(31)	90.3	3.2	0.0	0.0	3.2	3.2	5.0	3.2	-	-	0.0	6.5	90.3	95.0
매출액	1억 미만	(3)	100.0	0.0	0.0	0.0	0.0	0.0	0.0	0.0	-	-	0.0	0.0	100.0	100.0
	1~5억 미만	(85)	92.9	1.2	2.4	1.2	1.2	1.2	2.4	1.2	-	-	0.0	5.9	92.9	97.6
	5~10억 미만	(76)	90.8	2.6	3.9	0.0	2.6	0.0	2.2	0.0	-	-	1.3	7.9	90.8	97.8
	10~50억 미만	(27)	81.5	0.0	0.0	7.4	7.4	3.7	10.4	3.7	-	-	0.0	14.8	81.5	89.6
	50~100억 미만	(6)	100.0	0.0	0.0	0.0	0.0	0.0	0.0	0.0	-	-	0.0	0.0	100.0	100.0
	100억 이상	(3)	66.7	0.0	0.0	0.0	33.3	0.0	16.7	0.0	-	-	0.0	33.3	66.7	83.3

10) 고객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전자신고를 선택한 이유

	<p>Q9. 고객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귀 업체가 전자신고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부터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p>
---	--

- 고객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전자신고를 선택한 181명의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선택한 주된 이유 1순위는 ‘서면신고에 비해 세액계산 및 신고서 접수가 편리하기 때문에’가 80.7%를 차지
- 1+2순위(중복응답) 기준으로도 ‘서면신고 대비 세액계산 및 신고서 접수가 편리하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선택하였다는 응답 비중이 93.4%로 대부분을 차지
  - 이어 전자신고를 선택한 주된 이유로 ‘서면신고에 비하여 오류검증과 정정이 용이하기 때문에’(1순위 기준 12.7%, 1+2순위 기준 88.4%)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

[그림 VII-100] 고객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전자신고를 선택한 이유(1순위, 1+2순위)




- 업체유형 및 매출액에 관계없이 대부분 ‘세액계산 및 신고서 접수가 편리하기 때문에’, ‘서면신고에 비하여 오류검증과 정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대체로 전자신고를 선택
  - 업종별로는 세무법인의 경우 ‘세액계산 및 신고서 접수가 편리하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선택하였다는 응답이 9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서면신고에 비해 세액계산 및 신고서 접수가 편리하기 때문에’(92.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매출액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
  - 세무대리인에게 주어지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인센티브 때문이라는 대답은 4.4%에 불과하였음

<표 VII-93> 고객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전자신고를 선택한 이유\_1+2순위(복수응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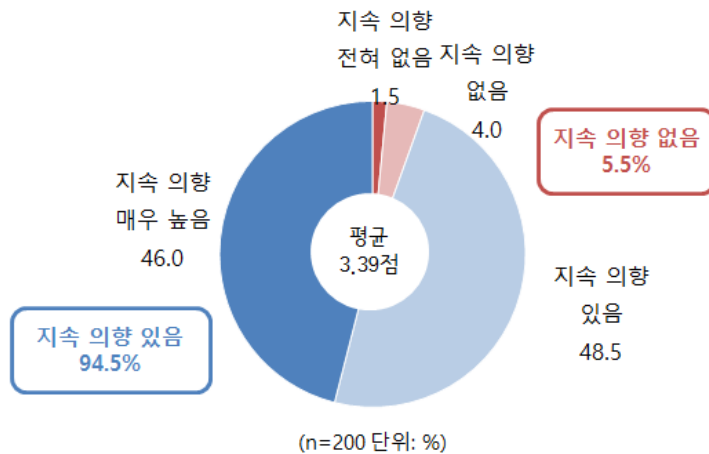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세액계산 및 신고서 접수가 편리하기 때문에	서면 신고에 비하여 오류 검증이 용이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주어지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인센티브 때문에	세무서의 권유로	우편요금, 서식출력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타	
전체	(181)	93.4	88.4	4.4	6.6	4.4	2.8	
업체유형	세무법인	(153)	94.8	87.6	3.9	5.9	4.6	3.3
	회계법인	(28)	85.7	92.9	7.1	10.7	3.6	0.0
매출액	1억 미만	(3)	100.0	100.0	0.0	0.0	0.0	0.0
	1~5억 미만	(79)	94.9	89.9	5.1	5.1	2.5	2.5
	5~10억 미만	(69)	94.2	85.5	2.9	7.2	7.2	2.9
	10~50억 미만	(22)	86.4	86.4	9.1	9.1	4.5	4.5
	50~100억 미만	(6)	100.0	100.0	0.0	0.0	0.0	0.0
	100억 이상	(2)	50.0	100.0	0.0	50.0	0.0	0.0

11)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 전자신고 지속 의향

	<p><b>Q10.</b> 귀사는 세무대리인에게 주어지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이 현재보다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 귀사는 전자신고를 지속할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p>
---	--

- 세무대리인에게 주어지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이 현재보다 줄어들거나 폐지되더라도 전자신고를 지속하겠다는 응답이 94.5%로 대부분을 차지
  - 전자신고를 지속할 의향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46.0%, 지속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8.5%로 지속 의향이 있는 총 비율은 94.5% 수준
    - 전자신고를 지속할 의향이 없는 응답비율은 5.5%(지속 의향 없음 4.0% + 지속 의향 전혀 없음 1.5%)에 불과

[그림 VII-101]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 전자신고 지속 의향



- 업체유형 및 매출액에 관계없이 전자신고 지속 의향이 높은 것으로 파악
  - 업체유형별로는 세무법인의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폐지되더라도 전자신고를 지속하겠다는 응답이 95.3%, 회계법인은 90.3%로 세무법인의 지속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파악
  - 매출액별로는 매출액이 1억 미만, 10~50억 미만, 100억 이상인 업체의 경우 전자신고 지속 의향이 100.0%로 조사

**<표 VII-94>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  
전자신고 지속 의향**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명)	지속 의향 전혀 없음	지속 의향 없음	지속 의향 있음	지속 의향 매우 높음	지속 없음 (Bot2)	지속 있음 (Top2)	[평균]
전체		(200)	1.5	4.0	48.5	46.0	5.5	94.5	3.39
업체 유형	세무법인	(169)	1.2	3.6	47.9	47.3	4.7	95.3	3.41
	회계법인	(31)	3.2	6.5	51.6	38.7	9.7	90.3	3.26
매출액	1억 미만	(3)	0.0	0.0	0.0	100.0	0.0	100.0	4.00
	1~5억 미만	(85)	2.4	7.1	45.9	44.7	9.4	90.6	3.33
	5~10억 미만	(76)	1.3	1.3	56.6	40.8	2.6	97.4	3.37
	10~50억 미만	(27)	0.0	0.0	40.7	59.3	0.0	100.0	3.59
	50~100억 미만	(6)	0.0	16.7	50.0	33.3	16.7	83.3	3.17
	100억 이상	(3)	0.0	0.0	33.3	66.7	0.0	100.0	3.67

주: 지속 의향을 매우 높음(4점)~전혀 없음(1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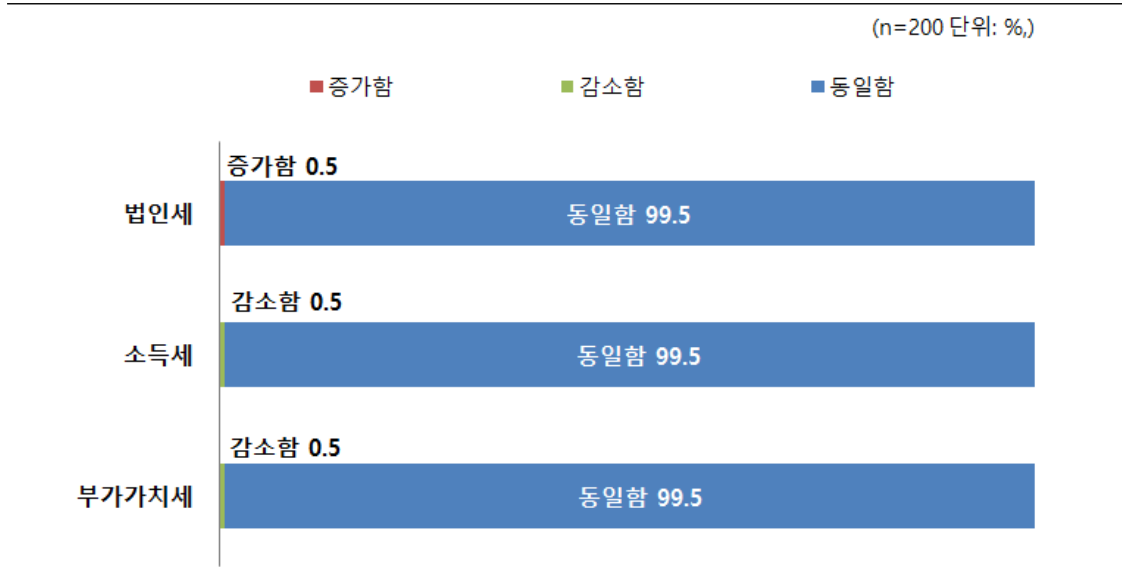
**다. 전자신고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1) 전자신고서 서면신고 고객 대비 납세신고대행 수수료 차이**

	<p><b>Q11.</b> 법인세를 전자신고 하는 경우 서면신고 고객과 비교하여 납세신고대행 수수료에 차이가 있습니까?</p> <p><b>Q12.</b>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 하는 경우 서면신고 고객과 비교하여 납세신고대행 수수료에 차이가 있습니까?</p> <p><b>Q13.</b>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 하는 경우 서면신고 고객과 비교하여 납세신고대행 수수료에 차이가 있습니까?</p>
---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서면신고와 비교하여 납세신고대행 수수료가 동일하다는 의견이 각각 99.5%로 파악

[그림 VII-102] 전자신고시 서면신고 고객 대비 납세신고대행 수수료 차이



□ 업체유형 및 매출액에 관계없이 서면신고 고객 대비 전자신고대행 수수료가 동일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

<표 VII-95> 전자신고시 서면신고 고객 대비 납세신고대행 수수료 차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가	감소	동일	증가	감소	동일	증가	감소	동일	
전체	(200)	0.5	-	99.5	-	0.5	99.5	-	0.5	99.5	
업체 유형	세무법인	(169)	0.0	-	100.0	-	0.6	99.4	-	0.6	99.4
	회계법인	(31)	3.2	-	96.8	-	0.0	100.0	-	0.0	100.0
매출 액	1억 미만	(3)	0.0	-	100.0	-	0.0	100.0	-	33.3	66.7
	1~5억 미만	(85)	0.0	-	100.0	-	0.0	100.0	-	0.0	100.0
	5~10억 미만	(76)	0.0	-	100.0	-	1.3	98.7	-	0.0	100.0
	10~50억 미만	(27)	3.7	-	96.3	-	0.0	100.0	-	0.0	100.0
	50~100억 미만	(6)	0.0	-	100.0	-	0.0	100.0	-	0.0	100.0
	100억 이상	(3)	0.0	-	100.0	-	0.0	100.0	-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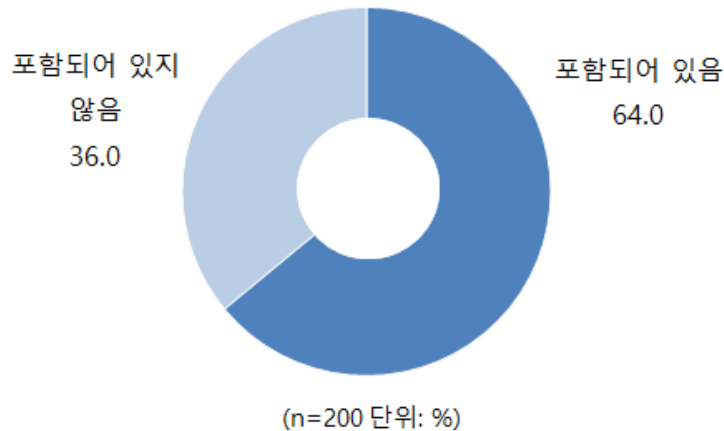
## 2) 납세대행수수료에 전자신고 업무비용 포함 여부



Q14. 귀사가 세금신고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납세대행수수료에는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납세대행수수료에 전자신고 관련 업무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4.0%로 전체의 3분의 2가량 차지
  - 납세대행 수수료에 전자신고 업무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6.0%로 조사

[그림 VII-103] 납세대행수수료에 전자신고 업무비용 포함 여부




- 업체유형 및 매출액에 관계없이 세금신고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납세대행 수수료에 전자신고 업무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응답이 높은 수준
  - 업체유형별로는 세무법인(65.1%)이 회계법인(58.1%)보다 납세대행수수료에 전자신고 업무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
  - 매출액별로 10~50억 미만(55.6%), 50~100억 미만(50.0%)의 경우 전자신고 업무비용이 납세대행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매출액 규모 대비 다소 낮은 수준

<표 VII-96> 납세대행수수료에 전자신고 업무비용 포함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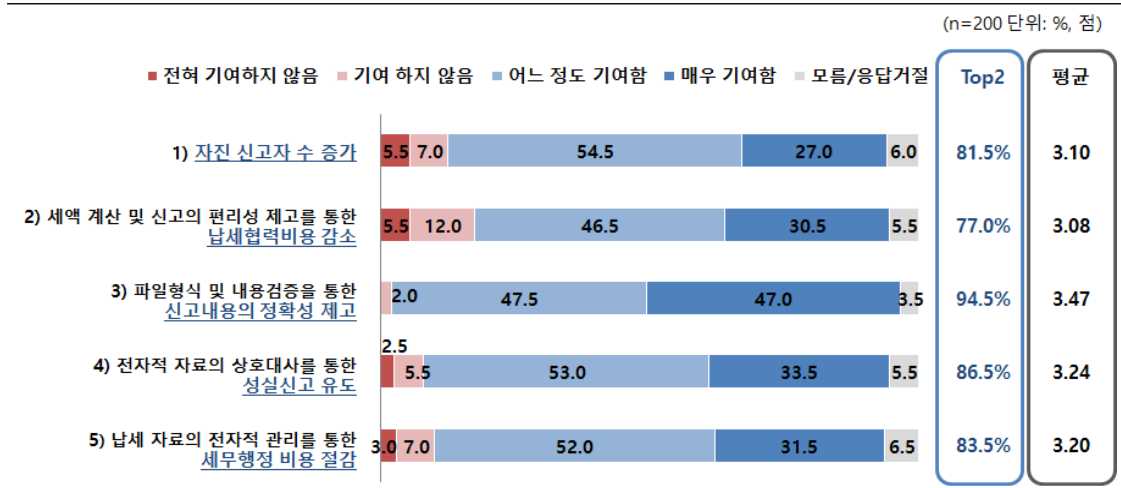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포함되어 있음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전체		(200)	64.0	36.0
업체 유형	세무법인	(169)	65.1	34.9
	회계법인	(31)	58.1	41.9
매출액	1억 미만	(3)	66.7	33.3
	1~5억 미만	(85)	65.9	34.1
	5~10억 미만	(76)	65.8	34.2
	10~50억 미만	(27)	55.6	44.4
	50~100억 미만	(6)	50.0	50.0
	100억 이상	(3)	66.7	33.3

### 3) 전자신고의 기여도

	<p><b>Q15.</b> 귀사는 전자신고가 다음의 측면에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b>Q15-1.</b> 자진신고자 수 증가</p> <p><b>Q15-2.</b> 세액 계산 및 신고의 편리성 제고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감소</p> <p><b>Q15-3.</b> 파일형식 및 내용검증을 통한 신고내용의 정확성 제고</p> <p><b>Q15-4.</b> 전자적 자료의 상호대사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p> <p><b>Q15-5.</b> 납세 자료의 전자적 관리를 통한 세무행정 비용 절감</p>
---	--

- 전체 세무대리인의 상당수가 전자신고의 기여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 특히, ‘파일형식 및 내용검증을 통한 신고내용의 정확성 제고’의 항목에 대해 기여했다는 응답이 94.5%(매우 기여함 47.0% + 어느 정도 기여함 47.5%)로 높은 수준
    - 이어 ‘전자적 자료의 상호대사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86.5%), ‘납세 자료의 전자적 관리를 통한 세무행정 비용 절감’(83.5%) 순으로 파악

[그림 VII-104] 전자신고의 기여도



- 업체유형 및 매출액에 관계없이 대체로 ‘파일형식 및 내용검증을 통한 신고내용의 정확성 제고’의 항목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
- 세무법인이 회계법인 대비 전자신고의 기여도에 대한 5개의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매출액별로 매출액 10~50억 미만의 경우 ‘전자적 자료의 상호대사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 측면에서 전자신고가 기여한다는 응답이 96.3%로 높은 수준


<표 VII-97> 전자신고의 기여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명)	자진 신고자 수 증가		세액 계산 및 신고의 편리성 제고로 납세협력비용 감소		파일형식, 내용검증을 통한 신고내용의 정확성 제고		전자적 자료의 상호대사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		납세 자료의 전자적 관리로 세무행정 비용 절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전체	(200)	81.5	3.10	77.0	3.08	94.5	3.47	86.5	3.24	83.5	3.20	
업체유형	세무법인	(169)	82.2	3.10	77.5	3.07	95.9	3.49	87.6	3.27	84.0	3.19
	회계법인	(31)	77.4	3.07	74.2	3.15	87.1	3.30	80.6	3.11	80.6	3.22
매출액	1억 미만	(3)	66.7	3.00	66.7	2.33	100.0	3.67	100.0	3.33	33.3	1.67
	1~5억 미만	(85)	77.6	3.04	72.9	3.06	95.3	3.54	87.1	3.28	87.1	3.30
	5~10억 미만	(76)	85.5	3.15	77.6	3.06	93.4	3.40	82.9	3.15	77.6	3.12
	10~50억 미만	(27)	85.2	3.19	88.9	3.30	92.6	3.46	96.3	3.42	92.6	3.30
	50~100억 미만	(6)	83.3	2.83	83.3	2.83	100.0	3.33	83.3	3.00	100.0	3.17
100억 이상	(3)	66.7	3.00	66.7	3.33	100.0	3.33	66.7	3.33	66.7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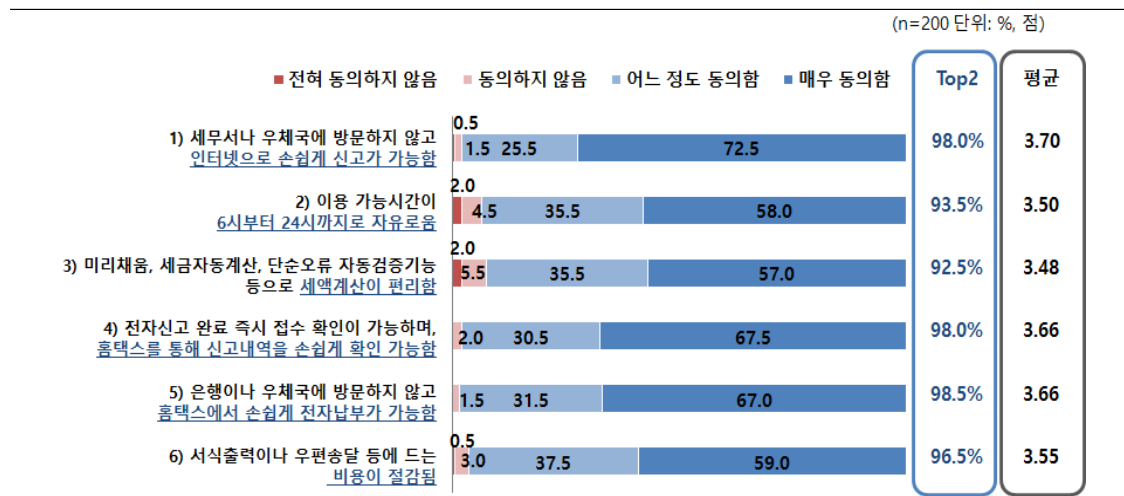
주: 1. 항목별 Top2(매우 기여함 + 어느 정도 기여함) 비율  
 2. 기여도를 매우 기여함(4점)~전혀 기여하지 않음(1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음.

#### 4)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편리성

	<p><b>Q16.</b> 귀사는 전자신고가 서면신고에 비하여 가지는 다음의 편리성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p> <p><b>Q16-1.</b> 세무서나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함</p> <p><b>Q16-2.</b> 이용 가능시간이 6시부터 24시까지로 자유로움</p> <p><b>Q16-3.</b> 미리채움서비스, 세금 자동 계산, 단순오류 자동검증기능 등으로 인하여 세액계산이 편리함</p> <p><b>Q16-4.</b> 전자신고 완료 즉시 접수 확인이 가능하며, 홈택스를 통해 신고내역을 손쉽게 확인 가능함</p> <p><b>Q16-5.</b>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손쉽게 전자납부가 가능함</p> <p><b>Q16-6.</b> 서식출력이나 우편송달 등에 드는 비용이 절감됨</p>
---	---

- 서면신고에 비해 전자신고가 편리하다는 긍정적 응답이 모든 항목에서 90% 이상의 수준으로 대부분 전자신고의 편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은행,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로 손쉽게 전자납부 가능’ 측면에서 편리하다는 응답이 98.5%(어느정도 동의함 31.5% + 매우 동의함 67.0%)로 가장 높은 수준
    - 이어 ‘세무서나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함’(98.0%), ‘전자신고 완료 즉시 접수 확인이 가능하며, 홈택스를 통해 신고내역을 손쉽게 확인 가능함’(98.0%)에 대한 긍정적 응답도 높은 수준
  -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가 가지는 편리성은 전자신고의 기여도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

[그림 VII-105]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편리성



□ 업체유형별로는 세무법인이 대체로 회계법인보다 전자신고의 편리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


<표 VII-98>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의 편리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명)	세무서나 우체국에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함		이용 시간이 6시~24로 자유로움		미리채움 자동계산, 단순오류 검증기능으로 세액계산 편리함		전자신고 완료 후 접수확인 가능 및 홈택스로 신고내역 확인가능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없이 홈택스로 전자납부 가능		서식출력이나 우편송달 비용이 절감됨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Top2 (%)	평균 (점)	
전체	(200)	98.0	3.70	93.5	3.50	92.5	3.48	98.0	3.66	98.5	3.66	96.5	3.55	
업체유형	세무법인	(169)	98.8	3.73	95.3	3.53	93.5	3.50	99.4	3.67	98.8	3.65	96.4	3.56
	회계법인	(31)	93.5	3.55	83.9	3.29	87.1	3.32	90.3	3.55	96.8	3.68	96.8	3.52
매출액	1억 미만	(3)	100.0	3.33	100.0	3.00	100.0	3.00	100.0	3.67	100.0	3.33	100.0	3.00
	1~5억 미만	(85)	98.8	3.72	92.9	3.52	95.3	3.54	100.0	3.67	98.8	3.67	97.6	3.60
	5~10억 미만	(76)	97.4	3.66	93.4	3.42	89.5	3.37	97.4	3.62	97.4	3.58	97.4	3.53
	10~50억 미만	(27)	96.3	3.81	100.0	3.85	96.3	3.70	100.0	3.81	100.0	3.85	92.6	3.59
	50~100억 미만	(6)	100.0	3.67	83.3	3.33	83.3	3.33	83.3	3.33	100.0	3.67	83.3	3.33
	100억 이상	(3)	100.0	3.67	66.7	2.33	66.7	3.00	66.7	3.33	100.0	3.67	100.0	3.33

주: 1. 항목별 Top2(매우 동의함 + 어느 정도 동의함) 비율  
 2. 동의 정도를 매우 동의함(4점)~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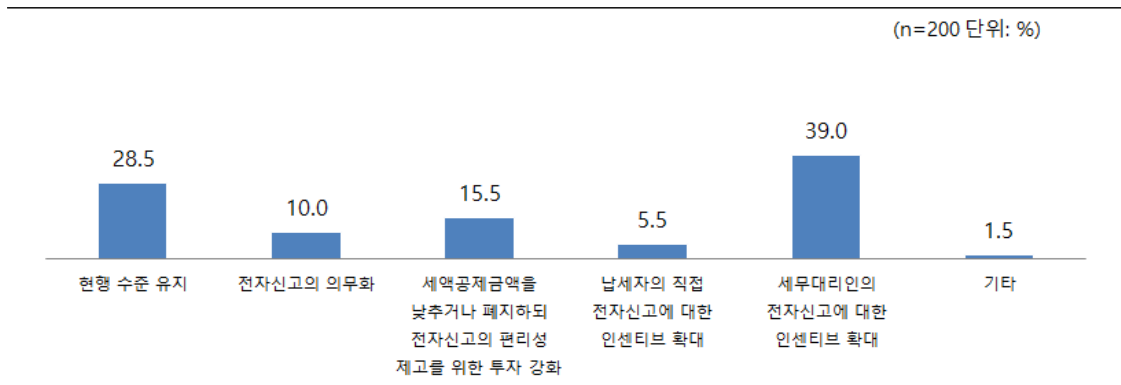
5)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p>Q17. 귀사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가장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	--

□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개선 요구가 39.0% 수준

- 이어 ‘현행수준 유지’(28.5%), ‘전자신고의 편리성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15.5%), ‘전자신고의 의무화’(10.0%) 순으로 조사

[그림 VII-106]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 업체유형, 매출액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현행수준 유지’에 대한 요구가 많음
  - 업체유형별로 회계법인의 경우 ‘현행수준 유지’(32.3%)와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35.5%)에 대한 개선 요구가 비슷한 수준임
  - 매출액이 5~10억 미만인 경우 ‘현행수준 유지’(34.2%)와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39.5%)에 대한 개선 요구가 비슷한 수준임

<표 VII-99>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현행수준 유지	전자신고의 의무화	세액공제 금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되 전자신고의 편리성 제고	납세자의 직접 전자신고 인센티브 확대	세무대리인 전자신고 인센티브 확대	기타	
전체	(200)	28.5	10.0	15.5	5.5	39.0	1.5	
업체 유형	세무법인	(169)	27.8	10.7	14.8	5.3	39.6	1.8
	회계법인	(31)	32.3	6.5	19.4	6.5	35.5	0.0
매출액	1억 미만	(3)	33.3	0.0	0.0	0.0	66.7	0.0
	1~5억 미만	(85)	28.2	12.9	17.6	4.7	35.3	1.2
	5~10억 미만	(76)	34.2	7.9	11.8	6.6	39.5	0.0
	10~50억 미만	(27)	18.5	11.1	18.5	7.4	40.7	3.7
	50~100억 미만	(6)	16.7	0.0	16.7	0.0	50.0	16.7
	100억 이상	(3)	0.0	0.0	33.3	0.0	66.7	0.0

## 8. 요약

- **(전자신고의 이용현황)** 법인사업체 및 개인사업자의 대부분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모두 전자신고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법인사업체: 96.5%, 개인사업자: 88.3%)
  - 법인(74.2%) 및 개인사업자(94.0%)는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자신고를 하고 있으나 개인비사업자는 절반 이상인 57.5%가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를 하고 있어 아직까지 서면신고 비율과 전자신고 비율이 절반 수준
  
- **(전자신고 선택 이유)** 전자신고를 하는 이유는 ‘서면신고에 비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
  - 개인비사업자의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선택한 비율도 절반(56.0%) 이상을 차지한 반면, 세무대리인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때문에’ 전자신고를 선택한 비율은 4.4%에 불과
  
- **(세무대리인 비용에 전자신고 비용 포함 여부)** 세무대리인 지불비용에 전자신고 업무비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간에 인식차이 존재
  - 법인 및 개인납세자 전체의 84.2%는 세무대리인 지불비용에 전자신고 업무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한 반면 세무대리인에게 조사한 결과, 실제로는 세무대리인의 64.0% 세무대리인 지불비용에 전자신고 업무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
  
- **(전자신고에 대한 인식)** 전자신고의 편리성과 기여도에 대해서 모든 응답자가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서면신고 대비 편리성 항목에 대해서 90.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
  - 전자신고의 기여도 항목에서는 ‘파일형식 및 내용 검증을 통한 신고내용의 정확성 제고’(87.8%), ‘전자적 자료의 상호대사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85.2%), 항목 순으로 기여도가 높게 조사
  - 전자신고의 편리성 항목에서는 ‘전자신고 완료 즉시 접수확인이 가능 및 홈택스를 통해 신고내역을 손쉽게 확인가능’(96.4%),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손쉽게 전자납부가 가능’(95.9%) 항목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

-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에 유지 의향)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대부분(90.9%)의 응답자가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에도 전자신고를 유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 특히, 법인사업체 및 세무대리인의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이 줄거나 폐지되어도 대부분(95.0%)이 유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기여도) 전체 응답자의 84.7%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
  - 개인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85.0% 이상으로 유사한 수준이나 법인사업체는 74.0%로 다른 그룹 대비 낮은 편
    - 이는 법인사업체는 공제대상이 세무대리인이기 때문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비용에 대한 체감이 다른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
  
-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개선 방향)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 ‘납세자의 직접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개선 요구가 26.9%로 가장 높고, 이어 ‘세액공제금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되 전자신고의 편리성 제고’에 대한 개선 의견도 23.8%를 차지
  - 개인비사업자는 ‘납세자의 직접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인 54.0%를 차지
    - 개인비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신고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세무대리인은 ‘현행수준 유지’(28.5%), ‘세무대리인의 인센티브 확대’(39.0%)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 대비 높은 편이나 전자신고 세액공제 유지 및 확대에 대해서는 과반수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
    - 세무대리인의 경우 전자신고의 편의성 및 정확성 제고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긍정적으로 조사되어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이 조정시(폐지 또는 감소)에도 전자신고를 유지할 의향(94.5%)이 법인 및 개인납세자를 포함하여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Ⅷ. 제도개선 방안





## VIII. 제도개선 방안

### 1.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점진적 폐지

#### 가. 점진적 폐지

- 전자신고에 대한 조세지원 유지의 타당성은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가 본래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했는지, 폐지하였을 때의 비용이 동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가 법 제정 당시 수립한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고, 유지 시 비용이 폐지 시 비용보다 크다면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임
  
- 우리나라 주요 세목의 전자신고율은 90%를 돌파해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본래의 정책목표(전자신고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sup>17)</sup>
  - 우리나라의 전자신고율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기에 전자신고를 도입한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유사하거나 우위에 있는 수준임
  
- 전자신고 세액공제와 전자신고율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제도 도입 초기에만 관찰되며, 현재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와 전자신고율 간 연결고리가 상당 부분 약화되어 재정지출 확대가 전자신고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sup>18)</sup>
  - 전자신고 세액공제 도입 첫 해인 2004년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율은 전년 대비 각각 26.5%p와 30.8%p의 놀라운 성장세를 보임
  - 그러나 2005년 이후에는 잇따른 세법개정과 조세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자신고율에 획기적인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있음

17) 우리나라 주요 세목별 전자신고율 변화와 OECD 국가와의 비교표는 <표 V-1>~<표 V-4> 참조

18) 전자신고 세액공제와 전자신고율 간 관계는 [그림 VI-2] 참조

- 설문조사 결과 전자신고 이용자들(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의 편리성에 관해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폐지·축소하더라도 서면신고로 회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sup>19)</sup>
  - 전자신고의 편리성에 관한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90.3점, 개인사업자는 86.8점, 개인비사업자는 90.0점, 세무대리인은 89.7점의 만족도를 나타냄
  
- 실제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폐지·축소할 경우 전자신고를 유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90% 이상의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유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sup>20)</sup>
  - 전자신고와 서면신고가 동시에 요구돼 전자신고 유지 인센티브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 ‘수입금액 30억 이상 법인’의 90% 이상이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축소 시에도 전자신고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힘<sup>21)</sup>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폐지·축소할 경우 전자신고율을 예상한 결과, 현재의 91%에서 약 8%p 하락한 83% 수준으로 예상됨<sup>22)</sup>
  - 전자신고의 편리성에 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전자신고비용이 서면신고비용보다 낮으므로 세제지원이 없더라도 비용 절감을 위해 전자신고를 선택할 충분한 유인이 있음
  - 전자신고를 선택할 경우 서면신고에 비하여 증가하는 원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90% 이상의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신고에 비하여 세무 관련 업무 비용이 감소하였거나 전자신고비용과 서면신고비용 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함<sup>23)</sup>
  
- 비용-효익 관점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의 손익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이 국가재정 측면에서 오히려 이득인 것으로 나타남
  - 전자신고 세액공제로 인한 2013, 2014, 2015년도의 조세지출은 각각 806억원, 848억원, 958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19) 구체적인 설문조사 응답결과는 <표 V-8> 참조

20) 구체적인 설문조사 응답결과는 <표 V-5> 참조

21) 구체적인 설문조사 응답결과는 <표 V-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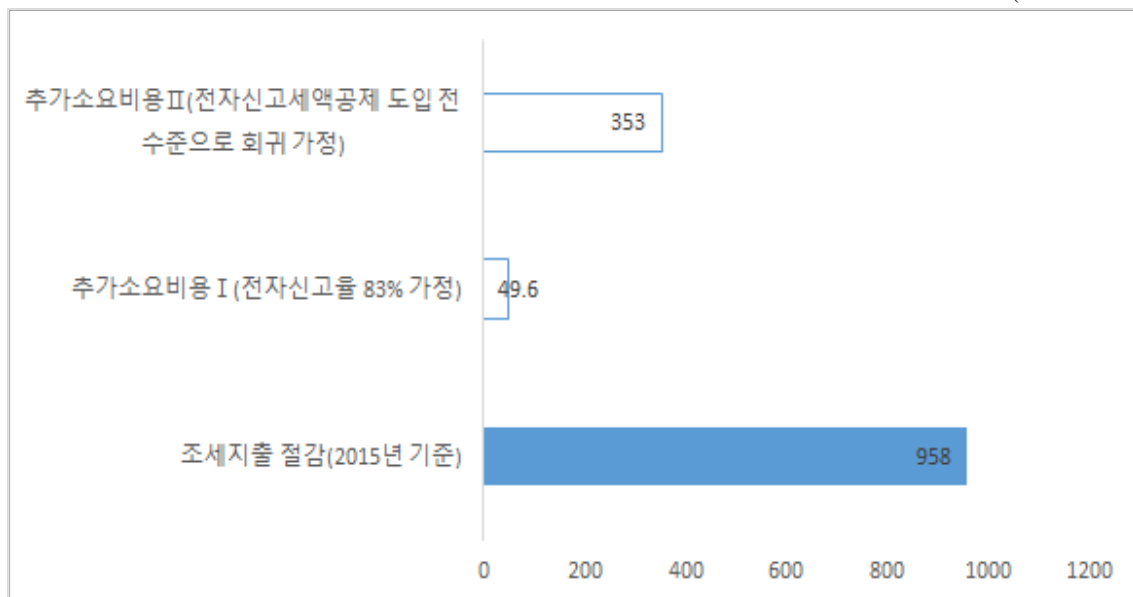
22) 구체적인 추정과정 및 결과는 <표 V-7> 참조

23) 구체적인 설문조사 응답결과와 서면신고 대비 전자신고 관련 증분비용 추계결과는 <표 V-21> 참조

-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축소로 전자신고율이 83%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가정했을 때 서면신고 및 과세자료 등 입력에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49.6억원임<sup>24)</sup>
- 가장 보수적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 후 전자신고율이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 도입 전인 2003년 수준(법인세 92.7%, 부가가치세 33.8%, 종합소득세 43.5%)으로 회귀한다고 가정했을 때 서면신고 및 과세자료 등 입력에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약 353억원(2015년 신고건수 기준)임<sup>25)</sup>

[그림 VIII-1]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비용-효익 분석

(단위: 억원)



-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정책 목표가 이미 충분히 달성되었을 뿐 아니라 동 제도 폐지로 절감될 예산이 서면자료입력에 필요한 추가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비용-효익 관점에서 점진적 폐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됨
- 전자신고 세액공제로 인한 현재의 조세지출수준(958억원)은 가장 보수적으로 예측한 추가발생비용(2003년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가정했을 때의 353억원)과 비교하여서도 605억원만큼 많음

24) 구체적인 추정과정 및 결과는 <표 V-7> 참조

25) 구체적인 추정과정 및 결과는 <표 VI-9> 참조

-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다도 납세자의 전자신고비용을 세액공제나 현금보조금 등을 통해 보전하여 주는 제도는 전자신고제도 도입 초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다 전자신고 문화 정착 이후 폐지한 경우가 많았음
- 영국, 일본, 덴마크 등이 전자신고 세액공제(또는 현금보조금)제도를 운영한 사례가 있지만,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된 이후 폐지하여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음

〈표 VIII-1〉 외국의 전자신고 관련 지원제도 운영 현황

구분	국가	공제대상	도입	폐지	운영기간
현금보조	영국	소득세	2004년	2010년	6년
세액공제	일본	소득세	2007년	2012년	5년
	덴마크	부가가치세	2003년	2004년	1년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자료

#### 나. 조세지원 대상자 축소방안

-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점진적 폐지를 전제하였을 때 전자신고율이 높은 분야부터 시작해 점차적으로 조세지원 대상자를 축소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전자신고에 대한 조세지원 규모를 전반적으로 축소하되, 축소된 자원은 전자신고율이 낮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1)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비사업자 순으로 배제

- 개인비사업자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므로 가장 나중에 조세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폐지로 인한 사회적 충격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현행보다 축소·폐지할 경우 전자신고를 유지할 의향을 질문한 결과, 개인비사업자의 긍정적 답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sup>26)</sup>

26) 구체적인 설문조사 결과는 <표 V-5> 참조

- 반대로 서면신고자를 대상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현행보다 2배 인상 시 전자 신고를 선택할 의향을 질문한 결과, 개인비사업자의 긍정적 답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sup>27)</sup>
- 전자신고 세액공제 때문에 전자 신고를 선택하였다는 응답 또한 개인비사업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개인비사업자는 56%가 전자신고 세액공제 때문에 전자 신고를 선택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대리인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 신고 선택의 주된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13% 미만으로 나타남
- 개인비사업자가 다른 납세자 그룹에 비해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민감도가 높지만, 전자신고비용이 서면신고비용에 비해 낮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개인비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세목별 조세지원 대상자 축소방안

- 법인세 분야의 경우 법인세 전자신고율이 이미 99%를 넘어섰고, 전자신고율이 낮은 분야를 찾기 어려운바, 전체 법인을 조세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소득세 분야의 경우 복식부기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줄이되, 간편장부 및 단순경비율대상자 중심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를 재편할 필요가 있음
  - 서면신고자 중 간편장부 및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5%에 달함
  - 장기적으로는 조세지원보다 전자신고의 편리성 강화를 통해 신고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이 간편장부 및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전자신고율 제고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27)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2배 이상 인상하더라도 전자 신고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하로 나타남

<표 VIII-2>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자와 전자신고자 특성 비교(2015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신고 인원	총수입 금액	과세 표준	결정 세액	차가감 납부세액	
서 면 신 고 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1,049 (0.8)	18,771	6,385	1,769	774
	복식부기	26,538 (2.1)	64,401	11,230	1,899	714
	간편장부	130,913 (8.7)	89,094	15,034	1,013	325
	기준경비율	26,232 (5.6)	27,853	6,186	946	582
	단순경비율	289,701 (18.3)	74,464	20,649	1,406	503
	비사업자	20,502 (4.0)	31,736	29,811	6,183	2,135
전 자 신 고 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137,046 (99.2)	2,618,735	307,047	80,170	43,262
	복식부기	1,254,644 (97.9)	4,229,989	526,657	69,905	32,118
	간편장부	1,367,077 (91.3)	1,091,786	185,556	12,134	3,837
	기준경비율	438,424 (94.4)	408,827	88,696	9,236	5,287
	단순경비율	1,293,624 (81.7)	489,141	180,662	14,904	3,699
	비사업자	496,928 (96.0)	300,307	242,426	37,235	7,933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 부가가치세 분야의 경우 범인에 대한 조세지원은 줄어들되, 개인사업자 그 중에서도 특히 간이과세자 중심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를 재편할 필요가 있음
  - 부가가치세 서면신고자 중 법인사업자는 6%에 불과하며, 나머지 94%는 개인사업자임
  - 간이과세자의 전자신고율은 75%에 불과해 개선이 요구되나, 설문조사 결과 60% 이상이 전자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또는 전자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전자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조세지원만으로 간이과세자의 전자신고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오히려 간이과세자의 전자신고 환경을 개선해 전자신고의 편리성을 높이는 것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율을 현재보다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됨

<표 VIII-3> 부가가치세 서면신고자와 전자신고자 특성 비교(2015년 2기 확정)

(단위: 명, 백만원)

유형	업종	전자신고자		서면신고자	
		신고인원	과세표준	신고인원	과세표준
법인	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1,337	294,839	174	63,188
	광업	596	1,692,073	36	32,777
	제조업	130,027	282,695,560	6,836	53,680,384
	전기, 가스, 수도업	2,121	15,751,017	72	23,082,241
	도매업	99,080	140,084,605	5,511	9,049,350
	소매업	29,978	32,359,984	1,484	6,441,686
	부동산매매업	3,431	2,821,269	277	284,995
	건설업	70,370	75,155,263	2,944	13,336,574
	음식업	15,038	4,529,835	556	499,832
	숙박업	1,352	2,505,357	95	64,177
	운수, 창고, 통신업	13,208	27,950,667	637	5,965,867
	부동산임대업	23,169	6,854,016	907	503,508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	24,550	19,689,019	1,070	4,073,442
	서비스업	112,042	84,504,032	5,381	8,001,931
개인 일반	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215	10,903	38	1,373
	광업	169	50,600	30	9,046
	제조	303,773	66,273,594	20,236	3,433,705
	전기, 가스, 수도업	12,080	188,130	724	9,963
	도매업	330,832	66,370,453	22,077	3,403,639
	소매업	334,938	48,104,343	26,447	2,877,648
	부동산매매업	3,001	854,064	311	133,798
	건설업	185,936	20,451,148	15,672	1,396,063
	음식업	370,048	36,692,978	33,635	2,419,083
	숙박업	17,025	1,333,313	1,727	153,818
	운수, 창고, 통신업	197,451	9,080,542	22,798	886,765
	부동산임대업	231,106	11,756,043	31,393	1,149,100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	114,669	9,422,937	9,994	543,914
	서비스업	272,236	20,239,151	22,366	1,737,664
개인 간이	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224	4,797	102	2,185
	제조	9,665	189,255	5,192	73,798
	전기, 가스, 수도업	54	299	20	100

유형	업종	전자신고자		서면신고자	
		신고인원	과세표준	신고인원	과세표준
	도매업	1,119	36,008	539	11,064
	소매업	164,112	4,384,059	60,659	1,155,176
	부동산매매업	10	136	4	28
	건설업	693	12,755	497	7,920
	음식업	172,473	7,614,880	48,288	1,451,368
	숙박업	10,553	231,918	3,742	65,298
	운수,창고,통신업	65,128	1,225,713	12,500	231,396
	부동산임대업	78,888	1,236,065	35,930	471,824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	36,142	1,086,580	8,756	206,038
	서비스업	101,808	2,428,274	34,579	551,837

주: 2017년 7월 현재 주업종 코드 기준 신고현황으로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다른 업종의 실적도 포함함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 2. 법인의 전자신고 의무화

- 영국을 포함해 높은 전자신고율을 보고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전자신고를 납세자의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OECD 국가 중 절반 이상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해 전자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의무화한 국가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법인세, 소득세의 순서임
    -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영세기업에 한해 전자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특히, 전 세목에 걸쳐 높은 전자신고율을 보고한 영국의 경우 전자신고 도입 초기 현금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전자신고제도 정착을 이유로 2010년 폐지하였으며, 이후 전자신고를 납세자의 선택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함
  - 영국의 개인소득세 전자신고율은 2004년 17%에서 2011년에는 76%로 상승하였고, 의무신고로 전환한 이후인 2013년에는 85%까지 올라감

<표 VIII-4> OECD 국가의 전자신고 의무화 여부

국가명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
	Large	Small/ Medium	Very small	Large	Small/ Medium	Very small	
Australia	×	×	×	○	×	×	×
Austria	○	○	○	○	○	○	○
Belgium	○	○	○	○	○	-	×
Canada	○	○	×	○	○	×	○
Chile	○	○	○	○	○	○	×
Czech Republic	×	×	×	○	○	○	×
Denmark	×	×	×	○	○	○	○
Estonia	○	○	○	×	×	×	×
Finland	×	×	×	×	×	×	×
France	○	○	○	○	○	○	×
Germany	○	○	○	○	○	○	○
Greece	○	○	○	○	○	○	○
Hungary	○	○	○	○	○	○	○
Iceland	×	×	×	○	○	○	×
Ireland	○	○	○	○	○	○	○
Israel	×	×	×	○	○	○	○
Italy	○	○	-	○	-	○	○
Japan	×	×	×	×	×	×	×
Korea	×	×	×	×	×	×	×
Luxembourg	×	×	×	○	○	×	×
Mexico	○	○	○	○	○	○	○
Netherlands	○	○	○	○	○	○	×
New Zealand	×	×	×	×	×	×	×
Norway	×	×	×	×	×	×	×
Poland	×	×	×	×	×	×	×
Portugal	○	○	○	○	○	○	○
Slovak Republic	○	○	○	○	○	○	○
Slovenia	○	○	○	○	○	○	○
Spain	○	○	○	○	○	○	○
Sweden	×	×	×	×	×	×	×
Switzerland	- <sup>1)</sup>	- <sup>1)</sup>	- <sup>1)</sup>	×	×	×	- <sup>1)</sup>
Turkey	○	○	○	○	○	○	○
United Kingdom	○	○	○	○	○	○	○
United States	○	×	×	- <sup>2)</sup>	- <sup>2)</sup>	- <sup>2)</sup>	×
전자신고 의무화국가 숫자(비중)	20 (59%)	19 (56%)	17 (50%)	24 (71%)	22 (65%)	20 (59%)	16 (47%)

주: 1) Personal tax and corporate income tax are administered at the sub-national(cantonal level). some cantons use e-filing.

2) No national VAT.

자료: Tax Administration 2015, OECD

- 우리나라의 법인세 전자신고율은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도입 이전에 이미 90%를 넘어섰고, 99% 법인이 전자신고를 선택하고 있어 조세지원을 통해 전자신고율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낮음
  - 법인세 전자신고율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도입 직전인 2003년 92.7%에서 2015년에는 98.6%로 13년간 5.9%p의 소폭 상승을 기록함
  - 2015년 현재 법인세 전자신고율은 98.6%로 조세지원 확대를 통해 추가적으로 전자신고율을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임
  - 법인세를 직접 전자신고한 법인 중 83.5%는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자신고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세제지원이 법인의 전자신고 의사결정에 주요한 결정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법인은 개인에 비해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납세협력의 무 이행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의무화하더라도 이로 인한 추가적 업무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축소할 경우 전자신고를 유지할 의향이 있는냐는 질문에 법인사업자의 94.9%가 전자신고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변함
  - 법인이 전자신고를 할 경우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 4만원으로 소득 금액 대비 공제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조세지원으로 법인의 전자신고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99% 법인이 이미 전자신고에 익숙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세지원을 없애고 전자신고를 의무화하더라도 이로 인해 법인사업자가 느끼는 추가적 업무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3. 세무대리인에 대한 공제한도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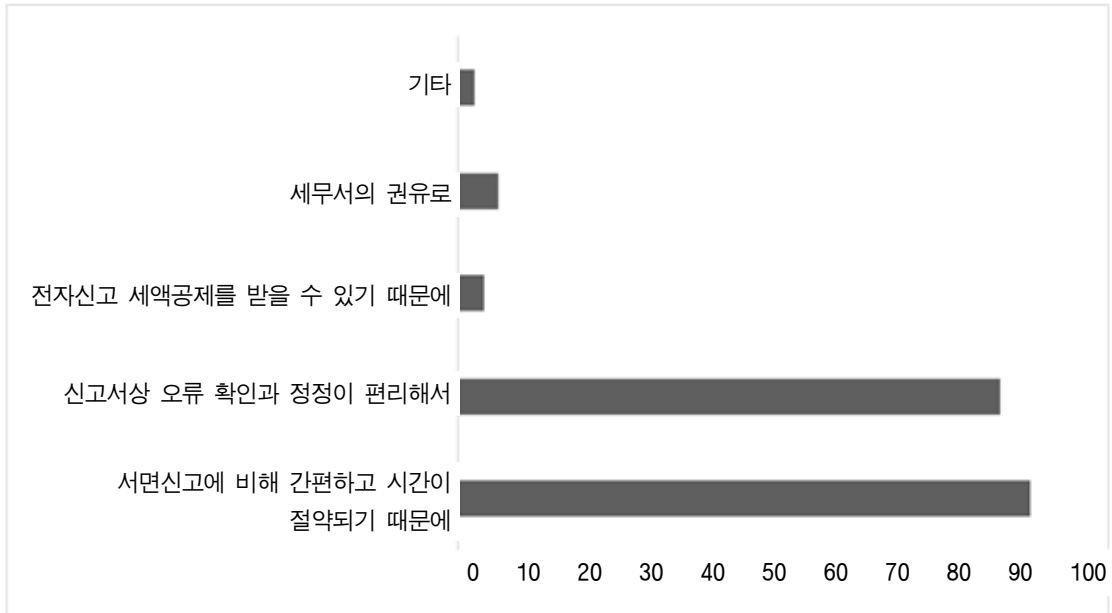
-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네 차례의 세법개정 이후 조세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율이 획기적으로 상승하였다는 실증적 증거는 찾기 어려움
  - 직접 신고자의 공제금액이 1인당 연 4만원으로 13년간 유지되어 온 반면 세

무·회계법인의 공제한도는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개인 세무사 및 회계사의 공제한도는 1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인상)돼 직접 신고자와 세무대리인 간 불평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세법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의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가 크게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율은 소폭 상승에 그쳐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전자신고율 상승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의문임
  - 특히, 종합소득세는 직접 신고자의 전자신고율 상승 폭이 세무대리인을 앞질러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율이 소폭 증가한 것이 과연 세법개정의 효과 때문인지 불명확함
  
- 세무대리인에 대한 집중적인 조세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자신고율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아 정책효과가 불명확한 만큼 세무대리인에 대한 조세지원은 축소하되, 서면신고비율이 높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납세자 계층을 위주로 조세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전자신고율 상승에 실질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전자신고의 편리성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만족도는 89.7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폐지·축소하더라도 94.5%의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유지하겠다고 응답해 공제한도 축소가 전자신고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전자신고 세액공제 때문에 전자신고를 선택하였다는 세무대리인은 전체의 4.4%에 불과하였으며, 전자신고의 편리성이 전자신고 선택의 결정적 이유로 분석됨
  - 세무대리인의 93.4%가 서면신고에 비하여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선택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88.4%는 신고서상 오류확인과 정정이 편리한 점을 전자신고를 선택한 이유로 꼽음
  -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가 아니므로 공제한도를 축소하더라도 서면신고로 회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VIII-2]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선택한 주된 이유(1+2순위 복수응답)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응답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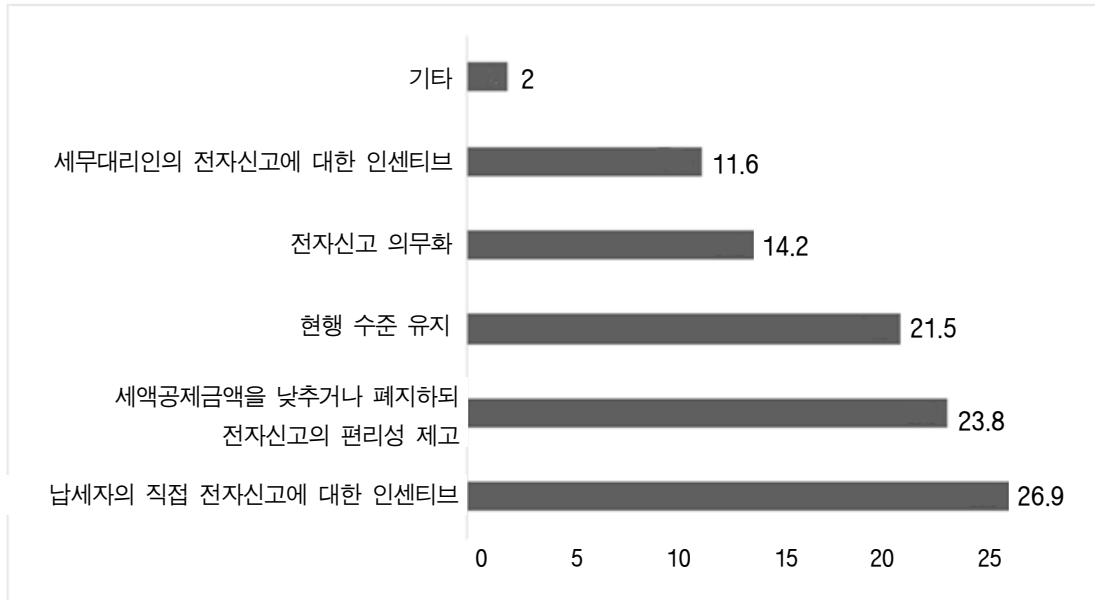
#### 4. 전자신고의 편리성 강화

- 전자신고제도가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선 만큼 세제지원의 의존도는 줄이되, 전자신고의 편리성 강화를 통해 서면신고로의 회귀를 방지하고 전자신고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새로운 신고방식에 두려움을 느끼는 납세자를 전자신고로 유인하는 정책수단으로 효과적임
  - 그러나 이미 전자신고에 익숙해진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세지출만 유발하고, 전자신고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된 이후에는 전자신고의 편리성을 높여 전자신고에서 서면신고로 회귀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정책과제일 수 있음
  
- 전자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되 전자신고의 편리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응답이 23.8%로 2위를 차지함

- 개인사업자의 찬성률이 25.5%로 가장 높았고, 세무대리인의 찬성률이 15.5%로 가장 낮았음

[그림 VIII-3]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결과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응답결과

- 전자신고의 편리성 강화를 위해서는 서식입력 시간을 줄이고, 세액계산의 편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에 사용한 시간을 분석한 결과, 서식입력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음
    - 법인사업자는 전체 전자신고시간의 57~62%, 개인사업자는 52~54%, 개인 비사업자는 57%, 세무대리인은 76~81%를 서식입력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자신고가 세액계산 및 신고의 편리성 제고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감소에 기여하였다는 응답비율은 75.3%로 5개의 전자신고 기여도 항목 중 최하위점을 기록함<sup>28)</sup>
  - 미리채움서비스, 전화신고 등 확대를 통해 서식입력시간은 줄이고, 전자신고의 세액계산 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28) 구체적인 설문조사 결과는 [그림 VI-6] 참고



## IX. 결 론





## IX. 결 론

- 주요 세목의 전자신고율이 90%를 초과하여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조세혜택이 세무대리인에 집중되고 형평성이 훼손되어 지원대상도 적절하지 못함
  - (조세지원의 필요성) 전자신고율은 법인세 98.6%, 종합소득세 91%, 부가가치세 90%로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으므로 전자신고제도의 정착이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됨
  - (정책수행방법의 적절성) 세제혜택이 세무대리인에 집중되어 있고,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전자신고를 하고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종합소득세 11.4%, 법인세 83.5%로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납세자의 편의 증대 및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통해 전자세정의 안정화에 기여하였지만, 조세지출에 비해 전자신고율의 증가가 미미하고 세무행정비용의 절감 효과가 없음
  - (전자신고 활성화) 도입 초기에는 전자신고 정착에 기여하였지만 이후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은 크게 증가한 반면, 전자신고율의 증가는 미미하여 세제지원 효과가 거의 없음
  - (세무행정비용 절감) 지난 4년간 조세지출은 약 3,310억원이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세무행정비용 절감액은 약 939억원에 불과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는 없음
  - (전자세정 안정화)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소와 신고내용의 정확성 향상, 신고내용의 상호대사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전자세정의 안정화에 기여함
  
- 설문조사 결과,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모두 전자신고가 서면신고에 비해 편리하며 세무관련 업무비용이 감소하거나 동일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0%를 넘으며,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에 줄거나 폐지가 되어도 전자신고를 유지한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90%를 넘음
  - (편리성) 모든 질문항목에 대해 전자신고가 서면신고에 비하여 편리하다는 답변이 90%를 상회함

- (업무비용 증감) 납세자의 90.9%는 전자신고로 인해 세무관련 업무비용이 감소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하였고, 증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1%에 불과함
  - (전자신고 유지) 전자신고자의 90.9%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경우에도 전자신고를 유지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함
- 주요세목의 전자신고율이 90% 이상으로 제도가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섰으므로 세무대리인의 공제한도를 축소하고 법인의 전자신고를 의무화하여 세제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는 대신, 전자신고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 (점진적 폐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전자신고율을 제고하는 효과는 제도 도입 초기에만 관찰되며, 이미 전자신고에 익숙해진 납세자에게 조세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세지출만 유발하고 전자신고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됨
    - 설문조사 결과, 제도를 폐지해도 전자신고율은 적어도 83%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로 발생하게 될 행정비용은 최대 약 353억원이지만, 조세지출 규모는 958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법인 전자신고 의무화) 법인은 세액공제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납세협력의무 이행능력이 뛰어나며 이미 전자신고율이 99%에 달하므로 전자신고 의무화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음
    - OECD 국가의 50%가량이 법인의 전자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높은 전자신고율을 보이는 국가들은 대부분 전자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 법인세 전자신고율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도입 이전에 이미 90%를 넘었고 현재는 99%의 법인이 전자신고를 선택하고 있음
    - 직접 전자신고한 법인 중 83.5%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전자신고를 선택하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 94.9%의 법인이 세액공제가 폐지·축소되더라도 전자신고를 유지하겠다고 응답함
  -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축소) 네 차례의 세법개정을 통하여 세무대리인에 대한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신고율의 상승은 소폭에 그쳐 그 효과가 미미하였으므로 세무대리인의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설문조사 결과, 전자신고의 편리성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만족도는 89.7%로 매우 높으며, 세액공제를 폐지 또는 축소하더라도 94.5%의 세무대리인이 전

자신고를 유지하겠다고 응답함

- 설문조사 결과, 세액공제 때문에 전자신고를 선택했다는 세무대리인은 4.4%에 불과해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편리성 강화) 전자신고가 정착한 이후에는 전자신고의 편리성을 개선하여 전자신고에서 서면신고로 회귀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정책과제임
- 설문조사 결과,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되 전자신고의 편리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응답이 23.8%로 2위를 차지함

## 참 고 문 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OECD, 『Tax Administration』, 2015.